## 스위스 신연방사법의 실효성 평가



배 건 이

입법평가 자료 12-24-(6)

## 스위스 신연방사법의 실효성 평가

배 건 이

# 스위스 신연방사법의 실효성 평가 EVALUATION DER WIRKSAMKEIT DER NEUEN BUNDESRECHTSPFLEGE 

번 역 : 배건이(초청연구원)<br>Bae, Gun-Yee

2012. 12. 31. 

# EVALUATION DER WIRKSAMKEIT DER NEUEN BUNDESRECHTSPFLEGE 

(스위스 신연방사법의 실효성 평가)

# ZWISCHENBERICHT DER EVALUATIONSPHASE I <br> (평가기간-I 의 중간보고) 

ZUHANDEN DER BEGLEITGRUPPE
동반협력그릅 귀중

Bern/Zürich/Luzern, den 2. Februar 2010

Prof. Dr. iur. Andreas Lienhard, Universität Bern (Projektleitung)
Dr. rer. pol. Stefan Rieder, Interface Luzern (Co-Projektleitung)
Prof. Dr. iur. Martin Killias, Universität Zürich
Christof Schwenkel, Dipl.Verw.-Wiss., Interface Luzern
Sophie Hardegger, lic. phil.I, Universität Zürich
Simon Odermatt, lic. iur., Rechtsanwalt, Universität Bern

## 목 차

요 약 ..... 11

1. 서 론 ..... 21
1.1 논의배경 ..... 21
1.2 보고서의 구성 ..... 22
1.3 입법평가의 대상 ..... 24
1.4 입법평가의 문제 ..... 28
1.5 입법평가의 계획 ..... 30
1.6 방 법 ..... 33
1.7 프로젝트조직 ..... 39
TEILI : 조직변경의 효과 ..... 41
2. 연방대법원의 조직변경 ..... 41
2.1 연방사회보장법원(EVG)의 일부편입 ..... 43
2.2 법원조직 간이화와 행정권한의 분배 ..... 50
2.3 연방대법원의 장점과 단점 ..... 54
3. 연방행정법원 신설 ..... 56
3.1 항고담당기관들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연방행정법원으로 통합 ..... 56
3.2 연방행정법원의 인사현황 ..... 64
3.3 연방행정법원의 독자성 및 전문성 ..... 67
3.4 연방행정법원의 장점과 단점 ..... 71
4.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 73
4.1 연방형사법원의 설립 ..... 73
4.2 연방형사법원의 인사현황 ..... 78
4.3 연방형사법원의 장점과 단점 ..... 81
5. 연방법원에 대한 감독 ..... 82
5.1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감독 ..... 82
5.23 개의 연방법원에 대한 의회의 상급감독 ..... 89
5.3 법원의 명명 ..... 93
6. 주 전심법원의 변경 ..... 95
TEIL $\P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 107
7. 이중심급의 효과 ..... 107
7.1 연방행정법원으로 업무이관 ..... 107
7.2 연방형사법원으로 업무이관 ..... 115
7.3 주의 전심법원으로 업무이관 ..... 130
8. 심리변경의 효과 ..... 136
8.1 사회보장법상 심리의 제한 ..... 136
8.2 연방행정법원의 심리전권 행사 ..... 140
9. 법적수단의 변경 ..... 143
9.1 통합상소제도의 신설 ..... 143
9.2 보충적인 헌법소원의 신설 ..... 147
10. 기타 선택된 조치 ..... 150
10.1 기본원칙적 의미의 법적문제 ..... 151
10.2 소송한정액의 상승과 사회보장법상 비용부담의무의 도입 ..... 154
10.3 연방대법원 간이소송을 통한 판결 기회의 확대 ..... 158
11. 사법개정의 효과 ..... 162
11.1 주의 진행, 업무 및 법적수단에 대한 개정효과 ..... 162
11.2 주법원의 사법개정 효과 ..... 166
TEILIII : 개정결과의 효과 ..... 173
12. 판결의 수준에 대한 개정효과 : 설문과 인터뷰 결과 ..... 173
12.1 판결의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 연방 법원 ..... 174
12.2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본 판결수준에 대한 평가 ..... 181
12.3 주의 관점에서 본 연방대법원의 판결수준에 대한 평가 ..... 187
12.4 조직적 관점에서 본 판결수준에 대한 평가 ..... 188
12.5 연방부처들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수준에 대한 평가 ..... 190
12.6 개정이 재판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총평 ..... 192
13. 결과의 변화 : 데이터 분석 결과 ..... 194
13.1 연방법원 하급심 데이터 분석 ..... 194
13.2 연방법원 데이터 분석 ..... 222
TEILIV : 목표대상그룹에 대한 효과 ..... 265
14. 변호사에 대한 연방사법개정조치의 효과 ..... 266
14.1 주요변화에 대한 판단 ..... 266
14.2 법적수단과 절차의 변경 ..... 270
14.3 이중심급의 효과 ..... 291
15. 수혜조직에 대한 연방사법개정조치의 효과 ..... 299
15.1 주요변화에 대한 평가 ..... 300
15.2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 301
15.3 기타 양상 ..... 303
16. 연방행정부처에서 본 개정에 대한 평가 ..... 305
16.1 주요변경에 대한 평가 ..... 305
16.2 연방행정법원 신설의 연방행정부처에 대한 효과 ..... 307
16.3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 311
TEILV : 전체평가의 결과 ..... 313
17. 설문결과를 통한 목표달성에 대한 전체평가 ..... 314
17.1 연방법원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 314
17.2 주 법원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 316
17.3 목표대상그룹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 318
18. 개별조치들의 결과자료를 통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 321
18.1 목표1 달성을 위한 조치들의 공헌도 ..... 322
18.2 목표2 달성을 위한 조치들의 공헌도 ..... 323
18.3 목표 3 달성을 위한 조치들의 공헌도 ..... 325
19. 통계결과자료를 통한 목표달성의 평가 ..... 327
19.1 주 단계의 변경에 따른 효과 ..... 327
19.2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신설효과 ..... 329
19.3 연방행정법원의 총부담의 발전 ..... 330
19.4 부담감소효과와 개별 조치 ..... 332
20. 목표달성에 대한 전체평가의 경과: 종합 ..... 334
21. 별 첨 ..... 339
별첨 I : 인터뷰 대상 ..... 340
별첨 $\Pi$ : 방법 ..... 342

## 요 약

2007년 초에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전면개혁이 발효되었다. 이와 결부된 법개정들은 연방대법원(BGer)의 조직과 절차, 전심절차의 변경 및 상급심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상소의 조정을 내용으로 한다. 연 방주들의 차원에도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은 영향을 주는데, 법 률은 2012년 초까지의 과도기를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1: 연방대법원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담경감과 이를 통한 기능 유지.
(2) 목표 2: 일정한 분야에서의 권리보호 개선.
(3) 목표 3: 절차와 권리구제수단의 간이화.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이라는 목표달성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헌법에서의 일반적인 입법평가 위탁규정으로부터 도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7년의 연방상원1)의 자료제출요청에서 요구되었다. 연방사법청[Bundesamt für Justiz]은 공동연구팀에 입법평가 를 위탁하였다. 이 공동연구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첫 번째 중간결과 를 제출한다. 입법평가의 중간결과의 목표는, 2009년까지의 목표달성 을 검토하고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별 조치들의 작동방식을 분석

[^0]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제기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을 통해 유발된 변화들이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과 권리보호의 개선, 절차의 간 이화에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2년까지 조사들을 보완하고 각각 부분별로 반복할 것이 예정되 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결과들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권고사항을 서술하는 것은 결과들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포기하였다. 이후의 조사들은 이제까지의 효과들 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 ■ 평가의 대상과 과정

이제까지의 평가작업들에서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다음 4가 지 측면들이 조사되었다(입법평가의 대상):
(1) 조직상 측면들: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조직에 있어서의 변경들(예 를 들어, 연방사회보장법원(EVG)의 편입), 연방행정법원[BVGer] 과 연방형사법원[BStGer]의 신설, 3 개의 스위스 연방법원들2)에 대 한 감사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의 조정 및 연방주들에서의 변 화들(예를 들어, 이중심급[doppelter Instanzenzug] ${ }^{3}$ )의 도입)과 관련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연방대법원의 경감부담에 기여하였 는지 여부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가 조사되었다.
(2) 절차진행, 업무, 상소의 변경: 이러한 개정 범위에 대한 핵심적인 예들은 연방과 연방주들에서의 이중심급의 도입, 사회보장법에서 의 연방대법원의 심리의 제한 또는 연방대법원에의 통합소원[Ein-
2) 역자주: 연방대법원(BGer), 연방행정법원(BVGer), 연방형사법원(BStGer)을 가리킨다.
3) 역자주: 스위스연방에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법원재판은 연방주의 제 2 심 법원에 상소될 수 있다. 연방주의 법원은 2심급을 넘는 심급에서 사건에 대해 사실 심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한다.
heitsbeschwerde]4)의 신설이다. 입법평가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느 정도로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권리보호를 개선하고 절 차를 간이화하였는지를 심사하였다.
(3) 결과물의 변경: 이것은 우선적으로 3 개의 스위스 연방법원들의 판례의 양과 질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연방대법원의 부담경 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이러한 정보로부터 어느 정도로 이 번 개혁에 기한 부담경감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심사하였다.
(4) 설문대상그룹에 있어서의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효과들. 입 법평가에서는 변호사들, 제소권을 가진 사회단체들(주로 사회보 장법과 환경법 영역), 연방의 행정관청들이 스위스연방 사법제도 의 개정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입법평가의 4가지 대상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들이 조합되었다:
(1) 문서자료의 평가: 이것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자료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보고서, 관련 법률들, 학문적 출판물들
4) 1848 년의 스위스 연방헌법 제 105 조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 단으로서 Staatsrechtliche Beschwerde(헌법소원)이 도입되었으나 이를 정치적인 판단 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Bundesversammlung(연방의회)에서 다루어지다 가, 1874년에 연방헌법 제113조 제1항에서 연방대법원에 이런 사건에 대한 일반적 인 관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는 아직 법률상 열거된 행정사건에 대해서만 이 제소권이 인정되었다. 점차 연방의회의 재판권이 줄어들게 되었고 1999 년에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 Staatsrechtliche Beschwerde(헌법소원)은 오직 Kantone (연방주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는데, 1969년부터는 연방의 행위에 대해서 도 연방대법원에서 Verwaltungsgerichtsbeschwerde(행정법원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 게 되었다. 2007년에 발효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Staatsrechtliche Beschwerde(헌법소 원)과 Verwaltungsgerichtsbeschwerde(행정법원소원)은 Beschwerde in öffentlich-rechtlichen Angelegenheiten(공법소원), 소위 Einheitsbeschwerde(통합소원)으로 합쳐졌다. 이에 덧붙 여 die subsidiäre Verfassungsbeschwerde(보충적 헌법소원)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정 을 통해 오랫동안 다투어졌던 재판권과 관할문제가 해결되었다.

및 스위스연방과 연방주 법원들의 연간보고서들과 자료들이 포 함된다.
(2) 직접적, 양적 인터뷰들: 스위스 연방법원들, 연방주들의 상급심법 원들, 연방행정관청들에 있는 총 33 인 및 변호사들과 면담이 이 루어졌다.
(3) 양적 설문조사: 7 개의 집단들(3개의 스위스 연방법원들, 연방주 의 상급심법원들, 변호사들, 사회단체들, 연방행정관청들)에서 양 적 설문조사가 실행되었다. 조사를 위한 설문은 온라인 또는 서 면으로 발송되었다.
(4) 통계상 평가: 제소와 재판의 수와 범위에 대한 3 개의 스위스 연 방법원들의 통계들이 평가되었다. 데이터들은 각각의 법원들의 연간보고서 또는 법원들, 특히 연방대법원이 입법평가를 위해 제 출한 내부 평가들에서 추출되었다.

2011년에는 연방대법원의 선별된 판결들의 질적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필요한 계획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졌다.

## - 지금까지의 결과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4가지 측면에 대한 결과들은 본 중간보 고에서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이어서 우리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 혁의 3 가지 목표들의 잠정적인 달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 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서 3 개 그룹의 결과들이 조합된다: 이것은 첫 째로 목표달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고, 둘째로 개별 조치들의 데이 터를 문서자료평가, 인터뷰,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셋째로 통계상 평가의 결과들이다. 이 3 가지 관점들은 하나의 총평가 로 합쳐진다.

## 목표-1(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 및 그 기능 유 지)의 지금까지의 달성

이제까지의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는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이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점과 목표- 1 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는 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3 개의 부분결 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첫째, 연방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조치들로 인한 부담경감효과가 관찰될 수 있으며 상급심법원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법관 들은 질문을 받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부담경감효과의 정도와 관련 하여 훨씬 소극적인 답변을 한다. 그들은 대체로, 연방대법원이 오늘 날 여전히 부당하게 부담을 지고 있으며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 들을 판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둘째, 목표-1을 위한 16 개의 개별 조치들을 분석한 결과, 그것들 중 에서 5 개는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연방대 법원의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감독기능은 이와 반대로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나머지 10 개의 조사된 조치들에 의 해서는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통계상 데이터들의 평가에 따르면, 주로 연방대법원의 부담경 감은 공법 영역에서의 제소가 감소된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정한 영역들(사회보장법, 민형사법)에서는 소송기간도 단축되었다. 이러한 두 변화들의 일부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한 조치들인가? 분석에 근 거해서 볼 때,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효과를 나타냈던

조직상의 조치들이다: 연방대법원에서의 변경된 법원조직(특히 행정위 원회[Verwaltungskommission]의 도입)과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연방형사 법원의 신설, 간이소송절차에서 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장, 사회 보장법에서의 심리 제한은 (비교적 작은)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왔다.

부담경감은 원래 예측했던 것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것 은 무엇보다 보충적인 헌법소원[subsidiäre Verfassungsbeschwerde]의 도 입 때문이다.

또한 잠재적으로 부담경감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소 송가액 제한, 비용부담의무,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일부편입, 전심법원 [Vorinstanzen]의 신설)이 기대했던 만큼의 또는 아무런 부담경감효과 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아마도 이것은 연방주의 단계 에서 전심절차를 도입한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연방주들로부터 나온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아직 현저한 변화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연방 대법원에서의 조사들은, 주관적 부담경감효과가 희망했던 정도로 나 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법관들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심각하게) 업무부담을 느낀다. 우리 가 연방대법원의 법관의 수를 소제기의 수 또는 종결된 재판의 수와 비교한다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이와 반대로 약간의 부담감경이 관 찰된다. 이것이 지속적인 것인지 여부는 더 긴 기간을 살펴보아야 비 로소 알 수 있을 것이다.

## 목표-2(일정한 영역에서의 권리보호의 개선)의 지금까지의 달성

우리는 목표-1(부담경감)과 목표-2(권리보호의 개선) 사이의 목표경합 [Zielkonkurrenz]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합관계에도 불구하고 잠 정적인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이 권리보호를 향상시 켰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뒷받침될 수 있다:

첫째 설문을 받은 3 개의 스위스 연방법원들의 근무자들, 연방주의 상급심법원들의 설문대상자들, 그리고 변호사들은 그들의 총평에서 권 리보호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 의해 향상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둘째 개별적인 조치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4 가지 조치들은 권리보호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또는 다소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와 반대로 2 가지 조치들은 권리보호를 오히려 제한 하였다. 11 가지 조치들은 목표-2에 다소 작은 영향을 주었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통계상 분석에 따르면, 목표-2의 달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분석들을 통해서 목표-2와 관련한 상반되는 효과들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통합소원의 도입, (덜 특징적이지만)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주 차원에서의 이중심급의 신설 은 소제기인을 위한 권리보호를 향상시켰다. 4가지 조치들 모두 스위 스 연방사법제도개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2 가지 조치들은 권리보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 였다. 이 조치들은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심리 제한과 사회보장법 영 역의 소제기시 비용부담의무이다.

그러나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묘사된 목표경합은 연방 대법원의 부담경감 때문에 권리보호가 완전히 감소되는 식으로 "대가 를 치루어야" 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오히려 연방 제1심법원들의 신 설과 통합소원의 신설을 통해 적어도 목표경합의 일부를 완화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일련의 다른 조치들(예를 들어, 연방대법원에 전자적으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도입, 종국재판[Endentscheiden]의 개념정의 등)도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목표에의 기 여정도는 우리의 조사에 근거할 때에 작게 평가되어야 한다. 11 개의

조사된 조치들은 권리보호에 약한 영향을 주었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 지 않았다.

## 목표-3(절차의 간이화)의 지금까지의 달성

사법제도 개혁은 이제까지 목표-3에 대해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에서의 절차를 간이화하였다. 그러나 목표-1과 목 표-2에 대한 기여정도와 비교할 때에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효 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부분적 결 과들에서 도출된다.

첫째 3 개의 스위스 연방법원들에 있는 설문대상자들의 전체적인 평 가에 따르면,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에 있어서 절차의 일정 수준의 간 이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를 때에 절차진행은 여전히 복잡하다. 변호사들은 통합소원의 도입으로 인해 절차가 명백히 간이화되었다고 본다. 연방주의 상급심법원들의 설문대상자들은 이와 반대로 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한 절차의 간이화 가 없었다고 한다.

둘째 개별 조치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온다: 2 가 지 조치들은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에서의 절차 간이화에 기여하였다. 12 가지 다른 조치들은 목표-3에 경미한 정도만 영향을 주었다. 2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절차가 복잡화되었다.

셋째 통계상 평가에 따르면 목표-3이 달성되었다는 징표가 나타나 지 않았다.

절차 간이화의 주요원인으로는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연방행정법원의 신설과 통합소원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실 무가들은 이 2 가지 변화가 목표-3에 뚜렷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동 의한다. 다른 12 가지 조치들은 오히려 절차 간이화와 관련하여 경미

한 영향만을 주었거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은 오히려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목표-2와의 목표경합이 나타난다: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이 한 측면에서는 권리보호를 향상시킨 반면에, 법원이 늘어남으로써 절차 가 길어지고 복잡화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비용부담 의무의 신설은 마찬가지로 절차의 복잡화에 기여한 두 번째 조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번 사법제도 개혁은 절차의 간이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 잠정적인 총평

결과를 요약하자면, 입 법평가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된 조치들은 지금까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3가지 목표의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통합소 원의 도입 및 연방대법원의 재조직은 목적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을 하였다. 이 3 가지 변화들에 의해 현재 가장 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비용부담의무의 도입 및 연방대법원의 심리 제한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들은 한편으로는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권리보호를 제한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목표-1과 목표 -2 사이의 일정한 경합이 존재한다.

셋째 목표경합은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한편 으로는 이 법원의 신설을 통해 권리보호가 향상되었다(목표-2에 대한 긍정적 기여).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형사법 영역에서의 이중심급 때문 에 몇몇 절차들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게 되었다(목표-3에 대 한 부정적 영향).

## ■ 전 망

본 중간결과들은 2012년까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치게 된다. 앞으로 의 입법평가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사법제도의 결과물(Output)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의 선정된 판결들의 질적 분석,
(2) 스위스 연방법원들에서의 인터뷰 반복,
(3) 스위스 연방법원들 및 연방주들의 상급심법원들에서의 온라인 설문조사 반복,
(4) 2011년까지의 수치로 통계 보완.

이러한 연구과정들은 현재의 결과들을 그 적정성과 안정성 측면에 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고 시기별 상황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 다. 2011년 말에는 추가적인 중간보고서가 만들어지고, 2012년에는 최 종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 1. 서 론

## 1.1 논의배경

2007년 초에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의 전면개혁이 실행되었고, 이로 써 다음의 법률들이 발효되었다:

- 연방대법원법(BGG),
- 행정법원법(VGG),
- 법관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의회규칙
- 약 300 개 제정법들의 개정(연방법률들과 연방상원규칙들),
- 형사법원법(SGG; 이미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

이 법률개정들은 연방대법원(BGer), 그 전심법원 및 최상급법원에 대 한 상소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것이다. 칸톤들은 그들의 법원조직과 공 법 영역에서의 절차를 BGG 발효 후 2 년 이내에 그 기준에 맞추어 변 경해야 했다(BGG 제 130 조 제 3 항). 칸톤들의 형사법과 민사법에서의 경과규정들에 대한 과도기는 BGG 제 130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 개혁의 효과는 입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는 한편으로는 헌법상 일반적인 입법평가규정에 근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7년에 상원의원 Pfisterer에 의해 제안되고 연방상원에 의해 제출된 자료제출요청에 근거한다. 이 자료제출요청에 기하여 스 위스 연방 내각[Bundesrat]5)은 "사법부와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의 새 규정을 그 효과에 비추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법원 들에 자체적인 결론도출의 기회를 주고, 의회 또는 의회의 관할이 있

[^1]는 위원회들에 짧은 중간평가를 주며 의회에게 (잠정적으로) 마무리하 는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방사법청[Das Bundesamt für Justiz]은 공동연구팀에 입법평가를 위탁하였다. 이 공동연구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입법평가의 중간결과를 제출한다.

여기서 언급된 결과들은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며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일련의 개정들은 얼마 전에야 비로소 발효했거나 발표하게 될 예정이 며 현재의 조사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개정의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본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 짧게 조망해보겠다. 그 다음에는 입법평가의 대상들을 다룬다. 입법평가의 대상들로부터 핵심 적인 문제제기가 도출될 것이다(상세한 평가문제는 각각의 장(Kapitel) 에서 그 결과들과 함께 서술된다). 이어서 입법평가의 계획과 방법들 을 묘사하고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에 적용된 프로젝트조직을 보여줄 것이다.

## 1.2 보고서의 구성

중간보고는 다음의 5 개 부분들(Teil)로 구성되어 있다(거기서 언급되 는 조치들은 다음의 1.3 절에서 입법평가의 대상들을 고찰할 때에 다 룬다):
(1) Teil I은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 개혁의 조직적인 측면들에 집중 하고 조치 M1에 의한 변화들을 논의한다. 이 Teil에서는 3개의 스위스 연방 법원들에 대한 감독위원회 또는 상급감독위원회의 문제와 명칭부여의 문제도 다루었다. Teil I의 결과들을 위한 기

초는 직접면담 및 스위스 연방 법원들과 칸톤 법원들에 대한 설 문조사로 이루어진다.
(2) Teil II는 절차진행, 임무분배, 상소의 조정(조치 M2부터 M4까지) 에 대해 다룬다: 스위스 연방법원들과 연방주 법원들의 관점에서 그로부터 어떤 효과들이 나오는지 서술된다.
(3) 본 보고서의 Teil III에서는 결과물의 변화에 대해 다룬다. 여기 서는 한편으로는 설문을 받은 실무가들의 시각에서의 주관적인 변화들이 소개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상 분석들의 결과들이 들어간다.
(4) Teil IV는 설문대상그룹별로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효과들 에 대한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화들이 이루어졌 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설문대상그룹들 이 권리보호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조사된다. Teil IV의 결과들은 변호사들 및 연방행정관청들에 있는 책임자들, 관계 사회단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5) Teil V 는 조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총평을 다룬다. 개별 조치들에 대한 Teil II에서 IV까지의 평가에 기반하여 이 Teil에서는 각 조치들에 대한 평가들을 덧붙 인다. 더 나아가 통계상 수치들의 관점에서 나온 평가들도 여기 에서 요약된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Teil V에서는 마지막 으로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잠정적인 총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중간보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타의 권고사항을 서술하 지 않는다.

빨리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중간보고의 요약과 Teil V 을 보기를 권한다. 이를 통해 Teil I부터 IV까지를 읽지 않고도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파악할 수 있다.

## 1.3 입법평가의 대상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의 개혁과 그 효과가 입법평가의 대상이다. 핵 심적인 것은 개혁의 3 가지 목표설정 및 그 달성수준을 입법평가를 통 해 조사하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6)

- 목표-1: 연방대법원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담경감 및 이를 통한 그 기 능 유지
- 목표-2: 일정한 영역에서의 권리보호 개선
- 목표-3: 절차와 권리구제수단의 간이화

이러한 3 가지 목표들을 전제로 하여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수많은 문서자료와 서류들에 기초하여 각각의 목표들에 연결될 수 있는 조치들의 목록이 도출될 수 있다. ${ }^{7)}$ 조치들은 M1에서 M4까지 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입법평가의 대상이 된다. 4개 그 룹의 조치들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6) Bundesrat (2001): 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l 2001, S. 4208.
7)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대체로 2개의 문서자료를 참조하였다: Bundesamt für Justiz (2008): Evaluation der Wirksamkeit der neuen Bundesrechtspflege, Pflichtenheft sowie Bundesrat (2001): 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BBl 2001, S. $4202-4497$.

| M1 | 그룹 M1의 조치들은 우선적으로 조직적 성격을 갖는다. 구조의 최 <br> 적화를 통해서 연방대법원 업무의 효율성과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br> 이러한 조직상 조치들의 예는 Luzen(루체른)에 있는 연방사회보장 <br> 법원(EVG)을 Lausanne(로잔)에 있는 연방대법원과 결합하는 것이다. |
| :---: | :--- |
| M2 | 개혁을 위한 다른 조치들은 절차진행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이로 <br> 써 업무들이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권리보호를 향상시키려 <br> 는 목표를 가지고 재분배된다. 이러한 조치들의 핵심적인 예는 연 <br> 방과 연방주의 차원에 이중심급을 도입하는 것이다. |
| M3 | 조치들의 세 번째 그룹은 연방대법원의 업무분배[Aufgabenportfolio] <br> 관한 것이고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변화시키지만, 시민들을 위한 <br> 변화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한다. 연방대법원의 업무 경감의 예는 <br>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심리 제한이다. |
| M4 | 조치들의 네 번째 그룹은 상소의 적정화에 관한 것이다. 엄격하게 <br> 바면 새롭게 도입된 것은 통합소원[Einheitsbeschwerde]뿐이다. 그 <br> 러나 보충적 헌법소원[subsidiäre Verfassungsbeschwerde]의 신설(이것 <br> 은 내용상 이전의 헌법소원과 일치한다)도 이 카테고리의 조치들에 <br> 포함시켰다. |

다음의 도표를 보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치 들에 대해 조망할 수 있다. 개별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 보 고서의 각각의 장들에서 결과들을 서술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D 1.1: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치들에 대한 개요

| 조치들의 카테고리 | 조치들 |
| :---: | :--- |
| M1: 조직구조의 변경 | 1. 연방대법원(BGer)의 조직상 변경: 연방사회보장법 <br> 원(EVG)을 연방대법원에 일부편입, 법원조직의 변경 |
|  | 2. 연방행정법원(BVGer)의 신설 |
|  | 3. 연방형사법원(BStGer)의 신설 |
|  | 4. 연방대법원의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에 대 <br> 한 감독기능 신설 |


| 조치들의 카테고리 | 조치들 |
| :---: | :---: |
| M2: 절차진행의 변경 | 5. 연방 차원에 이중심급 확대 |
|  | 6. 연방대법원에서 간이소송절차 재판 가능성 확대 |
|  | 7. 연방행정법원에서와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심리 제한 |
|  | 8. 연방주 차원에서 전심법원 및 절차의 변경 |
|  | 9. 형사사건에서의 국제 사법공조 영역에서의 연방 주와 연방의 제 1 심법원의 처분들을 연방형사법원에 서 바로 취소가능 |
|  | 10. 그 밖의 변화들(기간, 내용변경적 재판[reformat orische Entscheide], 연기적 효과, 종국재판의 개념 정의[Definition Endentscheide]) |
| M3: 연방대법원의 업무분 배 변경 | 11. 연방대법원의 관할에서 일정한 사건영역 제외 |
|  | 12. 소송가액 제한의 변경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의 비용부담의무 도입 |
|  | 13. 원칙적인 의의를 지닌 법적 문제의 심사 |
| M4: 새로운 상소 | 14. 민법, 형법, 공법에서의 통합소원의 도입 |
|  | 15. 보충적 헌법소원 신설 |

이 도표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사용된 모든 조치들의 완전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사의 범위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드러난 조치들을 나열하였다.

이 조치들에서 어떠한 효과들이 나오는가? 다음의 그림에서 간단한 효과모델을 볼 수 있다.

## D 1.2: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간단한 효과모델



전체적으로 4가지 잠재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동시에 입법 평가의 대상이다. 이 4 가지 대상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 (1) 평가대상 1: 연방대법원의 조직과 다른 법원들과의 협력

M1부터 M4까지의 조치들은 연방대법원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대법원의 업무방식에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직, 절차진행, 업무, 상소의 변경이 포함된다. 특히 (일부는 새로이 신설된) 전심법원(연방형사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주들의 법원들)과 연방대법원 사이의 협력이 입법평가의 핵심대 상이다.

## (2) 평가대상 2: 결과물의 질의 변화

집행[Vollzug]의 변경을 통해 결과물의 변화를 추구한다. 결과물(법원 재판)의 질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었다.
(3) 평가대상 3: 조사대상그룹에서의 변화들

더 높은 질의 결과물은 연방사법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재판결과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의 증가 및 조사대상그룹(원고 들, 변호사, 전심법원)의 연방대법원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 잠정적 평가

개별 Teil들의 각각의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들이 요약되고 회색 으로 표시된 칸에 서술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경험적 결과들을 살펴 보지 않고도 목적한 결과를 찾아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조사되지 않은 측면들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은 국민들의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와 법 치국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주제는 본 입법평가에서 조사하지 않는다.

## 1.4 입법평가의 문제

문제제기는 입법평가의 3 가지 대상에 맞추어 서술될 수 있다. 그러 나 이 대신에 문제제기들을 핵심적인 부분만 나열하는 것에 국한하겠 다. 이 문제제기들은 뒤에서 경험적 결과들을 설명할 때에 상세하게 서술될 것이다. 입법평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4 가지 그룹의 조치들이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행위능력 을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 개혁 이전의 상황보다 향상시킬 것인가?
(1) 어떠한 조치들이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가?
(2) 어떠한 조치들이 연방대법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가?
(3) 어떠한 어려움들이 구조, 절차진행, 업무 및 제도들을 변경할 때 에 나타나는가?
(4) 개선효과들이 나타나는가?
2. 연방대법원 재판의 질과 양이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서 어떻 게 변화되는가?
(1) 그 질이 향상되는가 혹은 떨어지는가?
(2) 재판의 양이 증가하는가 혹은 줄어드는가? - 어떠한 조치들이
(3) 재판의 양이 증가하는가 혹은 줄어드는가?

효과에 대해서는 입법평가는 2 개의 설문대상그룹에 집중한다. 이것 은 변호사들과 제소권을 가진 사회단체들이다. 물론 소제기인들을 조 사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이유들(1.6절 참조) 로 인해 그것을 포기하였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들과 사회단체들의 관 점에 대한 보충으로서 일련의 연방행정관청들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효과와 관련하여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입법평가의 세 번째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다.
3.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설문대상그룹들에서 권리보호가 개선 되고 이들이 연방대법원의 업무에 만족하는가?
(1) 변호사들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 는가?
(2) NGO 들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3) 관련 연방행정관청들은 스위스 연방 사법제도 개혁의 영향을 어 떻게 평가하는가?

이 일반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으로 총평에 해당하는 네 번째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4. 사법제도 개혁의 실행은 그 3 가지 목표설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1) 어느 정도로 사법제도 개혁의 3가지 목표들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는가?
(2) 사법제도 개혁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들이 존재하는가, 그 리고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어려움들이 발생하는가?
(3) 사법제도 개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는가?

## 1.5 입법평가의 계획

입법평가의 계획은 2 개의 비교에 기초한다: 하나는 당위-현실-비교 [Soll-Ist-Vergleich]이고 다른 하나는 시기별비교[Längsschnittvergleich]이다.

## Soll-Ist-Vergleiche (당위-현실-비교)

당위-현실-비교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의 3가지 일반적 목적설정들과 경험적 결과들이 비교된다. 이것은 사법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항상 개별 조치들의 효과를 스 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목적들과 비교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

## Längsschnittvergleiche (시기별비교)

사법제도 개혁 전의 상황을 기본상태로서 조사하고 이것을 사법제 도 개혁 이후에 반복하는 시기별비교는 방법론적으로 이상적일 것이 다. 2009년에 입법평가를 시작할 때에 사법제도 개혁이 이미 2년 전 부터 발효중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런 형태의 시기별비 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별비교는 입법 평가 계획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계획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 되었다:

1. 법원들과 연방행정관청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 질적 인터뷰는 대 부분 직접 만나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이루 어졌다. 연방대법원, 연방형사법원, 연방행정법원의 사람들과 연방 주의 상급심법원들의 사람들에게 인터뷰가 행해졌다. 이를 보충하 기 위해서 선별된 연방행정관청들의 책임자들이 조사되었다. 이러 한 질적 인터뷰는 2009년에 실행되었고 2011년에 반복되었다(연방 주의 상급심법원들과 연방행정관청들은 2009년에만 조사). 이런 방 식으로 시기별비교가 이루어진다.
2. 법원들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3 개의 스위스 연방법원들의 모든 근무자들 및 선별된 연방주의 상급심법원들의 근무자들이 온라인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2009년에 실시되고 2011 년에 반복되었다. 이로써 시기별비교를 위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다.
3. 변호사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 일련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직 접 만나서 인터뷰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2009년에 실시되었다. 사법 제도 개혁 이전의 상황과 비교한 변화들을 질문한 부분에서 시기 별비교가 가능하다.
4. 변호사들, 사회단체들, 연방행정관청들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변 호사들은 온라인-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연방대법원에 제소권 이 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방행정관청의 책임자들은 서면조사를 통 해 조사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2009년에만 실행되었다. 사법제 도 개혁 이전의 상황과 비교한 변화들을 질문한 부분에서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다.
5. 데이터분석: 연방대법원의 양적인 결과물-데이터들이 평가된다(여 기에는 재판의 수와 종류, 재판의 기간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분 석에서 - 가능한 한 - 사법제도 개혁 이전시기의 수치들이 사법제 도 개혁 이후의 데이터들과 비교되었다. 데이터분석은 첫 번째로 2009년에 실행되었고 2012년에 실시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 부 분에서도 시기별비교가 이루어진다.
6. 판결들의 분석: 입법평가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조사 되고 분석된다. 이와 관련한 입법평가 계획은 특수한 사전연구의 대상이며 별도의 보고서에서 서술될 것이다.

다음의 요약은 시기별비교들(조사의 시점 및 종류)에 대해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 D 1.3: 시기별비교의 개요

| 조사내용 | 2009 | 2010 | 2011 | 2012 |  |  |
| :---: | :---: | :---: | :---: | :---: | :---: | :---: |
| 1. 질적 인터뷰: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br> 연방형사법원, 선별된 연방주의 상급심법 <br> 원들, 선별된 연방행정관청들(마지막 두 그 <br> 룹은 2009년에만 실시) |  |  |  |  |  |  |


| 조사내용 | 2009 | 2010 | 2011 | 2012 |  |  |  |
| :--- | :--- | :--- | :--- | :--- | :--- | :--- | :--- |
| 2. 양적 온라인 설문조사: 연방대법원, 연방 <br> 행정법원, 연방형사법원, 선별된 연방주의 <br> 상급심법원들 |  |  |  |  |  |  |  |

*파란색 표시: 조사 실시.

## 1.6 방 법

입법평가의 계획에서 평가방법들은 이미 간단히 서술하였다. 이 절 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2009년에 조사가 실시될 때에 사용된 평가방 법들과 인적그룹들에 대한 몇몇 핵심데이터들이 제시될 것이다. 양적 평가방법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II(Anhang II)에서 볼 수 있다. 평가방법들을 보여줄 때에는 도표 D 1.3 에서 사용된 체계를 따를 것 이다.

### 1.6.1 질적 인터뷰

질적 인터뷰들은 선별된 사람들과의 직접대면에 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화통화에 의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화지침[Gesprächs-
leitfaden]이 인터뷰의 바탕이 된다. 이 대화지침에는 인터뷰상대방에게 제시되는 열린 문제들[offene Fragen] ${ }^{8)}$ 이 나열되어 있다. 대화지침은 평 가자들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졌고, 전문가집단 및 이 프로젝트의 다 른 협동그룹들과 상의하였다. 인터뷰상대방들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문제에 답할 수 있었다. 대화는 1 시간에서 최대 2 시간 30 분 사이로 진행되었다. 답변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기록되었다. 또한 항상 녹음도 이루어졌다. 이 녹음은 기록을 보완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들을 사후 에 상세하게 기록하는 데에 기여했다. 질적 인터뷰는 대화지침에 있 는 문제들에 따라 평가되었다.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총 33건의 질적 인터뷰가 실행되 었다. 다음의 도표에서는 대화의 수 및 설문대상자의 선택이 서술되 어 있다. 모든 설문대상자의 목록은 부록-I에서 볼 수 있다.

## D 1.4: 2009년 질적 인터뷰의 개요

|  | 조사상대방 | 대화의 수 |
| :---: | :---: | :---: |
| 1 | 스위스 연방법원들 | 16건의 직접대면에 의한 질적 인터뷰 - 연방대법 원, 연방형사법원, 연방행정법원의 법관들, 서기 들, 근무자들 |
|  | 연방주의 상급심 법원들 | 7건의 직접대면에 의한 질적 인터뷰 $-\mathrm{BE}(\mathrm{Bern}), \mathrm{SH}$ (Schaffhausen), SO(Solothurn), VD(Waadt), VS(Wallis), $\mathrm{TI}($ Tessin ), ZH (Zürich) 연방주의 연방주 상급심법원 들의 법원장들 |
|  | 연방행정관청들 | 3건의 직접대면에 의한 질적 인터뷰 - 연방행정관청 들(연방사법청[BJ]와 스위스연방카지노위원회[ESBK]) 의 대변인 |

[^2]| 조사상대방 |  | 대화의 수 |
| :--- | :---: | :---: |
| 3 | 변호사들 | 7건의 직접대면에 의한 질적 인터뷰 - 변호사들 |

대화상대방은 각 기관들 내에서 최대한 모든 다양한 인적그룹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스위스 연방법원들 에서는 법관들, 법원서기들, 법원행정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언어지역9) 및 변호사사무실의 크기가 적절히 고려되었다. 또한 2007년을 전후해서 연방대법원에서 5 개 이상의 사 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들만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연방주의 상급심법 원들에 있어서는 2 개의 연방주에서 사회보장법원과 행정법원에 있는 대화상대방들이 선별되었다.

### 1.6.2 온라인 또는 서면에 의한 양적 설문조사

입법평가에서 2009년에 총 7건의 서로 다른 양적 설문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이 설문조사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인적그룹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설문조사들은 질적 인터뷰와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 선택지가 주어진 문제들[geschlossenen Fragen]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 졌다. 선택지가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는 수치[Skala] 또 는 선택지로 대답할 수 있다. 설문지에는 자유로운 답변[qualitative Kommentare]이 가능한 선별된 문제들을 위한 공간도 들어있다.

아래의 표에는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조사대상그룹들이 나 열되어 있다. 응답비율[Ausschöpfung]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중 설문 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중으로 산정된다.

[^3]
## D 1.5: 양적 설문조사의 개요

| 조사방법 및 대상 |  |  |  |  |  |  | 접촉한 <br> 사람의 수 | 설문참여자 <br> 의 수 | 응답비율대법원의 모든 근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온라인설문 |  |  |  |  |  |  |  |  |  |$\quad$ 조사기간

부록-II에 양적 설문조사에 대한 핵심적인 방법론적 측면들이 상세 하게 서술되어 있다.

### 1.6.3 데이터의 평가

연방대법원은 잘 축적된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이 통계자료는 사법제도 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다. 통계자료의 평

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조사되어야 할 데이터의 목록을 만들어서 스위스 연방사법제 도개혁의 3 가지 목표들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되도록 하였다. 원칙적 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의 데이터들이 조사되 었다. 이를 통해서 2007년을 전후한 변화들을 살펴보고 이 변화들을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작성된 목록은 이어서 연방대법원과 상의하고 다듬 어졌다. 법원사무처[Generalsekretariat]는 자신의 데이터를 참조하여서 희망했던 데이터 중 어느 것이 해당 기간에 대해 준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사된 데이터들은 입법평가에 전달되고 평가되었다. 다 음의 도표는 이런 방법으로 조사된 데이터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조망 할 수 있게 해준다.

D 1.6: 결과물-데이터 조사에 대한 개요

| 분 류 | 조사된 수치 |
| :--- | :--- |
| 1. 연방대법원의 전심절차에 대한 제 <br> 소의 데이터 분석 | - 7개 연방주의 주법원들의 사건들 <br> - 주법원들의 재판에 대한 제소: 연방 <br> 대법원 재판의 범위와 종류 <br> - 연방형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연방 <br> 대법원에의 제소 <br> - 연방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한 제소 |
| 2. 연방대법원 재판의 데이터 분석 | - 사건들의 종류와 범위 <br> - 사건의 지속기간 <br> - 연방대법원의 사건 취급방식 <br> - 연방대법원에서의 결론도출 방식 <br> - 재판의 복잡성 |
| 3. 연방대법원의 자원 범위 |  |

연방대법원의 데이터에 대한 보충으로서 연방형사사법제도의 영역 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방형사법원의 데이터들이 조사되었다. 이것 은 주로 연방형사사법제도 영역에서 2007년을 전후하여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 1.6.4 판결들의 평가

판결들의 평가는 2009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간 에는 평가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초안으로 만들어져서 전문가그룹 과 논의되었다. 계획은 별도의 문서자료에 서술될 것이다. 경험적 연 구들은 2010년에 시작될 수 있다.

### 1.6.5 설문조사데이터와 통계상 평가들의 관계

위에서 설명된 방법들로부터 나온 결과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여기 서 방법들간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 결 과, 양적인 설문조사결과, 통계상 분석과 판결분석의 결과들은 원칙적 으로 동등하게 고려되고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조사된 데이터들을 함께 관찰할 때에 단지 하나의 방 법에 의한 데이터만 관찰할 때보다 더 신뢰할만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고려가 들어있다. 이때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데이터들이 왜곡을 나타내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통계상 데이터에서도 그런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비교 를 통해 종종 그 차이가 해명될 수 있고 평가가 폭넓게 지지받을 수 있다. 또한 왜곡된 주관적 평가들조차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무에서 그런 주관적 평가들이 행위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이후에 권고안을 작성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 1.7 프로젝트조직

연방사법청은 - 베른 대학의 Kompetenzzentrum für Public Management (kpm), Interface Politikstudien Forschung Beratung, 취리히 대학으 로 구성된 - 공동연구팀[Arbeitsgemeinschaft]에 입법평가를 위탁하였다. 전문가그룹에서는 추가로 5 명의 전문가들이 입법평가작업을 지원한 다. 위탁자 측에서는 동반협력그룹[Begleitgruppe]이 투입되었다. 이 그 룹은 프로젝트의 계획에 참여하고 조사의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 견을 낸다. 다음의 도표에는 조직구조가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D 1.7: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입법평가를 위한 조직

## 전문가그룹

(Prof. Dr. Walter Kälin, Prof. Dr. Jolanta Kren, Prof. Dr. Alexander Markus, a.Oberrichter Fabio Righetti, Prof. Dr. Frédéric Varone)

위탁자
(연방사법청)
의장: Prof. Dr. Luzius
Mader

프로젝트대표
(Prof. Dr. Andreas
Lienhard)
프로젝트공동대표
(Dr. Stefan Rieder)

부분프로젝트
재판분석
(Prof. Andreas Lienhard)

동반협력그룹
(연방사법청,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형사법원,
법과대학 대표)


Interface 사무국

부분프로젝트
데이터분석
(Prof. Martin Killias)

## TEILI : 조직변경의 효과

Teil I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 의한 조직상 변경들에 대한 부 분이다. 이것은 주로 다음의 4가지 지점들이다:
(1) 연방대법원에서의 조직상 변경: 여기에는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연 방대법원으로의 일부편입과 연방대법원의 법원조직 변경(행정기 관들의 새로운 권한분배)이 포함됨.
(2) 연방행정법원 신설
(3) 연방형사법원 신설
(4)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감독기능 신설

우리는 이 Teil에서 추가적으로 스위스 연방법원들의 명칭부여에 대 한 결과도 서술하였다. 또한 스위스 연방법원들에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문의 일반적인 결과들도 담았다. 제 6 장은 마지막으로 연방주 들의 전심법원들에서의 조직상 변경들에 대해 설명한다.

## 2. 연방대법원의 조직변경

우리는 먼저 연방대법원의 근무자들에게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 에 의한 변화들 중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지 물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2 가지 조직상 조치들이 첫 번째 와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관할의 변화(특히 부서들간의 업무를 조정한 것에 의한 변화)와 연방사회보장법원[EVG]의 연방대법원으로 의 일부편입. 다른 중요한 변경들(통합소원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심리 제한)에 대해서는 뒤의 Teil II에서 다루겠다.

## D 2.1: 연방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변화들

| 변화 내용 | 언급된 횟수 |
| :--- | :---: |
| 새로운 관할, 새로운 법영역 | 23 |
|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심리 제한 | 22 |
|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일부편입 | 17 |
| 통합소원 | 13 |
| 소송규칙/절차규칙 일반 | 10 |
| 간이소송절차로 재판할 가능성 확대 | 9 |
| 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한 비용증가 | 9 |
| 인적 측면 | 9 |
| 부서들에 대한 법영역에 따른 사건 배분의 변화 | 8 |
| 사법제도 개혁에 의한 간이화 | 8 |
| 형식적 측면 (서류, 신청서양식) | 7 |
| 전심절차의 확대 | 6 |
| 연방법원 감독 | 3 |
| 소송비용선급의무, 소송가액한계의 상향 | 3 |
| 기타 | 32 |

* 출처: Online-Befragung BGer(연방대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

다음의 그림은 이외에 연방대법원의 설문을 받은 근무자들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가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 때문에 자신의 일상 적인 업무에서 변화를 느꼈다는 점을 보여준다. Luzern(루체른)에서 사 법제도 개혁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였고, 이것은 연방사회보장법원 의 연방대법원으로의 일부편입 때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D 2.2: 연방대법원에서 일상적 업무의 변화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하여 명백히 핵심적 인 중요성을 지닌 2 개의 중요한 조직상 변경에 대해 다루겠다: 이것 은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연방대법원으로의 일부편입과 연방대법원에서 의 내부적 재조직(법관총회[Gesamtgericht], 부서장협의회[Präsidialkonferenz], 행정위원회[Verwaltungskommission]의 권한 변경)이다.

## 2.1 연방사회보장법원(EVG)의 일부편입

1969년 이래로 루체른에 있는 연방사회보장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조 직상 독립적인 사회보장법담당부서로 활동했다. 스위스 연방사법제도 개혁과 거기에 규정된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일부편입을 통해서 연방사 회보장법원과 연방대법원 사이의 협력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사 법제도 개혁은 양 법원들 사이의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위 해서도 기능한다. ${ }^{10)}$ 연방대법원법[BGG]의 발효와 함께 루체른에 있는

[^4]연방사회보장법원의 연방대법원으로의 일부편입이 실행되었다. 현재 는 로잔에 소재지가 있는 연방대법원만 남았으며, 여기에서 제 1 및 제2 사회보장법담당부서로서 2 개의 연방대법원 부서가 루체른에 있 다. ${ }^{11)}$ 이러한 일부편입과 함께 로잔에 있는 법원사무처[Generalsekretariat]는 루체른에 있던 이전의 법원사무처의 기능들을 넘겨받았으며 인원이 보강되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단일한 운영진 하에 운영된다. 이러한 변경의 목표는 시너지효과를 달성하고 이중의 절차경로를 제 거하는 것이다. ${ }^{12)}$ 또한 법관들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루체른에서 로 잔 또는 그 반대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사무처직원[Kanzleipersonal]이나 법원서기[Gerichtsschreiber]의 차원에서도 더 큰 자원교 환이 가능해졌다.13)

입법평가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변경들의 맥락에서 다음의 문제제기 들을 검토하였다:
(1)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연방대법원으로의 일부편입이 적절한 것으 로 드러났는가?
(2) 일부편입으로 기대된 시너지효과가 발생했는가?
(3) 실무상 양 소재지 사이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적 인터뷰에 따르면, 양 조직을 합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그러 나 조사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도전은 잘 극복되었으며,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연방대법원으로의 편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양 법원의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업무방식과 관행

2001, BBl 2001, S. 4242.
11) 연방대법원법 제4조 참조.
12) Aeschlimann, Arthur (2007): Justizreform 2000 - Das BGer und sein Gesetz, in: „Justice-Justiz-Giustizia", S. 8827 ff. 참조.
13) Aeschlimann, Arthur (2007): Justizreform 2000 - Das BGer und sein Gesetz, in: „Justice-Justiz-Giustizia", S. 8827 ff. 참조.

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루체른의 근무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로잔에서의 업무는 루체른의 경우보다 기 본적으로 더 심하게 위계적으로[hierarchisch] 느껴지며, 루체른에서는 로잔에서보다 직원들 간의 비공식적인 교류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조사대상자들은, 예를 들어 행정위원회와 부서장협의회의 회의들을 루체른에서 실행하는 것을 통해 두 지역의 더 밀접한 결합을 향한 법원운영진의 의지가 명백하게 느껴질 수 있 다는 점을 인정한다.

직원들간의 자유로운 이전은 인터뷰대상자들에 따르면 향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직원교환은 지 금까지 오직 1회에서 2회만 이루어졌고 단지 루체른에서 로잔으로만 이전하였다. 그 반대의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인 터뷰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 서 로잔에서 루체른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어렵고 루체른에서의 업무 내용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

직접대면에 의한 대화를 나누었던 법관들과 법원서기들은, 연방사회 보장법원의 일부편입에 의해 기대했던 시너지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루체른에서 직원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로잔에 있는 법원사무처에 직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 지역의 거리 및 이와 결부된 여행경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연방대법원의 7 개 부서들 사이의 교류는 - 예를 들어 조직상 문제에 있어서 - 복잡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인터뷰대상자들의 견해 에 따르면 일정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켰다.

양면적인 평가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재확인된다. 다음의 표는 실 행된 일부편입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준다.

## D 2.3: 연방사회보장법원 일부편입의 만족도

당신은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연방대법원으로의 일부편입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

모든 설문대상자 중에서 약 $30 \%$ 가 일부편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답할 의사가 없었거나 답할 수 없었다. 이것은 주로 일부편입 과 관련이 없는 로잔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답변자 전체에서 약 절반 정도가 일부편입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 반은 대체로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 로잔과 루체른에 있 는 설문대상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답을 준 사람들 중에서 로잔에 있는 사람은 $55.5 \%$, 루체른에 있 는 사람은 $51.1 \%$ 가 일부편입에 대체로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

일부편입이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의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 D 2.4: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일부편입에 의한 시너지효과 발생)

당신은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연방대법원으로의 일부편입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83.

답변한 사람의 $38.5 \%$ 의 견해에 따르면, 일부편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또는 대체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더 큰 비율 의 사람들 $(65.1 \%)$ 이 그러한 시너지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조사대상자 중에서 60 명이라는 큰 비율이 이 문제에 답할 수 없었다 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너지효과와 관련하여 로잔의 근무자들과 루체른의 근무자들의 평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루체른에서는 시너 지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로잔에서보다 약 2 배 정도 높 았다. 양 지역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점은 다음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D 2.5: 로잔-루체른의 협력

로잔과 루체른 지역 사이의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나요?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

양 지역 사이의 협력에 관해 답변한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율(63.4\%)이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대체로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양 지역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나타난다. 루체른에서는 $71.4 \%$ 의 응답자가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반 해서, 이 수치는 로잔에 있는 연방대법원의 직원들의 경우에 $56.4 \%$ 로 명백히 더 낮게 나온다. 예상하는 대로, 로잔에 있는 연방대법원의 직 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이전의 연방사회 보장법원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보다 명백히 더 높다.

연방대법원 부서들을 두 지역에 분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 의 문제에 있어서도 로잔과 루체른의 근무자들이 평가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 로잔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답한 조사대상자의 $21.1 \%$ 만이 2 개 지역으로 분배하는 것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반대로 루체른에서 는 이 수치가 $80.9 \%$ 에 달한다.

온라인-설문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답변에 주관식 견해를 덧 붙이는 것이 가능했다. 그들에게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일부편입에 대 한 만족도에 대한 언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6 개 지점들로 요약될 수 있다:
(1) 일부편입은 협력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행정조직이 더 커짐으로 써 절차가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관료주의적이게 된다.
(2) 특히 인프라시설이 제거됨으로써 루체른의 직원들에게 나쁜 영 향이 생긴다.
(3) 서로 상이한 업무방식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통의 정 체성이 없다. 로잔에서의 업무지도방식이 더 위계적이다.
(4) 두 지역만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 불만족스럽다.
(5) 전체적으로 일부편입 때문에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너무 많은 사 건들이 최상급심법원에 부과된다.
(6) 거의 단일한 주제의 사건들(사회보장법)만 다루는 연방법관들이 늘 어나면, 법관전체회의[Plenum]에서 비중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 온라인-설문에서의 주관식 답변들 중에서 긍정적인 내용은 다음의 3 개 지점들로 요약될 수 있다:
(1) 일부편입을 통해서 지도부차원에서의 화합적 사고가 증진된다.
(2) 법해석을 하나의 최상급심법원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부 서들 간의 법해석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 법원서기들 간의 협력이 용이해졌다.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부(로잔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과반수)는 일부편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답변을 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수가 일부 편입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를 만 들고, 지역 간의 자유로운 이전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업무문화들 을 서로 동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조치들의 효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D 2.6: 연방사회보장법원 일부편입에 대한 결론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 - 많은 조사대상자가 일부편입과 무관 |
|  | - 읃답한 조사대상자 중 절반이 안 되는 비율이 일부편입 |
| 연방사회 | 에 만족 |
| 보장법원의 | - 시너지효과는 지금까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 |
| 연방대ㅂㅓㅝ워으로 |  |
| 의 일부편입 | 로잔과 루체른 지역의 ㅎㅕㅕ력에 대한 매우 상이한 평가: <br> 루체른의 근무자들은 훨씬 긍정적인 반응 <br>  <br>  <br>  <br>  <br>  <br> - 자유로운 근무지이전이 향상되었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br> 드물게 직원교환이 이루어짐. |

## 2.2 법원조직 간이화와 행정권한의 분배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법원조직이 간소 화되고 운영진기관들[Leitungsorgane]의 행정권한이 새로이 정해졌다. 목 표는 행정업무와 사법(법해석) 관련 일을 더 강하게 분리하는 것을 유 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법관들 및 연방대법원장의 부담감경이 달성 될 것이다. ${ }^{14)}$ 연방대법원법[BGG]에 따라 2007년부터는 연방대법원에 다음의 운영진기관들이 존재한다:
(1) 법관총회[Gesamtgericht] (연방대법원의 모든 정규 법관들)15),
(2) 부서장협의회[Präsidialkonferenz] (연방대법원의 모든 부서별 부장들) ${ }^{16),}$
(3) 행정위원회[Verwaltungskommission] (연방대법원의 법원장 및 부법 원장, 추가로 최대 3 명의 법관 및 법원사무처장이 논의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 ${ }^{17)}$ : 행정위원회는 주로 법관총회와 부서장협의회의
14) Aeschlimann, Arthur (2007): Justizreform 2000 - Das BGer und sein Gesetz, in: „Justice-Justiz-Giustizia", S. 8827 ff. 참조.
15) 연방법원법 제 15 조.
16) 연방법원법 제 16 조.
17) 연방법원법 제 17 조.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행정위원회는 인사관리 [Personalführung](직원모집, 인사발령, 예외적으로 법관임명), 재정관 리(예산 및 회계),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감독, 그 밖의 행정업무(법원사무처에 대한 감독 등)를 새로이 넘겨받았다.

이러한 기관들 및 7 개의 부서들로 이루어진 법원조직은 다음의 조 직도에 나타나 있다.

D 2.7: ORGANIGRAMM BGER STAND 2009(2009년 기준 연방대법원 조직도)
2009년 기준 연방대법원 조직도


출처: http://www.bger.ch

입법평가에 있어서 조직의 변경에 근거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조사 해야 했다:
-행정업무가 행정위원회에 집중된 결과로 법관들의 부담이 경감되었는가? -행정위원회, 부서장협의회, 법관총회 사이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는가?

질적 인터뷰의 결과들에 따르면, 행정위원회가 더 많은 행정업무를 넘겨받음으로써 법관들에 대해 - 특히 부서를 대표하는 법관들에게 명백한 부담경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 명의 인 터뷰대상자가 행정위원회를 단지 3 명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결정 을 내리는 데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에, 또 다른 조사대상 자는 더 비판적인 의견을 냈으며 현재 행정위원회에 새로운 업무범위 를 부여한 법원조직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부서장협의회[Präsidentenkonferenz]는 인터뷰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 면 현재 법해석의 통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 에 따르면 이와 동시에 행정위원회 구성원들, 특히 법원사무처장에 대한 업무부담이 더 커졌다. 법원사무처장은 반대로 그가 현재 "단지" 부서의 구성원이고 부장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다소 부담을 덜었다.

다음의 그림은, 30 면의 연방법관들이 온라인-설문에서 행정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질적 인터뷰 에서 도출된 평가와 일치한다.

## D 2.8: 행정위원회에 의한 부담경감

행정위원회가 새로운 업무범위를 가지게 된 것이 당신에게 행정업무의 부담 을 경감시켰습니까?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30.

질문을 받은 법관들 중에서 $60 \%$ 이상이 행정위원회가 새로운 업무 범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었다고 느낀다. 온라인설문에서의 주관식 추가견해들은 부담경감효과를 강조한다: 특히 긍 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법관의 업무를 행정업무와 명백히 분리한 것 이다. 이외에도 조사대상자들의 시각에 따르면 조직상 변화와 관련하 여 다음의 2 가지 비판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1) 소수의견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장이 외부적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대신에 행정업무(예산, 인사 등)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별로 만 족스럽지 않다고 한다.
(2) 조사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행정위원회는 (너무) 강하게 독 자적으로 움직이고 법관들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또한 법 원사무처의 직원 증가도 비판되었다.

전체적으로 위의 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D 2.9: 연방대법원의 법원조직에 대한 결과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더 작고 강력한 지도부기 | - 행정위원회가 새로운 업무범위를 가짐으로써 법 |
| 관(행정위원회)으로 간소 | 관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 |
| 화된 법원조직, | - 부서장협의회는 법해석의 조정에 더욱 매진할 수 |
| 법관총회의 행정권한들을 <br> 배타적으로 열거 | 있게 된다. |
| - 연방대법원장의 부담은 감소하지 않았다. |  |

## 2.3 연방대법원의 장점과 단점

온라인-설문에서 연방대법원의 근무자들은 최상급심법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여기서 언급된 측면들은 그 언급된 횟수 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오직 일부의 조사대상자들만이 이런 열린 문 제에 대해 응답을 했으며 그 내용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D 2.10: 연방대법원의 장점과 단점(자체평가)

| 장 점 | 언급횟수 |
| :--- | :---: |
| 신속성, 효율성 | 15 |
| 판결의 수준 | 13 |
| 근무여건, 인프라시설 | 12 |
| 직원의 질, 전문능력 | 12 |
| 대중들에서의 명망/신뢰도 | 8 |
| 법해석능력 | 8 |
| 스위스 전체에 통일적인 법적용, 3개 언어 사용 | 6 |
| 기타 | 5 |


| 단 점 | 언급횟수 |
| :--- | :---: |
|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너무 많음, 기초적 법문제들에 대해 논의가 <br> 복 | 20 |
| 인사정책/인사관리 | 8 |
| 외부인식 | 7 |
| 행정, 법원사무처의 비중이 과대 | 6 |
| 재판부간의 판례 불일치 | 6 |
| 업무분위기, 부서 간의 의사소통 | 5 |
| 소재지가 2곳으로 나누어짐 | 5 |
| 수범자들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음 | 3 |
| 심리 제한 | 2 |
| 헌법재판권이 없음 | 2 |
| 법관들의 정치적 독립성이 너무 부족 | 2 |
| 기타 | 14 |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

위의 도표는 연방대법원의 장점이 근무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소송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판결의 수준이 높다는 데에 있다. 법원 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도 장점으로 꼽혔다. 반대로 정확히 이러한 3 가 지 지점들이 단점이기도 하다: 사법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심법 원은 명백히 여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 을 쓰고 있고,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 사건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시 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명백히 조직에 있어서도 단점들이 존재한다(외 부인식, 인사정책, 행정, 업무분위기).

## 3. 연방행정법원 신설

연방행정법원 신설과 관련하여 입법평가는 다음의 측면들로 나누어 실행되었다: 우선 새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조직상 어떻게 이루어졌 는지 심사해야 했다. 이어서 2 개의 선별된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 졌다: 직원모집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신설이 신설 이전의 상황과 비 교하여 사법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3.1 항고담당기관들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연방행정법원으로 통합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은 다양한 스위스 연방 행정심판위원회[Rekurskommission]와 중재위원회[Schiedskommission] 및 각 부서들의 항고담당 직들[Beschwerdedienste]을 새로운 법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통해 이 루어진다. 연방행정법원은 2007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연방행정법원의 업무는 연방행정부의 관할범위에서의 공법상 소송들을 재판하는 것이 다. 연방행정법원은 연방 차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들에 대해 재판하 고 연방행정법에 기한 일정한 소들에 대해 판단한다. ${ }^{18)}$ 새 법원의 조 직은 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gesetz(VGG)]에 의해 규율된다. 다 음의 조직도는 연방행정법원의 조직구성을 보여준다.

[^5]
## D 3.1: 2009년 기준 연방행정법원 조직도



출처: [http://www.bundesverwaltungsgericht.ch](http://www.bundesverwaltungsgericht.ch).

3 개의 스위스 연방 법원들 중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약 380 면의 근무 자로 가장 크다. 직원의 대부분은 이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당 직에서 넘어왔는데, 특히 망명행정심판위원회[Asylrekurskommission]가 대표적이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52 \%$ 가 이전에 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항고담당직에서 일했었다: 법관들을 따로 생각한다면, 이 직업군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은 $86 \%$ 에 달한다; 법원서기들의 경우에는 약 $50 \%$ 정도가 이전의 조직에서 넘어왔다; 행정부서의 근무자들의 경 우에는 약 $26 \%$ 가 그러하다.

법원의 지도부는 - 조직도에서 볼 수 있듯이 - 법관총회, 부서장협 의회, 행정위원회로 이루어진다. ${ }^{19)}$ 법원은 현재 Bern과 Zollikofen 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에 St. Gallen으로 옮길 것이다.

입법평가에서는 연방행정법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조직에 관한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 연방행정법원의 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그 선택된 여러 부서를 지닌 조직구조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 연방행정법원의 근무자들은 새 법원의 기능방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 들은 재조직의 결과로 업무부담이 변화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선 질적 인터뷰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 조사대상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이전 조직들로부터 직원들을 편입시킨 것과 단일한 업무과정 을 만드는 것은 연방행정법원을 신설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 었다. 약 30 개의 스위스 연방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부서들의 항고담 당직들은 서로 상이한 업무방식을 발전시켜왔고, 이것은 근무자들이 새로운 조직에 편입되는 것을 일단 어렵게 만들었다. 인터뷰대상자들 에 따르면, 법원이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 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 과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절차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증가하고 있다.

새 법원의 내부조직은 인터뷰대상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의 중앙 행정부서의 업무능력이 법관들에 의해 좋게 평가된 다. 각 부서들의 크기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부서의 크기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몇몇 조사대상자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의 부서의 크기가 확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법해석과 행정업무 사이의 구별선이 항상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

[^6]어 한 인터뷰대상자는, 연간 업무보고들이 법관전체회의[Plenum]에 의 해 - 즉, 모든 법관들에 의해 -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업무구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2 명의 인터뷰대상 자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위원회를 강화하여 법관들이 조직문제의 부 담에서 더 벗어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온라인-설문 결과에서는 어느 정 도로 나타나는가? 다음의 도표는 연방행정법원의 근무자들의 과반수 가 법원의 현재 조직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D 3.2: 연방행정법원 조직에 대한 만족도

당신은 연방행정법원의 현재 조직구성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무응답

출처: 연방행정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226.

이러한 결과는 또한 근무자들의 개별 그룹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법관들, 법원서기들, 행원행정부서의 근무자 들은 법원의 조직구성을 동일한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질적 인터뷰에서는, 근무자들의 행정업무부담이 다소 미약하게 경감 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들의 답 변들을 2007년 이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있었거나(43\%) 항고담당직에

있었던 자(약 $9 \%$ )의 것만 따로 추산해보았다. 이들 총 58 명 중에서 $75 \%$ 이상이 새로운 행정구조를 통해서 아무런 부담경감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답했다. 다음의 도표는 이에 상응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 D 3.3: 연방행정법원의 행정구조를 통한 부담경감

연방행정법원의 행정구조(법원사무처, 그리고 중앙사무처, 인사-조직부와 같은 거기에 속하는 기관들)가 이전의 기구들과 비교할 때에 당신에게 행정업무 부 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까?


출처: 연방행정법원 온라인-설문; 여기서는 단지 2007 년 이전에 행정심판위 원회나 항고담당직에 있었던 근무자들만이 조사되었다. 응답자수=58.

이전 기구들에서 넘어온 근무자들에게 사법제도 개혁 이후에 그들 의 일상업무에서의 변화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는, $70.3 \%$ 가 연방행정 법원의 설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 로 $22 \%$ 는 그들의 일상업무에서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것인가? 온라인-설문의 주관식 답변을 근거로 하여 다 음의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도출할 수 있다:
(1)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관할이 변경되고 근무자들이 새로운 법 영역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서로 거의 차이가 없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측면 은, 고용의 형식적 측면들(업무시간, 업무방법, 임금, 업무장소) 또는 내부 절차에서의 변화들(서류처리, 정보처리기술, 신청서양 식)과 관련된 것이다.
(3) 조직상 변화들(조직도의 변경)과 행정부서의 확장(협력비용 증가, 관료주의 강화)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많이 언급된 변화이다.

가장 큰 변화들은 제 1 부서(인프라시설, 재정, 인사)의 근무자들에 의 해 보고된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설문조사 결과로부터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주관식 답변들을 이 부서에 대한 것만 따로 검토 했을 때에도 특별히 다른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아무 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이전에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경우보다 이전에 항고담당직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더 높았다.

직원들에게 개인별 업무부담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답변들에 따르 면 법원이 2007년에 신설된 이래로 법원 근무자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여기서는 오직 2007년 이전에 항고담당직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만 조사하였다).

## D 3.4: 연방행정법원의 개인별 업무부담의 변화

연방행정법원 신설 이후에 당신의 개인별 업무부담이


출처: 연방행정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83.

조사대상자의 $60 \%$ 이상이, 자신의 업무부담이 연방행정법원 설립 이 전보다 현재 더 크다고 답했고, 단지 조사대상자의 $3.6 \%$ (3명)만이 자 신의 업무부담이 감소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 유는 무엇일까? 온라인-설문에서의 주관식 답변들에 따르면,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다양한 일련의 측면들이 존재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제 시한 7 가지 측면들은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법원의 설립이 특히 설립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가져왔다.
(2) 법자료들을 평가하는 것이 더 큰 비용을 들게 한다.
(3) 정보처리기술이 부족하여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
(4) 각 부서들과 사무처분과들[Kammer]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너무 적다.
(5) 망명담당부서를 2 개의 부서로 나누어서 시너지효과를 상실하고 불필요한 협력비용을 발생시킨다.
(6) 연방행정법원의 업무영역이 너무 확장되었다.
(7) 각 부서들 사이에 공동소속감이 생기게 될지 의문스럽다.

업무를 다양한 사무처분과들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 제영역으로 더 자세히 조사하였다. 여기서 양면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70 \%$ 이상이 현재와 같이 연방행정법원을 여 러 부서와 사무처분과로 나누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사무처 분과를 나누는 것이 전문화를 고려할 때에 이상적이라고 한다. 이것 은 업무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고 조사대상자들은 온라인-설문조사에 서 답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서들 간의 업무부담 분배 에 대해 응답한 모든 조사대상자의 $72 \%$ 가 분배가 불균등하다고 말한

다. 특히 제 3 부서와 제 4 부서의 근무자들은 비교적 더 큰 업무부담을 지 고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이 부서들이 많은 수의 미해결사건들을 넘겨받았고 사무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법관들과 법원서 기들이 일련의 행정업무를 스스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 }^{20)}$ 근래에 업 무보고서에 따르면 제3부서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들도 행해졌다.21) 이 외에 2009년 가을에 업무부담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의 근무자들 중 $60 \%$ 이상이라는 큰 부분이 Bern과 Zollikofen 지역 사이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Zollikofen 지역에 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르면 조금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이 전 기구들을 연방행정법원에 통합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연방행정법원이 자신의 업무를 완수할 수 있고 조직상 잘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당직과 비 교할 때에 업무부담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D 3.5: 연방행정법원 신설에 대한 결론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 당직을 연방행정법원으로 통합 | - 이전 기구들의 완전한 통합은 시간이 필요하지 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br> - 과반수의 근무자들은 법원의 조직구성에 만족한다. <br> - 연방행정법원의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은 법원 신 설에 의해 (이전 기구들에서의 업무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br> - 응답자의 과반수는, 법원의 행정구조가 이전 기 구들과 비교하여 업무부담을 감경시키지 못 했 다고 평가한다. <br> - 부서들과 사무처분과들 사이의 업무부담은 불균 등하게 분배되었다. |

20) 이에 대해서는 BVGer (2008): Geschäftsbericht 2007, Bern, S. 81. 참조.
21) 이에 대해서는 BVGer (2009): Geschäftsbericht 2008, Bern, S. 75. 참조.

## 3.2 연방행정법원의 인사현황

연방행정법원 신설에서 중요한 측면은 이 법원의 인사현황과 관련 된 것이다. 첫째, 법원을 설립할 때에 직원수가 업무량을 모두 그리고 3 개의 공용어로 처리할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보장되어야 했다. 전체 적으로 연방행정법원은 행정법원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50 내지 70 명의 법관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연방행정법원은 사건들을 분야별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법원은 스위스 연방 행 정심판위원회와 중재위원회와는 달리 현재 더 이상 별정직의 전문법 관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평가는 이러한 두 가지 특수한 주 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부적 질문들을 다루었다:

- 현재의 직원수가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가?
- 직원들이 넓은 범위의 사건들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질적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연방행정법원은 현재 자신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하나의 문제는, 여전히 과거의 미해결사 건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측면을 제외한다면, 인터뷰대상 자들의 견해에 따를 때 현재 직원수는 충분하다. 현 직원들의 대부분 은 확실히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당직의 직원들이 넘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필수적인 지식이 보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인사정 책인 몇몇 조사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단점도 가지고 있다: 직원 들을 더 큰 규모로 교체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의 만족스러운 인사현황은 중기적으로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 다. 법원이 예정대로 St.Gallen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직원모집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뷰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문제는

Bern 지역에서 St.Gallen 지역으로의 이전이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근무자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는 측정할 수 없다.

별정직 전문법관들을 대체하는 것은 연방행정법원의 인터뷰를 받은 근무자들 중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감정서는 제 3 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고 법적 질문을 심사할 때에는 특정 영역에서의 적문지 식보다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연방행정법원 근무자들의 온라인-설문은 이러한 인터뷰 결과들과 일 치한다.

## D 3.6: 연방행정법원의 인사현황

당신은 자신의 부서/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 큼 충분한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처: 연방행정법원 온라인-설문.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부서에 충분한 직 원이 있다고 답했다. 인사현황은 법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부정적인 답변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연방행정법원이 자 신의 이전 기구들에서 인수해야 했던 미해결사건들에 기인할 것이다. 설문지의 주관식 응답(이것은 설문지의 추가의견 부분의 결과들이다) 에 따르더라도 이와 유사한 결론이 나온다.

결과들은 부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4부서의 근무자들이 업무량 을 처리하는 데에 직원수부족문제를 가장 심하게 겪고 있다고 답했 다. 또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부족하다: 조사대상자의 $64 \%$ 가 자신의 부서에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근무자가 너무 적다고 답했 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지의 주관식 응답에서 자주 추가적으로 강조 되었다.

별정직 전문법관을 없애는 것은 (질적 인터뷰 결과와 비교할 때에) 양적 온라인-설문조사에서는 양면적으로 평가되었는데, 다음의 도표에 서 보는 바와 같다.

## D 3.7: 연방행정법원의 전문법관 대체

당신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법영역에서 별정직 전문법관을 정규직 연방행정 법관을 대체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출처: 연방행정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수=140.

조사대상자의 약 $50 \%$ 가 전문법관을 제거하는 것을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한다. 이외에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균형을 이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전문법관 대 체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의 중심을 법적 문제 심사에 두 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은 별정직 전문법관들이 없어지면 판례의 질이 아마도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전문법관이 없어진 것으로 인한 업무부담증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 았다. 조사대상자의 단지 $10 \%$ 만이 부담증가가 있다고 답했다.

연방행정법원의 인사현황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지점들이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D 3.8: 연방행정법원의 인사현황에 대한 결과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 당직의 직원과 미해결사건 을 연방행정법원이 인수; 별정직 전문법관을 연방행 정법관으로 대체; <br> 법원의 근무자들이 3 가지 언어를 사용 | - 업무량을 처리하기에 직원수는 전체적으로 충분 하다. <br> - 이전 기구들의 미해결사건 때문에 업무부담이 커 졌다. <br> -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부족하다. <br> - 전문법관의 대체는 양면적으로 평가되지만, 연방 행정법원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

## 3.3 연방행정법원의 독자성 및 전문성

연방행정사법제도는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전면개혁 이전에는 행 정부와 너무 가깝다는 문제가 있었다. ${ }^{22)}$ 그 근거로는 연방행정부와의 조직적 인접성(행정심판위원회) 혹은 연방행정부로의 조직적 통합(항 고업무)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많은 수의 기관들을 통해 연방행정사법 제도가 분산되어 있었다.
22) 바이센베르거Weissenberger, Philippe (2006), 연방행정법원, AJP/PJA 12/2006, 1495쪽.

연방법원법에 따르면 오늘날 연방관청들의 규정들은 보통의 경우에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제소에 직접적으로 종속된다. 기존 조직들을 연 방행정법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연방행정부와의 거리가 생기고 이로써 연방행정사법제도의 독자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기존 기관 들을 통합함으로써 판례의 전문화가 제고되고 이로써 판례의 질적 향 상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초기상황에 입각하여 본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검토 했다.

- 연방행정법원이 창설됨에 따라 2007년의 상황과 비교할 때 독자성이 강화 되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기존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업무 간에 차이점이 있는가?
- 연방행정법원이 건립됨에 따라 판례에 질적 변화가 생겼는가?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인터뷰에 응한 자들이 대개 행정부와의 거리 를 전제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무엇보다 이 피설문자들은 이 점이 외 부자에게도 감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기존의 항고업무직과 비교할 때 개혁의 효과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 평가되지만,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와 비 교할 때 피설문자들에 따르면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온라인 설문은 연방행정부와의 거리에 대한 물음과 관련해 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하 게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D 3.9: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행정부와의 거리에 대한 평가

연방행정부와의 거리는 $\qquad$ 변화되었다.


출처: 연방행정법원의 온라인 설문.

도합 93 명 내지 38 명, 그러니까 피설문자 가운데 소수만이 설문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대략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연방행정 법원과 연방행정부와의 거리가 선행기관들과 비교할 때 증가하였다고 추측된다. 거의 비슷한 비율의 피설문자들이 이 점과 관련하여 그 어 떤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다.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로써 항고업 무직과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다.

또 다른 질문에서 행정부와의 거리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부탁했다. 이 질문에서 피설문자의 대부분은 거리의 증가가 일단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종합하자면 항고업무 직과 관련한 평가는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한 경우보다 미세하나마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방행정법원의 근무자에게 소제기인의 시각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고 부탁했다. ${ }^{23)}$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3) 이 조사는 물론 그 자체로는 소제기인에 대한 직접적 설문과 같은 청구권을 가 질 수는 없겠으나, 이 결과는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 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은 얻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결과가 변호사협회의 조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4부 참조)

D 3.10: 소제기인의 시각에서 볼 때의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 연방행정 법원 근무자들에 의한 평가

현재 연방행정법원이 소제기인에 의해서 독립적이라고 평가되는가?


출처: 연방행정법원의 온라인 설문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이 소제기인의 시각에서 볼 때 증가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 다. 여기에서도 기존의 항고업무직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즉 외부인들 의 시각에서 행정부와의 거리가 변화 내지 증대되었는가의 여부)가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할 경우보다 다소 덜 긍정적이라는 결 과가 나왔다.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근무자들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D 3.11: 요약 -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 조 처 | 총 평 |
| :---: | :--- |
| 연방행정법원이 행정심판위원회 및 | - 다수가 행정부와의 거리가 강화되었다 |
| 항고업무직의 곽신한다. |  |

## 3.4 연방행정법원의 장점과 단점

끝으로 근무자의 시각에서 볼 때의 연방행정법원의 장점 및 단점이 제시될 것이다. 아래의 표는 이 점에 대한 온라인 설문의 공개 응답 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점들이 분류 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 이미 그러했듯이 이 표는 설문에 응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주제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반적 개관 만을 제시할 따름인바, 그 까닭은 피설문자들 가운데 일부만이 답변 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수는 피설문자들 전체를 고려한 것일 수는 없다.

## D 3.12: 연방행정법원의 장점 및 단점(자체평가)

| 장 점 | 응 답 |
| :--- | :---: |
| 연방행정부로부터의 독립 | 29 |
| 통일된 행동으로 인한 공공적 명성과 신뢰 | 25 |
| 일심 제소심급의 통합 | 22 |
| 인력의 수준 | 15 |
| 노동조건 및 인프라구조 | 14 |
| 조직, 운영구조 | 9 |

TEILI : 조직변경의 효과

| 장 점 | 응 답 |
| :--- | :---: |
| 판결의 수준[수준] | 8 |
| 1인당 법자료의 범위 확대 | 4 |
| 판결의 투명성 및 납득가능성 | 3 |
| 기타 단 점 | 2 |
|  | 응 답 |
| 법원의 비대화, 행정조직의 비대화 | 41 |
|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연대감(„Wir-Gefühl") 결핍 | 23 |
| 상 갈렌St. Gallen으로의 이전 | 15 |
| 판례의 조정 / 통일성 | 14 |
| 전산화 운영체계 | 14 |
| 개인 간 능력의 불균등 | 7 |
|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 6 |
| 다수의 소재지 | 6 |
| 노동조건 및 인프라구조 | 3 |
| 빈번한 인사이동 | 3 |
| 법관의 정치적 독립성 약화 | 2 |
| 기타 | 13 |

출처: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

장점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세 항목들은 법원 형성을 촉발하는 근본동기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이에 수 반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업무직 간 통합을 통해 달성 된 공공적 명망이 바로 그것이다. 인력 수준 및 인프라구조는 연방행 정법원의 또 다른 장점이 되고 있다. 단점의 측면에서 보자면 주로 내부 조직의 세 관점들이 명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와 항

고업무직 간 통합이 아직은 미완의 상태이며 상 갈렌으로의 이주로 인해 조직상의 과제가 현안으로 제기됨을 알 수 있다.

## 4.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연방대법원과 연방행정법원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유추를 통해, 우리는 연방형사법원의 창설에 의해 야기된 효과에 대해 논의를 시작 하겠다. 법원의 창설, 이에 따른 업무부담 그리고 인력채용의 문제 등 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도 법원 근무자들 의 시각에서 볼 때의 장점 및 단점이 거론된다.

## 4.1 연방형사법원의 설립

연방행정법원의 건립과 함께 연방형사법원의 창설은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이라는 틀 내에서 또 하나의 중심적인 조직상의 광범위한 변화이 다. 제 1 심 형사법원의 창설 동기는 일차적으로 과거에 일심 형사사건 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했던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이었다.24) 그밖에 연방형사법원의 창설과 더불어 연방의 재판권 관할에 속하는 형사 업 무에 대한 이중심급이 실현된다. ${ }^{25)}$ 마지막으로 2004년 연방형사법원의 건립은 연방의 형사소추절차를 신종 국제 범죄형식들(경제사범, 범죄 조직, 테러)에 적합하게 만드는 효율성 제고 방안의 한 결과였다.

연방형사법원은 2004년 4월 1일 벨린초나를 소재지로 해서 업무를 개시했고, 이로부터 제 1 제소분과(I. BK)와 더불어 기존 연방대법원의 기소분과 업무를 인계받았다. 마찬가지로 신 법원의 형사분과도 2004
24) 키스Kiss, Christina (2003), 신연방형사법원 : Das neue BStGer, AJP/PJA 12/2003, 141쪽.
25) 스위스 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전면개혁을 위 한 공고 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l 2001.

년부터 연방대법원 부서가 맡았던 기존의 연방형사법원을 대체한다. 형 사분과는 연방의 재판권에 따른 제 1심 형사사건 및 연방의 행정형사 사 례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2007년 1월 1일 이래 법원은 형사적인 국제 법률구제 분야의 새로운 직능관할의 결과로서 무엇보다 제 2 제소분과 (II. BK)에 대한 권한을 갖는 바, 이 제 2 제소분과는 형사적인 국제법률 구제 분야의 제소를 위해 존립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칸톤(Kantone),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대법원을 대신한다. ${ }^{26)}$ 신 법원의 조직은 이 경우 연방형사법원에 관한 연방법(SGG)의 규정에 따른다. 연방형사법원 의 법원구성은 다음과 같은 조직구성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D 4.1: 2010년 연방형사법원의 조직 구성 현황


출처: [http://www.bstger.ch](http://www.bstger.ch).
26) 연방형사법원, 2008년 업무보고, 37쪽 참조 Vgl. BStGer (2009): Geschäftsbericht 2008, Bellinzona, S. 37.

세 연방법원들 가운데 연방형사법원은 약 60 명이 근무하는 가장 소 규모의 법원이다. 이 법원의 지휘는 조직구성상 법관총회 및 행정위 원회에 위임된다. 2012년에는 연방형사법원이 벨린초나에 공간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까지는 임시거주를 한다.

영향평가의 범위 내에서 연방형사법원 창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연구된다.

- 연방형사법원의 건립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 다수의 분과로 구성된 조직구조의 채택은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가?
- 연방형사법원의 근무자들은 신 법원의 운영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을 느끼 는가? 그들은 업무부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보자. 개별적 면담에서 창설 단계의 가장 큰 도전으로 법원의 조직적 구성과 통일적인 판례의 형성 사이 의 균형이 언급되었다. 이때 행정관리 활동이 과소평가되었는데, 이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인력 부족과 법원업무상의 혼동이 야기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자들 모두의 견해에 따르면 초창기의 이런 난점들은 점차 극복되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분과를 삼분함으로써 훌륭한 해결책이 나왔다. 분 과의 규모가 적절해졌고 이로써 판결의 통일성이 확립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에 따르면 분과 사이에 판결의 통일성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생겼다.

인터뷰에 응한 자들이 보기에 법관총회 및 행정위원회를 통해 법원 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조직 간의 권한분배도 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구성원을 3 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행정위원회가 모든 분과 의 구성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신속한 결론도출이 가능해지고 분과의 특수 이

해가 배후에서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온라인 설문 결과 인터뷰 내용이 다각도로 입증되었다. 법원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 D 4.2: 연방형사법원 조직에 대한 만족도

당신은 현재 연방형사법원 조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square$ 무응답 출처: 연방형사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39.

전체 피설문자 가운데 약 90퍼센트가 법원 조직에 대해 매우 만족 하거나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여기에 피설문자들의 직능, 소속분 과, 연령, 성별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근무자들의 견해에 따를 때 개인별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 증가했 다고 여기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D 4.3: 연방형사법원 내 업무부담의 변화

연방형사법원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의 개인 업무 부담은 어떻게 되었 습니까?


출처: 연방형사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36.

피설문자의 63,9 퍼센트는 연방형사법원 업무를 시작할 때보다 현재 의 업무부담이 더 증가했다는 보고를 하였다. 단지 5,5 퍼센트(2명)만 이 업무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업무부담은 소송건수 에도 반영되어 있다. (5장 참조) 그렇지만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고, 도리어 철저히 의도된 일이다. 즉 법원은 새롭게 건립되었을 당시 더 많은 소송이 할당되었던 것이다.

질적인 답변을 통해서 업무강도가 때에 따라 변동이 지극히 심했음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처음 구성되는 단계에서는 분과마다 업무부담 의 편차가 컸음이 관찰되었다. 즉 제 1 제소분과(I. BK )의 경우 매우 부담이 컸던 반면 형사분과는 소송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형사분과가 지금도 여 전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법원사무처에서는 노동부담(행 정)이 법원의 성장세에 상응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방형사법원을 세 분과로 구성하는 것은 약 70 퍼센트 정도가 적절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형사법원 근무자의 상당수는 분과간 업무부담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보았다. (제 1 제소분과의 평가에 따 르면) 결정에 대한 연방변호사협회의 제소가 많아서 제1 제소분과의 많은 법관들이 (이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은 형사분과 의 소송에는 더 이상 투입될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연방형사법원의 조직과 관련한 결과는 연방행정법원의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조직에 대한 만족도 가 관찰될 수 있으며, 법원의 구성조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업무부담은 증가되는 것으로 감지된다. 아래에서는 이 절의 결과에 대한 요약이 이루어진다.

## D 4.4: 요약 - 연방형사법원의 창설

| 조 치 | 총 평 |
| :---: | :---: |
| 연방형사법원의 건립 | - 근무자들은 대개 법원 조직에 대해 만족한다. <br> 가했다. <br> - 업무부담은 불안정하며 세 분과가 서로 다르게 높다. |

## 4.2 연방형사법원의 인사현황

연방형사법원을 창설할 때 가장 큰 과제는 인력채용 및 필요인력 수요평가 등이다. ${ }^{27)}$ 이 점은 말하자면 행정법원법(1조 3항)과 같은 법 률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법관직의 경우 15-35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큰 범위의 수요가 예상된다. 연방행정법원의 경우에서 처럼, 특히 연방형사법원은 3 개의 공용어를 허용하는 일이 인사 분야 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법원이 건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건립 후 여섯 해 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15 명의 연 방형사법관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평가는 이러한 맥락에 서 다음의 질문들을 검토했다.
27) Kiss, Christina (2003): 연방형사법, AJP/PJA 12/2003, 142쪽.

- 기존의 인력상황으로 볼 때 이 과제를 극복하기에 충분한가?
- 광범위한 소송사건들에 맞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 인력들이 전문 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가?

개인적인 인터뷰 결과는 업무부담의 극복을 위해서 충분한 수의 법 관 및 법원서기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허용한다. 이에 반해 인력부족은 행정 분야에서 확인되는데 여기에서도 분과 간의 업무부 담 편차가 크다. 인력채용의 경우 인터뷰에 응한 자들에 따르면 벨린 초나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법관 인력을 찾아 서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데에 특히 문제가 있는데, 이는 높은 이직율 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칸톤 상급법원과 비교해서 연방형사법원의 임 금은 다양한 피설문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다. 이 점은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법원이 3 개의 공용어를 쓴다는 사실이 인터뷰에서 하나의 도전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상당한 부가비용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의 전 인력이 자신의 모국어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 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상호 지원을 토대로 오늘날 다양한 절차들이 잘 처리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연방형사법원의 인력 상황에 대한 온라인 설문 결과이다.

## D 4.5: 연방형사법원의 인력

귀하가 속한 분과/영역에서는 귀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출처: 연방형사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37.

37명의 피설문자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자신의 분과 및 부서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점에서 세 분과 간 큰 차이는 없다. 법원의 공용어를 3 개로 하는 데에 있어서 연방행 정법원의 경우보다 부족 현상이 확연히 미미했다. 3 개 언어에 대해서 피설문자의 60 퍼센트 이상이 분과 혹은 행정부서 내의 인력이 충분하 다고 언급하였는데,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근무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가장 적었다. 그런 점에서 인터뷰의 결과는 분명히 입증된다. 그리고 형사분과 근무자의 답변을 근거로 하면 이 분과 내에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요약에 담긴 의미를 살 펴 볼 때 벨린초나에서의 인력 상황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 D 4.6: 연방형사법원의 인력 상황 요약

| 조 치 | 총 평 |
| :--- | :--- |
|  | - 업무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충분한 수 <br> 연방형사법원을 위한 인 <br> 업관 및 법원서기가 존재한다. |
| 벽의 신규 충원 | - 행정 분야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잉용아. <br> - 3 개 공용어는 잘 작동되고 있다. <br> - 벨린초나 소재 법원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인력 <br> 채용에 있어서, 특히 법관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 |

## 4.3 연방형사법원의 장점과 단점

아래의 표는 온라인 설문에서 근무자들이 응답한 연방형사법원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언급횟수에 따라 답변이 분류되 었는데, 다만 응답자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까닭에 과잉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 4.7: 연방형사법원의 장점과 단점(자체평가)

| 연방형사법원의 장점 | 언급횟수 | 단 점 | 언급횟수 |
| :--- | :---: | :--- | :---: |
| 커뮤니케이션, 좋은 근무환경 | 4 | 채용상의 문제점들 | 5 |
| 다언어성 | 4 | 일부 법관들의 자질 및 업 <br> 무동기 | 5 |
| 조망 가능한 규모 및 간소한 <br> 조직 | 4 | 벨린초나 소재 | 3 |
| 노동 조건, 인프라 구조 | 3 | 인프라 구조 | 2 |
| 직원의 질, 전문능력 | 3 | 법원서기를 통한 조서 작성 | 1 |
| 전문성 | 3 | 재판의 조정 및 통일성 | 1 |
| 재판의 질 | 1 | 법원이 아직 완전히 확립 <br> 되지 않았다 | 1 |
| 기타 | 2 | 업무운영에서 법원사무처의 <br> 입장이 잘 대변되지 않는다 | 1 |
|  | 기타 | 5 |  |

출처: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연방형사법원은 자체평가에 따르면 좋은 업무환경에서 강점을 보여 준다. 그밖에 다언어성 및 양질의 인프라 구조도 칭찬받았다. 반대로 약점 또한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인지되는데, 소재지로 인한 채용상의 문제점들과 이에 수반되는 인력의 질 문제가 그것이다.

## 5. 연방법원에 대한 감독

새로운 두 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세 연방법원들의 감독 및 상급감 독이 그 전체적 구상에 있어 새롭게 규정되었다. 여기에다 법관선출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했다.

## 5.1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감독

연방대법원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감독한다. 이러한 감독의 대상은 업 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분야이며, 이 경우 피감 법원들의 합법적, 합목 적적, 경제적 과제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28)}$ 연방대법원의 행정위원 회는 이때 이 두 제1심 연방법원에 지시 및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징 계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29) 연방내각(Bundesrat)은 공고에서 연방행정 BV (스위스연방 헌법) 제 169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즉 모든 연방법 원들에 대한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의 상급감독으로 만족하려고 했으나,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행정감 독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가 선행되게 되었다. 30 ) 즉 연방대법원에 하 나의 새로운 과제가 부과되었다. 감독의 중심적인 수단들은 연방형사 법원과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업무규정 속에 명시되어 있다. 업무보고에 대한 심사, 법원운영진과의 상의와 업무절차 통제,

[^7]재정감독, 조사, 상급감독기관에의 통지 및 감독청원의 해결이 그런 수단에 해당한다. ${ }^{31)}$

입법평가는 연방대법원이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에 대해 감 독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검토했다.

- 나머지 두 연방 법원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감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
- 연방대법원이 감독 업무를 인계함에 따라 업무 부담의 변화가 생겼는가?

질적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점은, 피감 법원(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 사법원)이 연방대법원의 감독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이를 거부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무엇일까?
(1) 운영 스타일: 연방대법원 사무처의 위계질서가 공고한 운영 스타 일은 인터뷰에 응한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 근무자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연방대법원에 현존하는 전자 정보처리(EDV)방식을 두 하위법원에 도입함으로써 이미 감독의 시작 단계에 큰 갈등이 빚어졌으며, 이는 연방대법원의 감독이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분위기에 매우 심한 부담을 주 는 결과를 낳았다. ${ }^{32}$ ) 2009년에 의회가 연방행정법원이 자신의 정 보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새로운 전산체계변 경이 도입되었다. 비록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설문대상 자들이 정보처리(Informatik)가 전자정보처리(EDV)방식과 무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피뢰침기능도 지니고 있었음을 인정함에도 불 구하고, 전자정보처리(EDV)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감독에 너무 큰
31) Art. 3 AufRBGer.
32) 전자정보처리(EDV)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 분석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 서 여기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피한다.

부담을 주어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였다.
(2) 독립성: 동시에 항고심급이기도 한 최상급심 법원을 통한 감독 이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이 인터뷰에서 두 번째 논점으로 제기되었다.
(3) 추가비용: 통제데이타에 대한 요구는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 법원의 시각에서 볼 때 우선 정보수집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에 너지 소모를 야기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매 분기마다 다양한 통 계자료가 만들어져서 수치들이 연방대법원에 전달되어야만 한 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감독을 받는 법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데이타들은 조정통제를 위해서 거의 내지 전혀 이용되 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제의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거를 토대로 하여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에서는 현재의 감독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가 확인될 수 있다. 두 법원은 의 회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독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서도 응답은 세 가지 논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국가정책상 감독은 필수적: 기본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측에서는 제1심 연방법원들에 대한 감독이 국가정책상의 이유로 필수적이 라 본다. 연방대법원은 감독을 통해 세 법원의 필요사항들을 통 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데 이렇게 통합된 요구사항은 (상급 감독을 수행하는) 의회에 이런 방식으로 보다 간단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2) 감독의 시작 단계에는 매우 부담이 크다: 연방대법원의 시각에서 도 감독은 처음부터 갈등과 결부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분위기가

저해된다. 그 이유는 (이미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전자 정보처리(EDV) 도입상의 어려움들이다.
(3) 조정수단의 결핍: 연방대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의 법적 상황으로는 연방대법원이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 법원을 충분히 통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일부 부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의 설문대상자 들은 현재의 감독을 의회를 통한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에 대 한 직접적인 감독보다 선호한다는 의견이다. 세 법원 모두에 대한 직 접적 감독을 수행하려면 의회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기능 상으로도 위계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 법원의 관 계는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갈등은 오늘날 과거보다 더 객관적으로 해 소된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온라인 설문에서는 감독과 관련해서 우선 연방대법원에서 생겨난 과도한 부담에 대해 모든 근무자들에게 질의하였다.

## D 5.1: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감독업무의 부담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에 대해 연방법원이 감독함으로써 당신의 개인 적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는가?


출처: 연방대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43.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1심 연방법원에 대한 감독이 큰 부담을 야기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합 9 명만이 이러한 감독으로 인해 추가 업 무가 생겼다고 대답했다. 이런 결과는 놀라운 일은 아닌 바, 감독 업 무는 주로 행정위원회 및 연방대법원 사무처 인력의 소관으로 제한되 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터뷰에서는 특히 행정위원회에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 추가 업무가 생겼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 밖의 질문 을 통해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근무자들은 감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았다.

D 5.2: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감독 평가

출처: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온라인 설문.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은 감독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 밖의 응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감 독에 대해 평가를 내린 연방행정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은 대체로 감독 에 만족하지 않는다. 연방형사법원의 경우 감독이 다르게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

다. 이는 인터뷰 평가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설문에서 주관식 답변 을 분석해보면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감독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의 논점이 표명된다.
(1) 감독업무는 연방대법원이 상소심급이자 감독심급으로서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2) 감독은 전산학 분야에서 처음에는 실패했다.
(3) 감독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이며 단지 일부는 조직상 야기되기도 했다.

전자정보처리(EDV)를 둘러싼 토론은 오늘날 감독의 시행 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 에 추가질문을 하였다.

## D 5.3: 연방대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전자정보처리(EDV) 상황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귀하가 속한 법원의 현재 전자정보처리(EDV)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는가?


출처: 연방대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온라인 설문.

연방대법원의 경우는 물론이고 연방형사법원의 경우에도 현재 정보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경우 27.8 퍼센트가 전 자정보처리(EDV)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반면, 연방형사법원의 설 문대상자들은 이 점과 관련해서 모두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행정법원의 근무자들에게는 법원 행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 위 결과는 전자정보처리(EDV) 문 제가 그 사이 파급력을 잃었으며 감독이라는 문제에 더 이상 본질적 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 아타기로 한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은 상황을 완화하 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감독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D 5.4: 연방대법원의 감독 요약

| 조 치 | 총 평 |
| :---: | :--- |
|  | - 감독은 특히 연방행정법원에 의해 비판적 <br> 으로 평가되었다. <br> - 정보처리(전산학)와 관련된 문제들은 감독 <br> 초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r> 연방대법원은 연방형사법원 및 <br> 연방행정법원의 업무수행에 대 <br> 한 감독을 수행한다. |
|  | 연방대법원 사무처의 운영 스타일은 제1 <br> 심 법원들에 의해 비판된다. <br> - 법원들 간 관계는 개선되었다. <br> -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경우 정보 <br>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연방행정법원 <br> 의 경우 평가를 내리지 않았음) |

### 5.23 개의 연방법원에 대한 의회의 상급감독

의회는 오늘날 3 개의 연방법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 한 과제를 수행한다. 즉 의회는 상급감독의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법 관들을 선출한다.

세 연방법원에 대한 상급감독은 연방행정법 $(\mathrm{BV})$ 제 169 조 제 1 항에 따라 연방의회에 의해 행해진다.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의회를 통한 상급감독의 기준(의회법 ParlG 제26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개정도 하지 않았다. 감독활동은 연방 법원들이 올바로 기능하는지와 법원이 처분권을 갖고 있는 수단들을 법규에 맞게 관장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는 데에 국한된다. ${ }^{33)}$ 그러나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 또한 새 롭게 연방의회의 상급감독 아래에 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라는 추 가적인 감독심급이 추가된다. 총 7 개의 위원회가 상급감독의 임무를 위임받는다. 양원 각각의 업무심사위원회(GPK), 재정위원회(FK), 법률 위원회 및 법원위원회. 양 업무심사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본래의 고 유한 감독활동을 위해서 하부위원회들을 구성한다. ${ }^{34)}$

연방법원들의 모든 법관들은 연방의회를 통해 선출되며 이때 법원 위원회가 이 선출을 준비한다. 연방사법제도의 전면개혁에 대한 공고 는 이에 반해 신생 법원들의 법관들이 연방내각을 통해서 선출되도록 규정했었다. ${ }^{35)}$ 그러나 의회는 (혼합된) 사법위원회 대신에 오늘날의 (순 전히 의회에 의한) 법원위원회에 우선권을 주었다. ${ }^{36)}$
33) 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 일 연방사법제도의 전면개혁에 대한 공고, BBl 2001 , 4279쪽; 또한 Lienhard 참조, Andreas (2009): 상급감독과 사법운영, 실린 곳: „Justice - Justiz - Giustizia" 2009/1, mit weiteren Hinweisen.
34) Aeschlimann, Arthur (2009): 연방법원들에 대한 상급감독의 관점들, 실린 곳: 의회 Parlament, Parlement, Parlamento, 2009년 3월, 12/1, 4쪽.
35) 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의 연방사법제도의 전면개혁에 대한 성명, BB 1 2001, 4257쪽.
36) 연방기관의 실제행정 Verwaltungspraxis der Bundesbehörden VPB 3/2008 vom 3. September 2008.

영향평가는 위에서 기술한 의회의 두 가지 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했다.
(1)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의회의 상급감 독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관된 위원회들은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
(2) 현 법관선출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선출의 탈정치 화가 일어났는가?

평가결과는 오직 법원들에 돌린 설문에만 기초한다. 위임받은 과제 에 걸맞게 의회는 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상급감독에 대 한 평가를 살펴보자. 일부 설문대상자들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급감 독 규정은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아주 경미한 정도의 영향밖 에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을 통해 서 절차는 복잡해졌다. 이것은 설문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엇보 다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상급감독을 담당하는 현실의 결과이다.

여기에다 위원회들 내지 양원이 위원회들 내에서의 심의를 완전히 서로 다르게 운용한다는 점이 추가된다. 즉 예컨대 연방대법원은 몇 몇 경우에 의회의 위원회들 내에서 세 연방법원 전부를 대변한다. 다 른 한편으로 국민의회(하원)의 어떤 위원회는 이 세 법원들 각각의 대 표들 모두를 심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설문대상자의 일부 는 상급감독의 실행을 위한 의회의 실질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의문을 표한다. 즉 노하우와 인력풀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능한 대처와 관련해서 다시 의견이 갈린다. 즉 연방대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의회에서 세 연방법원 들을 대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나머지 두 법원의 설문 대상자들은 의회의 직접 감독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인 인터뷰에서는 위원회의 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사전심의를 하는 위원회들의 심의활동이 효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업무검토과제와 법관 수의 확정에 종사해야 할 확 대된 재정위원회와 법원위원회를 통해 상급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 법관들의 가능한 직무위반 조사 시에 GPK, 법원위원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협업 은 인터뷰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회구성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히 조직된 심의기관(소위 „conseil supérieur")이 때때로 제 안되었으나 이는 다수에 의해 비판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한 시스템 은 스위스적인 맥락에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법관선출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인터뷰에서 나온 반응들은 이 점에 있어서 서로 매우 일치한다. 한편으로 설문대상자들은 개혁 이 법관 선출공고 시의 절차와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 정한다. 그러나 다수의 설문대상자들이 관찰하기로 법관 선출 시 전 문적인 자격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거의 모 든 설문대상자들은 법관선출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선출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무소속의" 후보자들은 때때로 어느 정당에 의해 "입양"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오늘날 연방행정법원 법관의 선출보다 이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선출되는 것이 정치적인 성격이 더 약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영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정 치적 성격을 띤 선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견에 대한 평가에서 설문대상자들은 비교적 냉정하다. 즉 그들은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적인 선출의 장점은 모든 사회적인 흐름들이 법원들에도 반영된다는 점에 있다. 단점은 항상 최상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선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단점의 혼합을 상당수의 설문대 상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상급감독 문제에 대한 세 온라인 설문의 결과는 어떻게 보이는가? 아래의 도표는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

## D 5.5: 의회의 상급감독 평가

의회의 상급감독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가?


출처: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형사법원 온라인 설문조사.

직원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법원과 관련된 상급감독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별로 각각 가장 많은 수의 설문대상자들이 상급감독에 대해 아 무런 정보도 줄 수 없다. 상급감독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비 판은 그러나 대략 20 퍼센트의 설문대상자가 감독모델이 전혀 혹은 대체로 적절치 않다고 대답한 연방대법원 쪽에서 온다. 이에 반해 연 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은 상급감독을 조금 더 긍 정적으로 바라본다. 양원과 위원회들이 상급감독을 현실에서 얼마나 서로 다르게 시행하는지가 인터뷰에서 드러났으므로 위의 결과는 단 순히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열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면 상급감독에 대한 오늘날의 비판은 조금 더 잘 서술 될 수 있다.
(1) (국민)의회에는 상급감독의 실행을 위한 전문적인 자료와 인력풀 이 부족하다.
(2) 법원들을 다루는 위원회들의 수는 안정적인 상급감독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다.
(3) 법관선출의 정치화는 때때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들의 선출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법관선출 및 의회를 통한 세 연방법원에 대한 상급감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 D 5.6: 의회를 통한 상급감독 결론

| 조 처 | 요약적인 평가 |
| :---: | :---: |
| 의회를 통한 법관선출 과 세 연방법원에 대한 상급감독 | - 의회의 연관위원회들의 수가 너무 많다. <br> - 위원회들 내에서 제 1 심 연방법원들의 역할이 부분 적으로 불명확하다. <br> - 상급감독은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보다 연방 대법원 편에서 보다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다. <br> - 법관선출 시스템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r> - 법관선출의 정치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

## 5.3 법원의 명명

연방대법원의 소망에 따라 영향평가의 범위 내에서 연방법원들의 명칭부여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연방대법원이 그 명칭부여로 인 해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과 혼동될 수도 있으며 또는 이 두

법원이 최상급의 연방법원으로 잘못 인식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그 배경이다. 이러한 위험은 주로 소제기인들 편에서 인식된다.37) 의회에 서는 이미 이 세 연방법원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제 1 심 연방법 원들의 개명을 제안하는 신청이 제기되어 있다. 이 신청은 2009년 8 월 형사사법기관조직 법(Strafbehördenorganisationsgesetz)을 위한 심의 과 정에서 국민의회(하원; Natioalrat)의 법사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당시 다수의 의원들이 연방법원들의 명명의 변경에 반대했다. 명명과 관련 해서는 이미 여러 번 토론되었고 있을 수 있는 변경은 상당한 법제정 업무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38)}$

연방대법원의 대표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세 연방법원들을 혼동 하는 일이 실제로는 자주 일어나며 명명의 변경을 환영한다는 점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설문대상자들 전 체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 질문은 행정위원회의 소 망에 따라 연방행정법원의 직원들에게는 제기되지 않았다.)

## D 5.7: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명명에 대한 평가

세 연방법원의 명명이 혼동의 위험이 있는가?


출처: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 온라인 설문조사
37) 공보 2009 N 1211 / BO 2009 N 1211 참조.
38) 2009년 8월 28 일 국민의회 법사위원회의 언론 브리핑.

평가는 연방대법원의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명명에 따른 혼동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80 퍼센트가 넘는 설문대상자들이 그들은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 원의 개명을 환영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방형사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의 다수는 이 문제를 다르게 본다. 즉 그들 중 80 퍼센트 이상이 혼동의 위험을 인식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연방대법원의 구성원들은 이제 똑같은 심급에 있는 "세 개의 연방법원"이 존재한다는 인상이 생기지 않도록 스위스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연방대법원의 지위가 그 이름에서도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하위의 두 법원이 있을 수 있는 혼동으로 겪을 수 있는 수고는, 이러한 혼동이 그들의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훨씬 적다는 것이 그럴 듯하다.

## 6. 주 전심법원의 변경

이 장에서는 연방주 전심법원 조직개혁의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은 통합된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는 것 이 그 목표였다. 그것은 모든 법적인 다툼에 최소 하나의 법정은 법 률적인 또 사실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보장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보호는 1 차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아 닌 사법부의 전심법원(연방행정법원, 연방형사법원, 그리고 연방주 법 원)에서 이루질 수 있는 것이다.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는 구조가 예 를 들어 비용 또는 시간적 제약으로 법원으로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경우 법원의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는 구조의 개혁이 그 소송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 }^{39)}$ 이런 권리구제수단이 보장되지 않

[^8]을 경우 연방주는 그를 조정할 의무를 갖는다. 즉 담당 법원을 신설 하거나 기존의 법원에 새로운 관할영역을 배치함으로서 이것이 가능 해 질 수 있다(예들 들면 행법법원의 관할확대). 마찬가지로 모든 사 실관계 및 법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도 록 연방주의 소송절차가 개혁되어야 한다. ${ }^{40)}$

이에 기초하여 다음의 항목이 먼저 한번 평가되었다:

-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에 따라 연방주의 전심법원은 어떤 범위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에 따라 연방주의 (소송)절차는 어떤 범위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 7개 연방주의 법관들과의 질적 인터뷰를 한 결과, 이러한 개혁이 새로운 법원 또는 새로운 전심법원의 신설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찬가지로 상급심법원의 심리가 이 7 개 조사대상 연방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조사 로 (입법)평가에서는 상소와 소송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고찰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변화는 없었다: 베른(Bern)을 제외하고 다른 7 개 연방주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찾을 수 없었다.
tung der Rechtsweggarantie für die Anpassung der kantonalen Gesetzgebung), in: ZB1 2/2006, S. 92.
40) Tophinke, Esther (2006): 연방주입법 조정을 위한 권리구제수단보장의 의미 (Bedeutung der Rechtsweggarantie für die Anpassung der kantonalen Gesetzgebung), in: ZBl 2/2006, S. 108-.110.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Auer, Christoph (2006):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재조직이 연방주에 미치는 효과(Auswirkungen der Re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auf die Kantone), in: ZB1 3/2006과 Diggelmann, Peter (2007): 연방대법원법(BGG)이 연방주 소송에 미치는 영향. 취리히 연방주를 중심으 로. (Auswirkungen des BGG auf das Verfahren der Kantone, besonders des Kantons Zürich), in: Isaak, Meier et al. (Hrsg.): 연방대원법에 따른 연방대법원의 민사사건 진 행방법(Wege zum BGer in Zivilsachen nach dem BGergesetz). Zürich/St. Gallen, S. 91-.112을 참조.

법관 및 법원서기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양적 설문조사는 전체 연방주의 실상을 약술했다. (발리스(Wallis) 연방주는 소재지 주소불명 으로 아펜첼레-이너호던(Appenzell-Innerhoden) 연방주와 니더발덴(Nidwalden) 연방주는 조사대상자를 찾지 못해 심층조사에서 제외됨.) 다 음의 표는 어느 연방주가 전심법원을 신설했고 어떤 기관이 신설되었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D 6.1: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연방주 전심법원의 변경

| 연방주 | 전심법원의 변경 |  |
| :---: | :---: | :---: |
|  | 예/아니오 | 변경 내용 |
| 아르가우 <br> (AG) | 아니오 |  |
| 아펜첼- <br> 아우서로덴 <br> (AR) | 예 | - 이중심급 실현 |
| 바젤-란트샤프트 <br> (BL) | 아니오 |  |
| 바젤-슈타트 <br> (BS) | 예* | - 조세항소위원회(Steuerrekurskommission) 폐지 논의 중 |
| 베른 <br> (BE) | 예 | - 강제조치법원(Zwangsmassnahmengericht)의 폐지 <br> - 행정법원의 기능신설 <br> - 구속법원III 헌법상 새로운 전심법원(Haftgericht III neu Vorinstanz des VG) |
| 프리부르 <br> (FR) | 예 | - 검사 |
| 제네바 <br> (GE) | 예* | -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영역에 행정심판위 원회와 더불어 상급법원의 신설 |
| 글라루스 <br> (GL) | 예 | - 보고내용 없음 |


| 연방주 | 전심법원의 변경 |  |
| :---: | :---: | :---: |
|  | 예/아니오 | 변경 내용 |
| 쥐라 <br> (JU) | 아니오 |  |
| 루체른 <br> (LU) | 예 | - 보고내용 없음 |


| 연방주 | 전심법원의 변경 |  |
| :---: | :---: | :---: |
|  | 예/아니오 | 변경 내용 |
| $\begin{gathered} \text { 보 } \\ \text { (VD) } \end{gathered}$ | 예* | - 연방보험법원(EVG, [역자, Eidgenössisches Versicherungsgericht]) 설치(2011년부터)* <br> - 지구법원(Distriktgerichte)의 재조직 |
| 취리히 <br> (ZH) | 예* | - 상소방법 재조직. 예, 지방법원(Bezirksgerichte) 이 행정법원으로 가는 전심법원이 됨. |
| $\begin{aligned} & \text { 추크 } \\ & \text { (ZG) } \end{aligned}$ | 아니오 |  |
| 전체 예 | 13(6*) |  |

출처: 연방주 상급심법원에 대한 온라인 조사.

* 토론 중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또 결정이 되었으나 아직 적용되 지 않은 경우.

이 평가는 10 개의 연방주에서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전 심법원의 변경이 없음을 보여준다. 6 개의 연방주에서는 변경을 준비 중이고 7개 연방주에서는 변경이 적용되었다. 전심법원의 설치유형만 보이고, 상급심법원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행정법 원 재판권(Verwaltungsgerichtsbarkeit)영역에서) 새로운 전심법원이 상급 심법원에 설치되거나 기존 법원의 재판부가 독립되었다. 두 개의 연 방주에서 심급(Instanzen)이 폐지되거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두 개 의 연방주에서는 개혁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권한과 소송절차에서의 변경은 좀 더 복잡해 보인다. 다음의 표가 이에 대한 법관과 법원서기에 대한 설문결과를 요약한다.41)
41) 이 조사는 완성도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다수 법관이 설문에 응답함으로서 현 재의 적용범위에 관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준다.

## D 6.2: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에 따른 연방주 법원의 관할과 소송 절차의 변경

| 연방주 | 사법관할권 변경 |  |
| :---: | :---: | :---: |
|  | 예/아니오 | 설명, 해당되는 법 영역 |
| 아르가우 <br> (AG) | 예 | - 행정법의 권리보장(VRPG)에 관한 새로운 법에서 의 일반조항(Generalklausel) <br> - 귀화(Einbürgerungen), 검토결정(Prüfungsentscheiden), 집행결정(Vollstreckungsentscheiden), 시의회 결정(Gemeindeversammlungsbeschlüssen), 법무행정(Justizverwaltung)과 건축물보험(Gebäudeversicherung) 판결에 관한 제소에서 변경 <br> - 30,000 프랑켄 이하의 소송가액에 대한 지구법원 관할권 |
| 아펜첼- <br> 아우서로덴 <br> (AR) | 예 | - 다툼없는 법원관할권(nichtstreitige Gerichtsbarkeit)은 상급법원만이 아니라 연방주 법원의 최하위 전심 법원에서 관할한다. |
| 바젤-란트 샤프트 <br> (BL) | 아니오 |  |
| 바젤슈타트 (BS) | 예 | - 특히 지적재산권(Immaterialgüterrecht), 조세사법권(Steuergerichtsbarkeit), 혼인보호(Eheschutz), 이혼소송절 차의 예방조치(vorsorgliche Massnahmen im Scheidungsverfahren), 경찰의 결정에 불복한 제소(Beschwerden gegen Entscheide der Polizei), 지금까지 유 일하게 연방주 전심법원에서 결정했던 것을 어디 서나 할 수 있도록 조정 |
| 베른 <br> (BE) | 예 | - 형집행건(Strafvollzugsangelegenheiten)을 상급법원의 형사사무처분과(Strafkammern)가 관할(이전엔 행정 법원과 정부위원회(Regierungsrat) 관할) <br> - 행정법원 접근권(Zugang) 확대 |


| 연방주 | 사법관할권 변경 |  |
| :---: | :---: | :---: |
|  | 예/아니오 | 설명, 해당되는 법 영역 |
|  |  | - 외국인법상의 행정책임에 대한 상위전심법원의 검 토(Oberinstanzliche Prüfung von ausländerrechtlicher Administrativhaft) <br> - 정부위원회의 분쟁관련 현재까지 평가(Beurteilung) 는 행정법원으로 이관 <br> - 공간설계법(Raumplanungsrecht), 등록사안(Registersachen), 교육법(Bildungsrecht)과 정치적 권리(politische Rechte) 부분에 적용 |
| 프리부르 <br> (FR) | 예 | - 잠정 결정의 취급(Behandlung von provisorischen Entscheiden) <br> - 국제어린이법(Internationales Kindsrecht) <br> - 강제조치(Zwangsmassnahmen) |
| 제네바 <br> (GE) | 예 | - 외국인법 |
| 글라루스 <br> (GL) | 예 | - 파산법(SchKG) 제소는 1 차 전심을 연방주법원으 로 이관 <br> - 외국인경찰(Fremdenpolizei), 외국인관련 사안(Ausländerwesen) |
| 그라우뷘덴 <br> (GR) | 예 | - 공법상 분쟁의 최종전심관할권만 아직 행정법원의 정규(vollamtlichen) 법관에 맡김 <br> - 헌법의 관할권 <br> - 형사법 |
| 쥐라 <br> (JU) | 예 | - 민사 및 형사법관의 권한 <br> - 형사법원(Kriminalgericht) 폐지 <br> - 20,000 프랑켄 이상 소송가액사건 재판 및 중범죄 사건(schweren Straffällen) 재판권한의 전심법원 위임 |
| 루체른 <br> (LU) | 예 | - 정부위원회(Regierungsrat)결정의 소송가능성(Anfechtbarkeit) 행정법원으로 <br> - 이외의 행정법상의 조정 |


| 연방주 | 사법관할권 변경 |  |
| :---: | :---: | :---: |
|  | 예/아니오 | 설명, 해당되는 법 영역 |
| 뇌사텔 (NE) | 예 | - 민사 및 형사법 영역에 항소가능성 <br> - 귀화 및 감세 영역에서 변경 |
| 옵발덴 (OW) | 예 | - 설명 없음 |
| 상트갈렌 (SG) | 예 | - 행정심판위원회(Verwaltungsrekurskommission)의 결정 행정법원에 상고(Weiterzug)가능(예를 들면 구금, 운 전면허취소) |
| 샤프하우젠 <br> (SH) | 아니오 |  |
| 슈비츠 <br> (SZ) | 아니오 |  |
| 졸로투른 <br> (SO) | 예 | - 형사법원의 관할권이 지방법원지원(Amtsgerichten) 으로 할당되었다. |
| 티치노 <br> (TI) | 예 | - 행정법원에서 항소를 기능하게 하여 행정법상의 항소기회확대 |
| 투르가우 <br> (TG) | 예 | - 도로교통법(Strassenverkehrsgesetz) 조정 |
| $\begin{aligned} & \text { 우리 } \\ & \text { (UR) } \end{aligned}$ | 예 | - 제55a조 행정법제도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die Verwaltungsrechtspflege) |
| $\begin{gathered} \text { 보 } \\ \text { (VD) } \end{gathered}$ | 예 | - 행정법상의 추가상소기회(Zusätzliche Rekursmöglichkeiten) <br> - 사회보장법상 관할변화 <br> - 하위민사법(unteres Tribunal d'arrondissement)을 통 한 제 1 전심의 민사법 제소 평가(Beurteilung von Beschwerden) <br> - 중재자(FriedensrichterInnen)관할권 변화 |


| 연방주 | $\begin{array}{c}\text { 사법관할권 변경 }\end{array}$ |  |  |
| :---: | :---: | :---: | :---: |
|  | 예/아니오 | 설명, 해당되는 법 영역 |  |
| 취리히 |  |  |  |
| (ZH) |  |  |  |$\quad$ 예 \(\left.\begin{array}{l}- 폭행방지(Gewaltschutz), 형집행(Strafvollzug), 외국인 <br>

법, 정치적 권리(politische Rechte)부분에 행정법원 <br>
책임/관할의 신설 및 확대 <br>
- 상급법원은 더 이상 제1 전심사건을 맡지 않음 <br>
- 배심법원(Geschworenengerichts) 및 농업법원(Land- <br>
wirtschaftsgerichts)폐지\end{array}\right]\)

출처: 연방주 상급심법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위의 표는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이 20개 연방주에 소송절차 와 관할의 개정을 이끌어 냈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 절차 및 관 할이 이중심급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실제 그 무게중심은 행정법의 개정에서 관찰할 수 있다: 최소 12 개 연방주 에서 이 부분의 관할을 새롭게 정했고 절차를 조정했다. 이는 한편 민형사법의 개정은 2011년에야 이루어진 데에 반해, 행정법 개정은 2009년 1월 1일 부로 실시된 것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소 8 개 연방주에서 이 부분(민형사법)과 관련된 개정 이 이루어졌다. 위에 보인 변경사항은 하지만 아직 이것이 응답자와 연방주 법원에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다. 이에 우리는 법관 및 법원서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된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들었다.

## D 6.3: 주법원 설문응답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 변경사항 | 응답횟수 |
| :--- | :---: |
| 상소에 관한 교시(Rechtsmittelbelehrungen) 개정(예, 소송가액 명시 <br> 를 통한) | 42 |
| 새로운 관할/법영역 | 31 |
| 연방주 소송법(Verfahrensrecht)의 변경 | 14 |
| 연방대법원에의 상소 신설 | 13 |
| 연방대법원 심리제한과 그와 관련된 가중 책임 | 9 |
| 가중된 이유제시 비용(Begründungsaufwand) | 8 |
| 추가적인 제소절차/추가비용 | 8 |
| 새로운 소송원칙(예, 일부판결/중간판결의 구별) | 7 |
| 제1 전심의 소송절차의 폐지 | 5 |
| 기판력확인서(Rechtskraftbescheinigungen) 조정 | 4 |
| 기타 | 22 |

출처: 연방주 상급심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복수응답.

이표는 상소에 대한 교시(Rechtsmittelbelehrungen)의 개정이 가장 자 주 중복 응답되었음을 보여준다. 관할변경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 다. 그 다음 큰 격차를 두고 소송법의 변경이 14 번 응답되었다. 연방 대법원에의 상소 신설과 심리제한(사회보장법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됨)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주관식 답변 을 보면 어느 특정 연방주에서 유독 눈에 띄게 중복되는 응답 패턴은 없다.

지금까지의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D 6.4: 연방주 전심법원의 변경에 대한 요약

| 조 처 | 총 평 |
| :---: | :--- |
|  | -13 개 연방주에서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고 <br> 그 중 7 개 연방주는 관련 변경을 이미 실 <br> 행했다. <br> - 연방주 상급심법원의 신설은 없었고 이와 <br> 반대로 기존 법원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기 <br> 존 법원을 폐지했다. |
| 전심법원의 변경 | - 20개 연방주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 <br> - 행정법 영역이 중점적으로 변경 |
| 절차진행과 권한의 변경 |  |
|  | - 상소에 관한 교시(Rechtsmittelbelehrungen)의 <br> 개정 <br> - 관할 변경과 절차 개정이 역시 가장 중요 <br> 했다. |
| 가장 중요한 변경 |  |

##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입법평가의 Teil II에서는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과 이것이 3 개의 연방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 요한 변경으로서는 이중심급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제7장(Kapitel 7)). 제8장(Kapitel 8)은 심리에서 선정된 변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9장 에서는 상소에서 변경된 바를 설명한다. 여기서 주제는 통합소원과 보충적 헌법소원이 될 것이다. 소송가액 제한의 상향조정과 간이화된 절차에서의 재판기회 확대와 같은 선택된 변경들에 대해서는 제 10 장 에서 다룰 것이다.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은 연방주의 진행절차와 업무의 변화를 이끌었다. 별도의 장에서 개혁을 이 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먼저 관찰 된 변경의 전체적 개요를 제시하고 연방주 차원에서 응답자의 관점에 서 본 평가 보여줄 것이다. 보고서 Teil II는 질적 인터뷰와 3 개의 연 방법원뿐만 아니라 연방주 법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 거한다. 여러 군데 통계의 평가를 포함시켰다.

## 7. 이중심급의 효과

이중심급은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설치로 스위스 연방사 법제도속에 도입되었다. 이 장에선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다룬다. 그 다음 우리는 연방주 수준에서 이중심급의 소개에 들어갈 것이다.

## 7.1 연방행정법원으로 업무이관

연방행정법원의 설립으로 연방대법원의 전심법원 부재라는 행정사 법제도에서의 빈틈이 채워져야 했다. ${ }^{42)}$ 연방행정법원 설립이전에는 연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방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할 수 없는 매년 3,000 개 이상의 사건들이 보통 바로 연방차원의 연방대법원으로 제기되었다.43) 이제 신설된 전 심법원이 연방대법원을 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연방 행정법원의 설치를 통해서 권리보호의 빈틈이 메워진 것은, 이전에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연방행정법원에서 소 송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 }^{44)}$ 연방대법원법 제 83 조는 연방행정법원에 불복히여 연방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22 개의 예외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행정부 내부의 항고절차 및 이의제 기절차의 축소는 연방행정법원에의 집중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추가 조치는 그 외에 연 방대법원에게 수용법상 감정위원회(die Schätzungskommission im Enteignungsrecht)에 대한 감독권을 이관한 것이다.

이 입법평가는 연방행정법원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 다음의 문항을 조사했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행정법원으로의 업무이관으로 업무부담을 줄였는가?
- 이것이 연방대법원에의 직접 제소를 줄이는 여과효과를 가져왔는가?
- 연방행정법원의 설치로 권리보호에 변화가 있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법 제 83 조에 의거한 예외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제1절에서 위의 두 문항에 살피고 그 다음 절에서 권리보호 에 대한 영향을 다룰 것이다.
43) Weissenberger, Philippe (2006): 연방행정법(Das BVGer), AJP/PJA 12/2006, S. 1495.
44) Bundesrat (2001): 2001년 2월 28일 연방사법제도 전면개혁의 메시지(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l 2001, S. 4215 und 4227.

## 연방대법원 업무량 변경에서의 결과

먼저 질적 인터뷰의 응답부터 살펴보자. 대부분 인터뷰 응답자는 연 방행정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연방대법원의 업무가 경감되었다 고 보았다.

그러나 업무의 경감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업 무경감관련 연방행정법원의 판결로 상소율(Anfechtungsquote)이 경감되 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경우 연방대법원이 부담할 판결소모(Beurteilungsaufwand)이 줄었다는 것이 대부분 응답자의 의견이었다. 전심법원으로써 연방행정법원의 사전작 업은 연방대법원의 업무를 줄였다. 감정위원회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변경에서는 미미한 연방대법원의 업무경감이 나타났다. 그 감독이 전 문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연방행정법원은 해당 위 원회에 일정 행정서비스 제공한다. 연방대법원 측에서는 그러나 연방 행정법원의 비용이 전과 비교 상승한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양적인 온라인-설문조사방법에서 연방대법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는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인터뷰에서 나온 결론 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D 7.1: 업무량변경: 연방대법원의 관점

연방행정법원으로 업무이관은 당시의 개인업무량을 $\qquad$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 $=120$.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응답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응답자 $10 \%$ 가 개인 업무량이 연방행 정법원으로 업무이관이 되어 줄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문항과 관 련 가장 많은 응답은 무응답과 그리고 개혁이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 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방행정법원의 응답을 평가하면 업무경감효과 와 관련 좀 더 낙관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 D 7.2: 업무량변경: 연방행정법원의 관점

당신이 볼 때 연방대법원이 연방행정법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경감 했다고 보는가?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조사.

연방대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항에 대한 최다수 대답은 무응 답이다. 응답을 한 사람들은 업무경감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방행정법원 소속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업무여과효과를 관 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많은 이유는 양적 온라인-설문이 조사한 업무경감효과는 연방행정법원 근무자들의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조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 번째 절차진행의 근본적인 간이화(모든 제소가 연방행정법원, 전심법원을 통하게 되었

음), 둘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에 대한 연방행정법원의 기초 작업(Instruktionsarbeit), 그리고 세 번째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낮은 상소율이 그 이유로 꼽혔다.

요약하면 조사는 연방행정법원을 통해 여과효과가 발생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연방행정법원의 평가에 비해 연방대법 원의 평가에서는 뚜렷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업무경감효과를 창출한 사건 수는 어느 정도인가? 아래의 그림에서 2007년 이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연방대법원에게 제소된 사건 수 를 나열한다. 이러한 제소는 2007년부터 연방행정법원에서 다루게 되 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방대법원에 제출되었다(연방대 법원법 제 83 조로 정한 많은 사건의 경우 제소가 불가능해졌다: 연방 대법원법 제 83 조 참조, 이것은 나중에 다룸).

D 7.3: 행정심판위원회와 연방행정법원으로부터 연방대법원으로의 사건인계


출처 : 연방대법원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이 표는 연방대법원에서 종결된 이후의 사건들로 작성된 것이다. 2007년과 2008년에 대하여는 연방행정법원에 의해 연방대법원으로 이 송된 사건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연방대법원으로 이송된 사건들도 포함된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송되는 사건 수는 앞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위 표의 자료는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르면 여과기능이 발생했다: 2007년 이후에 연방대법원에 도달한 제 소의 수는 명백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이송 된 사건들의 처리기간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에 따르 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제소의 처리기간이 눈에 띠게 길어지 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통계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추정 되는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 권리보호변화에 대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은 두 가지 관점에서 권리보호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연방행정법원을 둠으로써 또 하나의 심급이 생겨났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 원법 제 83 조에 의거한 예외리스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자.

연방행정법원에서도 그러하듯이 연방대법원에서의 질적 인터뷰들은 연방행정법원의 설치로 인하여 권리보호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설문조사응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과거 의 항고담당직과 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절차단일화의 효과 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부와 독립된 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권리보호가 형식적•제도적 관점에서 향상되었다.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법 제 83 조에 의거한 예외목록들에 대한 평가는 덜 일관되게 내려지고 있다. 연방법원에서의 양적인 설 문조사에 대한 평가가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대략 절반 정도가 이에 대하여 답을 하였다. 그 중에서 $30 \%$ 는 연방대법원법 제 83 조에 의거한 예외목록을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에 반해 약 $20 \%$ 는 비판했다.

D 7.4: 연방대법원법 제 83 조에 따른 예외 : 연방대법원의 관점

당신의 생각에는 공법상 사건에 있어서의 제소의 예외(연방대법원법 제83조) 가 타당합니까?


출처: 연방대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125.

어떠한 점에서 연방대법원 제 83 조에 의거한 예외목록들에 대한 비 판이 가해지는가? 제 83 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한 연방대법원 측의 거의 모든 설문응답자들이 이에 대하여 상세한 논평을 제출하였 다. 이러한 논평들은 연방대법원 측의 설문응답자 중 소수만이 제83 조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권리보호침해라고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리스트는 자의적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논 거는 22 개의 예외리스트들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설문응답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정한 정치적 문제의 경우에 권리보호를 제한하는 것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하기는 하다(예를 들어 제 83 조 a 목에 의거한 내부적•외부적 안보 영역에서의 판결). 하지만 제83 조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보건대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평 가되어야 할 문제들에서 권리보호를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다고 한 다: 지적되는 것으로는 가령 망명영역에서의 강제송환금지(제 83 조 d 목), 원거리통신 영역에서의 경제문제(제83조 p 목), 가령 UBS (스위스 금융기업)의 경우와 같이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의 국제 적인 직무상 공조(제83조 h 목)들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해석할 때에 는 일련의 예외들이 이미 연방사법제도의 개혁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예외리스트에 대한 해 명이 없다는 데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법 제 83 조에 대하여 비판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방대법원법 제84조 규정을 제안한다. 이 규정은 "형 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 사법공조(international Rechtshilfe)에 대하여, 특히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연방대법원에 제소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허가절차가 도입되는 것이고, 이는 제 83 조에 있는 리스트를 불필요하 게 만들 것이다.

오로지 연방행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생긴 여과효과와 권리보호의 변화만을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 D 7.5: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업무인수의 결과

| 조 치 | 종합적인 평가 |
| :--- | :--- |
|  | - 연방행정법원 설치로 인한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연방 |
| 행정사법영역에서 | 대법원 측의 제소 수 감소, 더 간단해진 재판) |
| 연방차원의 제1심법 |  |
| 원 설치 | - 부담경감의 범위는 상이하게 평가됨: 연방대법원에서는 <br> 비교적 작은 업무부담경감을, 연방행정법원에서는 비교 <br> 적 높은 업무부담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


| 조 치 | 종합적인 평가 |
| :---: | :--- |
|  | - 절차의 단일화와 독립적 법원의 설치로 인한 권리보호 <br> 강화 <br> - 연방대법원법 제83조에 의거한 제소가능성의 제한은 소 <br> 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권리보호에 대한 의 <br> 미없는 제한으로 비판받음. |

## 7.2 연방형사법원으로 업무이관

연방형사법원 신설의 효과는 비교적 복잡하다: 연방형사법원은 이미 2004년에 업무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또 다른 업무들을 인수받았다. 따라서 변화를 설명할 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한 다음에 입법 평가의 물음들에 대해 살펴본다.

### 7.2.1 설 명

Bellinzona에 있는 연방형사법원에 의한 연방대법원의 업무 인수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2004년 4월에 제1심 형사재판부(Strafkammer)와 제 1 항고재판부(I. Beschwerdekammer; I. BK)의 설치와 2007년 초까지 제2 항고재판부(II. Beschwerdekammer; II. BK) 신설.

첫 번째 단계는 2004년에 시작해서 연방사법제도 개혁이 발효되기 까지 약 3 년이 소요됐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99 년 12 월 22 일에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법치국가원리의 개선 을 위한 조치(소위 효율성법안(Effizienz-Vorlage AS 2001 S. 3071)가 의 결되었다. 효율성법안은 200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고 연방의 형사소 추수단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범죄형태들(경제범죄, 범죄조 직, 테러)에 맞추거나 연방형사절차에서 당사자권리들을 개선하는 것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45) 효율성법안이 1998년과 1999년에 의 회에서 심의되어 통과되었을 때, 연방사법제도개혁 내지 사법개혁이 라는 프로젝트는 아직 초창기에 머물러 있었다. ${ }^{46)}$ 그러나 연방은 효 율성법안의 목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고자 했다. "연방대법원에 게 현재 더 이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 만,47) 주법원들로 피해감으로써 일단 해결책을 찾았다고 믿었다. 구체 적으로 보면, 연방검찰이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서 스위스연방의 연방 형사법원 대신에 주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연방형사소송법(BStP)을 개정했다. 연방은 이 때 연방주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보 상하거나 그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연방주들에게 약속했고, 연방주 들은 이러한 태도에 "당장 우선은" 동의를 했다.

실무상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효율성법안이 오로지 연방의 형사소추관청들에게만 곧바로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복 잡해지는 절차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재판소원(Verfahrensbeschwerde)의 수 역시 즉각 증가되었고,48) 그에 대한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45) 이를 위해 형사법상의 연방관할권이 확대되고(형법 제340조 내지 제340bis (a)조 의 개정) 연방형사소송법이 다양한 점에서 변화되었다(Botschaft vom 28. Januar 1998, 98.009, BBl 1998, S. 1529 ff.; BBl 2000, 70 ff.).
46) 오직 분명한 것은, 수사관청과 기소관청의 확대가 원래는 판결을 내리는 관청에 서의 동일한 적응과 -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연방대법원의 재원의 확대, 즉 증가 또는 더 나은 것으로는 최상위 법원의 핵심관할(법률통제)로의 제한이라는 의 미에서의 연방대법원의 구조변경과 제1심 연방법원의 창설 - 동시에 결합되어 있 었어야 했다는 점이다; 후자는 계획되어 있었던, 광범위한 사법개혁의 틀에서 또한 논의되었다.
47) Bundesrat Koller(1998): Beratungen im Ständerat vom 1.12.98, amtliches Bulletin, S. 1175.
48)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법치국가원리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통해 연방검 찰의 수사권한만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연방검사와 수사법관(Untersuchungsrichter)을 연방대법원의 기소재판부에 제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소권(generelles Beschwerderecht)도 새롭게 도입되었다(1999년 12월 22일의 BG I항에 의거한 제105bis 조 제2항과 제3항(AS 2001 3308).

기소재판부(Anklagekammer)의 관할이 되었다.49) 2002년 연방대법원의 업무보고에서 이미 연방대법원 기소재판부는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50) 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연방형사사건들을 주법원들에게 위 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무상으로는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 었다.51)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안 중에서 연방형사법원에 관한 연 방법률을 먼저 심의하고 발효시키기로 결정되었다: 형사법원법 SGG 는 2004년 4월 1 일까지 발효되었고, 이는 연방형사법원으로 하여금 활동개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연방대법원 기소재판부는 해 산될 수 있었다. 그 업무들을 연방형사법원의 항고재판부(오늘날 제 1 항고재판소[I. BK])가 2004년 4월 1일까지 인수받았다. 제1항고재판부 는 그 이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52) :
(1) 연방검찰과 스위스연방 수사법관(Untersuchungsrichter)의 모든 공 무행위(혹은 지체를 포함한 부작위)에 대한 항고
(2) 행정형사절차에서의 항고
(3) 특별한 경우에 구속(Untersuchungshaft) 연장
49) 연방대법원은 이미 2001년 초에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경고를 했었다: "효율성 법안은 200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 때까지 하위의 연방형사법원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어쨌든 연방대법원 기소재판부의 부담경감을 위한 잠정적 해결책을 구해 야만 한다. 효율성법안을 근거로 예상되는 엄청난 과부하는 기소재판부와 연방대법 원으로서는 전체적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을 만한 것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이미 2000년 5월 22일의 청원서로 스위스 연방의 권고를 고수했던 것처럼 과도기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연방사법제도의 전체개혁에 관한 보고에 대한 2001년 2월 23 일자 연방대법원의 입장표명; BBl 2001, S. 4202).
50) 사건이 $30 \%$ 만큼 증가했는데, 이 중에 약 절반은 연방 형사소추관청의 새로운 관 할영역에 해당한다. "많은 사례들에서 법원은 연방법에 대한 새로운 근본적 질문들 에 답변해야 했다"(연방대법원 2002년 업무보고서, S. 5).
51) 2001년 1월 1일과 2004년 3월 말 사이에 그러한 총 2건의 절차가 주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52) Keller, Andreas (2007): Strafverfahren des Bundes, Praxis der Beschwerdekammer des BStGer zu Verfahrensfragen, in AJP/PJA 2/2007.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4)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
(5) 재판적충돌(Gerichtsstandskonflikten)에 대한 결정

연방대법원에는 그 이후 상소심의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이 때에 강 제조치에 관한 제 1 항고재판부의 재판만이 연방대법원에의 제소를 통 해 다툴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4년 4월에 연방형사법원의 제1심 형사재판부(SK)가 업무를 개시했다. SK 는 연방대법원이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할권을 가 지고 있었던 사건들을 인수받았다. 이 때에는 연방형사사건과 관련된 연방검찰의 기소에 의한 소송들이 문제된다. SK 의 재판은 연방주 최 상급심법원의 판결에 유추하여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즉 이 때에도 Lausanne(역자주: 연방대법원)은 상소심이 되었다.

2007년 1월 연방대법원법이 발효되면서 국제 사법공조(Rechtshilfe) 영역 일반에서, 즉 범죄인인도사건53)과 부수적인 사법공조 사건에 대 해 관할권이 있는 항고심으로 제2 항고재판부(II. BK)를 설치함으로써 두 번째 단계가 달성되었다. II. BK 는 이로써 이전에는 연방주의 상소 심 그리고/또는 직접 연방대법원에 의해 수행되었던 업무들을 인수받 았다. 이에 상응해서 II. BK에의 제소는 연방 또는 연방주의 집행결정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Art. 25 Abs. 1 IRSG ). 이러한 영역에서도 하 지만 II. BK 의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로잔에 법률통제업무가 남아 있게 된다. 물론 상소가능 성은 소수의 사건으로 제한되고(범죄인인도구금, 재산적 가치와 유가 물건의 압수(Beschlagnahme), 비밀영역에서 정보의 전달) 추가적으로 "특히 의의가 있는 사건"이 존재해야만 한다(연방대법원법 제84조). 이로써 연방대법원으로의 이송에 대한 장애물이 I. BK의 재판의 경우

[^9]에서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54) 이러한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다면, 다음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
(1) 직접소송(Direktprozesse)은 더 이상 연방대법원에서 행해지지 않 고, 연방형사소송에서의 제 1 심은 연방형사법원의 SK 이다.
(2) 연방대법원은 더 이상 연방형사사건에서의 항고심이 아니고 연 방검찰과 스위스연방 수사법관(Untersuchungsrichter)에 대한 감독 관청도 아니며, 이러한 업무는 연방형사법원 I. BK에게 있다.
(3) 연방대법원은 마찬가지로 국제 형사사법공조 영역에서의 항고심 이 아니고, 이러한 업무는 연방형사법원의 2. BK 가 인수받았다.

그러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연방대법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소 심의 기능이 남아있다.

D 7.6: 연방형사법원에 의한 업무인수를 통한 연방대법원의 업무변화

54) 원래 국제적인 사법공조(Rechtshilfe)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직무상의 협조의 경우 처럼) 물론 연방대법원으로의 상소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다음의 문제제기들이 심사되었다.
(1) 위의 서술에 따른 업무 (1), (2), (3)의 이전을 통해서 연방대법원 의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는가?
(2) 업무의 이전을 통해서 권리보호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 7.2.2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변화에 관한 결과

연방형사법원 신설을 통한 부담경감효과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인터 뷰들은 다음의 결론으로 이끌었다:
(1) 연방형사법원 측의 설문조사응답자도, 연방대법원 측의 설문조사 응답자도 I. BK와 특히 II. BK에 의한 업무인수가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 다. 이에 대한 근거는 I. BK의 재판에 대한 연방대법원으로의 제 소의 감소와 II. BK의 재판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는 경우의 엄격 한 적용이다(연방대법원법 제84조). 연방형사법원에 의한 업무인 수로 이전에는 연방주들에 의해 판단되었던 사건들(사법공조)의 재판의 질이 높아졌고, 연방대법원은 부담이 경감되었다. 언제나 처럼 I. BK와 II. BK 의 업무에 관한 이의제기(Rekurse)는 연방대 법원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담경감은 분명하다: 재판하 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제 1 심 재판시의 비용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한다.
(2) 연방형사재판권의 인수(SK)는 그에 반해 오히려 연방대법원의 부 담가중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수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제소가 연방대법원에게 보내지는데, 이것이 더 많은 비용으 로 이어진다. SK 의 재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향이 인터 뷰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꽤 높다: 이제까지의 통계들이 이를

확인시켜주며 게다가 주법원들에서 판결한 경우보다 현재 평균 적으로 조금 더 높은 이의제기율(Korrekturquote)을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부담가중은 한 설문조사응답자의 견해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제소가 있을 때에 대체로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새로 운 판단을 위해 연방형사법원으로 환송)을 함으로써 더욱 가중 되며, 이로써 재차 연방대법원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생긴다.

연방대법원에서의 설문조사와 연방형사법원에서의 설문조사는 우선 인터뷰들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확인해준다: 연방대법원 측의 설문조 사응답자 가운데 3 분의 1 이 연방형사법원의 신설로 인한 연방대법원 의 부담경감을 인정하고 있다. 직접소송(Direktprozess)을 폐지한 것에 도 감소효과가 인정된다.

D 7.7: 연방형사법원에 의한 업무인수로 인한 업무부담의 변화: 연방 대법원의 관점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이 변화되었다면,


출처 : 연방대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연방형사법원 측의 설문조사응답자의 결과는 조금 더 명료하다: I. BK와 II. BK에 의한 업무인수는 설문응답자 중 $80 \%$ 이상의 의견에 의하면 부담경감으로 이어졌다. 그에 반해 연방형사재판권의 인수는 다음의 표가 나타내듯이 설문조사응답자 가운데 약 $57 \%$ 만이 연방대 법원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졌다고 답한다.

D 7.8: 연방형사법원에 의한 업무인수로 인한 업무부담의 변화: 연방 형사법원의 관점

당신의 생각에 따르면 연방형사법원이 다음의 것들을 현실화함으로써 연방대 법원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까?


출처: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연방대법원 측과 연방형사법원 측의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가? 연방형사법원 측의 설문조사응답자들이 원칙적으 로 부담경감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부 담경감은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에 대하여 표명된 목적들 중의 하나였

다. 온라인-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들을 평가해보면, 연방형사법원 측 의 설문조사응답자들이 부담경감효과를 서로 매우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연방형사법원 의 도입이 특히 I. BK와 II. BK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효율성 법안(형사소추에 있어서 연방의 권한 확장)이 설문응답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최소한 이러한 부담경감의 일부를 다시 상쇄하였다.55) 실제로 효율성법안과 연방대법원이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전에 이미 수년간 사실상 직접소송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Lausanne(연 방대법원)이 Bellinzona(연방형사법원)로 인해 결국 부담이 경감되었다 고 느끼지 않았거나 거의 느끼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 들일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시각은 다음에서 표로 짧게 표현된 바와 같이 사건수의 변화를 통해 지지된다. 하지만 사건수의 변화는 이와 동시에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이 왜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의 부담 경감효과를 서로 다르게 -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모 두 전적으로 타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납득 할 만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변화, 즉 연방형사법원에 의한 직접소송의 인수를 다 루어본다. 이 자료는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확인해주 고 있다: 직접소송의 인수는 부담경감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 연방형사사건 영역과 관련하여 - 연방대법원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1999년 이후부터 직접소송을 더 이상 처리하 지 않았고56), 약 10 년 전부터는 직접소송이 매해 한 건이 채 되지 않

[^10]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았다. 따라서 형사법원법(SGG)은 말하자면 현재의 상태를 "적법화"하 고 이에 덧붙여 연방대법원은 앞으로도 더 이상 제 1 심 형사재판을 하 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하게 했다. ${ }^{57)}$ 다음의 표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 수가 기록되어 있다.

## D 7.9: 연방형사법원(SK: 제1심 형사재판부)의 신설 이후의 연방형사 소송에의 판결

| 연 도 | 제1심 형사재판부 |  |  |  | 연방대법원으로의 상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 <br> 접수 <br> $* *$ | 기소 | BG로 <br> 환송 | 종결 | 사건 <br> 접수 | 각하 | 심리 <br> 불속행 | 기각 |  | 인용

출처 : 연방형사법원

* 2006년까지는 형사법원법 제33조 3항 b목에 의거한 무효소송, 2007년부 터는 연방대법원법 제 78 조와 제 80 조 1 항에 의거한 형사사건에서의 제소; ** 사후절차포함; *** 3 가지 구분 없이.

이 표는 연방형사법원이 활동을 개시한 이래로 사건의 수가 증가했 고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으로의 상소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 을 보여준다. 2008 년에는 18 건의 기소(=재판) 중에서 16 건에 대해 상 소가 이루어졌다. 이는 절대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제 소는 전체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항고재판소(Kassationshof)(2006년 말까 지) 내지는 형사부(strafrechtliche Abteilung)(2007년 1월 1일부터)가 재
57) "최근에는 하급심의 연방형사재판소가 없다는 사실은 스위스연방의 사법조직의 가장 중대한 결점이라는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다"(연방사법제도의 전면개 혁소식에 대한 2001년 2월 23일자 연방대법원의 입장표명에서; BBl 2001 S. 4202)

판했어야 할 제소들 중의 일부일 뿐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소 들은 그 범위 그리고/또는 법률적 복잡성으로 인해 평균치를 넘는 재 판비용을 초래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2004년 4월 1일부 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 된다.

제 1 항고재판부(I. BK)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 료를 살펴보자. 다음의 표는 연방대법원의 예전의 기소재판부(Anklagekammer; 2004년 이전)에 제기된 사건의 수와 제1항고재판부(I. BK)의 재판에 대해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사건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D 7.10: 기소재판부(연방대법원) 및 제 1 항고재판부(연방형사법원)의 업무 건수


출처 : 연방형사법원; 연방대법원 연간업무보고

* 2004년 4월 1일까지 기소재판부 사안 중 21건이 연방형사법원으로 이송 되었다.
** 22건의 업무/판결이 한 사안에 해당함.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효율성 제고방안의 발효(2002) 이후 연방대법원(당시에는 기소재판부) 에 제기된 상소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형사법원법 발효(2004. 4.1)와 더불어 매우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1 항고재판부에 제 기되었거나 이 분과에 의해 판결이 난 총 제소 건수를 살펴보면(새로 도입된 연방형사법원의) 여과기능이 분명히 드러난다. 즉 현재까지 평 균적으로 제 1 항고재판부의 판결들 가운데 대략 10 퍼센트만이 연방대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중 약 3 분의 1 정도만 성공적으로 처리되었 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연방대법원에 수용된 제소건들이 위의 도 표에 상응하여 그려져 있는 다음의 그래프에는 연방대법원의 업무부 담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D 7.11: 연방대법원 기소재판부에의 제소 및 제 1 항고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제소/항고


출처: 연방형사법원; 연방대법원 연간업무보고, 도표에는 연방대법원에 제 기된 소의 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2004년 4월까지의 제소는 연방대 법원 기소재판부에 직접 제기되었고, 2004년 4월부터는 연방형사법 원 제 1 항고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음)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이 명백히 경감되었음은 강제처분에 대한 제 1항고재판부의 판결만이 (형사법원법 제33조 3항 a 목 내지 연방대법 원법 제79조58)) 연방대법원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재판이 성립하며) 이로써 제 1 항고재판부의 판결의 상당 부분이 최종적 판결이라는 사실 로써 설명될 수 있다.

제2항고재판부에 의해 처리되는 사안들(인도구금을 포함한 인도 및 연방과 주에 의한 부차적 사법 공조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은 어 떻게 진척되어 왔을까? 여기에서도 자료들은 제2항고재판부의 신설 결과 연방대법원의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인터뷰 결과를 증명하고 있 다. 아래의 도표는 2007년을 전후로 하여 연방대법원에 제기되었던 국제 사법공조 판결에 대한 항소를 보여주고 있다.

## D 7.12: 국제 사법공조 분야에서의 판결

|  | 국제 사법공조 분야에서의 <br> 연방대법원 판결 |  |
| :--- | :---: | :--- |
| 2001 | 130 |  |
| 2002 | 122 |  |
| 2003 | 126 |  |
| 2004 | 148 |  |
| 2005 | 165 |  |
| 2006 | 127 |  |

58) 형사소송상의 강제처분 판결은 가령 심리구금 혹은 인도구금의 명령 내지 연장 (혹은 이와 관련한 보충적 조치들), 계좌 차단, 재산 압류, 문서 수색 및 압류, 정보 전달금지조치와 더불어 동시에 은행에 내려지는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조치(연방 법원판례 131-IV-52 및 133-IV-278)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실제업무에 적절하다. 그 러나 판결(연방법원판례 134-IV-237)에 따라 형사분과 분과장의 소송지휘상의 결정 과 관련한 강제처분들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연방대법원법 제92조에서 94조까지 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  | 국제 사법공조 분야에서의 <br> 연방대법원 판결 |  |
| :---: | :---: | :---: |
|  | 제2항고재판부의 판결에 반해서 연 <br> 방대법원에 제기된 상소* | 연방형사법원 제2항고재판부에 <br> 제기된 소* |
| 2007 | 40 | 211 |
| 2008 | 68 | 317 |

출처 : 연방형사법원; 연방대법원 연간업무보고

* 수용건수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2항고재판부의 제소건수가 증가한 것 은 경과법 때문이다. (연방대법원법의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내려 진 판결에 적용 가능함; 연방대법원법 제132조 1항59))

따라서 이전과 이후를 (잠정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2008년의 숫 자부터 비로소 적합하다. 이를 토대로 할 때 국제 사법공조 분야에서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제소건수는 새로운 심급 운영에 따라 2002년에서 2006 사이의 평균(136건)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그밖에 상소의 $80 \%$ 이상이 (2007년에는 40건 중 35 건, 2008 년에는 68 건 중 55 건) 실질적 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기각판결), 현실적으로 언제나 „특별 히 중요한 사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수치를 토대로 할 때 연방대법원의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 권리보호의 변경에 대한 결과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대상자들은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을 통 해 권리보호의 정도가 분명히 증대되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2004 년 내지 2007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소송건들은 두 심급에 의해
59) 2007년 초의 몇 달 동안 수용된 제소건수는 이에 따라 여전히 적었는데, 200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명백히 적다. (이에 대해서는 2007년 업무보고의 연방형사 법원 및 제 2 항고재판부 부분, 47 쪽도 참조할 것)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심급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소가능성이 존재한다. 인터뷰 대상자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설문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권리보호를 훨씬 개선시킨 점들이 종종 지적된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사항이 거론될 수 있다.
(1) 국제 사법공조 분야의 제소를 연방주들로부터 연방형사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판결은 통일되었고 이로써 권리보호가 증대되었다.
(2) 어느 인터뷰 대상자의 판단과 설문 답변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권리가 개선되었다. 즉 심리내용에 대한 열람과 변호인들의 권리 가 현재 연방형사법원의 실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 이런 관점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물론 몇 가지 관점과 관련해서 권리보호의 증대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 제기되었다. ${ }^{60)}$
(1) 한 가지 관점은 소송처리 기간과 관련된다. 즉 형법의 국제 사법 공조에서 소송처리가 길어질 위험이 있다. 스위스는 이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공조로 표현되는) 공조 절차에서 이중심급이 실제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이다. 결국 이 사안들은 외국에서는 상응하는 상소가능성을 포함 해서 완전히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2) 또 다른 관점은 연방주 단계에서의 권리보호와 비교할 때 나온 다. 즉 일부 설문대상자들은 연방주 단계에서보다 연방 검찰청 의 소송과정에서 권리보호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비판한다. 연방 주 단계에서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두 심급에 소송을 제기할 수
60) 이러한 관점들은 특히 연방사법청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사법청 (2008): 입법평가보고, 국제 형사 사법공조상의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상소절차, 베른.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있는 반면, 연방 단계에서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조건 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상술한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D 7.13: 요약. 연방형사법원의 업무 인계

| 조 치 | 총 평 |
| :---: | :---: |
| 연 방 차 원 의 제1심 형사법 원 신설(연방 형사법원) | - 전심(제 1 , 제 2 항고재판부)의 신설로 인한 연방대법원의 업무경감. <br> - 효율성제고방안의 결과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형사분 과의 판결에 대한 항소) <br> - 평가자들은 전체적으로 업무부담 증가보다는 경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 <br> - 이중심급 및 연방대법원에의 항소가능성을 통해 권리보호가 어느 정도 확대됨 <br> - 특히 국제 사법공조 시 소송절차가 연장됨 |

## 7.3 주의 전심법원으로 업무이관

연방대법원법은 연방주가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연방대법원의 사 전심급으로 상급심 법원들을 지정할 것을 (연방대법원법 제75조 2항, 제 80 조 2항, 제 86 조 2항 및 제 114 조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연방주에서는 단지 한 심급에 의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 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이중심급 운영). 나아가 최종적인 연 방주 단계 심급으로서 어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 자유로운 심리를 해야 한다(완전한 심리). 이런 변화는 한편으로는 연 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구제수 단의 보장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 }^{61)}$ 이중심급 운영의 예외들과 연 61) 아우어, 크리스토프 (2006): 연방사법제도의 재구성이 연방주에 미치는 영향, 실

방주 단계의 최종 판결이 상급심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원칙은 오직 공법적 사안에서 항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만 가능하다(여기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판결이다62). 연방주들은 이중 심급운영을 실행하기 위해 연방대법원법 제 130 조에 의거 두 가지 기 한을 받는다. 공법영역에서의 이중심급 운영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실현되어야 했다. 민형법 영역에서의 기한은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입각해서 영향평 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룬다.

- 이중심급 운영, 상급심법원의 개입 및 연방주에서의 심리 영역에서 연방주 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가?
- 발생한 변화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는가?

우리는 인터뷰 및 서류 평가를 통해 우선 일곱 개의 주에서 연방사 법제도의 개혁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베른, 테신, 발리스, 바트, 취 리히, 샤프하우젠, 졸로투른이 바로 그 일곱 개의 주들이다. 이는 인구 및 언어에 따라 선택되었다. 개혁에 미친 상이한 영향들 내지 연방주 상급심법원 조직 상의 차이점들은 이번 선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63)

오로지 연방주 상급심법원의 법관들에게만 설문이 이루어졌다. 아래 의 표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관이 완전하다고 할 수 는 없다. 이 개관은 오히려 우리의 설문에 응한 자들의 평가에 기초하 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동료들과 접촉을 했다. 특정한 변 화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배제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

[^11]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나타나는 전체 결과는 매우 일관되며 조사된 일곱 개 주의 경향을 제 대로 잘 반영하는 듯 보인다.

## D 7.14: 연방주 차원에서의 변화

| 연방주 | 새로운 상급심법원이 신설되었는가? | 상급심법원의 사전심급이 새로 신설되었는가? | 주최상급심법원 의 법정심리의 변화? |
| :---: | :---: | :---: | :---: |
| 베른 | - 그렇지 않음 <br> - 특별법원(강제조치법원 및 경제범죄법원) 신설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 테신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 발리스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 바트 | - 일부 그러함: 주법원에 사 회보장법을 위한 재판부 신설 | - 그러함 | - 그렇지 않음 |
| 취리히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br> - 그간 열리지 않던 사법제도위원회(Re-chtspflegekommission)가 한번 열림 | - 그렇지 않음 |
| 샤프하우젠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 경미하거나 거 의 없음 |
| 졸로투른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 그렇지 않음 |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일곱 개 주에서 상급심법원 및 사전심급의 신설 혹은 법정심리의 변화와 관련해서 단지 주변적인 변화만 가져왔 을 뿐이다. 게다가 베른, 바트, 샤프하우젠에서 포착된 이런 변화들은 미미한 수준이며 주로 기존제도 내부의 조직상 변화와 관계된 것들이 다. 이점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데, (연방주 단 계에서 큰 변화라 할) 업무부담경감효과의 전제가 전반적으로 결여되 어 있다. (새로운 법원 신설은 공법 영역에서의 전면개정을 근거로 할 때 대체로 필수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행정법원의 관할상의 변화만 생겼다.

직접면담에서 우리는 인터뷰에 응한 일곱 명의 주상급심법원 근무 자에게,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결과로 연방대법원에 어느 정도의 업무 부담 경감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 이러한 경감효과가 주차원의 변화에 기인할 경우에 한해서 말이 다. 실질적인 변화가 경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대상자들이 그 어떤 업무부담 경감효과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 다. 이런 평가는 연방대법원에서의 인터뷰에서 나온 평가와 대체로 합치한다.

다만 이 인터뷰에서는 장차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암시되었다. 첫째로 민형사법 영역의 이행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둘째로 민, 형사 소송절차 $(\mathrm{ZPO}, \mathrm{StPO})$ 의 변경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이다(이것이 연방사법제도의 개혁과 직접 결부된 것은 아닐지라도).

위에서 기술한 인터뷰 결과는 기록상으로 광범위하게 확인될 수 있 다. 아래의 두 도표에는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일곱 개 주의 최종 심 판결에 반해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항소 건수가 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도표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화된 건수를 보여준다. 두 번째 도표는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항소의 전체 건수를 보여준다.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D 7.15: 연방주 판결의 연방대법원으로의 이관


VD-바트 BE-베른 SO-졸로투른 ZH-취리히 TI-테신 SH-샤프하우젠 VS-발리스
출처: 연방대법원 자료; 2002년이 모든 연방주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가치 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2002년 지표가 100으로) 선택되었고, 당해 년도에 처리된 사건의 총합이 활용되었다.

## D 7.16: 일곱 개 연방주 사건이 연방대법원으로 인계된 건수 총합



출처: 연방대법원 자료; 당해년도에 처리된 사건의 총합이 활용됨.

제소 건수의 편차가 매우 큰데 연방주 사이는 물론 연방주 내에서 도 그러하다. 연방주 사이에서 (가령 샤프하우젠, 발리스 및 발트 사 이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극심한 편차를 설명하려면, 해당 연방주 에서의 판결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연방사법 제도의 개혁이 연방주들 사이의 이러한 편차의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지표가 없으므로 이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우리 가 전체적 상과 수치의 총합을 고찰해 보면, 연방대법원에 제기되는 제소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인식된다. 이런 추세는 2007년 부터(연방사법제도 개혁의 도입) 단지 약간만 아래로 내려가는 변화를 보인다. 이로써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이 최소한 조사된 7 개의 연방주 에서는 연방대법원의 가시적인 업무부담 감소효과를 낳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 발리스 주에서 제소가 급격히 감소한 일 또한 최소한 우리의 자료에 따른다면 연방사법제도 개혁과는 연관이 없다. 특히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과잉해석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왜냐하면 개혁의 영향이 얼마나 감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오직 2008년 한 해에 대해 서만 고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조사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D 7.17: 요약. 연방주 전심재판에 의한 업무 인계

| 조 치 | 총 평 |
| :---: | :---: |
| 연방주 차원에서 이중 심급운영의 신설 및 연 방주상급심법원의 완전 한 법정심리 | - 실질적 변화가 경미함(연방주 상급심법원의 신설, 연방주에 전심 신설, 연방주 상급심법원의 법정심 리의 변화) <br> -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효과가 거의 없음 |

## 8. 심리변경의 효과

세 가지 분야에서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법정심리의 본질적 변화 를 야기했다. 사회보장법, 연방행정법원의 법정심리, 그리고 연방주 상급심법원의 법정심리에 대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번째 규정 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논의한 바 있다.

## 8.1 사회보장법상 심리의 제한

사회보장법에서의 법정심리제한은 연방대법원의 업무경감의 관점에 서 도입되었다. 연방사법제도 조직법(OG)에 관한 연방법은 여전히 포 괄적인 법정심리64)를 요구했었다: 즉 연방사회보장법원은 이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수혜와 관련한 쟁점에서 법, 사실관계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했다. 이 규정은 연방대법원법과 더불어 변경되었다. 즉 사 회보장보험수혜를 위한 제소에서도 여타 모든 행정법상의 분쟁들의 경우와 똑같이 연방대법원의 법정심리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이 새로운 점이다. 다시 말해, 연방대법원은 법의 적용을 재검토하며 전심에 의 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판결의 토대로 삼는다.65) 그래서 연방대법원법 제 97조에 따르면 사실관계의 확정은 그것이 명백히 부 당하거나 위법을 토대로 할 경우, 그리고 결점을 제거하는 일이 소송 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일 경우에만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전의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입장에서 법정심리 제한의 예외 는 현재 그밖에 (연방대법원법 제 97조 2항에 따른) 군인보험이나 화

[^12]재보험의 금전수혜를 둘러싼 분쟁의 영역에만 존재한다. 이 입법평가 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조사했다.

- 사회보장법의 법정심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이로부터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이 감소되는가?

연방대법원의 설문대상자와의 직접면담을 통해 법정심리의 제한이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 라는 점이 고찰된다. 그래서 한 인터뷰 대상자는 루체른의 두 부서의 입장에서 법정심리의 제한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효과가 현저하다는 의견까지 피력하였다. 미해결사안의 수가 2007년 이래 현저히 감소했 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절차의 간결화 및 소송 기각의 증가가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관찰된다. 한편으로는 법정심 리 제한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소제기인이 사실문제로부터 법률문제를 도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다른 한편으로 연방대법원의 법관들이 법률문제라는 제목 하에서도 다시 사실관계에 몰두한다. 그 러나 이 두 효과가 업무부담 경감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아래 도표가 보여주듯이 양적인 온라인 설문의 결과는 인터뷰조사결 과를 단지 부분적으로만 확인해준다. 이 도표에서는 루체른의 제1, 제2 사회법 부서에서 근무하는 설문대상자들의 설문결과만 나타나 있다.

D 8.1: 루체른 연방대법원의 법정심리 제한에 대한 평가

사회보장분야에서 법정심리가 제한된 결과로서 당신의 개인적 업무부담이 $\qquad$


출처: 연방대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42.

두 사회법 부서의 설문대상자 가운데 약 4 분의 1 가량의 답변에 따 르면, 법정심리 제한에 따라 그들의 업무부담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 퍼센트는 반대로 법정심리의 제한에 따라 업무부담이 증가했다고 언 급했다. 설문대상자의 절반은 어떤 변화도 관찰할 수 없다. 온라인 설 문의 공개 답변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업무부담증가를 야기한 이 유가 해명되었다.
(1)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구분해야하는 의무로 인해 업무가 증가 했다.
(2) 법정심리의 제한은 실질적 문제제기에서 벗어나 형식법적 문제 제기로의 이행을 야기했다.
(3) 완전한 법정심리의 포기는 사회보장법에서 연방주들의 실무가 제각각 달라지게 하고 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에 있어서 무의미한 절차진행을 야기한다.
(4) 법정심리가 제한된다고 해서 법원의 본질적 개선이나 업무부담 경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법정심리의 제한은 소제기인의 입장에서 상황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5) 변호인들이 실제로 제소할 때마다 전심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사 실관계 인정을 비판하므로 업무부담은 경감되지 않는다.

이로써 인터뷰 및 설문의 결과를 통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해보험 영역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 간을 세 번째 자료로 가져왔다. 아래의 도표는 2005년에서 2008년 사 이의 변화를 보여준다.

D 8.2: 연방대법원의 상해보험 소송건의 처리 기간

| 연 도 | 한달 <br> 미만 | 1-6개월 | 7-12개월 | 1-2년 | 2년 이상 | 총 계 |
| :---: | :---: | :---: | :---: | :---: | :---: | :---: |
| 2005 | $0.8 \%$ | $24.5 \%$ | $58.2 \%$ | $14.3 \%$ | $2.3 \%$ | 883 건 <br> $(100 \%)$ |
| 2006 | $0.6 \%$ | $22.2 \%$ | $47.8 \%$ | $27.4 \%$ | $2 \%$ | 964 건 <br> $(100 \%)$ |
| 2007 | $2.7 \%$ | $43 \%$ | $29.8 \%$ | $24.3 \%$ | $0.2 \%$ | 1241 건 <br> $(100 \%)$ |
| 2008 | $7.5 \%$ | $55.7 \%$ | $28.6 \%$ | $8.2 \%$ | - | 1123 건 <br> $(100 \%)$ |

출처: 연방대법원

1 열과 2 열의 소송건수의 비율, 즉 처리기간이 한 달 미만 내지 6 개 월까지 걸린 판결의 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사회보장법에서의 법정심리의 제한이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 도록 하여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켰다는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건수의 절대치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매우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소송건수의 증가가 법 정심리제한으로 인한 업무 감소를 상쇄했거나 그러고도 남을 정도였 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조치들이 그것만 놓고 볼 때 실제로 연방대법원의 업무를 결과 적으로 확실히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법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에서의 법정심리의 제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 D 8.3: 요약 - 사회보장법에서의 법정심리의 제한

| 조 치 | 총 평 |
| :---: | :---: |
| 사회보장법에서 <br> 연 방 대 법 원 의 <br> 법정심리 제한 | - 업무부담경감효과가 있음. <br> - 업무부담경감효과는 부분적으로 제소인의 반응과 형식적인 <br> 추가업무에 의해 상쇄된다. |
| - 권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평가된다. |  |

## 8.2 연방행정법원의 심리전권 행사

연방행정법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소를 원칙적으로 완전한 법정심리 를 통해 심사한다(행정소송에 관한 연방법 VwVG 제49조).

이 규정은 물론 이전의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적용되었으며 연방사법 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연방행정사법에서의 법정심리 실행에 있어서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66) 그러나 연방행정법원이 전심의 재 량권행사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는 일에만 업무를 국한하도록 하는 다 른 해결책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오늘날 유효한 규정에서는 어떤 처분의 타당성이 최소한 한번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더 강했다.67) 따라서 본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완전한 법정심리(전심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연방행정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은 인터뷰에서 연방행정법원에서 완전 한 법정심리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현
66) 바이센베르거, 필립(2006): 연방행정법원, AJP/PJA 2006, 1512쪽.
67) 바이센베르거, 필립(2006): 연방행정법원, AJP/PJA 2006, 1512쪽; 연방내각: 2001 년 2월 28 일 연방사법제도 전면개정에 대한 공고, $\mathrm{BBl} 2001,4256$ 쪽.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연방행정법원의 인터뷰 대상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그런 평가를 내렸다.
(1) 첫째로 연방행정법원의 완전한 법정심리가 전심에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전심의 "타당성 검토 뒤에 숨는 일"이 방지된 다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망명자피보호권 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법정심리를 하는 것은 결코 생각 할 수 없는 일이다.
(2) 둘째로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소송에 있어서 입법자 가 정해 놓은 원칙이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매우 좁아서, 타당 성의 검증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3) 셋째로 (가령 인프라구조 구축에서와 같은) 복잡한 소송의 경우 행정부의 전문감정서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당성 검증에 필수적인 지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행정법원의 모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온라인설문의 결과는 아래의 도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D 8.4: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완전한 법정심리에 대한 평가

당신은 연방행정법원이 이의가 제기된 처분의 타당성도 검증하도록 하는 (완 전한 법정심리에 관한) 규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의미있음
대체로 의미없음
전혀 의미없음무응답

출처 : 연방행정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74.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타당성 검증의 유지는 설문대상자의 대다수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에 필요한 재원(인력 및 노 하우)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두 가지 다 명백히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1) 70 퍼센트의 설문대상자들이 연방행정법원이 전심 판결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2) 또한 연방행정법원의 법관 및 법원서기 가운데 80퍼센트가 타당 성 검증에 필요한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온라인 설문에서의 주관식 답변은 우선 양적 답변을 입증한다. 즉 2 단계 소송절차에서 최종심급에 의한 완전한 법정심리의 행사는 지극 히 중요한 것으로 고찰된다.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다 음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즉 연방행정법원은 완전한 재량권 심사 에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몇몇 경 우 법정 심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전심재판 작업의 부 족한 질로 인해 완전한 법정심리의 행사는 어려워진다. 총괄적으로 우리는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전체결과에 도달한다.

D 8.5: 요약.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완전한 법정심리의 수행

| 조 치 | 총 평 |
| :---: | :---: |
| 연방행 정 법 원에 의한 완전한 법 정심리 행사 | - 필수적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됨 <br> - 실현가능성(인력 및 노하우의 수용범위)이 주어져 있다. <br> - 매우 복잡한 사건 내지 전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 을 경우 어려움이 있음. |

## 9. 법적수단의 변경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두 가지 새로운 상소의 신설을 가져왔다. 보 충적 헌법소원과 통합소원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상소 를 자세히 고찰한다.

## 9.1 통합상소제도의 신설

연방사법제도 개혁에서 핵심적인 혁신 가운데 하나는 연방대법원에 제소 시 상소의 선택이 단순화되었다는 점이다.

통합소원이, 정확히 말해 민법, 형법 및 공법 사안에서의 상소가 연 방사법제도 조직법(OG)에 따른 여러 가지 상소를 대신한다. ${ }^{68)}$

통합소원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에 이르는 단계 및 소제기절차가 단순화되고 이로써 소제기인 측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 이다. ${ }^{69)}$ 더욱이 법적 수단의 선택 시 경계설정의 문제들이 제거되 어야 한다. ${ }^{70)}$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연방사법제도 조직법(OG)하에서 는 같은 사건을 때때로 두 가지 병행되는 상소절차를 통해 취급해 야 했었는데, 통합소원의 입법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약속하였다. ${ }^{71)}$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영향 평가는 다 음과 같은 질문들을 검토했다.
68) 마더, 루치우스 (2006): 연방사법제도의 개혁: genèse et grands principes, 실린 곳: Bellanger, François; Tanquerel, Thierry (편): Les nouveaux recours fédéraux en droit public, Genf/Zürich/Basel, 15쪽.
69) 쿤, 마티아스 (2001): 통합소원 - 권리보호의 증대 내지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 감?, 실린 곳: 쉰들러, 벤야민; 슐라우리, 레굴라 편: 단일한 소송절차를 향한 도정 에서, 취리히, 96쪽 이하.
70) 쿤, 마티아스 (2001): 통합소원 - 권리보호의 증대 내지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 감?, 실린 곳: 쉰들러, 벤야민; 슐라우리, 레굴라 편: 단일한 소송절차를 향한 도정 에서, 취리히, 71쪽 이하.; 연방사법제도 조직법 $(\mathrm{OG})$ 하의 상소체계에 대해서는 연 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 연방사법제도 전면개정에 대한 공고, BBl 2001 참조.
71) 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 연방사법제도 전면개정에 대한 공고, BBl 2001 , 4233쪽 참조.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 통합소원의 도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법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소 제기인의 입장에서 항소 시의 절차가 이를 통해 단순해지는가?
-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경우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효과가 나타 나는가?

세 연방법원의 근무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소원으로 인해 소제기 인의 입장에서 소송절차가 분명히 단순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사법제 도) 개정은 이로써 권리보호의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세 가지 법의 영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통합소원이 존재하고 실 행과정에서 개별 부서 내에 지나치게 특수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비판된다. 이로써 법률상 해석에서 예견되는 것보다도 더욱 심대한 구 분이 생길 우려가 있다.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 업무부담 경감효과는 통합소원의 경우 대체 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인터뷰 대상자의 견해에 따르면 상소 건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상소내용은 현재 더 양이 많고 통합소원은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별 문서들이 정의되어야 하므로 심지어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복잡한 특정 표현들은 통합소원을 통해 표준화된 문장으로 대 체될 수 있고 이로써 법원의 업무가 경감된다는 견해도 있다.

양적 온라인 설문의 결과는 인터뷰의 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아래의 도표는 연방대법원의 근무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 D 9.1: 통합소원과 권리보호

민법, 형법 및 공법에서 통합소원의 도입이 법적 보호를 제고했는가?


매우 그렇다 $\square$ 대체로 그렇다 $\square$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quad$ 무응답

출처: 연방대법원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25.

연방대법원의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절반이 통합소원의 도입을 통해 권리보호가 제고되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세부적 분석은 부서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형법 부서 및 제2사회법 부서의 설문대상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자주 통합소원이 권리보호를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까지 사법 및 공법에서 경계 설정의 어려움이 더 자주 있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합소원 도입의 결과 업무부담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 다. 즉 연방대법원의 법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통합소원의 도입이 자 신들의 업무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변한다.

## D 9.2: 통합소원과 업무부담

민법, 형법 및 공법에서 통합소원 도입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신의 개인적 업 무부담이 $\qquad$


출처: 연방대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31.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통합소원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이지 않다. 인터뷰에서 권리보호가 제고되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다른 설문대상자들은 이를 다 시 부정한다. 일련의 설문대상자들은 나아가 기존 법적 수단(상소)의 폐지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아래의 진술들은 각각 적어도 2 명 에 의해 거론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명확한 중점은 인식되지 않는다.
(1) 권리보호는 그대로지만, 이전에는 두 가지 상이한 법적 수단을 필요로 했던 소원이 이제는 한 가지 법적수단 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
(2) 변호사의 업무가 통합소원을 통해 경감되었다.
(3) 재심청구(Nichtigkeitsbeschwerde) 및 연방주간 조약에 대한 제소 (Staatsvertragsbeschwerde)의 폐기는 결과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법 정심리의 제약을 가져왔다. 즉 가령 연방법상의 혹은 연방주간 조약법상의 관할규정들이 사전조치들과 관련해서 더 이상 자유 롭게 검증될 수 없다.
(4) 단일화는 특수분야에서 오히려 단점을 수반하는데, 가령 연방사 법제도 조직법(OG)에 따른 이중과세항고의 규정은 합리적이며 적용 가능했다. 연방대법원법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통합소원의 도입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 D 9.3: 요약. 통합소원의 신설

| 조 치 | 총 평 |
| :---: | :---: |
| 통합소원의 도입 | - 결과는 전체적으로 아직 거의 일관 <br> 성이 없다. |


| 조 치 | 총 평 |
| :---: | :--- |
|  | - 절차가 단순화됨으로써 근본적으로 <br> 소제기인 입장에서는 권리보호가 어 <br> 느 정도 개선되 것으로 추측된다. <br> -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효과는 나 <br> 타나지 않았다. |

## 9.2 보충적인 헌법소원의 신설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원래 하나의 상소형식(통합소원)만을 신설하 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 }^{72)}$ 그러나 의회의 심의는 예정된 연방대법 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접근제한 (연방대법원법 제 74조 및 85 조에 따른 소송가액의 한계, 연방대법원법 제 83조에 따른 배제목록)으로 인해 권리보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보충적 헌법소원의 신설에 합의했다. 민사, 형 사 및 공법 사안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에 그 어떤 정규의 상소도 제기 할 수 없는 한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법 제 113 조에 의거 이에 따라 연방주최종심급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한다. 반면에 보 충적 헌법소원은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슈바이처(2006)에 따르면, 보충적 헌법소원은 신설된 통합소원 체계 와 공법 분야에서의 기존 상소규정을 연결한다. 이 기존규정은 결정적 으로 행정법원항소 및 헌법소원의 중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 }^{73)}$
72) 슈바이처, 라이너 J. (2006): 새로운 연방대법원법에 따른 보충적 헌법소원, 실린 곳: 에렌첼러, 베른하르트; 슈바이처, 라이너 편: 연방사법제도의 재조직 - 실제에서 의 혁신과 효과, 상 갈렌, 213쪽; 연방내각(2001): 2001년 2월 28일 연방사법제도 전 면개정에 대한 공고, 4233쪽.
73) 슈바이처, 라이너 J. (2006): 새로운 연방대법원법에 따른 보충적 헌법소원, 실린 곳: 에렌첼러, 베른하르트; 슈바이처, 라이너 편: 연방사법제도의 재조직 - 실제에서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이로써 널리 퍼진 의견에 따르면 보충적 헌법소원은 명칭만 바꾼 헌 법소원의 속행이다. 이런 점에서 보충적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고찰 해보면 전혀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출발점으로 해서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집중했다.

- 보충적 헌법소원의 신설이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 이 수단을 포기한 것과 비교할 때 그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을 대개 올바른 결 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정은 인터뷰에 따르면 사실적으로 권리보호 가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 다. 설문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접근제한(소송가액 제한)의 도입을 통한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의 잠재적인 감소는 보충적 헌법소원의 신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상쇄된다. 권리보호는 2007년 이전의 상황 과 비교해서 대략 그대로이다. 설문대상자들의 의견으로는 구 상소규 정과 보충적 헌법소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적인 온라인 설문에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의 근무자들에게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을 통해 이 법적 수단을 포기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서 그들의 업무부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D 9.4: 보충적 헌법소원의 업무부담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으로 인해 이 법적수단을 포기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당신의 개인적 업무부담이 $\qquad$

의 혁신과 효과, 상 갈렌, 226쪽.


출처 : 연방대법원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24

설문대상자의 23.4 퍼센트가 이 법적 수단을 포기했을 경우보다 보 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을 통해 그들의 업무부담이 높아졌다고 답변한 다. 거꾸로 말해서 이 법적수단을 포기할 경우 업무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설문대상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의 견해 에 따르면 보충적 헌법소원의 포기는 그들의 업무부담에 있어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결과는 권리보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설문대상자의 다수는 오늘날의 규정을 통해 권리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확신한다. 양적인 답변 중 단 한 경우에만 보충적 헌법소원의 폐지가 요구되었다. 이에 반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있어 불충분한 권리보호가 여러 번 지적되었다.

D 9.5: 보충적 헌법소원의 권리보호

보충적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법적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는가?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출처 : 연방대법원의 온라인-설문; 응답자수 $=120$.

아래의 표는 보충적 헌법소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다.

## D 9.6: 보충적 헌법소원에 대한 요약

| 조 치 | 총 평 |
| :---: | :---: |
| 보충적 헌법 소원의 도입 | -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은 올바른 것으로 평가된다. <br> - 보충적 헌법소원에서 권리보호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br> - 설문대상자들 일부에 따르면 보충적 헌법소원을 포기할 경우 업무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br> - 설문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보충적 헌법소원은 연방대법 원에의 접근제한에 따른 업무부담경감효과를 일부 상쇄한다. |

## 10. 기타 선택된 조치

연방사법제도 개혁은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기타 재판절차를 변화시 켰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선별된 관점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즉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 법률문제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가능 성, 소송가액 제한의 상향조정, 간이소송절차로 재판할 가능성의 확대.

## 10.1 기본원칙적 의미의 법적문제

연방대법원법은 연방대법원이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 문제에 있어서 5 인이 배석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법관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연방대법원법 제20조 2항). 나아가 소송가액 의 한계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 문제에서 유효하지 않다(이 관점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개정은 그 자체로 연방대법원이 근본적인 의미 를 지닌 문제들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할 것이 다. 그러나 5 인 배석 판결이 업무부담증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명 백했다. 따라서 영향평가는 연방대법원의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조사했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사법제도 개혁 이후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제들을 더 많이 판결하는가?
-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연방대법원의 인터뷰는 판결이 5 인배석제로 내려져야 한다는 규정 이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형사문제 영 역의 국제 사법공조의 틀 내에서의 규정(여기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제 기할 수 있는 상소가 단지 강제처분의 경우 및 그 사건이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방대법원법 제84조 1항)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에 나타나는 영향은 대체 로 미미한 편이다. 즉 모든 설문대상자는 근본적인 사안들에 있어서 심리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상응해서 업무부담의 중대한 변 화 또한 뒤따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우선 연방대법원이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률문제에서 더 많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지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의 여부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업무부담을 증가시켰는지의 여부가 질문되었다.

## D 10.1: 연방대법원의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

- 당신은 개혁에 따라 (법)원칙과 관련 중요성을 띄는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가 증가했다고 여기십니까?
-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업무부담을 증가시켰습니까?


출처 :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 80 .

설문결과는 $1 / 3$ 의 응답자가 현재 연방대법원에 근본적 의미를 지니 는 법적 문제에 대한 사건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 온라인 설문은 따라서 인터뷰 결과와 비교할 때 더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는 업무부담에 준 영향과 관련 단지 $5 \%$ 의 응답자 만 업 무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다수는 업무부담이 늘지 않았거나 미미 하게 증가했다고 답해 온라인 설문결과는 질적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 에 근접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터뷰와 설문에서 조사된 결과를 연방대법원 통계조사의 수 치와 비교했다. 다음의 표는 연방대법원 5 명의 법관들이 판결한 사건

수의 변화를 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원탁형절차(Zirkulationsverfahren) 와 배석형절차(Sitzungsverfahren)에서의 판결들을 구분했다.

D 10.2: 원탁형절차 재판 구성: 참가 법관 수에 따른 분류

|  | 원탁형절차 재판 (\%) |  |  |  | $\begin{gathered} \text { 전체 } \\ \text { 사건 } \\ \text { 수 } \end{gathered}$ | 배석형절차 재판 (\%) <br> 참가 법관 수 |  |  | 전체 <br> 사건 <br>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 법관 수 |  |  |  |  |  |  |  |  |
| 년 도 | 1 | 3 | 5 | 7 |  | 3 | 5 | 7 |  |
| 2002 |  | 84 | 15.6 | 0.4 | 2,767 | 24.6 | 69.4 | 6 | 134 |
| 2003 |  | 82.8 | 17 | 0.1 | 2,793 | 25.8 | 69.7 | 4.5 | 89 |
| 2004 |  | 84.4 | 15.4 | 0.2 | 2,944 | 5.3 | 90.4 | 4.3 | 94 |
| 2005 |  | 81.1 | 18.6 | 0.2 | 3,018 | 7.5 | 91.4 | 1.1 | 93 |
| 2006 |  | 84.1 | 15.7 | 0.2 | 3,248 | 5.3 | 94.7 | 0 | 75 |
| 2007 | 18.9 | $\begin{gathered} 72.6 \\ (90)^{*} \end{gathered}$ | $\begin{gathered} 8.4 \\ (10)^{*} \end{gathered}$ | $\begin{gathered} 0.1 \\ (0.1)^{*} \end{gathered}$ | 6,406 | 18.5 | 77.2 | 4.3 | 92 |
| 2008 | 28.5 | $\begin{gathered} 63.1 \\ (88)^{*} \end{gathered}$ | $\begin{gathered} 8.4 \\ (12)^{*} \end{gathered}$ |  | 5,317 | 3.9 | 96.1 |  | 76 |

출처 : 연방대법원

* 단독법관(Einzelrichterinnen und Einzelrichter)의 판결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퍼센트 수치

우리는 위의 표에서 5 인 배석에서 판결된 사건의 비율이 늘지 않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원탁형절차 판결에서는 이 비율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데이터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엄무부 담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 서 연방대법원에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이 집 중되는 추세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관찰된 사건 수에 간이소 송절차에 의한 사건 수가 포함되었는가 여부에 상관이 없다. 물론 조 사대상 숫자가 의미 유효성을 유지하기에 약간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3 인 배석 판결의 경우 이것이 연방대법원법 제 109 조에 따른 간이소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송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데이터 는 변경으로 인해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이 연 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다는 인터뷰 결과와 설문결과 다시 확인시켜준다. 설문에서 보여주었던 바, 사건들이 실제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는 통계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 었다.

## 10.3: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에 관한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 -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수의 변 <br> 화가 일관되지 않다: 인터뷰는 이러한 증가를 부정하 |
| 근본적 의미를 지니 <br> 는 법적 문제의 연 <br> 방대법원 집중 설문은 이와 반대로 그 증가를 확인한다. | -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은 늘지 않았다. <br> - 통계는 5인 배석 판결의 상대적 비율이 늘지 않았음 <br> 을 보여준다. |

## 10.2 소송한정액의 상승과 사회보장법상 비용부담의무의 도입

1959년부터 2007년까지 소송가액 요건은 8,000 프랑켄을 유지해왔 다: 소송가액이 이보다 작은 사건은 연방대법원 제소할 수 없었다. 스 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서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액수가 상향조정되었다. 연방대법원법 제74조에 따라 2007년부터 민사법에서 소송가액 제한이 다음과 같이 다시 정해졌다:
(1) 소송가액이 최소 30,000 프랑켄 이상이 될 경우 연방대법원 제소 가 허가된다.
(2) 임대법과 노동법상의 제소는 소송가액 15,000 프랑켄부터 가능하다.
(3) 공법에서 소송가액 제한도 새롭게 정해졌는데 국가책임사건은 30,000 프랑켄 그리고 공법상 노사관계관련은 15,000 프랑켄이 되었다(연방대법원법 제85조 1항).
(4) 원래 계획한 바 있던 형사사건에서 소송가액 제한과 관련된 변 경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법은 소송가액 제한의 예외조항을 둘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즉 "(법)원칙과 관련 중요성을 띄는 법률문제"로 묘사되는 새 로운 모든 소송들은 - 비록 그것이 최저소송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 도 - 연방대법원에 다룰 수 있도록 했다. ${ }^{74)}$ 그러나 이 법은 이러한 법 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법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 }^{75)}$

소송가액 제한의 인상 이외에 사회보장법상의 비용규정(Kostenregelung)과 관련된 변경이 도입되었다.
(1) 연방대법원의 모든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보험급부 관 련 재판도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이 새로운 것이다. 이 조처는 "쓸모없는" 소송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 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76)}$ 선납이 요구되는 소 송비용은 연방대법원법 제65조 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의 경우 200 ~ 1,000 프랑켄으로 다른 법 영역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13]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2) 동시에 무료권리보호 청구권을 규정하여 빈곤층이 최고법원에 제소할 길을 보장하였다. ${ }^{77)}$

소송가액 제한 인상과 사회보장법의 비용부담의무화와 관련하여 입 법평가는 다음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3) 위의 두 규정이 연방대법원의 업무를 경감하였는가?

질적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문항과 관련하여 하나의 통일된 대 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법관과 법원서기는 소송가액 제한의 인상으로 인한 중요한 변경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비용부 담의무를 갖는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을 유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가 의도한 효과는 인터뷰 응답자의 관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무료 권리구제수단 찾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루체른 연방대법원에서 그것이 불가능함이 통보되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 경우 대부 분 이러한 사람들은 500 프랑켄 소송비용을 선납하였다고 말했다. 응 답자들이 보기에 비용선납제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업무비용이 증가할 위험조차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비용선납에 대한 수납비가 실제 소송비용보다 클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빈곤층에 대한 심사문제는 비용부담의무제를 도입을 바로 업무부담 증가로 이끌 수도 있다고 했 다. 변경된 소송가액 제한과 비용부담의무제의 효과에 대한 [인터뷰 의] 평가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온라인 설문을 통한 양적조사에 서 다시 확인되었다.

[^14]D 10.4: 소송가액 제한 및 소송비용부담 심사에 대한 평가


출처 :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법관과 법원서기 중 $5 \%$ 만 소송가 액 제한 인상이 업무부담을 줄였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고 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뷰 응답자의 답변은 온라인 설문에서 재확인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소송비용부담제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위의 그림에서는 연방대법원 사회보장법 관련 부 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응답만 열거했다. 이들 중 압도적 다수는 소 송비용부담제 도입으로 연방대법원의 업무량이 변화했다고 믿지 않았 다. 반면 약 $30 \%$ 의 소수만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업무량의 변 화를 가져왔다고 대답했다: 약 $17 \%$ 는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답을 했고 대략 같은 비율의 응답자들은 업무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업무부담 축소효과가 수납, 무료법률 구조심사 등의 업무부담으로 상 쇄되었다고 해석했다.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전반적으로 소송가액 제한 인상과 소송비용부담제 도입이 업무량 감소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D 10.5: 소송가액 제한 인상과 사회보장법 관련 소송비용부담의무제 도입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소송가액 제한인상 | 연방대법원의 업무경감효과를 확인할 <br> 수 없음 |
| 사회보장법 관련 소송비용부담의무도입 | 효과 확인: 그러나 업무부담 증가와 경 <br> 감이 서로 상쇄됨 |

## 10.3 연방대법원 간이소송을 통한 판결 기회의 확대

연방대법원법 제 20 조 1항의 정규절차(ordentlichen Verfahren)에서 연 방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3 인 배석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5 인 배석으로 판결을 하도록 한다. 스위스연방사법제도 개혁은 특정 판결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간이소송 절차를 통해 재판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명백한 증거불충분(offensichtlich unzulässig) 또는 분명한 근거불충분(offensichtlich unbegründeter), 그 뿐 아닌 명백한 근거가 있는(offensichtlich begründeter) 소제기의 간략한 실행을 규정한 연방사법제도 조직법(OG, Gesetz über die 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의 간이소송절차관 련 조항으로 이미 가능했었다(제 36a 연방사법제도 조직법). ${ }^{78)}$

그러나 연방대법원법으로 이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78) 스위스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부터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전면개혁을 위 한 임무(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1 2001, S. 4346쪽.
(1) 이에 심리불속행재판(Nichteintretensentscheide)은 제 108 조에 따라 새 로이 단독법관에 의해 재판될 수 있다. 단독법관에 의한 절차의 대상은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불충분 제소; 근거불충분한 제소 및 소송중독적(querulatorische) 또는 법률악용 제소이다. ${ }^{79)}$

재판이유는 이유불충분에 대한 짧은 보고이면 충분하게 되었다. (연 방대법원법 제 108 조 3 항).
(2) 연방대법원법 제 109 조는 특정한 심리불속행재판(Nichteintretensentscheide)의 경우 간이소송절차에서 3 인 배석으로 판결할 수 있음 을 명시했다. 해당되는 사건은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 법 적 문제, 또는 그리 의미가 크지 않은 사건이다. 또한 연방대법 원법 제 109 조 2 항은 3 인 배석에서 만장일치가 될 경우 또한 기 각(abweisende) 및 인용(gutheissende)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 80 ) 이점까지는 연방대법원법 제 109 조는 연방 사법제도 조직법에 대해 변경을 야기하지 않았다.

입법평가는 간이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항을 조사하였다:

- 간이소송절차가 연방대법원의 업무를 경감하였는가?
- 간이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보호가 제한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발생했는가?

79) Aemisegger, Heinz (2006): 간이소송절차(Vereinfachtes Verfahren), in: Ehrenzeller, Bernhard; Schweizer, Rainer J. (발행인):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재조직 - 실제 혁신과 영향(Die Re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 (Neuerungen und Auswirkungen in der Praxis), St. Gallen. 486쪽에 이어.
80) Aemisegger, Heinz (2006): 간이소송절차(Vereinfachtes Verfahren), in: Ehrenzeller, Bernhard; Schweizer, Rainer J. (Hrsg.):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재조직 - 실제 혁신과 영향(Die Re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 (Neuerungen und Auswirkungen in der Praxis), St. Gallen. 490쪽.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연방대법원의 개별 인터뷰에서 간이소송절차의 기회가 확대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단독법관에 의한 재판 가능성 확대와 관 련하여 업무부담이 줄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판결 (연방대법원법 제8조 1항)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때문에 그리 높지 않 았다. 이에 대해 3 명의 인터뷰 응답자는 단독판결의 가능성을 더 확 대해야하며 연방대법원법 제109조 2항에 따른 기각을 단독법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방대법원의 응답자들은 연방 대법원법 제108조 와 제109조에 의한 권리보호가 제한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법관과 법원서기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인 온라인-설 문에서도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 와 제 109 조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 다. 결과는 인터뷰에서 발견된 바를 (대부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D 10.6: 간이소송절차(VEREINFACHTES VERFAHREN)

간이소송절차(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 와 제 109 조)를 통한 재판 가능성이 당신 의 업무부담을 $\qquad$


출처 : 연방대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124.

이 그림은 $50 \%$ 의 법관들이 간이소송절차의 확대로 인해 업무부담 이 줄었다고 보고했음을 보여준다. $1 / 3$ 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와 반대 로 어떠한 영향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고 업무부담이 늘었다는 보고는 없다. 물론 법관들의 응답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업무경감효과는 법 원서기들에게서도 보고된다.
양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간이소송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 절차의 남용 우려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2 명이 간이소송절차가 어떻게 업무부담을 늘릴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 관련 판결 사건관련 부서대 표들의 경우였다. 그 외 법관들의 부서에서는 반대로 업무가 경감되 었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 명이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의 간이소송절 차가 상고심절차(Revisionsverfahren)에도(연방대법원법 제121조 이하) 확대되길 희망하였다.

통계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어디까지 재확인시켜주는 가? 다음의 표는 순환소송절차에서 2007년 이전과 이후 배석 법관의 수에 따른 재판의 분포를 비교한다.

D 10.7: 순환소송절차에서 판결 구성: 배석법관 수에 따라 구분

|  | 순환소송절차 판결81) |  |  |  |  | 연방사법제도 조직법에 따른 간이 소송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관 } \\ & \text { 1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법관 } \\ & 3 \text { 3인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법관 } \\ 5 \text { 인 } \end{gathered}$ | 법관 <br> 7인 | 중간합계 |  |  |
| 2002 |  | 2,323 | 432 | 12 | 2,767 | 1,476 | 4,243 |
| 2003 |  | 2,313 | 476 | 4 | 2,793 | 1,451 | 4,244 |
| 2004 |  | 2,485 | 452 | 7 | 2,944 | 1,427 | 4,371 |
| 2005 |  | 2,449 | 562 | 7 | 3,018 | 1,503 | 4,521 |
| 2006 |  | 2,732 | 510 | 6 | 3,248 | 1,605 | 4,853 |
| 2007 | 1,496 | 5,737 | 661 | 8 | 7,902 |  | 7,902 |
| 2008 | 2,122 | 4,691 | 626 |  | 7,439 |  | 7,439 |

출처 : 연방대법원.
81) 순환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제외한 사건은 사건수가 적어 도표화하지 않았음.

TEILI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이 표는 2007 년 $19 \%, 2008$ 년 $29 \%$ 의 사건이 법관 1 인에 의해 판결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이것은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에 따른 것이 다). 2008년 이러한 사건수의 상승은 이 제도가 도입기를 거친 이후 자주 활용되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2007년 이전에는 단독법관 재 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연방대법원이 업무 량이 줄 수 있었다. ${ }^{82)}$

D 10.8: 연방대법원 간이소송절차 도입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와 |  |
| 제109조에 따라 간이소 |  |
| 송절차로 재판 가능 |  | | - 업무경감 효과가 존재, 특히 법관의 경우 경감효 |
| :--- |
| -현저함. 경감효과의 상승폭은 제한적. |
| - 연방대법원 인터뷰 응답자의 관점에서 권리보호의 |
| 축소현상은 관찰할 수 없음. |

## 11. 사법개정의 효과

제6장에서 우리는 스위스연방 사법제도개혁이 연방주 법원에서 준 변화를 소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혁효과가 연방주 이중심급에 미 친 영향도 설명했다(제7장).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 상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 11.1 주의 진행, 업무 및 법적수단에 대한 개정효과

연방주 차원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사를 하였다. 먼저 7개 연방주에 최고법원 대표들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어 연방주 법원의
82) 3 인 배석 판결 중 몇 건이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평가문 항이 이들 조사에 핵심적인 것이다:

- 전심법원, 진행절차, 관할의 변경이 일상업무와 업무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 전심법원, 진행절차, 관할의 변경이 판례의 수준/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 었습니까?

아래의 그림은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개혁이 법관과 법원서기의 일상업무와 업무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준다.

## D 11.1: 연방주 법원의 일상업무에 준 개혁의 영향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으로 당신의 일상업무와 업무량이 변화했습니까?

예 아니오 $\square$ 모름

출처 : 연방주 상급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213.

응답자의 반 이상이 개혁이 그들의 일상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 했다. $1 / 3$ 은 이와 반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 변화들이 주로 소송절차 및 (업무)진행절차의 개혁에서 비롯되었고, 새로운 전심법원의 설치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 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소송절차 및 (업무)진행절차의 변경이 연방주 법원의 업무량을 늘렸는지 아니면 줄였는 지였다.

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 D 11.2: 개혁이 연방주 법원의 업무부담에 준 영향

>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이 당신의 개인 업무부담을
$\qquad$


출처 : 연방주 상급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212.

설문은 $70 \%$ 넘는 응답자가 업무량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음을 보 여준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변경들이 주로 업무량에 대해 중립적으로 진행되었고 각각의 일상업무에 그다지 크지 않게 관련되었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이것은 이러한 변경들이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 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대법원법의 요청사항이 민사 및 형사법에도 적용되는 2012 년부터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약 $1 / 5$ 응답자는 이와 반대로 개혁으로 인한 업무가중을 관찰했다. 이것도 또한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니다. 왜 냐하면 연방주 전심법원에 (업무)요구를 높이는 개혁이 점차로 연방의 과제를 연방주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질적인 인터뷰에서 특히 행정법의 변경과 몇몇 형사법에서의 변경이 연방주의 인력수요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업무에 미친 영향과 함께 연방주 법원의 설문응답자 들에게 변경이 판례의 수준/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도 록 했다. 이와 관련한 평가는 명확했다: 지금까지 전심법원의 변경과 진행절차의 변경은 판례의 수준/질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 D 11.3: 판례의 질 변화

당신이 볼 때에 당신이 근무하는 법원의 판례의 질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 혁을 통해 변화되었습니까?)


출처: 연방주 상급법원 온라인-설문; 응답자수=212.

이러한 부차적인 변화들은 왜 일어났는가? 온라인-설문조사의 주관 식 답변들은 이에 대해 2 개의 시사점을 준다:
(1) 우선 일련의 조사대상자들은 주법원들이 이미 개혁 이전에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별로 바뀌지 않았다 고 답변했다. 또한 몇몇 연방주들에서는 전심절차의 변화와 관련 하여 전혀 변화하지 않았고 따라서 판례의 질도 바뀌지 않았다.
(2) 법관들 중 일부는 이 변화들에서 자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 았고 따라서 판례의 질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절차의 변화들이 그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언급할만 가치가 없어서 아직까지 판례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 D 11.4: 연방주들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영향에 대한 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 - 전체적으로 일상 업무에는 별로 영향을 주 <br> 지 않았다. <br> 의 빔절차, 관달, 절치 주진행원들의 업무 <br> 부담에 주는 영향 |
| - 주법원들의 업무부담이 단지 몇몇 부분에서 <br> 증가하였다. <br> - 과반수의 조사대상자들은 업무부담에 변화 <br> 가 없다고 답했다. |  |
| 전심절차, 관할, 절차진행에서 <br> 의 변화들이 판례의 질에 주 <br> 는 영향 | - 변화가 없다. |

## 11.2 주법원의 사법개정 효과

이 절에서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연방주들에 대한 3 개의 선 별된 측면들에 대해 다룬다. 법관에 의한 전심절차 확장과 주법원의 마지막 심급의 완전한 심리(연방대법원법 제 110 조)는, 연방대법원에 더 적은 사건이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여과기능을 한다(이에 대 해서는 Kapitel 7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반대로 연방형사법원 신설을 통해 연방주들은 국제 형사소추 영역에서의 복잡한 사건들(경제범, 조 직범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입법평가는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설 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1) 법관에 의한 전심절차의 확장과 연방대법원법 제 110 조의 신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이 더 이상 연방대법원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여과기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가?
(2) 연방주들은 연방형사법원 신설을 통해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벗 어났는가?

우리는 우선 여과기능에 대해 살펴보겠다. 주법원들에 근무하는 조 사대상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D 11.5: 연방주들에서 법관에 의한 전심절차 도입으로 인한 여과기능의 정도

당신이 보기에 연방주 차원에서 법관에 의한 전심절차를 확장한 것이 현재 연방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는 데에 성공했습니까? (즉 연방주의 심급이 연방대법원을 위한 여과기능을 충족합니까?)


출처 : 상급심주법원들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대상자수=212

이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여과기능이 생겼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으 로 나타난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4 분의 1 에 약간 못미치는 수가, 전심절차 신설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사건수가 줄었다 고 생각한다. 약 $50 \%$ 의 조사대상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본다. 주 목할만한 것은 거의 $30 \%$ 의 조사대상자들이 이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관식 답변들에서는 이러한 답변들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변화가 없다고 보는 사람 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했다:
(1) 다수의 변화들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최근에야 실행되었다 (형사 및 민사법 영역에서 연방대법원법에 따른 조정을 위한 기 간은 2011년 12월 31일에 경과하고 공법 영역에서는 2008년 12 월 31 일에 경과한다). 그러므로 여과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2)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과 무관한 마수의 변화들이 여과기능을 상쇄(또는 그 이상)하고 있다: 그 예로 변호사의 수 증가와 소제 기인들이 소송을 하고자하는 경향이 커진 것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전심절차를 확장한 것이 소송꾼(Querulant)들을 예방하는 데 에 별 효과가 없다.

여과기능이 있다고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1) 심급을 추가한 것은 그 자체로 일정한 여과기능을 갖는다.
(2)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비용부담의무와 심리 제한을 둔 것은 여과 기능을 발휘했다.
(3) 외국인법에 따른 행정구류(ausländerrechtliche Administrativhaft) 영 역에서 몇몇 연방주들에서 강력한 여과기능이 보고된다.

연방형사법원 신설은 주로 국제범죄 소추 및 경제범죄 소추의 효율 성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다. 작은 연방주들은 이 영역에서 업무부담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법원들에서 근무하는 조사대상자들에게 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다.

D 11.6: 연방형사법원 신설이 연방주들의 형사사법제도에 미친 영향

[^15]

출처 : 상급심주법원들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일상업무가 형사법 영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조사함)

이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로 큰 업무부담경감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는 어떠한 효과도 관찰하지 못했다. 4 분 의 1 보다 약간 많은 수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질적 인 터뷰들에서도 결과는 같다: 작은 연방주들은 업무부담이 적은 이유를 사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보고("우리는 작은 주라서 국제적인 형사 사건이 매우 드물다"), 큰 연방주들에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 사법공조 영역에서의 결정에 대 한 이의제기이다. 여기서는 연방주 대신에 연방형사법원에 직접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 D 11.7: 국제 사법공조에 대한 이의제기사건을 연방형사법원이 인수한 것의 영향

[^16]TEILI : 진행, 업무이관, 법적수단의 변경


조사대상자의 5 분의 1 에 약간 못미치는 수가, 업무부담경감효과가 발 생했다고 보고한다. 약 $45 \%$ 는 (비교적) 아무런 업무부담경감효과도 나 타나지 않았다고 하고, $37 \%$ 는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들에서는 이 업무부담경감효과의 배경에 대해 아무런 추가내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주법원들에서 근무하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연방대법원법 제 110 조의 영향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문은 연방주의 마 지막 심급으로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자유롭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D 11.8: 주법원들에 의한 사실관계의 자유로운 심사에 관한 조문(연방 대법원법 제 110 조)의 영향

연방대법원법 제 110 조(주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법의 적용에 대해 자유롭게 심사)가 당신의 일상업무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출처 : 상급심주법원들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212.

결과는 명백하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직 약 $4 \%$ 의 답변자들만이 자신의 일상업무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른 측면들에 대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D 11.9: 선별된 측면들의 주법원들에 대한 효과 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 - 미미한 정도의 효과 <br> -2011 년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평 <br> 기눙(연방대법원의 사건수 감소) <br> 가 가능 |
| - 이러한 효과는 사법제도 개혁과 무 |  |
| 관한 상황변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  |
| 상쇄된다. |  |

## TEILIII : 개정결과의 효과

입법평가의 세 번째 부분은 사법제도 개혁이 재판결과물의 질과 양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다. 우선 조사대상그룹들이 스위스 연 방사법제도개혁의 결과로 법원들의 재판의 질이 변화한 것에 대해 어 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겠다.

이어서 주로 연방대법원이 입법평가에 제공한 통계에 근거한 양적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에 재판들이 양과 기간에 있어 법영역 과 법원들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지를 조사한다.

## 12. 판결의 수준에 대한 개정효과 : 설문과 인터뷰 결과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은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범위와 질에 영 향을 준다. 원칙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목표로부터, 재판의 질이 사 법제도 개혁을 통해 향상되고 업무부담(재판의 범위, 재판의 결론을 찾기 위한 비용)이 경감될 것이라는 점이 도출된다.

이 중간보고에서는 재판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행해진다. 우선 3 개의 연방법원들, 변호사들, 제소권을 갖 는 사회단체들, 연방행정관청들에서의 설문조사가 기초를 이룬다. 이 모든 설문조사에서 재판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되 었다.

원칙적으로 재판결과물에 대해 평가할 때에,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 감소를 통해 심리를 위한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재판의 질이 향상될 것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6 개의 조사대상그룹이 재판의 질이 변화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되 었다.
(1) 처음의 3 개의 설문조사는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형사법 원의 법관들, 법원서기들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 방법으로 수집 된 정보들은 법원의 재판의 질에 대한 자기평가에 해당한다.
(2) 다음의 3 개의 설문조사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목표그룹 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변호사,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을 수 행하는 사회단체들(대부분 환경과 사회보장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익사회단체들), 그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제소될 수 있고 스스로 제소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행정관청들이다. 이 3 개의 설 문조사의 결과들 중 대다수는 다음 Teil에서 소개될 것이다. 여기 서는 오직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질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겠다.

설문조사결과는 재판결과물에 대한 첫 번째 잠정적 평가에 해당한 다. 이 결과들은 통계상 수치와수치와 특히 판결들의 분석결과에 비 추어 논의될 것이다.

다음 절들에서는 6 개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겠다. 평가들은 전체 적으로 2 개의 핵심 문제에 대한 것이다:
(1)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형사법원의 재판의 질이 현재 거 기서 근무중인 법관들 스스로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
(2)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질이 변호사, 사회단체들, 연방행정관청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

## 12.1 판결의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 연방 법원

재판의 질은 연방대법원과 연방행정법원, 연방형사법원 모두에서 질 적 인터뷰와 양적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되었다. 3 개의 연방법 원들에서의 인터뷰에서 명확한 그림이 나온다: 인터뷰대상자들은 스 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이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질에 벌써 영향을 주

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재판의 질은 주로 법관과 법원서기 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변한다. 전체적으로 3 개의 연방법원들에서 의 총 16 개의 질적 인터뷰에서 3 개의 연방법원들 모두의 재판의 질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 Entwicklung der Qualität der Entscheide beim BGer(연방대법원의 재판

 의 질 변화)온라인-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연방대법원의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들의 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연방대법원의 법원서기 들에게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

## D 12.1: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질의 변화

## 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출처 : 연방대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31.

설문조사에 응한 총 31 명의 연방대법관들 중에서 단지 2 명만, 재판 의 질이 연방대법원법 발효 이후에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80 \%$ 이상 ( 25 명)의 대다수는 재판의 질에 2007년 이래로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 연방행정법원에서 재판의 질의 변화

연방행정법원에서의 상황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이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당직으로부터 연방행정법원으로 편입 되었다는 상황이 특별하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이전의 항고담당직 과 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할 때 재판의 질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 번째 결과는, 연방행정법원 신설로 재판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당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이다. 연방행정법원의 많은 직원들이 법원 신설 이전의 상황을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표에서는 단지 이 질문에 답한 사람들의 평 가만 표시하였다.

## D 12.2: 연방해정법원의 재판의 질 변화

## 와 비교할 때에 연방행정법원의 재판의 질은 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해 변화했습니까?)



출처 :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답변을 준 사람들의 $47.4 \%$ 가, 재판의 질이 연방행정법원 신설로 인 해 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할 때에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모든 답변자의 4 분의 3 에 약간 못미치는 수가, 항고담당직과 비교할 때 재 판의 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절차의 통일, 재판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향상, 인적자원의 (일부) 증가와 인프라시설 개선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부서 간의 교류도 재판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 그러나 연 방행정법원의 재판의 질에 대한 자기비판도 존재한다: 연방행정법원 의 조사대상자들이 제일 자주 지적하는 것은 전문법관이 없다는 것이 다. 그 외에 (낮은) 보수와 선출절차(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당직의 많은 직원들이 연방행정법원으로 넘어왔다) 때문에 항상 최고의 법관 들이 임명될 수 없다는 점이 비판된다.

## 연방형사법원에서 재판의 질의 변화

연방형사법원은 2004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판의 질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전에 법원 신설의 근거 가 된 효율성에 관한 법안(Effizienz-Vorlage)의 목표와 관련하여 재판 의 질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2 개의 측면에 대해 질 문하였다: 국제적 조직범죄의 소추 및 국제 경제범죄의 소추와 관련 한 변화. 조사대상 법관들 및 법원서기들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결 론을 내렸다.

## D 12.3: 연방형사법원 신설에 의한 범죄소추의 질

[^17]

출처 :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30 \%$ 에서 $40 \%$ 정도가 국제 형사사건의 소 추가 연방형사법원 신설의 결과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제 경제범죄의 측면에서는 무답변의 비율이 약 $45 \%$ 로 높다는 점이 눈에 띤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그에 관한 경험이 아직 평가할 정도로 충 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현재 재판의 질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법관들과 법원서기들에게, 그들의 재 판의 질에 대해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두 신설된 법원의 재판의 질은 높다고 평가되었다. 결과는 연방행정법원의 경우에 약간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것은 연방행정법원이 행정심판위원회와 항 고담당직의 경험에 기초하여 세워질 수 있었던 반면에 연방형사법원 은 자기 스스로 법실무를 발전시켜야 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 D 12.4: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 재판의 수준

귀하는 재판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출처 :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온라인 설문.

## 3 개 연방법원 재판의 수준에 대한 총평

법관 및 법원서기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면서 우리는 재판의 수준 에 있어서 중요한 개별 항목들에 대해 질의를 해보았다. 네 항목들 각각에 대해서 설문대상자들은 "아주 전적으로 그러함", "대체로 그러 함", "대체로 그렇지 않음" 혹은 "전혀 그렇지 않음" 등으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이 주어진 네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충분한 시간
(2) 사건을 처리할 충분한 인력
(3)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구조 (비서실, 사무실, 공간)
(4) 구술변론의 충분한 횟수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재판의 수준을 측정할 지수를 산출하였다. 각 각의 항목에 대해 설문값을 토대로 1 (매우 낮음)에서 최대 4 (매우 높음) 까지 나올 수 있는 평균값을 산출했다. 개별 항목들의 평균값으 로부터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면, 1 (매우 낮은 수준)에서 4 (매우 높 은 수준) 사이의, 재판의 수준에 대한 전체지수가 생성된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D 12.5: 재판의 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 법 원 | 항목 1: <br> 시간 | 항목 2: <br> 인력 | 항목 3: <br> 인프라구조 | 항목 4: <br> 구술변론 | 전 체 <br> (수준 지수) |
| :---: | :---: | :---: | :---: | :---: | :---: |
| 연방대법원 | 3.0 | 3.4 | 3.5 | 3.4 | 3.3 |
| 연방행정법원 | 3.0 | 3.2 | 2.8 | 3.3 | 3.1 |
| 연방형사법원 | 3.1 | 2.2 | 2.8 | 3.6 | 2.9 |

출처 : 자체 기술

집계 결과 전체적으로 세 법원 모두 재판의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장 높은 수치는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특히 이 법원의 인력상황 및 인프라구조가 여타 법원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나쁜 평가는 벨린초나의 연방형사법원이 2 번 항목에 서 받았다. 이곳의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건을 높은 수준 으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다.

## 12.2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본 판결수준에 대한 평가

연방대법원의 재판의 수준의 변화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상세하게 질 의하였다.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경우 이러한 관점이 간결 한 형식으로 설문되었다. 그 결과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

연방대법원 평가를 위해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두 질문에 답하였다.
(1)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에 따라 재판의 질이 변화하였는가?
(2) 연방사법제도의 개혁 결과 소송기간이 변화하였는가?

변호사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 결과, 연방대법원 재판의 수준이 대체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방사법제도 개혁이 거기에 그 다지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특히 판결의 근거가 매우 풍부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더 나아가 판결이 공표되 고 자유로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투명성이 높이 평가되었다. 온 라인 설문에서 연방대법원 재판의 수준과 관련된 네 가지 선별된 항 목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질문했다.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구조, 목차
(2) 명확성, 언어, 이해가능도
(3) 납득가능성, 정합성
(4) 입증정도

아래의 표는 가능한 변화에 대한 온라인 설문 시 변호사들이 재판 의 수준에 대한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 D 12.6: 연방대법원 재판의 질적 변화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출처 :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

변호사들은 대체로 재판의 수준과 관련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였 다. 그렇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의 업무 를 더 비판적으로 보았다. 즉 설문대상자의 4 분의 1 이상이 입증정도 와 납득가능성 및 정합성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본다. 반면 네 가지 점 모두 상승했다고 인식하는 자들은 5퍼센트도 되지 않는 소수에 불 과하다.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사건들의 소송기간에 대해서 인터뷰 대상자들 은 법률 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했다. 특히 민법의 경우 연방대법 원은 매우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경험된다. 두 명의 설문대상자 는 사회보장법에서는 소송기간이 너무 길다고 본다. 반면 민법의 경 우 개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 효과가 지적되었

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또한 사회보장법의 경우 루체른의 두 부서 간 차이가 관찰될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보장법의 경우 연방주 심급의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심대한 문제가 목격된다. 형법 분야에서는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연 방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리 기간이 너무 길며 연방대법원법 도입 이래 변화가 목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람이 한명 있었다. 한 설문 대상자에 따르면 그밖에 이중심급운영이 새로 규정된 몇몇 분야들의 경우 소송기간이 명백히 연장되었다. 여기에서는 소송기간의 연장을 감수함으로써 권리보호가 제고되었다.
전체 심급운영의 소송기간에 대한 양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D 12.7: 소송기간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출처 :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49.

설문에 따르면 소송기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소수만 소송기간이 증가했다고 보았다. 반면 거 의 3 분의 1 이 보기에 전체 심급운영상의 소송기간이 단축되었다.

소송기간 변화의 근거로 설문대상자들이 언급한 것은 아래와 같다. 이때 기간 증가의 근거와 기간 감소의 근거가 2 단으로 구분되었다.

D 12.8: 소송기간 변화의 근거들

| 소송기간 증가의 근거들 |
| :--- |
| 이중 심급운영의 도입 |
| 연방주의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
| 연방대법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
| 통합항소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경우 다소 증가함 |
| 루체른의 판사 인원 재조정 |
| 소송기간 감소의 근거들 |
| 사회보장법에서 심리의 제한 |
| 각하판결 수의 증가 |
| 연방대법원법 제108조에 따른 처리의 단순화 |
|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이 내려짐 |
| 입증 범위의 감소 |
| 내부구조 재조정 |

##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아래의 표는 (연방형사법원이 건립되기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이 재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호 사들의 평가를 보여준다.

D 12.9: 연방형사법원 재판의 수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을 통해(가령 연방대법원 기소재판부의 과제를 인수함으 로써) 재판의 수준이 변화되었는가?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 $=148$.

우선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아주 일부만이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가를 내린 응답자 34.5퍼센트 중에는 긍정적, 중립 적, 부정적 입장이 대략 균형을 이루었다. 분명한 점은 설문대상자들 의 의견에 따를 때 연방형사법원은 시작 단계가 매우 훌륭했음에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경험적인 토대가 매 우 미약하므로 이 결과를 좀 더 해석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연방행정법원 재판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도표가 나온다.

## D 12.10: 연방행정법원 재판의 수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연방행정법원이 창설됨에 따라 판결의 수준이 변화되었는가?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48.

연방형사법원에서와 달리 결과는 여기에서 더 분명하다. 인터뷰 결 과와 일치되게 평가를 내린 설문대상자의 다수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즉 이에 따르면 연방행정법원 재판의 질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항고담당직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연방행정법원이 추가 심급 으로 규정될 경우 처리 기간은 부분적으로 길어졌다. 행정심판위원회 와 항고담당직 간의 비교 시 나타나는 차이는 (항고담당직의 경우 제 도 개정을 앞두고 지대한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미미하다. 즉 이 자료 를 근거로 할 때 변호사들이 보기에 항고담당직이 개혁 이전에 행정 심판위원회보다 훨씬 일을 잘 못했다는 점이 배제될 수 없다. 다만 이 결과의 경우에도 설문대상자의 40 내지 50 퍼센트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 변호사들이 아직 연방행정법원에서의 소송경험이 일천하여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 한다.

세 연방법원의 재판의 수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는 요약하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D 12.11: 요약. 변호사들의 시각에서 본 재판의 수준

| 조 치 | 총 평 |
| :---: | :---: |
| 연방사법제도 개혁 에 따른 연방대법 원 재판의 수준적 변화 | - 재판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식됨 <br> - 온라인 설문 결과 질적 저하는 제일 먼저 입증정도와 납 득가능성 및 정합성에서 관찰됨. <br> - 개혁을 통해 재판의 수준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음. <br> - 소송기간은 법률영역에 따라 상이함. <br> - 소송기간이 증가했다기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관찰됨. |
| 연방 사법제도 개 혁에 따른 연방형 사법원 재판의 수 준적 변화 | - 재판의 수준을 경혐한 수가 충분치 않아 아직 어떤 소견 도 나올 수 없음. |


| 조 치 | 총 평 |
| :---: | :---: |
| 연방 사법제도 개 <br> 혁에 따른 연방행 <br> 정법원 재판의 수 <br> 준적 변화 | - 항고담당직 및 행정심판위원회와 빈교항 때앙행정법원이판의 추가 순 심급으로 새로 예정되었을 경우 소 <br> 송절차는 부분적으로 연장됨 |

## 12.3 주의 관점에서 본 연방대법원의 판결수준에 대한 평가

개혁이 연방대법원 판결 수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 법원 법관들 을 대상으로 양적 온라인 설문을 수행하였다.

D 12.12: 재판의 수준적 변화에 대한 연방주 법관들의 평가

귀하가 보기에 연방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연방대법원 판결의 수준이 변했습 니까?


출처: 주 상급법원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210.

이 표가 보여주는 결과는 명확하다. 설문대상자의 70퍼센트는 재판 의 질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10 퍼센트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보 았으며, 설문대상자의 약 5 퍼센트만이 질적 향상을 관찰하였다. 22 개

의 질적 답변을 통해 설문대상자들은 자신들의 답변의 근거를 제시하 였다. 6 개 응답의 내용이 긍정적이었다. 설문대상자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 재판의 수준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보다 신속한 판결 및 더 우수하고 더 명확한 입증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다. 열두 개의 답변이 재판의 수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첫째 (심리불속행에 대한) 배석형재판 및 원탁형재판(Präsidial- und Zirkularentscheide)이 예전보다 더 부족하고 건조하고 격식 없이 가볍게 표현 되었다고 보고된다. 입증정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개별 부서 간 차이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적 하락의 근거로 사회보 장법에서의 제한된 심리가 제시되었다. 그 밖의 답변자들은 범주 내 에 분류될 수 없다.

## 12.4 조직적 관점에서 본 판결수준에 대한 평가

사법제도의 개정이 전체 심급운영상 소송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해 8 개의 사회단체가 의견을 표명했다.

D 12.13: 전체 소송기간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평가

| 귀하가 보기에 2007년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발효 이래 전체 심급운영상 소송 <br> 기간이 변화되었습니까? |  |
| :--- | :--- |
| 소송 기간이 증가했다 | 응답수 1 |
| 소송 기간이 그대로이다 | 응답수 4 |
| 소송 기간이 감소했다 | 응답수 2 |
| 잘 모르겠다 | 응답수 1 |

출처: 사회단체들에 대한 서면 설문 $\mathrm{n}=8$.

이 결과는 거의 통일성이 없다. 설문지상의 질적 답변을 관찰해 보 면, 소송기간의 증가를 언급한 사회단체는 그 이유로서, 연방사법제도 조직법 $(\mathrm{OG})$ 하에서는 연방 평가위원회의 판결이 곧바로 연방대법원으 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 다. 소송기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언급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재판 및 입증의 질과 관련한 (가령 입증정도, 납득가 능성, 언어 및 구조 등의 관점에서) 변화들은 해당 사회단체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감지된다.

D 12.14: 연방대법원 재판의 질적 변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평가

| 연방대법원의 재판 및 입증의 질과 관련해서 당신은 그 이유를 연방사법제도 <br> 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 :--- |
| 질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응답 없음 |
| 질적으로 다소 상승하였음 | 응답 없음 |
| 질적으로 그대로임 | 응답수 5 |
| 질적으로 다소 하락하였음 | 응답수 1 |
| 질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응답수 1 |
| 잘 모르겠음 | 응답수 1 |

출처: 사회단체들에 대한 서면 설문 $n=8$.

질적 향상을 인식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사회단체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보는 반면, 환경 및 자연보 호 영역의 사회단체 책임자들 가운데 두 명이 질적 저하를 인지했다 고 답변한다.

전체적으로 이 결과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까닭에 극히 제한적으 로만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D 12.15: 사회단체의 시각에서 본 재판의 질 요약

| 조 치 | 총 평 |
| :---: | :--- |
|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br> 연방대법원의 소송기간 및 | - 결과는 전체적으로 망기해잔운 댄체로옹용이 가하의 였음. |
| 젒음. |  |
| 잔의 질적 수준 변화 | - 질은 대체로 저하되었음. |

## 12.5 연방부처들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수준에 대한 평가

재판의 수준과 관련해서 연방부서에 속한 설문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재판의 수준은 개정 이후 실제로 변화되지 않았다. 서면 설문 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 D 12.16: 재판 및 입증의 질

| 당신은 연방사법제도의 개혁 이래 연방법원의 재판 및 입증의 질적 변화가 있 <br> 었다고 보는가? |  |
| :--- | :--- |
|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음 | 응답 없음 |
| 질적으로 대체로 향상되었음 | 응답수 3 |
| 질적으로 변화가 없음 | 응답수 24 |
| 질적으로 대체로 저하되었음 | 응답 없음 |
| 질적으로 크게 저하되었음 | 응답수 1 |
| 잘 모르겠음 | 응답수 3 |

출처: 연방행정부서에 대한 서면설문 $\mathrm{n}=31$

사회단체의 시각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행정부서들은 재판 및 입증의 질과 관련한 변화를 목격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 부

서가 질적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관식 응답에서 판결의 근거가 일반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중 심급운영이 판결 및 입증에 있어 서의 전문화를 어느 정도 야기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분명한 것은 연방사법제도 개혁 결과 행정부서의 시각에서 볼 때 소송기간이 전체적으로 대체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한 연방행정부서의 31 명 가운에 13 명이 이런 방 향의 의견을 내놓았다.

## D 12.17: 소송기간

| 귀하가 보기에 전체 심급운영상 소송기간이 2007 년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발효 <br> 이래 변화했습니까? |  |
| :--- | :--- |
| 소송 기간 증가 | 응답수 13 |
| 소송 기간이 그대로이다 | 응답수 10 |
| 소송 기간 감소 | 응답수 3 |
| 잘 모르겠음 | 응답수 5 |

출처: 연방행정부서에 대한 서면 설문 $n=31$.

이러한 결과의 근거는 간단하다.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을 통해 두 법원 모두에 소가 제기되었고, 이는 연방행정부서의 시각에서 볼 때 소송기간을 연장시켰다. 이 밖에도 설문지에서는 다 음과 같은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1) 연방행정법원에서의 소송기간은 과거의 조직들에서보다 더 길다.
(2) 연방행정법원의 높은 업무부담은 소송기간의 증가를 야기한다.
(3) 연방행정법원의 형식주의는 소송기간의 증가를 야기한다.
(4) 연방행정법원에 제기된 항소절차의 업무처리기간을 가늠할 수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사료된다.
(5) 소송기간은 사안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소송기간의 단축을 확신하는 세 답변자는 그 판단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재판은 매우 신속하고, 개별 심급의 처리기간은 단축되었으며, 연방행정법원의 전문화는 소송기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D 12.18: 연방부서의 시각에서 본 재판의 질 요약

| 조 치 | 총 평 |
| :---: | :---: |
|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연방 <br> 대법원의 소송기간 및 재판의 질 <br> 의 변화 | - 질에 대한 평가 결과 변화가 거의 없음 <br> -소송기간은 대체로 증가하였음 |

## 12.6 개정이 재판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총평

요약 차원에서 우리는 재판의 수준과 소송 기간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겠다. 사회단체에 대한 설문 결과는, 실 증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의미가 비교적 미미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D 12.19: 재판의 수준과 소송기간: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 판결의 질적 변화 | 자체평가 | 외부평가: <br> 변호사 | 외부평가: <br> 연방주 | 외부평가: <br> 연방부서 |
| :---: | :---: | :---: | :---: | :---: |
| 연방대법원 | - 변화 없음 | - 대체로 <br> 변화 없음 <br> - 특정관점에서 <br> 저하 | - 변화 없음 | - 변화 없음 |


| 판결의 <br> 질적 변화 | 자체평가 | 외부평가: <br> 변호사 | 외부평가: <br> 연방주 | 외부평가: <br> 연방부서 |
| :---: | :--- | :--- | :--- | :--- |
| 연방행정법원 | - 향상 | - 향상 | - 향상되지 <br> 않았음 | - 향상되지 <br> 않았음 |
| 연방형사법원 | - 향상 | - 상반된 <br> 평가 | - 향상되지 <br> 않았음 | - 향상되지 <br> 않았음 |
| 소송기간의 <br> 변화 | - 증가하지 <br> 않았음 | - 상반된 <br> 평가 <br> -다소 증가 | - 증가하지 <br> 않았음 | - 증가 |

설문으로부터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재판의 질과 관련해서 다 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연방대법원의 경우 재판의 질적 변화가 없었다. 외부평가와 자체 평가의 결과가 일치한다.
(2)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재판의 질은 2007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증가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의 설문대상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설 문에 응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이다. 항고담당직과 비교할 때 큰 질적 향상이 확인되었다.
(3) 연방형사법원의 경우 평가가 분명하지 않다. 즉 자체평가에서 연 방형사법원의 법관들은 국제형법에서의 재판의 질적 향상을 확 신한다. 반면 변호사들의 답변은 분명치 않다.
(4) 모든 심급에 걸친 소송기간은 변호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체로 감소하였다. 연방행정부서의 책임자들의 시각에서는 이와 반대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방부서들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 에 있어서 이중심급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연방주가 연방대법원(여


#### Abstract

기에서는 새로운 심급이 거의 신설되지 않았다）으로 심급을 이 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보다 오히려 소송기간과 관련해서（연방행 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신설）훨씬 더 결정적인 결과가 생긴 다는 점을 통해 설명된다．


## 13．결과의 변화 ：데이터 분석 결과

새로운 연방법률제도의 주요목적은 첫째로 연방법원의 업무량을 줄 이면서 운영능력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고，둘째로 특정 지 역의 권리보호를 개선하는 것이며，셋째로 법적구제 절차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연방법원하의 하위법원처럼 TF 의 통계데이터 분석의 목 표는 TF 의 작업량의 경감 및 개혁조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13.1 연방법원 하급심 데이터 분석

주（州）에 연방행정법원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의 신설과 연방형사법 원의 창설은 연방법원의 과도한 작업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TF 에 소송 가능한 재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도와 제목에 의해 결 정된 사건의 번호는 이전（前）의 소송 서비스와 이전（前）위원회 및 새 로운 연방법원처럼 재판관에 전속된 조사가 진행될 때，선발된 7개의 같은 주（州）고등법원，즉 베른，샤프우즈，솔뢰르，떼상，보，발레 및 취리히에 의해 확인되어진다．아래에서 보이는 이런 작업의 양은 TF 에 소개된 작업량과 비교되고 아래 표에 의해 결정된다．아래의 표는 수집된 자원의 구도와 이러한 영향을 연구하도록 제공한다．

## D 13.1: TF의 하위법원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개요

| 참조/구별 | 법 원 | 자 원 | 연 도 |
| :---: | :---: | :---: | :---: |
| 연방 법원 |  |  |  |
| 연방 | TPF | 관리보고 | 2004-2008 |
| 연방 | TAF | 관리보고 | 2007-2008 |
| 연방부 |  |  |  |
| 전체83) | 소송권한 | 계획 FNS $\mathrm{n}^{\circ}$ 10001511802284) | 2002-2006 |
| DFJP85) | 소송서비스 | 내부통계 | 2002-2006 |
| 더 큰 주(州) 법원 |  |  |  |
| BE | 고등법원 | 관리보고 | 2002-2008 |
|  | 행정 법원 |  | 2002-2008 |
| SH | 고등법원 | 관리보고 | 2002-2008 |
| SO | 고등법원 | 관리보고 | 2002-2008 |
|  | 조세법원 |  | 200486) |
| TI | appelle 주 법원 | 관리보고 | 2002-2008 |
| VD | 주 법원 | 관리보고 <br> 내부통계 | 2002-2008 |
|  | 구 행정법원 |  | 2002-2007 |
|  | 구 사회보장법원 |  | 2002-2008 |
| VS | 주 법원 | 관리보고 | 2002-2008 |
| ZH | 고등법원 | 관리보고 | 2002-2008 |
|  | Versicherungsgericht |  | 2002-2008 |
|  | 사회보장법원 |  | 2002-2008 |

83) ChF, DFAE, DFI, DFJP, DDPS, DFF, DFE et DETEC
84) FNS 100015-1180222(Thierry Tanquerel/Frédéric Varone) 프로젝트 내의 범위에서의 편집된 데이터: 스위스의 행정문제에 있어서 사법구제의 이용: 주와 연방 수준의 경험적 분석.
85) 구 소송서비스는 관리보고가 없다. 다른 부서 옆에서 이 정보들을 모았을 시간을 감안할 때 오직 DFJP 의 소송서비스만 간주되어진다. 게다가 구 서비스에 의해 해결 된 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1995년과 1999년 사이에 약 89\%를 포함함(Ernst \& Young Consulting AG (EYC), Betriebswirtschaftliche Studie zur Neuorganisation der erstinstanzlichen Bundesgerichtsbarkeit in Verwaltungsund Strafsachen, Schlussbericht vom 25. September 2000, Beilage 9 (Ist-Bestand und Kennzahlen Ist-Bestand)).
86) Soleure 주의 세무법원에 의해 해결된 일의 수에 관한 2002년 및 2003년의 자료 는 누락되어 있다.

### 13.1.1 주(州) 법원

## 청산할 일의 양

데이터 획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엄격한 판단 하에 TF 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누락데이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재판의 결과 에 대한 다른 분류), 주 와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하지만 심지어 동일 한 주, 같은 지역 내에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법원 에 의해 해결이 된 일과 관련된 데이터 편집을 위해 선택했다. 표 D13.2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주법원의 부/실에 의해 해결한 일의 양적 변화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법률의 여러 영역은 (공공, 민사 그리고 형사)구별된다.

사회보험분야 주제에 대해 해결된 일의 수는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 D 13.2: 주제에 따른 고등 주 법원에 의해 해결된 일의 양

| 연 도 | 주 제 | BE | SH | SO | TI | VD ${ }^{87}$ | VS | ZH |
| :---: | :---: | :---: | :---: | :---: | :---: | :---: | :---: | :---: |
| 2002 | 공공 | 2560 | 202 | 124788) | 2512 | 2807 | 1121 | 4093 |
|  | Dont A.S. | 2293 | 108 | 655 | 1297 | 1068 | 561 | 3478 |
|  | 민사 | 1654 | 91 | 887 | 803 | 2406 | 522 | 2056 |
|  | 형사 | 1013 | 61 | 424 | 556 | 1420 | 237 | 1516 |
|  | 합계 | 5227 | 354 | 2558 | 3871 | 6633 | 1880 | 7665 |
| 2003 | 공공 | 1994 | 169 | 118389) | 1847 | 2693 | 942 | 3432 |
|  | Dont A.S. | 1689 | 77 | 660 | 907 | 968 | 496 | 2777 |
|  | 민사 | 1658 | 120 | 930 | 789 | 2433 | 517 | 2169 |
|  | 형사 | 1068 | 79 | 595 | 456 | 1358 | 342 | 1395 |
|  | 합계 | 4670 | 368 | 2708 | 3092 | 6484 | 1801 | 6996 |
| 2004 | 공공 | 1539 | 175 | 1664 | 1555 | 3151 | 938 | 2861 |
|  | Dont A.S. | 1170 | 59 | 505 | 712 | 937 | 385 | 2095 |
|  | 민사 | 1704 | 115 | 1146 | 879 | 2802 | 502 | 2153 |
|  | 형사 | 1105 | 76 | 596 | 550 | 1379 | 338 | 1545 |
|  | 합계 | 4348 | 366 | 3406 | 2984 | 7332 | 1778 | 6559 |

87) 형사와 개정된 형사 판결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Vaud 주의(2008년 사건 $\mathrm{N}=35$ )형 사와 민사개정의 법원은 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88) 이 값은 2002년과 2003년도 세무법원에 의해 해결된 사건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89) 상동

| 연 도 | 주 제 | BE | SH | SO | TI | VD | VS | ZH |
| :---: | :---: | :---: | :---: | :---: | :---: | :---: | :---: | :---: |
| 2005 | 공공 | 1505 | 246 | 1341 | 1570 | 3432 | 953 | 3373 |
|  | Dont A.S. | 1140 | 64 | 441 | 793 | 859 | 360 | 2540 |
|  | 민사 | 1738 | 121 | 1218 | 856 | 2430 | 504 | 2110 |
|  | 형사 | 1134 | 59 | 544 | 566 | 1551 | 332 | 1596 |
|  | 합계 | 4377 | 426 | 3103 | 2992 | 7413 | 1789 | 7079 |
| 2006 | 공공 | 1631 | 209 | 1506 | 1603 | 3630 | 883 | 3449 |
|  | Dont A.S. | 1303 | 76 | 404 | 826 | 779 | 353 | 2696 |
|  | 민사 | 1738 | 122 | 1124 | 807 | 2729 | 432 | 2063 |
|  | 형사 | 1079 | 88 | 434 | 639 | 1385 | 407 | 1540 |
|  | 합계 | 4448 | 419 | 3064 | 3049 | 7744 | 1722 | 7052 |
| 2007 | 공공 | 1775 | 216 | 1629 | 1700 | 3333 | 973 | 3286 |
|  | Dont A.S. | 1369 | 95 | 597 | 991 | 887 | 494 | 2514 |
|  | 민사 | 1639 | 129 | 1232 | 822 | 2519 | 461 | 2156 |
|  | 형사 | 1016 | 91 | 388 | 590 | 1287 | 343 | 1441 |
|  | 합계 | 4430 | 436 | 3249 | 3112 | 7139 | 1777 | 6883 |
| 2008 | 공공 | 1711 | 211 | 1527 | 1678 | 2931 | 1036 | 3252 |
|  | Dont A.S. | 1348 | 107 | 552 | 943 | 1005 | 510 | 2506 |
|  | 민사 | 1655 | 122 | 1163 | 856 | 2536 | 409 | 2057 |
|  | 형사 | 1207 | 66 | 504 | 548 | 1364 | 313 | 1675 |
|  | 합계 | 4573 | 399 | 3194 | 3082 | 6831 | 1758 | 6984 |

의무적인 첫 번째 보고서는 다음에 오는 주(州)의 해결에 대한 비중 의 변화와 관계된 것이다. 실제로 연간평균 395판결과 함께 Schaffhouse 주는 최소 값이 그리고 Zürich 주는 최대 값을 볼 수 있고, 연 간평균 7031 개의 사건들의 해결과 함께 Vaud 주는 연간평균 7082 판 결이 관찰된다.

Berne 주(4582), Soleure 주(3040), Tessin 주(3169) 그리고 Valais 주 (1786)는 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변율은 다른 주와 매우 다르 게 주로 인구의 규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D 13.3: 인구 규모와 주 소송에 의해 해결된 비중


인 구 볼 륨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보면 주 소송에 의해 해결된 일의 규모와 변 호사의 밀도( 100,000 주민이상 살고 있는 각 주내에서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사이의 보고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것은 중간정도 되 고 $(\mathrm{r}=.0425)$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해결된 일의 총량과 관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해결되어진 일의 감소에 따라 해결된 일의 평균수가 어 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06년까지는 증가하였고, 그 다음 부터는 연간 흐름에 따라 약간 감소하였다. Valais 주, Schaffhouse 주 그리고 Soleure 주는 실제로 이 궤도를 따른다. 설사 Schaffhouse 주가 년간 조금 증가하더라도 Valais 주의 일들이 오히려 감소하였던 것으 로 기록되었다. Tessin 주는 2003년에 판결이 -779로 상당한 감소를 했 고, 2004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ne 주는 새로운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2002년부터 2004

년까지(-879 판결의 양)상당한 감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Zürich 주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판결이 -1106의 결과로 줄었음이 알려져 있고, 그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 +520 의 증가가 있었다. 판결의 총량변화는 모든 주가 동일하지 않는다.
한편, Vaud 주는 2003년부터 상당한 판결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2007년 $-605,2008$ 년 -308이 감소하였다. 고립된 각 주에 대한 판결의 양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고,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2002년과 2008년 사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변화가 새로 운 주의 고등법원 판결의 양의 변화 연구에서 기인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로, D 13.4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이 판결의 양의 크기는 검토된 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주 별로 자세한 분석은 2012년 예상 최종보고서에서 실 현되어져야 한다.

D 13.4: 고등 주 법원에 의해 판결된 총량의 전체적인 조망


인구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에 의해 판결된 사건의 양을 살 펴보면, 인구의 측면에서 우선하는 수치의 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거 주자 측면에 의해 판결되어진 큰 비율을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도 시의 주 내에서도 필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Vaud 주 가 인구 1000 당 해결된 일의 평균은 10.9 로 인구에 비해 평균 이상의 비율을 관찰할 수 있으나, Zürich(5.6), Berne(4.8), 그들의 일부 Valais 주 (6.2), Tessin 주(9.9) 혹은 Soleure 주(12.3)는 인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판결의 양을 알 수 있다. Berne 주는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인구 1000 명당 평균 4.8 로 가장 최저 판결의 양으로 알려져 있다. Soleure 주는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인구 1000 명당 평균 12.3 이므로 인구 당 상 당히 많은 판결의 양을 알 수 있다.

D 13.5: 주 인구 1000 명당 판결 비율과 판결의 양, 인구의 규모

| 주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평 균 |
| :---: | :---: | :---: | :---: | :---: | :---: | :---: | :---: | :---: | :---: |
| BE | 인구 | 947079 | 950209 | 951957 | 955378 | 957854 | 960377 | 962978 | 955119 |
|  | 판결 | 5227 | 4670 | 4348 | 4377 | 4448 | 4430 | 4573 | 4582 |
|  | 판결/ $1000 \text { 명 }$ | 5.5 | 4.9 | 4.6 | 4.6 | 4.6 | 4.6 | 4.7 | 4.8 |
| SH | 인구 | 73395 | 73916 | 73968 | 73788 | 73869 | 73873 | 73860 | 73810 |
|  | 판결 | 354 | 368 | 366 | 426 | 419 | 436 | 399 | 395 |
|  | 판결/ $1000 \text { 명 }$ | 4.8 | 5 | 4.9 | 5.8 | 5.7 | 5.9 | 5.4 | 5.4 |
| SO | 인구 | 245546 | 246504 | 246807 | 247379 | 248412 | 249326 | 250171 | 247735 |
|  | 판결 | 2558 | 2708 | 3406 | 3103 | 3064 | 3249 | 3194 | 3040 |
|  | 판결/ $1000 \text { 명 }$ | 10.4 | 11 | 13.8 | 12.5 | 12.3 | 13 | 12.8 | 12.3 |
| TI | 인구 | 311887 | 314563 | 317315 | 319931 | 322370 | 324917 | 327319 | 319757 |
|  | 판결 | 3871 | 3092 | 2984 | 2992 | 3049 | 3112 | 3082 | 3169 |
|  | 판결/ 1000명 | 12.4 | 9.8 | 9.4 | 9.4 | 9.5 | 9.6 | 9.4 | 9.9 |


| 주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평 균 |
| :---: | :---: | :---: | :---: | :---: | :---: | :---: | :---: | :---: | :---: |
| VD | 인구 | 626208 | 631999 | 639105 | 647382 | 655145 | 663041 | 670700 | 647654 |
|  | 판결 | 6633 | 6484 | 7332 | 7413 | 7744 | 7139 | 6831 | 7082 |
|  | 판결/ 1000명 | 10.6 | 10.3 | 11.5 | 11.5 | 11.8 | 10.8 | 10.2 | 10.9 |
| VS | 인구 | 278212 | 281020 | 285008 | 287976 | 291827 | 295793 | 299526 | 288480 |
|  | 판결 | 1880 | 1801 | 1778 | 1789 | 1722 | 1777 | 1758 | 1786 |
|  | 판결/ 1000명 | 6.8 | 6.4 | 6.2 | 6.2 | 5.9 | 6 | 5.9 | 6.2 |
| ZH | 인구 | 1228628 | 1242488 | 1249893 | 1261810 | 1274040 | 1285066 | 1295894 | 1262546 |
|  | 판결 | 7665 | 6996 | 6559 | 7079 | 7052 | 6883 | 6984 | 7031 |
|  | 판결/ 1000명 | 6.2 | 5.6 | 5.2 | 5.6 | 5.5 | 5.4 | 5.4 | 5.6 |

판결의 변화는 법률 분야에 따라 다르다. 범죄문제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20 \%$ 정도로 나타났다. 이 법률 분야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2005 년까지 판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까지는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과 2008년에서는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다. Berne 주, Zürich 주, Vaud 주에서 특히 명백히 확인된다. 이는 수치가 낮게 나타난 주 와 관련이 있지만 실제 변화는 다르다. 실제로 Soleure 주는 2003년부 터 2004년까지 최고점을 보였지만, Schaffhouse 주는 오랜 세월동안 안 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2007년까지 다시 심해지다 가 2008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Tessin 주는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판결이 점점 더 증가하였고, 2008년까지는 약간 감소하였다.

D 13.6: 주 고등법원에 의해 다루어진 범죄문제에 대한 판결의 전체적인 조망


공법분야의 법원판결은 평균 $47 \%$ 를 나타낸다. 2002년이 다음에 오 는 해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이것은 Tessin 주, Berne 주, Zürich 주 그리고 Valais 주 경우이다. 참고로 Soleure 주 조세법원의 2002년 과 2003년의 데이터는 판결의 횟수가 낮게 나타나 누락되었다. 2003 년에는 대다수의 주가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곧 볼 것처럼 이 감소는 명확하게 사회보험분야 내의 판결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Zürich 주는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판결이 4093 건수에서 2861건 수로 1232 정도의 건수가 감소하였다. 그 다음 2005 년의 판결의 증가 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2008년까지는 2002 년보다 낮았다. 반대로 Vaud 주는 2003년과 2006년 사이에 판결이 +937

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판결의 건수가 3630 으로 최고조에 이르 렀다. 그리고 2007년은 다시 감소하였다.

D 13.7: 주 고등법원에 의해 다루어진 공법문제에 대한 판결의 전체적인 조망


이것들은 사회보험영역의 재판으로서 2002~2004년 사이 급감했던 것으로 알려진 2002~2008년 사이의 공법분야의 판결로 평균 $55 \%$ 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평균 1351건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2002년 공법영역 판결전체의 $65 \%$ 를 차지하며, 다만 838 건의 판결은 2004년도 공법전체 판결의 $49 \%$ 를 차지하였다. 그 후 특히 2004에서 2007년도에 매년 초 조금 증가하지만 판결건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사회보험법의 일반적인 부분(LPGA)에 대해 2003년 1 월 1 일 효력이 발생한 연방 법률과 대조절차의 일반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 도입에 이어, 우리는 점층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사회보장법원의 장소(또는 외국 거주자를 위한 AVS/AI 소송위원회), 보험가입자의 이의를 조회하는 AI 사무실에 관한 변화의 경우 LPGA

의 효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대조절차는 소송이 가능 하지 않게 되기 전에 행정절차 기간을 연장시켰으며, 이 기간을 위해 AI 영역의 소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대조절차의 폐지와 장애보험 분야에 대해 2006년 7월 1일 효력이 발생한 법률항목에 의한 기존소송시스템(신고절차)은 피보험자와 함께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AI 사무실과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허락해야 했다. 또한 장애보험 분야 재판소송에 대한 견제는 원칙적으로 근거 없는 절차의 포기를 초래했다.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소송시스템(신고절 차)은 AI 사무실 일의 질을 개선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 였고, 따라서 2007년에 소송이 매우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은 행정절차의 지연과 재판절차 기간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향후 사회보험 영역 내에서 소송의 변화를 아는 것은 흥미 있을 것이다.

D 13.8: 시회보험영역 내에서 주 고등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조망


행정소송의 다른 유형을 지지하는 주 판결에 관해서는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조금 감소하였고(평균 판결 -64건), 2004년 에는 각 주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평균 판결 +198 건) 그 후 2006년까지 대다수의 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Vaud 주는 점점 더 일관성 있는 판결 수를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2006년 까지 판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특히 Vaud 주 판결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 D 13.9: 주 고등법원에 의해 판결된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의 전체적인 조망90)


90) 여기에는 사회보험 관련 판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법영역을 위한 판결은 법원에 의해 판결된 사건의 $33 \%$ 를 구성한 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안정적이 되었다. 실제로 특히 2004년과 2006년에 일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던 Vaud 주을 제외하고 다른 주(州)들은 연간 판결 건수가 대략 같게 되었다.

D 13.10: 민법영역에 관해 주 고등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전체적인 조망


연방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소개된 주 소송사건의 건수

여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을 실제로 판단을 한 재판의 수와 연방법원의 하위법원에 의한 재판의 건수를 비교, 확립하기 위 해 계산된 연방법원의 데이터 목록이 있다. 그 후 이 데이터는 연방 법원에 의한 이러한 소송의 판결 건수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D 13.11: 하위소송 영역에 대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요약

| 연방법원 |  |  |  |  |
| :---: | :---: | :---: | :---: | :---: |
| 참조/지역/주 | 데이터 | 기 준 | 근 거 | 연 도 |
| TPE | 항목의 개수 <br> 판결의 수 판결의 유형 | 주제 | 내부통계 | 2004-2008 |
| TAF |  |  |  | 2007-2008 |
| $\begin{gathered} \text { BE, SH, SO, TI, } \\ \text { VD, VS, ZH } \end{gathered}$ | 항목의 개수 <br> 판결의 수 <br> 판결의 유형 | 주제 | 내부통계 | 2002-2008 |

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년간 증가하여 2006년에 3591건으로 최대값에 도달하였다. 그 후 감소하여 2007년에는 3441건, 2008년에는 3343건이 되었다. 연방법원이 받아들 인 사건은 법률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였다.

실제로 민사 및 형사법 분야의 항목은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형사법 분야의 소송은 286(2006년)->702(2007년)건이 발생했고, 민사법 분야의 소송은 449(2006년)->695(2007년)건이 발생했으며, 연방 법원이 받아들인 공공법률의 건수는 부분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2856 건, 2007년에는 2044건, 2008년에는 1876건이 발생했다. 아래 차트 D 13.12 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D 13.12: 연방법원에 제기된 하위 주 법원 판결의 건수


D 13.13: 주 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법원이 받아들이고 판결한 법률분야의 건수

| 연도 | 분야 | BE |  | SH |  | SO |  | TI |  | VD |  | VS |  | Z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 2002 | 공 법 | 423 | 395 | 49 | 47 | 146 | 149 | 261 | 262 | 413 | 421 | 224 | 224 | 860 | 842 |
|  | 민 법 | 61 | 60 | 6 | 6 | 17 | 15 | 64 | 56 | 78 | 102 | 44 | 40 | 177 | 165 |
|  | 형 사 | 38 | 40 | 7 | 7 | 10 | 12 | 27 | 26 | 68 | 64 | 22 | 22 | 115 | 116 |
|  | 합 계 | 522 | 495 | 62 | 60 | 173 | 176 | 352 | 344 | 559 | 587 | 290 | 286 | 1152 | 1123 |
| $\begin{aligned} & 2 \\ & 0 \\ & 0 \\ & 3 \end{aligned}$ | 공 법 | 387 | 431 | 42 | 50 | 187 | 177 | 279 | 300 | 420 | 410 | 226 | 248 | 882 | 1005 |
|  | 민 법 | 62 | 64 | 7 | 8 | 19 | 21 | 51 | 59 | 102 | 86 | 50 | 51 | 137 | 175 |
|  | 형 사 | 32 | 29 | 6 | 5 | 10 | 11 | 25 | 31 | 81 | 83 | 22 | 20 | 71 | 92 |
|  | 합 계 | 481 | 524 | 55 | 63 | 216 | 209 | 355 | 390 | 603 | 579 | 298 | 319 | 1090 | 1272 |


| 연도 | 분야 | BE |  | SH |  | SO |  | TI |  | VD |  | VS |  | Z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접수 | 판결 |
| 2 | 공 법 | 421 | 415 | 36 | 47 | 193 | 205 | 265 | 243 | 472 | 430 | 234 | 222 | 873 | 926 |
|  | 민 법 | 69 | 86 | 9 | 10 | 16 | 17 | 72 | 67 | 114 | 114 | 23 | 35 | 135 | 139 |
|  | 형 사 | 21 | 28 | 7 | 5 | 14 | 11 | 16 | 16 | 88 | 91 | 20 | 20 | 94 | 88 |
|  | 합 계 | 511 | 529 | 52 | 62 | 223 | 233 | 353 | 326 | 674 | 635 | 277 | 277 | 1102 | 1153 |
| 2005 | 공 법 | 447 | 449 | 34 | 35 | 179 | 186 | 262 | 265 | 552 | 107 | 241 | 243 | 974 | 899 |
|  | 민 법 | 71 | 24 | 6 | 6 | 28 | 25 | 59 | 66 | 98 | 79 | 51 | 43 | 138 | 99 |
|  | 형 사 | 36 | 27 | 1 | 4 | 7 | 10 | 23 | 20 | 89 | 691 | 22 | 21 | 117 | 111 |
|  | 합 계 | 554 | 500 | 41 | 45 | 214 | 221 | 344 | 351 | 739 | 877 | 314 | 307 | 1229 | 1109 |
| $\begin{aligned} & 2 \\ & 0 \\ & 0 \\ & 6 \end{aligned}$ | 공 법 | 444 | 432 | 32 | 25 | 173 | 159 | 297 | 275 | 618 | 595 | 256 | 249 | 1036 | 964 |
|  | 민 법 | 68 | 66 | 8 | 6 | 10 | 13 | 62 | 61 | 85 | 73 | 45 | 43 | 171 | 173 |
|  | 형 사 | 38 | 45 | 4 | 4 | 7 | 8 | 25 | 22 | 81 | 79 | 22 | 23 | 109 | 131 |
|  | 합 계 | 550 | 543 | 44 | 35 | 190 | 180 | 384 | 358 | 784 | 747 | 323 | 315 | 1316 | 1268 |
| 2007 | 공 법 | 361 | 427 | 40 | 41 | 132 | 164 | 205 | 273 | 477 | 617 | 145 | 179 | 684 | 889 |
|  | 민 법 | 109 | 99 | 12 | 10 | 40 | 33 | 77 | 60 | 192 | 166 | 36 | 58 | 229 | 235 |
|  | 형 사 | 95 | 83 | 12 | 6 | 30 | 24 | 50 | 45 | 184 | 164 | 50 | 44 | 281 | 251 |
|  | 합 계 | 565 | 609 | 64 | 57 | 202 | 221 | 332 | 378 | 853 | 947 | 231 | 281 | 1194 | 1375 |
| 2008 | 공 법 | 339 | 398 | 27 | 30 | 146 | 140 | 202 | 223 | 365 | 386 | 138 | 150 | 659 | 737 |
|  | 민 법 | 127 | 122 | 17 | 18 | 35 | 40 | 101 | 89 | 165 | 161 | 53 | 48 | 221 | 227 |
|  | 형 사 | 112 | 109 | 12 | 16 | 32 | 34 | 51 | 49 | 188 | 184 | 42 | 39 | 311 | 305 |
|  | 합 계 | 578 | 629 | 56 | 64 | 213 | 214 | 354 | 361 | 718 | 731 | 233 | 237 | 1191 | 1269 |

연방법원에 제기되어 판결된 소송비율을 볼 때 2002년에는 주 법원 판결의 $11 \%, 2003$ 년과 2004년에는 $12 \%$, 다음부터 2007 년까지는 $13 \%$ 임을 알 수 있다. 2008 년에는 $12 \%$ 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하위소 송에 대한 판결의 \% 변화는 2008년에 약간 감소하고, 2007년까지는 약간 증가하기 이전에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표 D 13.15 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에 나타난 7 개의 주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 송의 건수와 변호사의 밀도(각 주의 100,000 거주자 당 변호사 사용횟 수) 와의 상관관계( $\mathrm{r}=.60$, 그러나 중요치 않음)가 확인된다.

D 13.14: 검토된 7 개의 주 내에서 변호사 밀도( 100,000 거주자 당 변호사) 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의 건수


상관관계는 Zurich 주의 극단적인 위치에 의해 확실히 영향을 받지 만, Tessin 주의 비정상적인 위치에 의해 감소된다. 이 두 개의 극단적 인 주를 제외한다면 이 상관관계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며, 판결된 사건의 비율보다 더 우세하다(위 D 13.13 참조). 현재 그런 서비스 공

급자 수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2012년 최종보고서 내에서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모든 주를 위해 더 결정적인 결과를 줄 것을 약속한다) 검토될 것이다.

D 13.15: 연방법원 및 영역에 의해 판결된 사건과 연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주에 의해 판결된 사건의 전체규모

| 연도 | 영 역 | 주 판결 | 연방법원에 <br> 제기된 소송 | 연방법원이 판결한 재판 | 연방법원에 <br> 접수된 <br> 재판(\%) | 연방법원에 의해 해결된 재판(\%) |
| :---: | :---: | :---: | :---: | :---: | :---: | :---: |
| 2002 | 공 공 | 14542 | 2376 | 2340 | 16 | 16 |
|  | 민 사 | 8419 | 447 | 444 | 5 | 5 |
|  | 형 사 | 5227 | 287 | 287 | 5 | 5 |
|  | 합 계 | 28188 | 3110 | 3071 | 11 | 11 |
| 2003 | 공 공 | 12210 | 2423 | 2621 | 20 | 21 |
|  | 민 사 | 8616 | 428 | 464 | 5 | 5 |
|  | 형 사 | 5293 | 247 | 271 | 5 | 5 |
|  | 합 계 | 26119 | 3098 | 3356 | 12 | 13 |
| 2004 | 공 공 | 11883 | 2494 | 2488 | 21 | 21 |
|  | 민 사 | 9301 | 438 | 468 | 5 | 5 |
|  | 형 사 | 5589 | 260 | 259 | 5 | 5 |
|  | 합 계 | 26773 | 3192 | 3215 | 12 | 12 |
| 2005 | 공 공 | 12420 | 2689 | 2184 | 22 | 18 |
|  | 민 사 | 8977 | 451 | 342 | 5 | 4 |
|  | 형 사 | 5782 | 295 | 884 | 5 | 15 |
|  | 합 계 | 27179 | 3435 | 3410 | 13 | 13 |
| 2006 | 공 공 | 12911 | 2856 | 2699 | 22 | 21 |
|  | 민 사 | 9015 | 449 | 435 | 5 | 5 |
|  | 형 사 | 5572 | 286 | 312 | 5 | 6 |
|  | 합 계 | 27498 | 3591 | 3446 | 13 | 13 |


| 연도 | 영 역 | 주 판결 | 연방법원에 <br> 제기된 소송 | 연방법원이 <br> 판결한 재판 | 연방법원에 <br> 접수된 <br> 재판(\%) | 연방법원에 의해 해결된 재판(\%) |
| :---: | :---: | :---: | :---: | :---: | :---: | :---: |
| 2007 | 공 공 | 12912 | 2044 | 2590 | 16 | 20 |
|  | 민 사 | 8958 | 695 | 661 | 8 | 7 |
|  | 형 사 | 5156 | 702 | 617 | 14 | 12 |
|  | 합 계 | 27026 | 3441 | 3868 | 13 | 14 |
| 2008 | 공 공 | 12346 | 1876 | 2064 | 15 | 17 |
|  | 민 사 | 8798 | 719 | 705 | 8 | 8 |
|  | 형 사 | 5677 | 748 | 736 | 13 | 13 |
|  | 합 계 | 26821 | 3343 | 3505 | 12 | 13 |

그래프 D 13.16 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궤도는 법률의 영역에 따라 다르다. 공공법률 영역에 대한 재판의 비율은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부터 감소하여 주 법원 전체 재판이 $22 \%$ 에서 $16 \%$ 가 되었고, 2008 년에는 $15 \%$ 였다. 나중에 볼 것이지만(13.2.1)이 감소는 LTF 의 도 입, 법적절차의 단순화(통일된 소송)에 크게 기인한다.

형사법과 민사법 재판의 비율은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비록 2007년에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2008년에 는 감소하였다. 실제로 민사재판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된 후(5\%) 2007년과 2008년에 $8 \%$ 가 되었다.

연방법원에 앞서 시작된 주 민사재판은 상당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형사 분야에서도, 2002년~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방법원에 제기된 주 형사재판이 단지 $5 \%$ 뿐이었고, 2007 년에는 $14 \%$, 그리고 2008 년에는 $13 \%$ 이었다. 결론적으로 형사법과 민사법의 영역 에 대해 주 법원에 반대하여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증가는 연방 법원의 사건 감소와 반대로 흘러간다. 공법도 마찬가지로 통일된 소 송의 도입에 의해 대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2007년 1월 1일 효력을 발한 형법조항의 변경도 마 찬가지로 해석질문의 증가로 인해 형법 영역 소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은 접수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주 사건을 판결했다. 실제로, 2006년 전까지는 동일한 비율의 사 건을 판결했지만, 2007 년에는 주 사건의 $13 \%$ 를 접수받고 $14 \%$ 를 처리 했으며, 2008년에는 $12 \%$ 를 접수받고 $13 \%$ 를 처리하였다.

D 13.16: 연방법원에 제기된 주 법원의 영역별 판결 \%


## 주(州)를 위한 연방법원의 판결방식

우리는 하위 주 소송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변화와 동시에 2007 년부터 변경된 연방법원의 판결방식을 볼 수 있다. 연방법원의 사건 비율의 자세한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말소하고 제외할 것을 결정해야 만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 재판에 불복한 소송의 대부분은 기각/각하 로 인해 실패한다. 기각/각하의 비율의 변화는 2008년 약간 감소(50\%)한 것을 제외한다면 매년 $(56 \% \sim 58 \%)$ 이상 감소되었다.

판결의 두 번째 유형은 재판사건의 부적격과 항상 관련이 있다. 그 러나 이 유형은 특히 2007년(30\%), 2008년(34\%)로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증가하였다. 이것은 연방법원이 2007년 이전보다 이후에 부적격 사건을 더 많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14\%), 2004년(11\%)까지 감소 후, 2006년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7년(9\%)로 약간 감소 후 2008 년( $12 \%$ )로 증가하였다. 보정명령과 이송은 매년( $6 \% \sim 4 \%$ ) 꾸준히 감소하였고 특히 2007년과 2008년에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주에 의해 판결된 전체적인 건수가 안정적으로 보임에 도 불구하고 주 소송재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007년부 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는 영역에 따라 다르다. 실 제로 형사 및 민사재판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공공법률재판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감소하였다. 후에 볼 것처럼 통일된 소송의 도입은 이 다른 변화에 크게 책임이 있어 보인다. 판결의 형태에 관해서 이 개혁은 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사건의 수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D 13.17: 주 고등법원의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하위 주 소송의 변화 | 형사 및 민사법 영역에서 영향이 없는 <br> 것으로 관찰됨. <br> 공공법률 영역에서는 초기에 효과의 가 <br> 능성이나 개혁이 이미 자리잡고 있음. |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연방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의 건 <br> 수에 대한 통일된 소송의 도입의 영향 | 효과없음. <br> 부적격 재판사건의 건수를 늘림. |

D 13.18: 주 판결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형태 ${ }^{911}$

| 연도 | 판결형태 | BE | SH | SO | TI | VD | VS | ZH | Total | $\begin{gathered} \text { Total }^{\text {22) }} \\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 | 말소 | 25 | 1 | 7 | 26 | 49 | 20 | 61 | 189 |  |
|  | 부적격 | 74 | 16 | 43 | 68 | 148 | 59 | 270 | 678 | 24 |
|  | 기각/각하 | 288 | 30 | 91 | 166 | 261 | 147 | 601 | 1584 | 56 |
|  | 허가 | 69 | 7 | 22 | 45 | 87 | 34 | 117 | 381 | 14 |
|  | 반송, 양도 | 36 | 3 | 12 | 17 | 34 | 19 | 58 | 179 | 6 |
|  | 합계 | 492 | 57 | 175 | 322 | 579 | 279 | 1107 | 3011 | 100 |
| 2003 | 말소 | 24 | 2 | 7 | 13 | 38 | 19 | 109 | 212 |  |
|  | 부적격 | 104 | 9 | 29 | 90 | 130 | 61 | 344 | 767 | 24 |
|  | 기각/각하 | 290 | 39 | 121 | 212 | 282 | 181 | 646 | 1771 | 56 |
|  | 허가 | 47 | 8 | 23 | 34 | 82 | 39 | 118 | 351 | 14 |
|  | 반송, 양도 | 53 | 2 | 9 | 16 | 42 | 14 | 54 | 190 | 6 |
|  | 합계 | 518 | 60 | 189 | 365 | 574 | 314 | 1271 | 3291 | 100 |
| 2004 | 말소 | 20 | 2 | 13 | 11 | 61 | 24 | 60 | 191 |  |
|  | 부적격 | 117 | 13 | 46 | 86 | 138 | 48 | 301 | 749 | 25 |
|  | 기각/각하 | 314 | 32 | 121 | 178 | 331 | 156 | 617 | 1749 | 58 |
|  | 허가 | 42 | 9 | 25 | 35 | 69 | 35 | 109 | 324 | 11 |
|  | 반송, 양도 | 30 | 1 | 19 | 9 | 38 | 10 | 62 | 169 | 6 |
|  | 합계 | 523 | 57 | 224 | 319 | 637 | 273 | 1149 | 3182 | 100 |
| 2005 | 말소 | 27 | 1 | 24 | 26 | 43 | 18 | 53 | 192 |  |
|  | 부적격 | 125 | 10 | 36 | 104 | 163 | 64 | 309 | 811 | 27 |
|  | 기각/각하 | 289 | 25 | 122 | 158 | 371 | 179 | 593 | 1737 | 57 |
|  | 허가 | 54 | 8 | 23 | 36 | 77 | 27 | 96 | 321 | 11 |
|  | 반송, 양도 | 41 | 1 | 14 | 21 | 31 | 10 | 55 | 173 | 6 |
|  | 합계 | 536 | 45 | 219 | 345 | 685 | 298 | 1106 | 3234 | 100 |
| 2006 | 말소 | 23 | 1 | 5 | 19 | 40 | 12 | 69 | 169 |  |
|  | 부적격 | 117 | 7 | 39 | 98 | 168 | 57 | 411 | 897 | 28 |
|  | 기각/각하 | 311 | 17 | 102 | 203 | 386 | 174 | 609 | 1802 | 56 |
|  | 허가 | 45 | 6 | 23 | 28 | 102 | 45 | 116 | 365 | 11 |
|  | 반송, 양도 | 39 | 1 | 11 | 7 | 35 | 10 | 62 | 165 | 5 |
|  | 합계 | 535 | 32 | 180 | 355 | 731 | 298 | 1267 | 3398 | 100 |

91) 판결의 형태에 의한 판결의 수와 관련된 연방법원의 데이터들은 주제에 의한 판 결의 수 또는 D13.13 및 D13.15 그림에 의해 보고된 표 D13.18 내의 약간의 사건 건수보다 더 완벽하지 않다.
92) 총 \%의 경우, 사건이 연방법원에 의해 확정되어야만 하는 재판의 경우로 간주되 었다. 따라서 말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 연도 | 판결형태 | BE | SH | SO | TI | VD | VS | ZH | Total | $\begin{gathered} \text { Total } \\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 | 말소 | 44 | 4 | 10 | 31 | 58 | 13 | 88 | 248 |  |
|  | 부적격 | 171 | 15 | 44 | 110 | 278 | 38 | 410 | 1066 | 30 |
|  | 기각/각하 | 312 | 29 | 130 | 191 | 475 | 154 | 731 | 2022 | 57 |
|  | 허가 | 53 | 4 | 18 | 36 | 95 | 25 | 101 | 332 | 9 |
|  | 반송, 양도 | 28 | 1 | 13 | 7 | 39 | 13 | 54 | 155 | 4 |
|  | 합계 | 608 | 53 | 215 | 375 | 945 | 243 | 1384 | 3823 | 100 |
| 2008 | 말소 | 32 | 3 | 9 | 21 | 43 | 6 | 61 | 175 |  |
|  | 부적격 | 228 | 17 | 87 | 102 | 222 | 47 | 422 | 1125 | 34 |
|  | 기각/각하 | 280 | 26 | 86 | 186 | 340 | 120 | 609 | 1647 | 50 |
|  | 허가 | 60 | 13 | 24 | 36 | 95 | 32 | 133 | 393 | 12 |
|  | 반송, 양도 | 28 | 3 | 8 | 11 | 16 | 8 | 41 | 115 | 4 |
|  | 합계 | 628 | 62 | 214 | 356 | 716 | 213 | 1266 | 3455 | 100 |

### 13.1.2 연방 형사법원

연방형사법원의 설립은 연방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된다. 실제로, 만약 연방법원으로 가기 전에 형사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면, 강제조 치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불 만이 있는 일에 관해서도 소송은 제한되지 않았다. TPE 통계에 따르 면, 2006년(12\%)와 2007년(22\%)사이에 10\%가 증가하였고, 2008년(25\%) 에도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D 13.19: 연방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도입된 사건의 규모와 연방법원에 가능한 소송을 제기하여 TPE에 의해 판결된 사건의 규모

| 소 송 | 볼 | 륨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 :---: | :---: | :---: |
| 형사사건의 경우 | 판 | 결 | 4 | 13 | 16 | 24 | 20 |
| I 불만의 경 우93) | 판 | 결 | 186 | 292 | 304 | 190 | 206 |
| II 불만의 경우 | 판 | 결 |  |  |  | 159 | 266 |
| 합계 TPE | 판 | 결 | $\mathbf{1 9 0}$ | $\mathbf{3 0 5}$ | $\mathbf{3 2 0}$ | $\mathbf{3 7 3}$ | $\mathbf{4 9 2}$ |
|  | 판 | 결 | 17 <br> $(9 \%)$ | 31 <br> $(10 \%)$ | 39 <br> $(12 \%)$ | 83 <br> $(22 \%)$ | 121 <br> $(25 \%)$ |

93) 비밀리 조사되고, 특히 전화감시와 관련된 재판장의 결정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판결의 형태와 관련하여 말소와 따로 분리한 경우 2006년 $28 \%, 2007$ 년 $17 \%$ 로 허가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절/ 거부의 비율은 $59 \%$ 에서 2007 년 $30 \%$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주 (州)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소송의 재판비율과 건수가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41\%를 넘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대규모로 증가하여 2007 년에는 $53 \%, 2008$ 년에는 $57 \%$ 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소 송을 위한 판결형태의 첫 번째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방형사법 원 판결(영역내의 비 항목에 의해 2007년에는 $87 \%, 2008$ 년은 $80 \%$ 가 판결되어졌다.)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소송에서 크게 기인한다. 결과 적으로 허가 및 거절/거부에 의해 판결되어진 사건의 비율은 감소하 였다.

D 13.20: TPE를 위한 연방법원의 판결형태

| 판결형태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 :---: |
| 부적격 | $6(40 \%)$ | $12(41 \%)$ | $5(13 \%)$ | $43(53 \%)$ | $64(57 \%)$ |
| 거부/거절 | $6(40 \%)$ | $5(17 \%)$ | $23(59 \%)$ | $24(30 \%)$ | $28(25 \%)$ |
| 허가/인가 | $3(20 \%)$ | $12(41 \%)$ | $11(28 \%)$ | $14(17 \%)$ | $21(19 \%)$ |
| 반송, 양도 |  |  |  |  |  |
| 합계 | $15(100 \%)$ | $29(100 \%)$ | $39(100 \%)$ | $81100 \%)$ | $113(100 \%)$ |
| 말소 | 2 | 2 | 0 | 2 | 8 |
| 합계 | 17 | 31 | 39 | 83 | 121 |

결론적으로 연방법원의 일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도입되었던 이후 상당한 건수가 더 TPE에 돌아왔지만 연방법원은 2007년 이후

[^18]더 일관성 있는 부적격 재판사건의 수와 재판에 불복한 판결의 수를 인식하였다.

## D 13.21: TPE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 :---: | :---: |
| 연방법원의 일의 부담에 대한 TPE의 도입의 영향 | - 판결의 수 증가 <br> - 연방법원의 일의 부담증가와 2007년부터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수가 증가 |

### 13.1.3 연방행정법원, 소송위원회와 소송서비스

전에는 예전 소송서비스와 소송위원회에 불복한 소송은 연방법원 아 래에 규정된 99조, 100 조, 101 조에 대한 예외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시 작이 가능하였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나있는 사건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 법원에 의해 예전 연방서비스의 데이터를 취급 할 수 있었고, 연방법원에 제기된 건수와 판결의 수를 비교하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전의 서비스는 엄청난 판결의 양을 평가했다. 그 러나 2006년부터 판결의 수는 감소했다. 연방법원 전에 제기된 사건 의 수는 한편, 최대 582 소송건수에서 최소 445 소송건수로 값이 변 동되었다. 그러나 판결된 건수에 의한 이들의 비율은 2004년(3\%), 2006 년(5\%)을 제외하고 매년 $4 \%$ 을 나타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예전 연방위원회의 통합과 TAF 내부의 연방소송서비스 이후 연방 법원의 소송은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로, 이 권한은 대부분 최종소송 (연방)의 질을 높였고, 따라서 연방법원은 제기된 소송사건의 일부만 판결할 수 있었다. 이전 서비스와 TAF 소송서비스 위원회에 의해 판 결된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AF는 예전에 결합된 소송의 서비스와 위원회의 중요치 않 은 사건 건수를 받아서 판결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 적으로도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줄었다.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된 비율은 우선 2007년(3\%)로 줄었고, 2008년(4\%)부터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가능한 소송 중 TAF 재판의 비 율과 관계가 있는데, 2007년과 2008년 사이의 소송은 실제로 $14 \%$ 였다. 판결의 통계적 비율은 접수된 사건들의 비율과 동일하다.

D 13.22: 연방법원에 의한 판결과 도입된 사건의 규모, TAF와 소송서비스 소송위원회에 의해 판결된 사건의 규모

| 소 송 | 볼 륨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 :---: | :---: | :---: | :---: |
| 연방위원회 | 판 결 | 11842 | 13836 | 12814 | 9727 | 8383 |  |  |
| 소송서비스 | 판 결 | 2321 | 2600 | 2616 | 2396 | 2479 |  |  |
| 합계 | 판 결 | 14163 | 16436 | 15430 | 12123 | 10862 |  |  |
| 연방법원 | 접 수 | $\begin{gathered} 545 \\ (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82 \\ (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451 \\ (3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41 \\ (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39 \\ (5 \%) \end{gathered}$ | 82 | 17 |
|  | 판 결 | $\begin{gathered} 499 \\ (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601 \\ (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11 \\ (3 \%) \end{gathered}$ | $\begin{gathered} 474 \\ (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10 \\ (5 \%) \end{gathered}$ | 205 | 45 |
| $\begin{gathered} \mathrm{TAF} \text { 가능한. } \\ \text { 소송 } \end{gathered}$ |  |  |  |  |  |  | 1692 | 2341 |
| TAF <br> 최종소송 |  |  |  |  |  |  | 5868 | 6566 |
| TAF | 판 결 |  |  |  |  |  | 7560 | 8907 |
| 연방법원 | 접 수 \% 합계 $\%$ 가능한 소송 |  |  |  |  |  | $\begin{gathered} 239 \\ (3 \%) \\ (1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339 \\ (4 \%) \\ (14 \%) \end{gathered}$ |
|  | 판 결 \% 합계 \% 가능한 소송 |  |  |  |  |  | $\begin{gathered} 215 \\ (3 \%) \\ (14 \%) \end{gathered}$ | $\begin{gathered} 326 \\ (4 \%) \\ (14 \%) \end{gathered}$ |

이것은 예전 소송서비스와 연방위원회에 의해 연방법원에 도입된 사건과 관계있고, 판결 형태의 다른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제 132 조 항을 참고하라. $1 \mathrm{LTF}, \mathrm{LTF}$ 의 조항들은 연방법원 이전 도입절차에는 적용치 않으며, 이 조항들이 발효된 후 만들어진 소송절차에 적용된 다. 따라서 2006년 미해결되어 남아있던 예전 소송위원회 사건의 몇 몇은 2007년과 2008년 의제에 따라 해결되었다. 인용된 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 2008년에는 사건의 $30 \%$ 까지 도달하였다. 거절된 사건의 건 수는 2008 년 $(60 \%)$ 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검토하고 있는 사건의 대부 분이 남아있다. 부적격 결정에 관한 비율은 판결형태의 $12 \%$ 와 $9 \%$ 를 차지하면서 2007년과 2008년에 감소하였다. 이것은 주(州)와 TPE의 비 율보다 훨씬 낮다.

D 13.23: 소송서비스와 소송위원회를 위한 연방법원의 판결형태

| 판 결 형 태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 :---: | :---: | :---: |
| 부적격 | 78 <br> $(17 \%)$ | 135 <br> $(24 \%)$ | 111 <br> $(23 \%)$ | 132 <br> $(29 \%)$ | 84 <br> $(17 \%)$ | 23 <br> $(12 \%)$ | 4 <br> $(9 \%)$ |
| 거부/거절 | 322 <br> $(70 \%)$ | 357 <br> $(64 \%)$ | 298 <br> $(61 \%)$ | 253 <br> $(55 \%)$ | 324 <br> $(67 \%)$ | 131 <br> $(69 \%)$ | 26 <br> $(60 \%)$ |
| 허가/인가 | 46 <br> $(10 \%)$ | 45 <br> $(8 \%)$ | 57 <br> $(12 \%)$ | 62 <br> $(13 \%)$ | 73 <br> $(15 \%)$ | 37 <br> $(19 \%)$ | 13 <br> $(30 \%)$ |
| 반송, 양도 | 17 <br> $(4 \%)$ | 18 <br> $(3 \%)$ | 21 <br> $(4 \%)$ | 15 <br> $(3 \%)$ | 4 <br> $(1 \%)$ | - <br> $(0 \%)$ | - <br> $(0 \%)$ |
| 합 계 | 463 |  |  |  |  |  |  |
| $(100 \%)$ | 555 | 487 |  |  |  |  |  |
| $(100 \%)$ | 462 | 485 | 191 | 43 |  |  |  |
| $(100 \%)$ | $(100 \%)$ | $(100 \%)$ | $(100 \%)$ | $(100 \%)$ |  |  |  |
| 말 소 | 36 | 46 | 24 | 12 | 25 | 14 | 2 |
| 합 계 | 499 | 601 | 511 | 474 | 510 | 205 | 45 |

2007년 이후 TAF에 주요한 판결의 형태는 마찬가지로 거절(49\%), 부적격결정( $38 \%$ 와 $32 \%$ ), 허가( $9 \%$ 와 $16 \%$ )가 있다. TAF 는 부적격 판결 $(38 \%$ 와 $32 \%)$ 이 약간 더 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것은 수리가능성 영역에 새롭게 도입한 제한의 영향일 수 있다.

## D 13.24: TAF를 위한 연방법원의 판결형태

| 판결형태 | 2007 | 2008 |
| :---: | :---: | :---: |
| 부적격 | 77 | 102 |
|  | $(38 \%)$ | $(32 \%)$ |
| 거부/거절 | 99 | 153 |
|  | $(49 \%)$ | $(49 \%)$ |
| 허가/인가 | 18 | 50 |
| 반송, 양도 | $(9 \%)$ | $(16 \%)$ |
| 합계 | 9 | 9 |
| 말소 | $\mathbf{( 4 \% )}$ | $(3 \%)$ |
| 합계 | $(100 \%)$ | $\mathbf{3 1 4}$ |
|  | 12 | $100 \%)$ |

예전 소송위원회와 소송서비스를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엄격한 사건의 수를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TAF 내에 서 이러한 서비스의 통합은 사건의 수를 절감하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

## D 13.25: TAF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TAF 내부의 이전 소송서비스와 이전 <br> 소송위원회의 그룹화. | -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수는 소 <br> 송위원회와 이전 서비스의 소송의 <br> 수보다 적다. |

## 13.2 연방법원 데이터 분석

연방법원 곁에서 지금 그리고 이미 사건의 감소를 관찰했다면 연방 법원의 다양한 데이터와 사건의 양에 관계된 예전 보험연방법원, 그 들의 시간, 판결형태, 심의의 형태, 재판의 복잡성 그리고 년 간 재판 의 평균건수의 평가를 승인하여야만 한다. 다음의 표는 현재 보고서 내에서 사용되어진 연방법원 데이터의 간략한 개요가 있다.

D 13.26: 연방법원에서 수집한 데이터 개요

| 연 방 법 원 |  |  |  |  |
| :---: | :---: | :---: | :---: | :---: |
|  |  | 기 준 | 근 거 | 연 도 |
|  |  | 분 야 | 관리복 | 2002-2008 |
| 판결 |  | 분 야 | 관리보고 | 2002-2008 |
| 연기된 | 가모 | 분 야 | 관리보고 | 2002-2008 |
| 사건 |  | 분 야 | 관리보고 | 2002-2008 |
| 절차 | 기간 | 분 야 | 판결 | 2002-2008 |
|  |  | 분 야 | 관리보고 | 2002-2008 |
| 심의형태 | 7 판단) | 회기순환 | 관리보고 | 2002-2008 |
| 소송 cons | 시 소송 | 법원 | 내부통계 | 2007-2008 |
|  |  | 법원 | 관리보고 | 2002-2008 |
|  |  | 법원 | 내부통계 | 2002-2008 |
| 행정 | 수 | 법원 | 내부통계 | 2002-2008 |
| 재판에 의해 | 진 페이지의 | 법원 | 내부통계 | 2002-2008 |
| 주 법원들의 주제 |  |  |  |  |
| 참조/부서/주 | 데이터 | 기준 | 근거 | 연도 |
| TPE | 접수건수 |  |  | 2004-2008 |
| TAF | 판결 수 판결형태 | 분야 | 내부통계 | 2007-2008 |
| 연방부서의 주제 |  |  |  |  |
| 소송위원회 소송서비스 | 접수건수 <br> 판결 수 <br> 판결형태 | 분야 | 내부통계 | 2002-2006 |
| 주 법원들의 주제 |  |  |  |  |
| $\begin{gathered} \mathrm{BE}, \mathrm{SH}, \mathrm{SO}, \\ \mathrm{TI}, \mathrm{VD}, \mathrm{VS}, \\ \mathrm{ZH} \end{gathered}$ | 접수건수 <br> 판결 수 <br> 판결형태 | 분야 | 내부통계 | 2002-2008 |

### 13.2.1 사건의 규모와 본질

일반적으로, 년 간 제기된 사건의 규모를 관찰하면 2002년부터 2006 년까지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연방법 원과 연방사회보장법원 둘 다 2002년에는 총 6823건수를 접수하고, 2006년에는 총 7860건수를 접수했다.

연방법원 이전 제기된 사건은 2003년에는(+34건) 약간 증가했고, 2006 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242,+177,+203)$ 일관성 있게 증가하 였다. 마찬가지로, TFA는 2003년 (-97) 감소했지만, 2004년(+61) 약간 증가하고, 2005 년 $(+242)$ 에는 최대였으며, 2006년(+175)에도 여전히 높 았다.

년 간 증가된 접수크기는 연방법원과 TFA 를 위해 관리하기가 어려 웠던 것을 생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사실 두 연방기관이 판결한 사건의 수가 2002년에는 총 6945건과 2003년에는 총 7216건으로 접수 된 사건의 수를 초과했지만, 2004년부터는 판결의 건수가 감소하고, 접수된 사건의 수보다 적게 되어 2004년에는 총 6960건수(TFA, 2222 건/ 연방법원, 4738건)였고, 이것은 전년보다 작은 크기를 나타냄으로 써 역방향 추세가 되었다. 그 이후 접수사건이 평행하게 증가하면서 판결의 수가 2005년(7147건), 2006년(7626) 계속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접수된 사건과 같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매년 보고된 사건의 수는 증가하였고, 심지어 2006년에는 3455건 경우로 기록적인 비율에 이르 렀다.

2007년부터, 연방법원에 제기된 분쟁의 유형은 놀라운 변화를 보인 다. 실제로 표 D 13.27 수치에서 연방법원의 하위법원의 변화를 연구 했을 때 관찰되었고, 올해 Berne, Schaffhouse, Soleure, Tessin, Vaud, Valais 그리고 Zürich주 고등법원의 판결의 감소가 명백히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LTF 발효도입 이후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크기가 증

가된 것이 그림 D 13.28에 표시되어 있다. 2006년에 비해(그리고 이전 해) 소송은 형법분야에서 두 배(총 621건에서 1310건)가 되었다. 이들 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418 건으로 최대값에 도달하 였다. 한편, 2006년까지 900건에서 1000건을 나타내던 민사사건은 2007 년에는 $50 \%$ 증가한 1497 건이었고, 2008 년에는 1506 건으로 계속해 서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처럼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공 공법률소송(관련)의 소멸(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나 사실의 진술에 관 한)로 이어지는 소송(통일)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이다. 만약 이 러한 마지막 추세를 고려하는 경우 민사법에 대하여는 완벽히 안정적 이고, 형사법에 대하여는 조금 더 안정적이 된다.(표 D 13.29 내에 표 시되어질 것이다.) 이 분야의 추세를 평가하면서, 소송이나 해석질문 의 증가에 대하여 의심 없이 개정된 $\mathrm{CP}(2007.1$. 1)의 동시발효 조항 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혁에 의해 야기된 다양한 변화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TPE의 도입이나 분쟁의 증가는 연방법원이 이 분야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여전히 도달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 후의 해를 위해 결과를 보류하면서 상승추세가 확인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상승추세가 표시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반대로, 공법사건(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포함)은 연방법원의 공법 소송이 포함하고 있고, 2002년(5228), 2006(6239)로 크게 감소하여 안 정적인 진전이 있는 TFA 은 연간 대략 6200 건으로, 통틀어서(즉, TFA 에 제출된 2600건의 소송, 그리고 대략 3500건의 공법사건) 2007년에 는 4381건, 2008년에는 4218건이었다. 이전에 연구되었던 7 개 주 고등 법원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이 독립적인 재판의 수 감소가 수 년 동안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연방법원의 하위법원에 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의회에 의해 의도된 제한은 분명 하게 효과를 거뒸다. 연방법원의 통계에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에는 소송의 $77 \%$ 를 구성하고 이후부터 2006년까지 $79 \%$ 로 증가하였지만 연방법원의 소송은 2007년에는 $61 \%, 2008$ 년에는 $59 \%$ 의 사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법률 소송의 감소는 형사와 민사 소송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2007년부터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제기된 사건의 수는 2006년에는 7860건, 2007년에는 7195(-665), 2008 년에는 7147 건이 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연방법원의 사건 판결 수 와 효과가 2007년과 2008년 접수된 사건보다 더욱 배가된 것으로 보 인다. 2007년은 7994건의 판결이 나타났다. 또한 출원사건의 수는(2657 과 2285) 2002년(3244), 2006년(345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새로운 판 결의 증가는 2007년 5455건, 그리고 2008년 4572건으로(4381, 4218 접 수 건에 대한) 공법분야에 대해서 특히 눈에 띄었다. 기타 알려진 분 야는 2002년부터 접수된 사건과 판결된 사건의 동등한 관계의 수는 2007년 또는 민사 분야 판결을 제외하면 형사 분야는 정상에서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D 13.27: 접수된 사건의 크기와 분야, 연방사회보장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한 판결과 연기된 사건

| 연 도 | 분 야 | 접 수 | 판 결 | 연기된 사건 |
| :---: | :---: | :---: | :---: | :---: |
| 2002 | 공공 | 2959 | 2990 | 796 |
|  | 민사 | 956 | 994 | 267 |
|  | 형사 | 639 | 663 | 160 |
|  | 기타 | - | 1 | - |
|  | TF합 계 | 4554 | 4648 | 1223 |
|  | TFA | 2269 | 2297 | 2021 |
|  | 합계 | 6823 | 6945 | 3244 |


| 연 도 | 분 야 | 접 수 | 판 결 | 연기된 사건 |
| :---: | :---: | :---: | :---: | :---: |
| 2003 | 공공 | 3090 | 3065 | 821 |
|  | 민사 | 888 | 939 | 216 |
|  | 형사 | 610 | 593 | 178 |
|  | 기타 | - | - | - |
|  | TF합계 | 4588 | 4597 | 1215 |
|  | TFA | 2172 | 2619 | 1573 |
|  | 합계 | 6760 | 7216 | 2788 |
| 2004 | 공공 | 3292 | 3197 | 915 |
|  | 민사 | 1002 | 976 | 242 |
|  | 형사 | 535 | 564 | 145 |
|  | 기타 | 1 | 1 | - |
|  | TF합계 | 4830 | 4738 | 1302 |
|  | TFA | 2233 | 2222 | 1584 |
|  | 합계 | 7064 | 6960 | 2886 |
| 2005 | 공공 | 3454 | 3334 | 1035 |
|  | 민사 | 993 | 952 | 282 |
|  | 형사 | 560 | 541 | 165 |
|  | 기타 | - | - | - |
|  | TF합계 | 5007 | 4827 | 1482 |
|  | TFA | 2475 | 2320 | 1739 |
|  | 합계 | 7482 | 7147 | 3221 |
| 2006 | 공공 | 3589 | 3511 | 1113 |
|  | 민사 | 1000 | 980 | 302 |
|  | 형사 | 621 | 622 | 164 |
|  | 기타 | - | - | - |
|  | TF합계 | 5210 | 5113 | 1579 |
|  | TFA | 2650 | 2513 | 1876 |
|  | 합계 | 7860 | 7626 | 3455 |

13. 결과의 변화 : 데이터 분석 결과

| 연 도 | 분 야 | 접 수 | 판 결 | 연기된 사건 |
| :---: | :---: | :---: | :---: | :---: |
|  | 공공 | 4381 | 5455 | 1915 |
|  | 민사 | 1497 | 1371 | 428 |
|  | 형사 | 1310 | 1161 | 314 |
|  | 기타 | 7 | 7 | - |
|  | TF합계 | 7195 | 7994 | 2657 |
|  | 공공 | 4218 | 4572 | 1559 |
|  | 민사 | 1506 | 1530 | 402 |
|  | 형사 | 1418 | 1409 | 323 |
|  | 기타 | 5 | 4 | 1 |

D 13.28: 분야에 의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수


공공법률의 소송 감소는 공공법률 관련소송의 폐지에 의해 부분적 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LTF의 조항 발효 이후부 터, 그 전 몇몇 소송의 대상은 더 이상 각 법률의 영역을 위한 통일 된 절차에 따를 수 없었다. 이러한 소송행위의 단순화 목적은 연방법 원의 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소송행위의 선택은 사건의 실체 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의 표 D 13.29 와 그림 D 13.30 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분야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 도록 시각화하였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의 기 간 동안 연간 공공법률과 관련된 소송은 평균 975건 밖에 받지 않았 다. 통일된 소송의 도입이후 연방법원은 2007년 헌법의 불만과 함께 773건의 소송을 받았고, 2008년에는 헌법불만과 함께 893건의 소송을 받았다. 이것은 형사와 민사소송이 정기적으로 공공법률의 소송에 포 함되어(관련) 함께 흡수된 것을 보여준다.

2007년부터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크기 경우 이전보다 경험적 으로 덜 중요하지만,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마찬가지로 공공법률 관련 소송의 폐지로 인한 것이고, 자주 본질적인 질문의 대한 소송의 관리가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기된 사건 합계의 크기에 대 해 공공법률 소송(관련)을 제외시킬 때 연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중한 사건의 경우 2007년에 계속 증가하였고, 그 다 음 2008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D 13.29: TFA와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분야의 변화 : 사건(평범94))의 크기, 공공관련 법률의 소송(2002-2006)과 헌법불만(2007-2008) 과 함께한 소송들(혼합)

| 연 도 | 분 야 | 접수사건 <br> (평범) | 헌법불만과 <br> 함께한 소송 | 법률관련 소송 | 합 계 |
| :---: | :---: | :---: | :---: | :---: | :---: |
| 2002 | 공공법률소송 | 1876 |  | - | 1876 |
|  | TFA | 2269 |  | - | 2269 |
|  | 민사소송 | 1010 |  | 759 | 1769 |
|  | 파기 | 617 |  | 162 | 779 |
|  | 기타95) | 130 |  | - | 130 |
|  | 합계 | 5902 |  | 921 | 6823 |
| 2003 | 공공법률소송 | 2045 |  | - | 2045 |
|  | TFA | 2172 |  | - | 2172 |
|  | 민사소송 | 930 |  | 745 | 1675 |
|  | 파기 | 554 |  | 165 | 719 |
|  | 기타 | 149 |  | - | 149 |
|  | 합계 | 5850 |  | 910 | 6760 |
| 2004 | 공공법률소송 | 2197 |  | - | 2197 |
|  | TFA | 2233 |  | - | 2233 |
|  | 민사소송 | 1059 |  | 781 | 1840 |
|  | 파기 | 572 |  | 187 | 759 |
|  | 기타 | 34 |  | - | 34 |
|  | 합계 | 6095 |  | 968 | 7063 |
| 2005 | 공공법률소송 | 2412 |  | - | 2412 |
|  | TFA | 2475 |  | - | 2475 |
|  | 민사소송 | 1053 |  | 797 | 1850 |
|  | 파기 | 587 |  | 158 | 745 |
|  | 기타 | 0 |  | - | 0 |
|  | 합계 | 6527 |  | 955 | 7482 |
| 2006 | 공공법률소송 | 2318 |  | - | 2318 |
|  | TFA | 2650 |  | - | 2650 |
|  | 민사소송 | 1061 |  | 869 | 1930 |
|  | 파기 | 711 |  | 251 | 962 |
|  | 기타 | 0 |  | - | 0 |
|  | 합계 | 6740 |  | 1120 | 7860 |

94) 평범한 사건 이해한다 : (1) 공공법률 소송처럼 행정법률 소송은 공공법률 소송 전 다른 소송을 독립적으로 제기; (2) TFA 제기 전 행정법률 소송; (3) 민사소송 전 LP 소송과 개혁된 소송; (4) 파기 전 무효선언의 효력
95) 이 카테고리는 기소 전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고, 특별한 파기전 또는 비 논쟁 재 판영역의 소송이다.

| 연 도 | 분 야 | 접수사건 <br> (평범) | 헌법불만과 함께한 소송 | 법률관련 소송 | 합 계 |
| :---: | :---: | :---: | :---: | :---: | :---: |
| 2007 | 공공법률소송 | 2159 | 228 |  | 2159 |
|  | 사회법 소송 | 2100 | - |  | 2100 |
|  | 민사소송 | 1844 | 206 |  | 1844 |
|  | 형사소송 | 1085 | 339 |  | 1085 |
|  | 기타 | 7 | - |  | 7 |
|  | 합계 | 7195 | 773 |  | 7195 |
| 2008 | 공공법률소송 | 2058 | 228 |  | 2058 |
|  | 사회법 소송 | 2164 | - |  | 2164 |
|  | 민사소송 | 1846 | 116 |  | 1846 |
|  | 형사소송 | 1074 | 549 |  | 1074 |
|  | 기타 | 5 | - |  | 5 |
|  | 합계 | 7147 | 893 |  | 7147 |

D 13.30: 연방법원의 소송 전 제기된 소송의 수


2002년에서 2005년 평균에 비해 $40 \%$ 이상의 증가와 2006년에 비해 $12 \%$ 의 순차적 증가는 공공법률소송(관련)을 참작하여 2006년까지 취 급된 형사소송에서 관찰되어진다. 이제부터 형사소송으로 간주되어지 는 몇몇의 행정소송처럼 연방법원에 제기된 공공법률 소송 중 <<순 수>>공공법률 재판사건의 수는 이 증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대조적으로, 이 변화의 부분은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해석 의 문제를 증가시키는 개정된 CP 의 동시발효항목(2007. 1. 1)과 관련 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설명이 유효한 경우, 우리 연구의 두 번째 단 계 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서 벗어나 있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파기원에 의해 재판된 사건(무효에 대한 이 전 상소만큼의 공공법률소송(관련))의 급격한 증가도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반면에 대상이 된 7개 주 내형사 재판사건의 규모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안정적이며, 여기에는 범죄의 가능성 증가가 포함된 보고는 제외되었다.

공공법률관련 소송의 폐지는 연방법원에 제기된 공공법률사건의 크 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또한 공공 법률소송 이전에 제기된 약간의 논쟁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분야 에서 결과적으로 연방법원의 사회법 소송이전에 더 적게 접수된 사건 의 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은 이 법률의 최신영역에 대해 상 당한 변화를 만드는 것 같다.

실제로, 다음의 표 D 13.31이 가리키는 것처럼 2004년 이후부터 TFA 의 제기된 하위소송의 사건의 크기가 증가한 후 접수된 사건의 수는 결과적으로 2007년(2100), 2008년(2164)에는 2002년(2269)에서 2006 년(2650) 사이의 이전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시절보다 적었다. 이러한 관찰은 연구되어진 7 개의 주 고등법원을 위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 송의 재판도입의 변화를 분석할 때 이미 동일하였다. 이것은 사회보 험법 분야에 관한 검토의 능력제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부터 이 법률영역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감소가 확인된다. 또 한 연방법원의 두 전문 소송분야에 의해 판결된 사건의 수는(2686과 2547) 이전 해와 해당 해(2100과 2164)들에 접수된 사건의 수를 크게 초과한다. 따라서 연기된 사건은 TFA의 같은 시기보다 2007년(1291), 2008년(907)으로 상당히 적었다. 연방법원 내의 예전 TFA의 부분통합 에 의해 관리할 일이 줄어들면서 절약되어진 시간과 사회보험의 영역 의 제한된 검토능력의 도입은 확실히 이 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다.

D 13.31: 예전 연방사회보장법원(2002-2006)과 연방법원의 두 사회법 소송(2007-2008)에 의해 다음해로 연기되거나 판결, 제기된 사건

| 법 원 | 사건의 <br> 크기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 :---: | :---: | :---: | :---: |
| TFA | 제기 | 2269 | 2172 | 2233 | 2475 | 2650 |  |  |
|  | 판결 | 2297 | 2619 | 2222 | 2320 | 2513 |  |  |
|  | 연기 | 2021 | 1573 | 1584 | 1739 | 1876 |  |  |
| 사회법 <br> 소송 I과 <br> II | 페기 |  |  |  |  |  | 2100 | 2164 |

그림 D 13.32 는 연방법원 내 TFA의 부분통합 이후 판결의 증가와 제기된 소송의 감소를 보여준다.

D 13.32: 예전 연방사회보장법원(2002-2006)과 연방법원의 두 사회법 소송(2007-2008)에 의해 판결, 제기된 사건


D 13.33: 사건 크기의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소송수단의 단순화 | -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수의 감소. <br> - 공법관련 소송을 추상화 할 때 소송 수의 증가. <br> - 개정된 CP 조항의 동시발효와 관련한 형사 분야 <br> 소송 수의 증가. |
| 최소분쟁가치의 증가 | - 민사 분야에 아무런 영향 없음. <br> 이 주제에 대해 재팡관 역에 대견앨 일팅터뷴해도 영향은 빕 기 가설을 지지하지 <br> 않는다. |
| 검토능력의 제한 | - 사회보험 영역에서 제기된 사건 크기의 감소 설명 <br> 은 가능함. |
| 연방법원내의 TFA의 부 <br> 분통합 | -2007년 이후부터 판결한 사건의 크기가 증가. |

### 13.2.2 법률수단의 변화

법률수단 제도의 단순화에 따라 연방법원 이전 소송제기를 위해 사 용되어진 법률수단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공법(관련)소송의 폐지에 따라 공법영역의 새 로운 소송(LTF)은 예전 공법소송(OJ)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

또한, 개혁과 일부조치 이후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라든가 또는 여전 히(우리연구의 배경 내에서 질문된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제한된 검 토능력의 도입, 사회보험 분야를 위한 이의신청은 감소되었다.

2008년부터, 공법영역의 소송은(LTF) 증가한다. 2007년 소송건수는 2988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3640건이었다. 그들을 위한 부차적인 헌 법소송은 2007년에 401건이 접수되었고, 2008년에는 500건이 접수되 었다. 공법의 두 가지 소송은 헌법소송의 수가 2007년 167건, 2008년 161 건으로 안정적임을 인식했다. 두 가지 민사소송은 2007년에는 234 건, 2008년에는 339 건의 헌법소송 증가를 인식했다. 개정에 대한 요청 에 대해서는 2006년 37건, 2007년과 2008년에는 73건으로 2007년부터 더 많이 증가했다.

## D 13.34: 공법수단의 변화

| 연 도 | 공법소송/ <br> 기타수단 | 행정법 <br> 소송/ <br> 기타수단 | 개정요청 <br> 등 | 사회보험 <br> 소송 <br> (TFA) | 공법소송 <br> (LTF) | 부차적 <br> 헌법소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002 | 1876 | 1029 | 54 | 2269 | - | - | 5228 |
| 2003 | 2000 | 1040 | 50 | 2172 | - | - | 5262 |
| 2004 | 2056 | 1191 | 45 | 2233 | - | - | 5525 |
| 2005 | 2177 | 1228 | 49 | 2475 | - | - | 5929 |
| 2006 | 2305 | 1247 | 37 | 2650 | - | - | 6239 |
| 2007 | 363 | 556 | 73 | 0 | 2988 | 401 | 4381 |
| 2008 | 0 | 5 | 73 | 0 | 3640 | 500 | 4218 |

D 13.35: 공법수단 변화의 전체적인 조망


예전 공법소송 하 민사소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개혁된 소송은 2002 년 672건, 2003년602건으로 먼저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다음 2004년(734)은 증가하고, 2006년 755건에 도달하여 약간 증가하지만 상 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LP 소송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2002년 258건에 대해 2006년에는 221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미 본 바와 같이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제기된 예전 민사소송(LP 소송과 개혁소송)에 비해 2007년 이후 민사영역(LTF)의 소송의 수가 훨씬 더 많다.

D 13.36: 민사절차의 변화

| 연 도 | 개혁소송과 <br> 기타 <br> 법적절차 | LP 소송과 <br> 기타 <br> 법적절차 | 개정요청 | 민사영역의 <br> 소송 | 합 계 |
| :---: | :---: | :---: | :---: | :---: | :---: |
| 2002 | 672 | 258 | 26 | - | 956 |
| 2003 | 602 | 265 | 21 | - | 888 |
| 2004 | 734 | 251 | 17 | - | 1002 |
| 2005 | 739 | 241 | 13 | - | 993 |
| 2006 | 755 | 221 | 24 | - | 1000 |
| 2007 | 152 | 19 | 25 | 1301 | 1497 |
| 2008 | 0 | 0 | 32 | 1474 | 1506 |

D 13.37: 민사절차 변화의 전체적 조망


형사소송에 관해서는 2003년(456)과 2005년(501건 소송)사이에 무효 선언에 대한 소송의 수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증가는 2006년 (581) 소송유형의 다소 중요한 증가로 반영되고, 2007년 이후 형사영 역(LTF)의 새로운 소송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아래(P. 162)에 논의되었다. 개정요청은 2007년 이후 부터 그들 분야에 대해 약간 증가하였다.

## D 13.38: 형사절차의 변화

| 연 도 | 무효선언 | TPF 소송 | 불만과 <br> 소송 <br> Cacc. | 개정요청 <br> 등 | 형사영역 <br> 소송 | 합 계 |
| :---: | :---: | :---: | :---: | :---: | :---: | :---: |
| 2002 | 506 | - | 128 | 5 | - | 639 |
| 2003 | 456 | - | 146 | 8 | - | 610 |
| 2004 | 482 | 15 | 33 | 5 | - | 535 |
| 2005 | 501 | 51 | 0 | 8 | - | 560 |
| 2006 | 581 | 32 | 0 | 8 | - | 621 |
| 2007 | 146 | 0 | 0 | 24 | 1140 | 1310 |
| 2008 | 1 | 0 | 0 | 20 | 1397 | 1418 |

D 13.39: 형사절차 변화의 전체적인 조망


D 13.40: 형사절차의 변화의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검토능력의 제한 | 사회보험 영역에 제기된 사건의 크기의 감소를 설명 <br> 하는 것이 가능함 |

법률수단의 변화와 사건크기를 분석한 다음, 사건기간과 관련하여 연방법원에 부담이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다.

실제로 연방형사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법원의 이전 재판의 품질 개선을 허락한 두 개의 주 법원 보장의 도입이라든가 LTF의 일부조 치, 더 일반적인 새로운 사법조직을 가정하면 사건처리 시간의 감소 를 기대할 수 있다.

### 13.2.3 사건의 기간

연방법원에 대한 사건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2002년 이후부터 평균 기간이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결정을 위한 평균기간은 83일이었고, 이 평균은 2006년에 104일에 이르렀고, 다음은 2007년에 는 약 $50 \%$ 증가한 155 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2008년은 22일로 낮았 고, 이번에는 결정을 위해 평균 133 일이 걸렸다.

D 13.41: 연방법원의 사건결정 평균기간(일) ${ }^{96)}$

96) TFA 의 사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제정을 위한 평균기간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총 과정의 평균기간도 마찬가지로 높아진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사 건들의 처리기간과 관련한 사항들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난 다. 이것은 주로 공법영역의 평균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TFA 는 항상 더 일관성 있는 처리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 내의 그들의 통합이 최근 소송사건 기간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적합 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확실히 형사와 민사 사건의 평균값 이하로 표시되었다. 형사법제정(11일)처럼 2007년(70일), 2008년(85일)형사영역 의 결정 또한 전체평균 이하를 나타낸다.

표 D 13.42 가 가리키는 것처럼 연방법원에 의한 판결사건의 대부분 은 1~3개월 사이에 결정되었다.

이미 2002 년, 이 기간은 1712 건수, $36.8 \%$ 를 나타내면서 가장 일반적 이었다. 적어도 이 범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연방법원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 남았다. 이것은 또한 2007년 37.3\% (2983건)와 2008년 $38.7 \%$ (2906건)을 나타내면서 더 일반적이 되었다. 이 증가는 특히 민 사사건의 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1 \sim 3$ 개월 사이에 결정되어진 사 건은 2007 년(774건)에 총 $56.5 \%$ 와 2008년(826건)에 총 $54 \%$ 였다. 그러 나 흥미로운 점은 민사영역의 대부분의 결정이 빠르게 판결되더라도 이는 또한 2007년까지 매년 최대값에 도달하고, 결정은 2000 일을 초 과했다.

형사사건들은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최소 $38.8 \%$ (2005년, 210건)와 최 대 $47.6 \%$ (2003년, 282 건)사이에서 항상 변동되었다. 참고로 또한 한 달 미만의 형사사건 판결은 2006년(118건) $19 \%$ 였고, 2007년(438건) $37.7 \%, 2008$ 년(443건) $31.4 \%$ 로 2007년에 크게 증가하고 2008년에도 여 전히 높았다. $7 \sim 12$ 개월 동안 지속된 형사와 민사사건은 2007년부터 비교적 덜 했다. 민사의 경우 2006년(241건), 사건의 $24.6 \%$ 에 대하여

2007년(81건), 사건의 5.9\%였고, 2008년(114건), 사건의 $7.5 \%$ 를 나타냈 다. 마찬가지로 형사영역에 있어서 2006년(175건)은 사건의 $28.1 \%$ 에 대하여 2007년(35건)은 사건의 $3 \%, 2008$ 년(81건)은 사건의 $5.7 \%$ 를 구 성하였다. $1 \sim 2$ 년 기간 사이의 민사사건은 약간 증가하였는데, 2007년 이전에는 $1 \%$ 미만이었고, 2007년(40건)에는 $2.9 \%, 2008$ 년(28건)에는 $1.8 \%$ 였다. 마찬가지로 형사사건도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최대 $0.6 \%$ 에서 2007년(11건)에는 사건의 $0.9 \%$ 였고, 2008 년( 10 건)에는 사건의 $0.7 \%$ 였 다. 2 년 이상의 사건들은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판결되어진 두 가지 유형의 분쟁사건 수에 비례하여 매우 낮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몇 년간의 통계데이터 부족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의 데 이터는 민사사건 기간 감소를 나타내는데, 6 개월 이내 판결된 사건은 이전 해들은 최대 $81.86 \%$ 와 최소 $73.7 \%$ 사이의 수치를 보였는데, 2007 년에는 사건의 $91 \%, 2008$ 년에는 사건의 $90.6 \%$ 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로 형사법에서도 이러한 사건은 $82.5 \%$ 를 절대 초과하지 않았지만 2007 년에 $96 \%, 2008$ 년에 $93.5 \%$ 까지 변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비록 법률의 분야들에 대해 접수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연방법원의 하위법 원의 재판의 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공법은 이 판결의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 은 특히 4~6개월 사이 기간의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과 2006년 사이는 대략 $11 \%$ 였지만, 2007년(1171건)에는 $21.5 \%$ 였고, 2008 년(966건)에는 $21.1 \%$ 였다. $7 \sim 12$ 개월 사이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감소했 지만, 형법과 민법보다 더 낮은 정도이다. $1 \sim 2$ 년 사이의 공법의 분쟁 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는데, 2007년 이전에는 건수의 약 $2 \%$ 였지만, 2007년(781건)에는 건수의 $14.3 \%$ 였고, 2008년(352건)에는 $7.7 \%$ 를 나타 내어 2007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 D 13.42: TFA와 연방법원에 의해 판결된 분쟁유형의 기간

| 연도 | 분야 | 판결 | 기간의 분포 |  |  |  |  |  | 평귝기간, 일 |  |  | 최대기간,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1월 } \\ & \text { 미만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1- } \\ \text { 3월 } \end{gathered}$ | 4- <br> 6월 | $\begin{gathered} \text { 7- } \\ \text { 12월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1- } \\ \text { 2년 } \end{gathered}$ | 2년 <br> 이상 | 결정 | 제정 | 진행 | 결정 | 제정 |
| 2002 | 공법 | 2990 | 795 | 1017 | 348 | 771 | 55 | 4 |  |  |  | 1365 | 187 |
|  | 민사 | 994 | 198 | 406 | 149 | 231 | 6 | 4 |  |  |  | 2861 | 198 |
|  | 형사 | 663 | 196 | 289 | 60 | 115 | 3 | - |  |  |  | 445 | 105 |
|  | 기타 | 1 | - | - | 1 | - | - | - |  |  |  | 94 | 1 |
|  | 합계 | 4648 | 1189 | 1 | 558 | 1117 | 64 | 8 | 83 | 11 | 94 | 2861 | 198 |
|  | TFA | 2297 |  |  |  |  |  |  | 312 |  |  |  |  |
|  | 합계 | 6945 |  |  |  |  |  |  |  |  |  |  |  |
| 2003 | 공법 | 3065 | 909 | 935 | 371 | 791 | 59 | - |  |  |  | 672 | 252 |
|  | 민사 | 939 | 225 | 377 | 166 | 162 | 4 | 5 |  |  |  | 1401 | 222 |
|  | 형사 | 593 | 122 | 282 | 85 | 102 | 2 | - |  |  |  | 532 | 94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4597 | 1256 | 1594 | 622 | 1055 | 65 | 5 | 88 | 10 | 98 | 1401 | 252 |
|  | TFA | 2619 |  |  |  |  |  |  | 312 |  |  |  |  |
|  | 합계 | 7216 |  |  |  |  |  |  |  |  |  |  |  |
| 2004 | 공법 | 3197 | 1029 | 975 | 309 | 814 | 66 | 4 |  |  |  | 905 | 171 |
|  | 민사 | 976 | 262 | 369 | 160 | 179 | 2 | 4 |  |  |  | 1885 | 184 |
|  | 형사 | 564 | 152 | 222 | 91 | 96 | 3 | 0 |  |  |  | 462 | 112 |
|  | 기타 | 1 | - | 1 | - | - | - | - |  |  |  | 38 | 1 |
|  | 합계 | 4738 | 1443 | 1567 | 560 | 1089 | 71 | 8 | 90 | 8 | 98 | 1885 | 184 |
|  | TFA | 2222 |  |  |  |  |  |  | 276 |  |  |  |  |
|  | 합계 | 6960 |  |  |  |  |  |  |  |  |  |  |  |
| 2005 | 공법 | 3334 | 947 | 957 | 372 | 972 | 86 | - |  |  |  | 647 | 227 |
|  | 민사 | 952 | 181 | 347 | 174 | 245 | 3 | 2 |  |  |  | 2750 | 197 |
|  | 형사 | 541 | 122 | 210 | 72 | 134 | 3 | - |  |  |  | 420 | 87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4827 | 1250 | 1514 | 618 | 1351 | 92 | 2 | 98 | 11 | 109 | 2750 | 227 |
|  | TFA | 2320 | 15 | 335 | 244 | 1233 | 418 | 75 | 262 |  |  | 1843 |  |
|  | 합계 | 7147 | 1265 | 1849 | 862 | 2584 | 510 | 77 |  |  |  | 2750 |  |
| 2006 | 공법 | 3511 | 875 | 1115 | 388 | 1043 | 89 | 1 |  |  |  | 1151 | 156 |
|  | 민사 | 980 | 178 | 361 | 197 | 241 | 2 | 1 |  |  |  | 2418 | 141 |
|  | 형사 | 622 | 118 | 254 | 74 | 175 | 1 | - |  |  |  | 415 | 154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5113 | 1171 | 1730 | 659 | 1459 | 92 | 2 | 104 | 9 | 113 | 2418 | 156 |
|  | TFA | 2513 | 19 | 297 | 253 | 1245 | 633 | 66 | 292 |  |  | 1629 |  |
|  | 합계 | 7626 | 1190 | 2027 | 912 | 2704 | 725 | 68 |  |  |  | 2418 |  |
| 2007 | 공법 | 5455 | 668 | 1675 | 1171 | 1137 | 781 | 23 | 187 | 25 | 212 | 1730 | 231 |
|  | 민사 | 1371 | 244 | 774 | 231 | 81 | 40 | 1 | 101 | 25 | 126 | 2225 | 163 |
|  | 형사 | 1161 | 438 | 530 | 147 | 35 | 11 | - | 70 | 11 | 81 | 617 | 152 |
|  | 기타 | 7 | 2 | 4 | 1 | - | - | - | 75 | 9 | 84 | 147 | 35 |
|  | 합계 | 7994 | 1352 | 2983 | 1550 | 1253 | 832 | 24 | 155 | 23 | 178 | 2225 | 231 |


| 연도 | 분야 | 판결 | 기간의 분포 |  |  |  |  |  | 평균기간, 일 |  |  | 최대기간,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br> 미만 | $\begin{aligned} & \text { 1- } \\ & \text { 3월 } \end{aligned}$ | 4- <br> 6월 | $\begin{gathered} \text { 7- } \\ \text { 12월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1- } \\ \text { 2년 } \end{gathered}$ | 2년 <br> 이상 | 결정 | 제정 | 진행 | 결정 | 제정 |
| 2008 | 공법 | 4572 | 757 | 1485 | 966 | 1001 | 352 | 11 | 158 | 18 | 174 | 1454 | 424 |
|  | 민사 | 1530 | 267 | 826 | 293 | 114 | 28 | 2 | 101 | 34 | 129 | 1442 | 232 |
|  | 형사 | 1409 | 443 | 592 | 283 | 81 | 10 | - | 85 | 11 | 96 | 644 | 173 |
|  | 기타 | 4 | - | 3 | 1 | - | - | - | 86 | 4 | 92 | 159 | 9 |
|  | 합계 | 7515 | 1467 | 2906 | 1543 | 1196 | 390 | 13 | 133 | 20 | 151 | 1454 | 424 |

관찰된 데이터는 우리에게 공법영역 절차기간의 증가는 연방법원의 사회보험통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구체적인 비 교를 원한다면 연방법원의 사회법 소송처럼 예전 연방사회보장법원의 시간처리 관련데이터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유형별 데이 터와 완전치 않은 TFA를 위한 통계는 2007년과 2008년을 위한 사회 법 영역 사건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으며, 연방법원의 내부통계에 대해 따로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되어질 것이다. 표 D13.43은 2007년 연방법원내의 통합 전과 후의 사회보험의 변화를 평가한 것이다.

예전 사회보장법원의 데이터에 대해 연구한다면 사건처리를 위한 평균기간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2년과 2003년에 평균 10.4 개월( 312 일)을 나타냈고, 연방법원 보다 약 4 배가 더 많다. 그러나 재판을 위한 평균일수는 2004년과 2005년에 262일, 약 8.7개월 을 나타내어 연방법원보다 2.5 배정도 높았다. 이 평균은 2006년에 다 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사건처리를 위한 기간은 평균 292일, 약8.7 개월로 2002년의 평균이하로 유지되었다. 2005년과 2006년, 7~12개월 사이에 처리된 사건은 각각 1233 건과 1245 건으로 사건의 약 $50 \%$ 였다. 이 비율은 연방법원에서 이전에 관찰되어진 것보다 더 높다. 2007년 부터 이 값은 다시 감소하지만, 2007년(825건)에 30.9\%, 2008년(774건) 에 $31.4 \%$ 로 약간 높게 유지되었다. 이 하락과 동시에 한 달 미만의 판결은 2002 년( 15 건)에 $0.6 \%$ 에서 2008년(151건)에 $6.1 \%$ 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1 \sim 3$ 개월의 사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598건)에 22.4\% 그리고 2008년(730건)에 29.6\%를 나타냈다. 형사도 마찬가지로 구분되어진 기간이 두 번째에 위치해 있다. 연방법원에 비하여 $1 \sim 2$ 년 기간의 재판은 2005 년(418건)에 판결의 $18 \%$ 를, 2006 년 (633건)에 사건의 $25.2 \%$ 를 나타내어 훨씬 높았다. 이것은 2007년에 판 결의 $26 \%$ (696건)으로 높게 유지되었고, 2008 년에는 판결사건의 $11.1 \%$ (273건)로 낮아져 전년도의 $1 / 3$ 이었다. 2 년 이상의 판결사건에 대해서 는 2005년(75건)에 $3.2 \%, 2006$ 년(66건)에 $2.6 \%$ 나타내었으나, 2007년 (14건)에 사건의 $0.5 \%$ 를 나타낸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급격히 감 소하였다. 게다가 2008 년에는 1 개의 사건만이 있었다. 사회보험법 영 역을 처리하는 것은 훨씬 더 빨리 되었는데, 사건의 약 $1 / 3$ 이 $1 \sim 3$ 개월 사이에 판결되고, $7 \sim 12$ 개월 사이에 $1 / 3$ 이, 그리고 평균은 2002년에 312건, 2008년에 218 건으로 3 개월 이상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FA를 연방법원으로 부분 통합한 이후부터 사건처리시간이 개선되었 고 이것은 가설과 일치한다.

D 13.43: 사회보험 영역 사건의 기간

| 연도 | 판결수 | 기간의 분포 |  |  |  |  |  | 평균기간(일) |  |  | 최대기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1월 } \\ \text { 미만 } \end{gathered}$ | $\begin{gathered} \hline \text { 1~ } \\ 3 \text { 월 } \\ \hline \end{gathered}$ | 4~ 6월 | $\begin{gathered} \text { 7~ } \\ \text { 12월 } \end{gathered}$ | $\begin{aligned} & 1 ~ \\ & 2 \text { 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2년 } \\ & \text { 이상 } \end{aligned}$ | 결정 | 제정 | 진행 | 결정 | 제정 |
| 2002 | 2297 |  |  |  |  |  |  | 312 |  |  |  |  |
| 2003 | 2619 |  |  |  |  |  |  | 312 |  |  |  |  |
| 2004 | 2222 |  |  |  |  |  |  | 276 |  |  |  |  |
| 2005 | 2320 | 15 | 335 | 244 | $\begin{gathered} 123 \\ 3 \end{gathered}$ | 418 | 75 | 262 |  |  | 1843 |  |
| 2006 | 2513 | 19 | 297 | 253 | $\begin{gathered} 124 \\ 5 \end{gathered}$ | 633 | 66 | 292 |  |  | 1629 |  |
| 2007 | 2673 | 64 | 598 | 476 | 825 | 696 | 14 | 276 | 33 | 310 | 1208 | 142 |
| 2008 | 2467 | 151 | 730 | 538 | 774 | 273 | 1 | 218 | 14 | 232 | 825 | 91 |

## D 13.44: 사회보험 영역의 사건 평균기간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의 증가는 연방법원에 의한 사회보험의 폐지와 관련 있는 듯이 보인다. 실제로 민사와 형사사건 의 기간은 연방법원의 하위법원에 의한 재판의 질의 개선을 예측한 2007년 이후부터의 감소와 일치한다. 또한 2007년 이후부터 사회보험 영역 절차의 기간의 가속화는 마찬가지로 연방법원 내에서 TFA의 부 분통합 이후부터 사건의 처리기간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참고로, 개혁에 대한 적응은 사건처리 기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건의 기간은 향후 몇 년 동안 감소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D 13.45: 사건기간의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연방법원 내에서 TFA의 부분적 통합 | - 연방법원 절차기간의 일반적인 증가 <br> (TFA의 사건기간을 제외할 때) <br> - 그러나 이 통합 이후 사회보험 영역 <br> 에서의 기간의 가속화 |
| 사회보험 영역에서 검토능력의 제한 | -2007년 이후 사회보험 영역 기간의 <br> 가속화에 대한 설명가능 <br> 연방법원에 대한 하위법원의 수준변화 |
| - 형사와 민사영역 사건기간의 약간 <br> 감소는 하위법원 재판의 개선으로 <br> 인한 것이다. |  |

### 13.2.4 절차의 총 기간

사건처리 기간 변화의 일반적인 전망을 하기 위하여 절차의 각 단 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게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방 법원의 판결분석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주 법원의 재판은 연방법원의 판결처럼 매년 날짜(사실, 요구, 설문조사), 1 심 재판 등 형법과 가정법(민법), 사회보험(공법)영 역이 게시되지 않은 각 판결의 50 처럼 이 데이터를 포함한 공개된 각 판결을 위해 입력된다.

사회보험법의 영역에서 절차의 총 기간은 많든 적든 2002년에서 2008 년 사이 약 1240 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 심판결의 행정결정과 사실(장애보험, 질병보험 영역에 대한 혜택 요구의 대부분)사이의 기 간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377일로 평균기간이 감소하였고, 2005년에 는 이 평균기간이 491 일로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상당히 안정적이 었다가 2008년에는 평균 585일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 법률영역을 위

한 사실의 날짜와 1 심 재판의 기간 사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절차 중 가장 긴 단계와 2000 일을 초과하는 최대값의 특정사건으로 구성된다. 이 결정과 마지막 주 법원사이의 처리시간은 2002년에는 387일, 2008년에 394일이 걸림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매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연방법원의 판 결과 2심 재판사이에 있는데, 연방법원의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처럼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평균기간이 감소했고, 특히 2008년에는 399일 에서 316 일로 감소했고, 고려된 시간의 상당한 기간은 평균이하를 나 타냈다.
그것은 또한 마지막 주 법원재판과 1 심 재판 사이보다 길지 않고, 따라서 보고되었듯이 최근의 연구 대상 연도들에서 절차의 총 기간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1 심 재판의 행정결정과 사실 사이의 기간 이 증가하는 것에 달려있다.

D 13.46: 사회보험법 절차의 총 기간


가정 법률 영역 절차의 평균기간은 공법영역 절차의 평균기간보다 훨씬 짧다. 실제로 2004년(1058일)을 제외하고 2006년 최소 742일에서 2008년 897일 사이에서 움직인다. 1심 법원 재판에서 사실에 대한 기 간(이혼요구의 대부분 또는 잠정조치 요구)은 사전에 예상된 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2004년에는 624일로 매우 처리시간이 길었고, 2006년에는 331 일로 크게 감소했으며, 2007년에는 420 일로 다소 조금 증가하였다. 사회보험법도 마찬가지로 매우 긴 단계와 종종 2000일을 초과하는 최대수치로 구성되었고, 특히 2004년에는 1심법원 재판을 위 해 2646일에 도달하는 최대값을 나타냈다. 마지막 주 법원 재판과 1심 재판 사이의 기간은 2007년과 2008년에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정되었다. 연방법원에 대한 2심 재판의 기간은 총 평균 253 일로 더 길다. 연구 대상 판결을 보면 연방법원에 대한 처리시간은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조금 더 길어졌고,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유사하게 보인다. 이것은 연방법원의 결정 이전에 평균 170 일을 나타내어 일관된 절차 기간 중 최소한의 기간으로 구성된다.

D 13.47: 가정 법률 절차의 총 기간

$\mathbf{N}=\mathbf{3 7 1}$

형사절차의 소요기간에 관해서는 2004년(981일)을 제외하고는 2002 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499일 최소값이었지만 2008 년에는 1736 일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1심법원 재판과 사실사 이의 사건처리 기간의 증가로 보인다. 실제로 2002년 1심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1000 일 조금 더 걸렸고 2008년에는 1200 일이 더 걸렸다. 참고로 또한, 이 법률 영역은 형사수사 날짜와 관련한 데이터 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고려되어진 사실의 날짜이다. 하지만 훨씬 이전부터 자주 다른 법률영역에 비하여 이 법률영역은 1 심법원의 판결 선고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수적우월을 나타내어 형사심리의 시작에 부합한다. 사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1 심재판과 2심 재판 사이의 기간 은 2007년(270일)에는 약간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지만 2008년 (238일)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연방법원과 2심법원 재판사 이의 기간은 2007년(189일)에는 약간 감소하고, 2008년(238일)로 정상 적인 수치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가정 법률도 마찬가 지로 절차의 이 단계에서 평균 222 일이 걸려 전체적으로 길지 않았다.

D 13.48: 형사 절차의 총 기간


## $\mathrm{N}=485$

일반적으로 절차의 총 기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절차의 개시기간이 증가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지막 주 법원과 1 심법원 재판사 이의 기간은 첫 번째보다 연구되어진 마지막 해에 더 높은 비율이었지 만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민사 및 형사영역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건처 리기간은 안정적이었으며 항상 절차의 다른 단계에 비해 낮게 유지되 었다. 또한 2008 년부터 사회보험 영역이 마찬가지로 더 짧아졌다.

## D 13.49: 절차의 총 기간에 대한 종합평가

## 절차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2007년부터 형사 및 민사영역에 있어 이전에 관찰되던 감소는 연방법원의 판결 샘플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 절차개시의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주로 증가된 절차의 총 기간에 비해 연 방법원의 처리 기간은 사회보험영역에서 2007년부터 감소 또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 13.2.5 진행결과와 판결형태

거절/거부는 항상 2002~2008년 사이 예전 연방사회보장법원과 연방 법원의 가장 일반적인 판결형태였다. 실제로 2002년에서 2007년에는 약 $57 \%$ 였던 비율이 마지막 해인 2008년에는 $51 \%$ 로 감소되었다. 이것 은 지금까지 대부분 유지되었다. 허가/승인은 연방법원과 TFA의 판결 형태의 평균 $13 \%$ 를 나타내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판결의 약 $5 \%$ 를 구성하는 반송은 사회보험과 TFA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 확 인과 양도는 거의 없다.

연방법원은 항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연방법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통일된 소송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송 내에서 모든 불만을 제기하는 이러

한 경향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2002~2006년에 TFA와 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사건의 수를 헤아리고 2007년 과 2008년에 비교하면 개혁에 따라 판결의 이러한 유형의 증가를 관 찰할 수 있다.

두 연방법원의 2002년과 2006년 사이의 변화된 평균은 2002년(1537 건)에는 $23.6 \%, 2006$ 년(1723건)에는 $23.8 \%$ 였고, 2007 년에 2141건, 판결 된 사건의 총 $28.4 \%$ 로 부적격 사건의 수는 증가하였다. 또한 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이 방법에 의해 판결되어진 사건은 총 2301 건으로 판결의 $32.1 \%$ 였다. 비율측면에서 연방법원은 TFA보다 이 러한 판결의 사건을 더 자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6년까지 연 간 TFA 의 사건의 200 건에서 300 건 사이를 구성하였고 이것은 판결의 약 $11 \%$ 였던 반면 연방법원은 2002년~2006년 사이 사건의 총 $31 \%$ 에 가깝게 나타났다.
부적격은 연방법원 내에서 가장 흔한 두 번째 판결형태이다. 부적격 판결의 증가는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데 이전에는 $35 \%$ 를 초과 하지 않았지만(2003년 302건), 2007년에는 $38.3 \%$ 로 증가했고(479건) 2008년에는(536건) $37.8 \%$ 였다. 마찬가지로 형사영역에서는 연방법원의 경우 2002년(147건) ~ 2004년(134건)으로 판결의 $24 \% \sim 25.6 \%$ 에서 움 직였으나, 2005년(158건) ~ 2006년(177건)으로 30\%~31\%였고, 2007년 ( 466 건) ~ 2008 년( 526 건)에는 $42.4 \% \sim 38.6 \%$ 였다. 공법영역의 분쟁에서 이 부적격 판결의 비율은 2006년(1010건), $30.6 \%$ 였고, 2007년(1193건), $23 \%$ 로 $6 \%$ 정도 감소하였다. 그 다음은 다시 상승하여 평균 $28.3 \%$ (1239건) 이하로 유지된다. 통일된 소송의 장점은 단일 절차 내에서 모든 불만 을 받는 것이다. 이 조치는 복잡한 예전 시스템보다 더 단순한 법적 수단이지만 당분간은 부적격 사건의 수를 줄일 만큼 충분치 않다.

## D 13.50: 판결형태의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통일된 소송의 도입 | -부적격 재판사건의 수는 이 조치에 <br> 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 D 13.51: 분쟁의 유형에 의한 TFA와 연방법원의 판결형태

| 연 도 | 분 야 | 판 결 | 판 결 형 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취소 | 부적격 | $\begin{aligned} & \text { 거부, } \\ & \text { 거절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허가, } \\ & \text { 승인 } \end{aligned}$ | 반 송 | 확 인 | 양 도 |
| 2002 | 공공 | 2990 | 251 | 843 | 1527 | 364 | - | 1 | 4 |
|  | 민사 | 994 | 60 | 310 | 501 | 121 | - | 2 | - |
|  | 형사 | 663 | 52 | 147 | 379 | 84 | - | - | - |
|  | 기타 | 1 | - | - | - | 1 | 1 | - | - |
|  | 합계TF | 4648 | 363 | 1300 | 2407 | 570 | 1 | 3 | 4 |
|  | TFA | 2297 | 67 | 27 | 1285 | 338 | 370 |  |  |
|  | 합계 | 6945 | 430 | 1537 | 3692 | 908 | 371 | 3 | 4 |
| 2003 | 공공 | 3065 | 220 | 892 | 1594 | 357 | - | - | 2 |
|  | 민사 | 939 | 76 | 302 | 461 | 99 | 1 | - | - |
|  | 형사 | 593 | 67 | 134 | 309 | 83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합계TF | 4597 | 363 | 1328 | 2364 | 539 | 1 | - | 2 |
|  | TFA | 2619 | 95 | 293 | 1476 | 369 | 386 |  |  |
|  | 합계 | 7216 | 458 | 1621 | 3840 | 908 | 387 | - | 2 |
| 2004 | 공공 | 3197 | 233 | 906 | 1695 | 359 | 1 | - | 3 |
|  | 민사 | 976 | 61 | 291 | 510 | 113 | 1 | - | - |
|  | 형사 | 564 | 40 | 134 | 274 | 74 | - | - | 42 |
|  | 기타 | 1 | - | - | - | 1 | - | - | - |
|  | 합계TF | 4738 | 334 | 1331 | 2479 | 547 | 2 | - | 45 |
|  | TFA | 2222 | 46 | 252 | 1244 | 295 | 385 |  |  |
|  | 합계 | 6960 | 380 | 1583 | 3723 | 842 | 387 | - | 45 |
| 2005 | 공공 | 334 | 248 | 958 | 1779 | 346 | - | - | 3 |
|  | 민사 | 952 | 56 | 295 | 467 | 131 | 2 | - | 1 |
|  | 형사 | 541 | 31 | 158 | 283 | 69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합계TF | 4827 | 335 | 1411 | 2529 | 546 | 2 | - | 4 |
|  | TFA | 2320 | 53 | 262 | 1340 | 319 | 346 |  |  |
|  | 합계 | 7147 | 388 | 1673 | 3869 | 865 | 348 | - | 4 |


| 연 도 | 분 야 | 판 결 | 판 결 형 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취소 | 부적격 | $\begin{aligned} & \text { 거부, } \\ & \text { 거절 } \end{aligned}$ | 허가, <br> 승인 | 반 송 | 확 인 | 양 도 |
| 2006 | 공공 | 3511 | 208 | 1010 | 1895 | 393 | - | - | 5 |
|  | 민사 | 980 | 69 | 300 | 503 | 108 | - | - | - |
|  | 형사 | 622 | 29 | 177 | 313 | 103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합계TF | 5113 | 306 | 1487 | 2711 | 604 | - | - | 5 |
|  | TFA | 2513 | 88 | 236 | 1479 | 394 | 316 |  |  |
|  | 합계 | 7626 | 394 | 1723 | 4190 | 988 | 316 | 1 | 5 |
| 2007 | 공공 | 5455 | 272 | 1193 | 3074 | 587 | 328 | 1 | - |
|  | 민사 | 1371 | 119 | 479 | 630 | 141 | 1 | - | 1 |
|  | 형사 | 1161 | 63 | 466 | 517 | 115 | - | - | - |
|  | 기타 | 7 | - | 3 | - | 4 | - | - | - |
|  | 합계TF | 7994 | 454 | 2141 | 4221 | 847 | 329 | 1 | 1 |
| 2008 | 공공 | 4572 | 199 | 1239 | 2311 | 522 | 299 |  | 2 |
|  | 민사 | 1530 | 111 | 536 | 681 | 202 | - |  | - |
|  | 형사 | 1409 | 47 | 526 | 618 | 210 | 5 |  | 3 |
|  | 기타 | 4 | - | - | 3 | 1 | - |  | - |
|  | 합계TF | 7515 | 357 | 2301 | 3613 | 935 | 304 |  | 5 |

### 13.2.6 연방법원의 의결형태

최소분쟁 가치의 증가는(art 72 LTF$)$ 연방법원 이전 제소되는 소송 의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 조치로 인해 연방법원에서 소송의 수가 감소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원칙적인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연방법원에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하고, 비교는 LTF에 따른 5 명 의 재판관처럼 의제에 따라 $5 \sim 7$ 명 사이의 재판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통계는 연방법원의 수치 밖에 없다. 또한 이 데이터는 5 명의 재판 관에 의해 처리된 다른 소송의 유형들을 구분하지 않는다(원칙적인 판단문제, 제출된 주 규범행위 또는 국민투표, 등). 이 변화는 대략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율 면에서 2007년 이후부터 5명의 재판관에 의한 재판의 수는 감소하였다. 실제로 연방법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7 년에 재판의 $9.3 \%$ 중 5 명의 재판관의 결합-( 75 건), $0.9 \%$, 순환수단 에 의해( 669 건), $8.4 \%$ 였다. 2008 년에 이 비율은 회의에 의해(73건), $1 \%$, 순화수단에 의해(626건), $8.3 \%$ 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재

판의 유형은 2005년(655건), $13.6 \%$ 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2002년 (545건)~2006년(587건)사이에 $12 \%$ 조금 미치지 못하게 증가했다. 이것 은 개혁에 의해 원칙적인 법적문제를 연방법원에 아직까지 가져오지 못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회의의 수가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2012 년을 위한 예상 최종보고서 내에서 연방법원의 내부문화와 재판의 질 에 대한 변화의 결과로 평가될 것이다.

D 13.52: 의결형태의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최소분쟁 가치의 증가 | - 아무 효과 없음. 연방법원은 원칙적인 <br> 법적문제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음. |
|  | - 회의 수의 상당한 감소 |

D 13.53: 영역, 결정에 의한 재판의 수와 의결의 형태

| 연도 | 분 야 | 순환수단 |  |  |  |  | 회 의 |  |  |  | 단순 <br> 절차 <br> 3명 <br> 재판관 | 대 <br> 통 <br> 령 <br>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판관 <br> 1명 | $\begin{gathered} \text { 재판관 } \\ \text { 3명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재판관 } \\ 5 \text { 명 } \end{gathered}$ | 재판관 <br> 7명 | 합계 | $\begin{gathered} \text { 재판관 } \\ 3 \text { 명 } \end{gathered}$ | 재판관 <br> 5명 | $\begin{gathered} \text { 재판관 } \\ \text { 7명 } \end{gathered}$ | 합계 |  |  |
| 2002 | 공공 |  | 1441 | 276 | 12 | 1729 | 6 | 35 | 8 | 49 | 1020 | 192 |
|  | 민사OJ |  | 481 | 123 | - | 604 | 1 | 30 | - | 31 | 320 | 39 |
|  | 형사OJ |  | 401 | 33 | - | 434 | 26 | 28 | - | 54 | 136 | 39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1 |
|  | 합계OJ |  | 2323 | 432 | 12 | 2767 | 33 | 93 | 8 | 134 | 1476 | 271 |
| 2003 | 공공 |  | 1451 | 313 | 4 | 1768 | 4 | 33 | 4 | 41 | 1084 | 172 |
|  | 민사OJ |  | 475 | 109 | - | 584 | 10 | 21 | - | 31 | 275 | 49 |
|  | 형사OJ |  | 387 | 54 | - | 441 | 9 | 8 | - | 17 | 92 | 43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OJ |  | 2313 | 476 | 4 | 2793 | 23 | 62 | 4 | 89 | 1451 | 264 |
| 2004 | 공공 |  | 1520 | 308 | 7 | 1835 | - | 41 | 4 | 45 | 1158 | 159 |
|  | 민사OJ |  | 620 | 105 | - | 725 | 3 | 21 | - | 24 | 181 | 46 |
|  | 형사OJ |  | 345 | 39 | - | 384 | 2 | 23 | - | 25 | 88 | 67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1 |
|  | 합계OJ |  | 2485 | 452 | 7 | 2944 | 5 | 85 | 4 | 94 | 1427 | 273 |

TEILIII : 개정결과의 효과

| 연도 | 분 야 | 순환수단 |  |  |  |  | 회 의 |  |  |  | 단순 <br> 절차 <br> 3명 <br> 재판관 | $\begin{aligned} & \text { 대 } \\ & \text { 통 } \\ & \text { 령 } \\ & \text { 령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판관 <br> 1명 | 재판관 <br> 3명 | 재판관 <br> 5명 | 재판관 <br> 7명 | 합계 | $\begin{gathered} \text { 재판관 } \\ \text { 3명 } \end{gathered}$ | 재판관 5명 | 재판관 <br> 7명 | 합계 |  |  |
| 2005 | 공공 |  | 1153 | 366 | 7 | 1926 | 3 | 35 | 1 | 39 | 1204 | 165 |
|  | 민사OJ |  | 591 | 154 | - | 745 | - | 20 | - | 20 | 151 | 36 |
|  | 형사OJ |  | 305 | 42 | - | 347 | 4 | 30 | - | 34 | 148 | 12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OJ |  | 2449 | 562 | 7 | 3018 | 7 | 85 | 1 | 93 | 1503 | 213 |
| 2006 | 공공 |  | 1733 | 338 | 6 | 2077 | - | 33 | - | 33 | 1271 | 130 |
|  | 민사OJ |  | 643 | 128 | - | 771 | 1 | 16 | - | 17 | 147 | 45 |
|  | 형사OJ |  | 356 | 44 | - | 400 | 3 | 22 | - | 25 | 187 | 10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OJ |  | 2732 | 510 | 6 | 3248 | 4 | 71 | - | 75 | 1605 | 185 |
| 2007 | 공공 | 40 | 3236 | 333 | 8 | 3577 | 10 | 29 | 4 | 43 |  |  |
|  | LTF | 703 | 990 | 99 | - | 1089 | - | 3 | - | 3 |  |  |
|  | 민사OJ | 14 | 338 | 80 | - | 418 | - | 12 | - | 12 |  |  |
|  | LTF | 367 | 451 | 88 | - | 539 | 5 | 16 | - | 21 |  |  |
|  | 형사OJ | 5 | 271 | 20 | - | 291 | 1 | 6 | - | 7 |  |  |
|  | LTF | 367 | 445 | 41 | - | 486 | - | 5 | - | 5 |  |  |
|  | 기타 | - | 6 | - | - | 6 | 1 | - | - | 1 |  |  |
|  | 합계 | 1496 | 5737 | 661 | 8 | 6406 | 17 | 71 | 4 | 92 |  |  |
| 2008 | 공공 | 5 | 3236 | 54 |  | 244 | - | 3 |  | 3 |  |  |
|  | LTF | 1143 | 990 | 306 |  | 3156 | - | 21 |  | 21 |  |  |
|  | 민사OJ | 1 | 338 | 11 |  | 26 | - | - |  | - |  |  |
|  | LTF | 471 | 451 | 190 |  | 991 | 2 | 39 |  | 41 |  |  |
|  | 형사OJ | 1 | 271 | - |  | 6 | - | 1 |  | 1 |  |  |
|  | LTF | 500 | 445 | 65 |  | 891 | 1 | 9 |  | 10 |  |  |
|  | 기타 | 1 | 6 | - |  | 3 | - | - |  | - |  |  |
|  | 합계 | 2122 | 4691 | 626 |  | 5317 | 3 | 73 |  | 76 |  |  |

### 13.2.7 재판의 복잡성

판결에 의한 평균 페이지 수를 통해 연방보험법원과 연방법원이 사 사건 처리에 소비한 시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법원이 판결 한 연간 평균 페이지 수는 2002년에 6.6페이지, 2003년에 6.7페이지, 2004년에 7.1페이지, 2005년에 7페이지, 2006년과 2007년에 7.1-페이 지, 2008년에 6.9 페이지였다. 우리는 2 년간 반 페이지가 약간 증가했 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약 7페이지로 안 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재판은 2003 년부터 점차적으로 더 복잡하게 되 는 듯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길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부서는 기존 기소를 하는 부 서처럼 파산부서와 예전 기소부서가 되었다. 2004년 이후부터 사회보 험결정은 2006년까지 연간 평균 7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씩 증가했다. 다른 소송은 해가 지남에 따라 약간 변화가 있는 듯이 보인다. 연방 법원의 새로운 형사 법원처럼 예전 형사 재판소에 의한 형사재판사건 은 반대로 2003년과 2008년(7페이지)을 제외하고 연간 판결은 평균 8 페이지로 다른 소송보다는 다소 높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대 값에 관련하여 이것들은 특정사건과 더 복잡한 소송을 더 이상 나타 내지 않는다. 2007년과 2008년에 가장 긴 재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의해 작성되었다. 또한 연구된 것 중 가장 최대값도 112 페이지였고, 같은 소송에 의해 처리되었다.

결론적으로, 사건의 복합성은 새로운 연방재판조직의 도입이후 감소 하지도 증가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약간의 증가 이후, 결정은 7 페이지로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 D 13.54: 재판의 복잡성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개혁의 다른 조치 | 판결의 평균 페이지 수는 안정적으로 <br> 유지. |
| 검토능력의 제한 | 사회보험영역에서 2007년 이후부터 <br> 약간의 감소의 설명가능. |

D 13.55: 소송에 따른 판결의 최대 페이지 수와 평균 페이지 수

| 연 도 | 소 송 | 퍈결 수 | 평균 페이지 수 | 최대 페이지 수 |
| :---: | :---: | :---: | :---: | :---: |
| 2002 | I. 공법소송 | 941 | 7 | 34 |
|  | I. 공법소송 | 920 | 7 | 38 |
|  | I. 민사소송 | 743 | 7 | 45 |


| 연 도 | 소 송 | 퍈결 수 | 평균 페이지 수 | 최대 페이지 수 |
| :---: | :---: | :---: | :---: | :---: |
|  | II. 민사소송 | 851 | 6 | 32 |
|  | LP 부서 | 244 | 5 | 16 |
|  | 파기소송 | 812 | 8 | 42 |
|  | 기소부서 | 136 | 6 | 62 |
|  | TFA | 2298 | 6 | 31 |
|  | 합계 | 6945 | 6.6 | 62 |
| $2003$ | I. 공법소송 | 1072 | 8 | 3 |
|  | I. 공 법소송 | 936 | 8 | 47 |
|  | I. 민사소송 | 655 | 8 | 32 |
|  | II. 민사소송 | 785 | 6 | 27 |
|  | LP 부서 | 297 | 4 | 15 |
|  | 파기소송 | 733 | 7 | 25 |
|  | 기소부서 | 122 | 5 | 21 |
|  | TFA | 2619 | 6 | 19 |
|  | 합계 | 7219 | 6.7 | 47 |
| 2004 | I. 공법소송 | 1076 | 8 | 45 |
|  | I. 공법소송 | 1083 | 7 | 37 |
|  | I. 민사소송 | 728 | 8 | 41 |
|  | II. 민사소송 | 772 | 6 | 29 |
|  | LP 부서 | 269 | 5 | 13 |
|  | 파기소송 | 733 | 8 | 40 |
|  | 기소부서 | 76 | 3 | 14 |
|  | TFA | 2222 | 7 | 21 |
|  | 합계 | 6959 | 7.1 | 45 |
| 2005 | I. 공법소송 | 1235 | 7 | 40 |
|  | I. 공법소송 | 1092 | 7 | 33 |
|  | I. 민사소송 | 780 | 8 | 39 |
|  | II. 민사소송 | 758 | 6 | 35 |
|  | LP 부서 | 232 | 5 | 13 |
|  | 파기소송 | 730 | 8 | 45 |
|  | TFA | 2320 | 7 | 31 |
|  | 합계 | 7147 | 7 | 81 |
| 2006 | I. 공 법소송 | 1188 | 7 | 29 |
|  | I. 공법소송 | 1112 | 7 | 41 |
|  | I. 민사소송 | 799 | 8 | 81 |
|  | II. 민사소송 | 875 | 6 | 27 |
|  | LP 부서 | 223 | 5 | 17 |
|  | 파기소송 | 916 | 8 | 51 |
|  | TFA | 2513 | 7 | 93 |
|  | 합계 | 7626 | 7.1 | 93 |


| 연 도 | 소 송 | 퍈결 수 | 평균 페이지 수 | 최대 페이지 수 |
| :---: | :---: | :---: | :---: | :---: |
| 2007 | I. 공법소송 | 1089 | 8 | 36 |
|  | I. 공법소송 | 1210 | 7 | 36 |
|  | I. 민사소송 | 853 | 8 | 29 |
|  | II. 민사소송 | 1056 | 6 | 26 |
|  | 형사소송 | 1094 | 8 | 48 |
|  | I. 사회법소송 | 1312 | 7 | 31 |
|  | II. 사회법소송 | 1374 | 6 | 28 |
|  | 합계 | 7988 | 7.1 | 48 |
| 2008 | I. 공법소송 | 985 | 8 | 47 |
|  | I. 공법소송 | 1046 | 7 | 26 |
|  | I. 민사소송 | 751 | 8 | 27 |
|  | II. 민사소송 | 1121 | 6 | 25 |
|  | 형사소송 | 1061 | 7 | 112 |
|  | I. 사회법소송 | 1322 | 7 | 25 |
|  | II. 사회법소송 | 1225 | 6 | 24 |
|  | 합계 | 7511 | 6.9 | 112 |

### 13.2.8 인적자원

사법부의 1 al. 1 조항에 따르면 2007년 이전부터 연방법원은 보통 30 인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사회보장법원의 부서는 123 al . 1 OJ 조항에 따라 총 $9 \sim 11$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예전 법 하에서 연구된 부분 내에서 고려된 기간을 보면,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연 방법원은 30 인의 법관으로 구성되고 TFA는 11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 어 보통 총 41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연방법원에 대한 법률의 발 효조항은 결정되고 LTF 1 al .1 에 따라 연방법원의 두 기관은 앞으로 보통 $35 \sim 45$ 명의 법관으로 할 수 있고, 총 법관의 수는 감소한다. 이것 은 연방법원의 법관의 수를 결정하는 연방의회의 명령과 부합하는 1 al .5 조항을 제공한다. 사법조직의 전체적인 개정 후 연방법원의 부담 의 감소를 기대를 감안할 때, 법관의 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2007년,

연방법원은 38.8 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부족한 수를 채울 수가 없어 2008년에는 38 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었다. 재판 서기의 수는 2007년과 2008년 사이 총 약 127 명으로 년 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다. 한편, 행정직원의 수는 2002년~2008년 사이 14.4 명이 증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는 일반사무국 $(+5.2)$ 처럼 정보분야 $(+10.8)$ 였고, 가장 큰 직 원의 감소는 연방법원(-10.6)과 함께 예전 TFA의 연속적인 합병으로 인한 Lucerne 사이트의 직원과 관계있다. 한편, LTF 직원의 변화와 연 방법원에 의한 판결사건 크기 증가를 감안할 때 연방법원의 직원의 작업부담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흥미롭게 보인다. 표 13.56 은 년 간 예전 TFA와 연방법원의 서기 및 법관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수의 변 화를 함께 보여준다.

접수된 사건의 증가와 함께, I.공법소송의 법관과 서기는 2002년과 2005년 사이 일관성 있게 점점 더 많은 사건을 재판했다. 실제로, 법 관 당 판결의 수는 134.4 에서 176.4 였고, 재판 서기의 작업의 분량은 연간 45.9에서 63.3으로 증가했다. 2006년 이 작업부담의 약간 감소와 2005년(1293)과 2006년(1182), 2007년(1028)에 접수된 사건이 상당 수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지위폐지 및 재판서기의 2.1 명의 폐지 와 함께 재판서기 당 사건의 +1.7 및 법관 당 사건의 평균 +11.8 의 증 가를 볼 수 있다. 전체에서 2007년에 법관 당 최대 사건의 수는 총 181.5 였고, 재판서기 당 사건은 62.6 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접수된 사 건을 초과하여(1028) 판결되어(1089)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에 감쇠한다. 실제로 판결의 수는 가장 낮았고(985), 재판서기 (-9.1)에 비해 법관(-17.3)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수가 줄었음을 나타냈 다. 참고로 2005년보다 낮은 부담으로 감소하지만, 2007년 이후부터 이 최신 수치들은 통일되게 증가했다.

## D 13.56: 소송 및 서비스에 의한 법관 및 재판서기의 수와 예전 TFA와 연방법원의 행정직원의 수

|  | 소송/ 서비스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 :---: | :---: | :---: | :---: |
| 법관 <br> 97) | I. 공법소송 | 7 | 7 | 7 | 7 | 7 | 6 | 6 |
|  | II.공법소송 | 6 | 6 | 6 | 6 | 6 | 6 | 6 |
|  | I. 민사소송 | 6 | 6 | 6 | 6 | 6 | 5 | 5 |
|  | II. 민사소송 | 6 | 6 | 6 | 6 | 6 | 6 | 6 |
|  | 파기소송/형사 | 5 | 5 | 5 | 5 | 5 | 6 | 6 |
|  | TFA/I.사회법소송 | 11 | 11 | 11 | 11 | 11 | 5 | 5 |
|  | II. 사회법소송 |  |  |  |  |  | 4.8 | 4 |
|  | 합계 | 41 | 41 | 41 | 41 | 41 | 38.8 | 38 |
| 재판 <br> 서기 | I. 공법소송 | 20.5 | 20.5 | 20.5 | 19.5 | 19.5 | 17.4 | 18.4 |
|  | II. 공법소송 | 19 | 19 | 19 | 19 | 19 | 20.2 | 20.2 |
|  | I. 민사소송 | 13 | 13 | 13 | 13 | 13 | 15 | 14.5 |
|  | II. 민사소송 | 14 | 14 | 14 | 14 | 14 | 16.5 | 17.5 |
|  | 파기소송/형사 | 14.5 | 15.6 | 14.5 | 14.5 | 14.5 | 17.1 | 17.7 |
|  | 연합 | 5 | 5 | 5 | 6 | 6 | - | - |
|  | TFA/I.사회법소송 | 40.8 | 42.4 | 41.4 | 40.8 | 41 | 20.2 | 19.6 |
|  | II. 사회법소송 |  |  |  |  |  | 20.4 | 19.4 |
|  | 합계 | 126. | 128. | 127. | 126. | 127 | 126. | 127. |
| 행정 <br> 직 원 | 일반비서 | 6.3 | 6.3 | 7 | 7 | 7 | 10 | 11.5 |
|  | 도서관 | 5.6 | 6.1 | 6.5 | 6.5 | 6.5 | 7.5 | 7.5 |
|  | 서류 | 11 | 11 | 11 | 11 | 11.4 | 15.1 | 15.1 |
|  | 정보 | 20.5 | 22.5 | 23.5 | 27.5 | 28.5 | 31.3 | 31.3 |
|  | 개인금융서비스 | 21.7 | 24.7 | 25.2 | 25.2 | 25.2 | 26.8 | 26.8 |
|  | 중앙사무국 | 13.4 | 13.4 | 13.3 | 13.3 | 13.3 | 13.3 | 12.8 |
|  | 소송사무국 | 24.5 | 24.5 | 23 | 23 | 23 | 23 | 23 |
|  | A.S 법의 TFA/TF소송 <br> : Lucerne 사무국 | 29 | 29 | 29 | 29 | 29 | 12.4 | 12.4 |
|  | 집행관/수위실 <br> /서비스 |  |  |  |  |  | 5 | 5 |
|  | 합계 | 131 | 137. | 138. | 142. | 143. | 144. | 145. |

97) 특별한 파기소송의 수는 지정되지 않았고, 2004년까지 기소부서와 연방형사법원
II. 공법소송은 I. 공법소송과 정확히 같은 경향을 따른다. 그러나 2007년 이 재판에 의해 처리된 사건 평균수의 증가로 법관 수의 감소 는 없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법관의 수는 동일하게 남아있었으 나, 2002년 920건, 2006년 1112건에 비해 2007년에는 최대 1210건의 판결이 있었다. 2007년, 법관 당 사건은 총 평균 201.7로 16.4 가 증가 된 사건을 판결했다.

그 부분에 있어 2007년 이후부터 재판서기는 1.2 가 증가했다. 그러 나 재판서기는 법관보다 더 적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업에 대한 부담은 1.4 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큰 증 가는 또한 2002년 이후부터 처음으로 접수사건(1131)보다 판결된 사건 (1210)이 더 많게 하였다. 다음해에는 재판서기의 부담이 8.2, 법관의 부담이 27.5 가 줄어 판결이(1045)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또한 처리된 사건의 크기의 수준에 대해 연방법원의 부담을 가장 크 게 덜어주었으며, 법관 당 재판의 수(174.2)와 재판서기당 재판의 수 (51.7)는 2004년(180.5와 57)보다 낮았다.
I. 민사소송은 2007 년부터 법관의 정원이 감소하였고 재판서기의 정 원은 1.2 가 증가하였다. 법관과 재판서기는 그들의 작업부담에 관련하 여 서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공법소송처럼 2003년(655건 판결)을 제 외하고, 마찬가지로 판결사건의 수는 증가하였는데, 우선 2002년(743) ~2006년(743)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2007년(853건 판결)은 더 일관되 게 증대되었다. 2002년 법관 당 123.8 건에서 2006년 법관 당 133.2건 으로 증대된 사건의 평균수는 2007년에는 37.4 가 증가하여 평균 170.6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접수된 사건(772)보다 판결된 사건(853)이 더 많았다. 그 다음 법관은 부담의 감소가 있었지만, 2006 년 값보다 높게 유지되었으며, 2008년부터 법관 당 사건은 평균 150.2 가 되었다. 한편, 재판서기는 2006년에 61.6에서 2007년 56.9로 4.6의

[^19]작업감소가 있었다. 이 감소는 계속되었는데, 2008년에도 판결 수의 (751) 감소로 평균 사건수가 51.8이 되었다.

2002년~2005년 접수된 사건이 다소 안정을 보였지만(1038~1092), 판 결 측면에서 일부 감소(2002년(1095건)~2005년(990건))가 있었던 II.민 사소송은 2006년(1098)에 초기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07년(1056) 에 조금 감소하였다. 이전 소송과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같은 수를 유지한 II.민사소송의 법관과 재판서기 당 평균 사건의 수는 2008년에 증가하였는데, 2007년에 법관 당 사건의 수가 176에서 2008년에 186.6 으로 증가하고, 접수된 사건의 수(1083)보다 재판의 수(1121)가 더 많 았다. 재판서기의 정원은 증가하였다. 그들은 2006년까지 14 명으로 구 성되었고, 2007 년에는 $16.5,2008$ 년에는 17.5 였다. 이 정원의 변화로 그 들의 작업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2006년에는 78.4건이 2007년과 2008 년에는 약 64 건으로 대략 14.4 건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연방법원의 예전 형사파기소송은 2002년(812)와 2003년(733)사이로 판결의 수는 감소하였고, 이것은 2005년(730)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으며, 그 다음 2006년에는 186으로 증가하였다. 사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사건의 수는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따른 판결은 2007년에 1094건에 이른다. 이 판결의 비 율은 2008년에 높게 유지된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에 대한 추가 적인 법관의 제공을 통해 법관에 의해 판결된 사건의 평균수는 2005 년(146)에서 2006(183.2)로 크게 증가하고 2007년(182.3)까지 안정적으 로 유지되다가, 2008년(177)에 조금 감소한다.

예전 사회보장법원은 특히 2005년(2475)과 2006년(2650)에 접수사건 이 일관성이 있었지만, 연방법원내의 TFA의 부분 통합에 의해 2007년 에(2200)는 감소하였고 2008년에도(2164) 감소하였다. 반대로 판결사건의 수는 2685건을 기록한 2007년 이후부터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2008 년에도 2547건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법관의 수는 2007년 이후부터

감소하여 11 명에서 9.8 명이 되었고 2008년에는 9 명이 되었다. 법관은 2007년부터 더 많은 사건을 판결했는데, I.사회법소송의 평균 건수는 262.2, II.사회법소송의 평균 건수는 286.6이었으며, 2008년에는 각각 264.4와 306.3이었다. TFA와 연방법원의 통합이후 법관 당 판결 수의 증가는 분명한데, 2002 년에 예전 TFA 를 위해 처리한 사건은 법관 당 판결 수가 208.8 이었고, 2006년에는 228.5 로 변동이 있었다. 정원의 약 간 감소에도 불구하고(-0.4), 재판서기 당 처리된 사건의 평균수는 마 찬가지로 2006년에 61.3\%에서 64.9로 변경되었고, 2007년에는 연방법 원의 두 사회보험소송은 67.4였다. 2008년, 재판서기는 전년도보다 수 가 약간 적었는데 이것은 다른 궤도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2007년부터, 접수사건의 증가를 완화하고 연방법원 의 법관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연방법원의 재판서기와 법관의 작 업량을 증가시켰다. 이 평균은 2005년까지 법관 당 사건은 170 이었지 만, 2006년에 법관 당 사건 수가 186으로 이미 증가가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법관 당 평균 사건 수는 206 건을 나타내어 법관 당 평균 사건 수가 평균 20 이 증가하였다. 2008 년에는 판결비율이 높게 유지되 었지만, 법관의 부담은 약간 하락한 197.8 을 나타내었다. 재판서기에 대 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략 변하지 않았는데, 우선 2005년까지 54.6 에서 56.4 사이에서 평균수가 결정되었고, 2006년(60건)부터 조금 증 가해서 2007년(63)까지 증가하고, 2008년(59)에는 다시 감소했다.

## D 13.57: 인적자원 종합평가

| 측 정 |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
| :---: | :---: |
|  | -2007 년에는 법관의 작업부담이 증가 <br> 하였고, 2008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br> 인적자원의 변화 판서기의 작업부담은 다소 안정되 <br> 었다. |

D 13.58: 소송과 재판에 의한 재판서기와 법관의 수

| 소 송 | 볼 륨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 :---: | :---: | :---: | :---: |
| I.공법 <br> 소송 | 접 수 | 948 | 1089 | 1100 | 1293 | 1182 | 1028 | 983 |
|  | 판 결 | 941 | 1072 | 1077 | 1235 | 1188 | 1089 | 985 |
|  | 법관 평균 | 134.4 | 153.1 | 153.9 | 176.4 | 169.7 | 181.5 | 164.2 |
|  | 재판서기평균 | 45.9 | 52.3 | 52.5 | 63.3 | 60.9 | 62.6 | 53.5 |
| II.공 법 소송 | 접 수 | 928 | 956 | 1097 | 1119 | 1136 | 1131 | 1075 |
|  | 판 결 | 920 | 936 | 1083 | 1092 | 1112 | 1210 | 1045 |
|  | 법관 평균 | 153.3 | 156 | 180.5 | 182 | 185.3 | 201.7 | 174.2 |
|  | 재판서기평균 | 48.4 | 49.3 | 57 | 57.5 | 58.5 | 59.5 | 51.7 |
| I. 민사 소송 | 접 수 | 677 | 637 | 802 | 784 | 810 | 772 | 763 |
|  | 판 결 | 743 | 655 | 728 | 780 | 799 | 853 | 751 |
|  | 법관 평균 | 123.8 | 109.2 | 121.3 | 130 | 133.2 | 170.6 | 150.2 |
|  | 재판서기평균 | 57.2 | 50.4 | 56 | 60 | 61.5 | 56.9 | 51.8 |
| II. 민사 <br> 소송 | 접 수 | 1092 | 1038 | 103.8 | 1066 | 1120 | 1072 | 1083 |
|  | 판 결 | 1095 | 1082 | 1040 | 990 | 1098 | 1056 | 1121 |
|  | 법관 평균 | 182.5 | 180.3 | 173.3 | 165 | 183 | 176 | 186.8 |
|  | 재판서기평균 | 78.2 | 77.3 | 74.3 | 70.7 | 78.4 | 64 | 64.1 |
| 소송/형사 | 접 수 | 779 | 719 | 759 | 745 | 962 | 1085 | 1074 |
|  | 판 결 | 812 | 733 | 733 | 730 | 916 | 1094 | 1062 |
|  | 법관 평균 | 162.4 | 146.6 | 146.6 | 146 | 183.2 | 182.3 | 177 |
|  | 재판서기평균 | 56 | 47 | 50.6 | 50.3 | 63.2 | 64 | 60 |
| TFA/ <br> I.사회법 소송 | 접 수 | 2269 | 2172 | 2233 | 2475 | 2650 | 1014 | 1080 |
|  | 판 결 | 2297 | 2619 | 2222 | 2320 | 2513 | 1311 | 1322 |
|  | 법관 평균 | 208.8 | 238.1 | 202 | 210.9 | 228.5 | 262.2 | 264.4 |
|  | 재판서기평균 | 56.3 | 61.8 | 53.7 | 56.9 | 61.3 | 64.9 | 67.3 |
| II.사회법 소송 | 접 수 | - | - | - | - | - | 1086 | 1084 |
|  | 판 결 | - | - | - | - | - | 1374 | 1225 |
|  | 법관 평균 | - | - | - | - | - | 286.3 | 306.3 |
|  | 재판서기평균 | - | - | - | - | - | 67.4 | 63 |
| 함계98) | 접 수 | 6823 | 6760 | 7063 | 7482 | 7860 | 7195 | 7147 |
|  | 판 결 | 6945 | 7216 | 6960 | 7147 | 7626 | 7994 | 7515 |
|  | 법관 평균 | 169.4 | 176 | 169.8 | 174.3 | 186 | 206 | 197.8 |
|  | 재판서기평균 | 54.8 | 56.2 | 54.6 | 56.4 | 60 | 63 | 59 |

98) 이 합계에는 기소부서의 사건, 연방형사법원, 특별한 파기소송, 연방법원에 의해 처리된 다른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법관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 TEILIV : 목표대상그룹에 대한 효과

연방사법제도의 개혁 및 이와 결부된 변화들은 소제기인에게 긍정 적 효과를 유발해야할 것이다. 이들에게 개정의 변화에 대해 직접 설 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제기인들은 연방대법 원에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매우 번거롭고 그 성과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제기인에 미친 영 향을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두 가지 접근방 식이 취해졌다.
(1) 첫째로 약 150 명 가량의 변호사에게 설문을 하였다. 이때 연방사 법제도 개혁 이전과 이후에 연방대법원에서 다섯 가지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두 번째 접근방식으로서 연방대법원에 정기적으로 소를 제기하 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설문이 선택되었다. 그런 사회단체들 가 운데 도합 17 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사회단체의 선택은 연방사법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보충으로서 33 개의 연방부서들에 이 주제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졌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 연방대법원에 제소될 수 있는 그런 부 서들이다.

분석의 중점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놓여 있다. 다른 두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보충적 성격을 띠며 변화의 전 스펙 트럼을 포괄하지 않고 훨씬 더 좁은 경험적 토대에 기반한다.

## 14. 변호사에 대한 연방사법개정조치의 효과

우리는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이 변호사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결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총 열 한 가지 변화에 대해 상술하겠다.

## 14.1 주요변화에 대한 판단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변호사들에게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에 따 른 변화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를 물었다. 아래의 표에는 가장 중요한 관점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D 14.1: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에 따른 결과를 변호사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틀 안에서 일어난 변화 |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 비율 (\%) |
| :--- | :---: |
| 소송가액 제한의 예외로서 근본적인 의미 <br> 를 지닌 법적 문제의 도입 | 99.3 |
| 통합소원의 도입 | 99.3 |
|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 | 99.3 |
| 소송가액 제한의 상승 | 98.6 |
|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 98.6 |
|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 97.9 |
| 사회보장법에서 법징심리의 제한 | 96.7 |
| 연방주에서 법관이 판결하는 전심의 확대 | 93.1 |
| 전자(온라인) 제소의 가능성 | 92.5 |
| 제소 기간에 대한 신규정 | 91.8 |
| 사회보장법 관련 소송비용부담의무의 확대 | 87.6 |

출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mathrm{n}=147$.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변화들을 거의 모든 설문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표본조 사의 구성을 토대로 2007년 이전과 이후 정기적으로 연방대법원에 항 소를 제기한 변호사들의 상황을 반영할 것이다(2005년 이전과 이후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소한 다섯 건의 사건을 변호한 사람들에게만 설문 했다). 사회보장법에서의 변화에 대한 다소 낮은 인지도는 이 법영역 이 법률사무소들 중 일부에 의해서만 처리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변호사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얼마나 중 요한 의미가 있는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D 14.2: 변호사 측에서의 변화

귀하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에 따른 변화를 감지했습니까?


출처: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 설문; 3 명은 법률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 답 변하지 않았음.

개혁은 전체적으로 50 퍼센트 이상의 설문대상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의 변화를 가져왔다. 39.3 퍼센트의 설문대상자에게는 연방사법제 도의 개혁이 일상적인 업무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7퍼

센트에 약간 못 미치는 설문대상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특히 법률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스위스나 테신인 설문대상자들은 독일 어권 스위스의 변호사들보다 변화를 감지했다는 답변을 명백히 더 적 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선 설문대상자들이 담당한 법영역이 이 사실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모든 설문대상자에게 그들이 주로 종사하는 세 가지 법영역을 명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래의 표는 변 호사들의 업무영역과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에 따른 변화의 감지를 서 로 연관시킨다.

D 14.3: 법률영역에 따른 변화

| 법영역 | 변호사 수 (복수 응답 가능) | 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br> 감지한 변호사 비율 (\%) |
| :---: | :---: | :---: |
| 형법 | 74 | 48.6 |
| 공법 | 79 | 45.6 |
| 민법 | 95 | 48.4 |
| 사회보장법 | 61 | 67.2 |
| 채권추심법 및 파산법 | 9 | 55.5 |

출처: 변호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 표는 변화를 느끼는 변호사들 상당수가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활 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역에서는 법정심리의 제한과 소송비용 부담의무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밖의 법 영역에서는 각각 설문대상자들의 약 절반 정도가 변화를 확인한다. 이러한 관찰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언어지역들(표 D 14.2 참조) 간의 차이점들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활동 중인 피설 문 변호사들의 비율은 독일어권 스위스에서 56.4퍼센트인데 반해 서

스위스와 테신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22퍼센트로 절반 이하이다.
변호사들에게 개혁으로 인해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들 을 핵심어로 명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는 응답 빈도에 따라 정열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D 14.4: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들

|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들 | 응답수 |
| :--- | :---: |
| 통합소원 | 28 |
| 사회보장영역에서 법정심리의 제한 | 26 |
| 소송절차의 촉진 | 14 |
| 법률문서의 형태 및 작성, 전자 제소의 가능성 | 13 |
| 소송절차의 간소화 | 10 |
| 사회보장법의 소송비용부담의무 | 9 |
| 소송절차의 연장 | 8 |
| 더 명확해진 법률규정 | 6 |
|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연기적 효과와 관련된 변화들 | 5 |
| 휴정기간 관련 새로운 기한 및 규정 | 3 |
|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 3 |
| 권리보호의 감소 | 3 |
| 소송가액 제한 | 3 |
| $ㄱ ㅣ ㅌ ㅏ ~$ | 54 |

출처: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 설문

통합소원의 신설이 가장 빈번히 언급된다.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법 정심리의 제한 또한 응답횟수가 26 번으로 변호사들에게는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 그 밖의 응답들은 그 빈도에 있어 수치가 확 떨어진

다. 즉 소송절차의 촉진과 전자제소의 가능성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언급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에서 질적인 주관 식 답변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상이 나타난다. 즉 피설문 변호 사들에 따르면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소송절차의 간소화 경향 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것은 권리보호의 감소를 동반한다.

## 14.2 법적수단과 절차의 변경

이 절에서는 우선 상소와 절차의 여덟 가지 변화를 상술한다.

### 14.2.1 통합소원의 신설

통합소원의 도입으로 입법자가 의도한 것은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 기하기 위한 상소절차의 선택에 있어서의 단순화였다. 소제기인 편에 서의 경계설정문제(어떠한 상소절차를 선택해야 하는가?) 및 종종 많 은 시간을 요하는 해명과정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99) 특히 연방 사법제도 조직법(OG) 하에서 각하판결로 처리되었던 수많은 업무들은 연방사법제도 조직법(OG) 하에서의 상소절차 선택 시의 어려움들을 보여준다.100)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조사했다.

- 변호사들이 보기에 통합소원의 도입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를 간소 화시켰는가?
- 통합소원의 도입을 통해 권리보호가 변화되었는가?

99) 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 일 연방사법제도의 전면 개정에 대한 공고, BBl

100) 발터, 프리돌린 (2006): 연방대법원법이 변호사/정당대변인에게 미친 영향, 실린 곳: 에렌첼러, 베른하르트; 슈바이처 라이너 J. (편): 연방사법제도의 재조직 - 실제 에서의 혁신과 영향, St. Gallen, 352쪽.

질적인 인터뷰에서 피설문 변호사들은 통합소원에 대해 대체로 긍 정적으로 발언한다. 통합소원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때 형식적인 간 소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소원에서도 하자있는 법적용에 대한 주 장과 하자있는 사실확인에 대한 주장은 서로 구분되므로 변호사들의 발언에 따르면 상소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양적인 온라인 설문에서는 우선 통합소원이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가 조사되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새로운 법 적 수단은 모든 설문대상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통합소원에 대한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양적인 온라인 설문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래 표는 이것을 보여준다.

## D 14.5: 통합소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귀하가 보기에 신설된, 연방대법원에 제기되는 통합소원는 얼마나 적절한 것 으로 입증됩니까?

$\square$ 매우 적절대체로 적절 $\square$ 대체로 부적절 매우 부적절 $\qquad$ 모름

출처: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 $=145$.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이 (78.6\%) 통합소원을 대체로 좋거나 매우 좋다 고 평가한다. 단지 설문대상자의 $11.7 \%$ 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통합소원이 상소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어야 했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나온다.

## D 14.6: 통합소원의 편리성

통합소원이 도입됨으로써 법적 수단의 선택과 적용이 편리해졌는가?


출처: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48.

변호사들의 $80 \%$ 이상이 통합소원이 그들의 업무를 경감시켰다는 의견이다. 거의 $13 \%$ 는 통합소원이 소송절차를 대체로 혹은 전혀 간소 화시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통합소원은 변호사들이 보기에 권리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음의 표는 이에 대해 설명해준다.

## D 14.7: 통합소원과 권리보호

통합소원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 보호의 변화가 생겼는가? 법적 보호가 $\qquad$


출처: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145.
$40 \%$ 이상의 설문대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통합소원은 권리보호의 증가를 가져왔다. 똑같은 비율의 설문대상자들은 연방사법제도 개혁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긍정적 답변 및 중 립적 답변의 근거들은 온라인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을 토대로 다음 과 같이 상술될 수 있다.
(1) 통합소원이 권리보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일반적으로 변 호사들의 업무가 단순해지고 상소를 이중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근거를 둔다.
(2) 권리보호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는 설문대상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결정적이다. 즉 입증에 대한 요구가 통합소원의 도입과 함께 대체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예전과 마찬가지 로 통합소원과 보충적 헌법소원(이전에는 헌법소원)을 서로 구분 해야할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전히 각하판결에 이를 수 있는 많은 "기술적 함정"이 존재한다고 비판된다. 통합 소원의 적용에 있어서 민법, 형법, 공법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이 이를 부정했다. 차 이점을 인지한, 얼마 되지 않는 변호사들의 경우에 이것은 주로

입증에 대한 요구가 법률영역들 간에 서로 상이하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약 $10 \%$ 의 얼마 되지 않는 비율만이 통합소원을 권리보호의 감소를 가져온 조치로 본다. 무엇이 이러한 답변의 이유일까? 온라인 설문과 질적인 인터뷰의 주관식 답변은 한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즉 여러 설문대상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심리불속행재판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 합소원 소장의 문구에서 형식적인 오류를 밝혀내려고 더 많이 시도한 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가 보여주듯 통합소원의 적용 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단지 설문대상자의 $10 \%$ 에게만 존재한다. 온라 인 설문의 결과는 심리불속행결정이 난 사건에 대한 통계에 대비될 수 있다. 이로써 주관적인 인지가 양적인 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 지가 검증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소의 판결방 식을 보여준다.

D 14.8: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처리방식

| 연도 | 사건의 처리 방식 (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출처: 연방대법원 통계

표는 심리불속행재판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통합소원의 도 입에 따른 소송과정의 간소화는 이 자료에서는 증명될 수 없다. 이러 한 차이점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우리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단지 세 가지 논거만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 논거들은 우리의 의견으 로는 설문조사결과와 통계수치 사이의 차이점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1) 이미 한참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리불속행판결의 높은 수치는 부 분적으로 통합소원이 도입된 후에도 입증의 요구가 매우 높은 정도이며 (높은 정도로 머물렀으며) 종종 변호사들에 의해 과소 평가된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2) 그밖에 한 인터뷰 대상자는 연방대법원이 소송을 형식적인 방법 으로 잘라내려고 더 많이 시도하는데 이것이 심리불속행재판의 높은 수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3) 또한 심리불속행재판의 높은 수치는 "도입기현상"으로 볼 수 있 다. 변호사들이 개혁 이후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아직 시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 취해졌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경험으로부터 비로소 설명될 수 있는 질문들이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라 제기된다.101)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통합소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01) 2011년 1월 스위스의 StoPO와 ZPO가 발효됨으로써 연방법인 형사소송법과 민 사소송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이유로 법정심리의 제한이 없이 상소할 수 있게 되 었으므로(민법에서는 소송가액 제한을 넘어서까지), 제소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예상되는 이러한 변화는 2011년으로 예정된 분석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D 14.9: 통합소원의 도입에 대한 요약

| 조 치 | 총 평 |
| :---: | :---: |
| 민법, 형법 및 공법에서 통합소 원의 도입 | - 변호사들에게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br> - 권리보호가 제고되었다. <br> - 통합소원은 상당수의 변호사들에게 그들의 업무를 경감시 켰다. <br> - 통합소원은 통계상으로 볼 때 각하판결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br> - 입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다. |

### 14.2.2 보충적 헌법소원

보충적 헌법소원의 신설과 관련해서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 들을 검토했다.

-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은 변호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변호사들의 수단은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가?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은 변호사들에 의해 대체로 부차적인 변화 로 인식된다. 즉 가장 중요한 변화 목록(표 D 14.4 참조)에서 보충적 헌법소원은 오로지 "기타" 항목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중요성이 경미 한 근거는 보충적 헌법소원이 이전의 헌법소원의 속행이며, 그런 한 혁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은 어떻게 평가되는 가? 설문조사는 이 법적수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D 14.10: 변호사를 통한 보충적 헌법소원에 대한 평가

당신의 관점에서 연방법원에서 제출되는 보충적 헌법소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출처: 변호사 온란인-설문조사; 응답자수=147.

위의 그림은 설문응답자가 보충적 헌법소원을 매우 다양하게 평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응답자의 $37 \%$ 이상이 이 문항에 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들이 지금까지 보충적 헌법소원 관련 사건을 전혀 다루어보지 못했거나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다루었다고 판단한 다. 각각 $30 \%$ 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 제도가 좋은 편이다 또는 나쁜 편이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질적인 평가를 방법에서 답변이 매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긍정적인 답변의 이유는 권리보호수준의 유지로 설명되었다: 보충적 헌법소원으로 2007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동 일한 권리보호 수준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일부 변호사들에 의 해 매우 환영받은 바 있었다.

그 부정적인 응답을 이끈 논지는 이에 반해 다양한데 4 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1) 먼저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이끈 것은 보충적 헌법소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2) 일부 응답자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보충적 헌법소원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어 보충적인 헌법소원이 자주 발생하지 못하며

변호사에게 이 수단의 활용가능성을 제한한다는 보았다.
(3) 한편의 응답자들은 통합소원으로 달성된 소원절차의 간이화가 일부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으로 소멸되었다고 비판했다.
(4) 마지막으로 한편의 응답자들은 보충적 헌법소원이 부족한 헌법 재판권(Verfassungsgerichtsbarkeit)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보충적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에 준 영향에 대해 변호사에게만 해당 되는 질문을 했다. 예측된 바 $48 \%$ 의 응답자들은 권리보호가 보충적 헌법소원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약 $20 \%$ 의 응답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 외의 응답에서 각각 같은 비율로 보충적 헌법소원이 권리보호를 향상시켰다 또 축소시켰다는 답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변 호사 입장에서 본 보충적 헌법소원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D 14.11: 보충적 헌법소원 도입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 - 대다수 변호사들은 보충적 헌법소원 도입이 의미 있는 변 <br> 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함 |
| 보충적 헌법소 <br> 원 도입 | 결과는 실질적인 변화와 일치한다: 실제로 보충적 핸법소원 헙소원(staatsrechtliche Beschwerde)이 확장되었다. |
|  | - 이 (제도의) 도입과 철회를 비교하면 양면적으로 평가된 <br> 다른 변호사들은 이것에 대해 비판한다. |

### 14.2.3 소송가액 제한의 상향조정과 사회보장법에 비용부담의무의 도입

소송가액 재한의 상향조정과 사회보장법 영역에 비용부담의무의 도 입은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설문 을 통해 다음 두 가지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 기본적으로 소송가액 제한의 상향조정과 사회보장법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이것이 권리보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수 응답자들은 이 소송가액 제한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07년까지 적용되었던 8,000 프랑켄은 명백 히 너무 낮은 것이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이 사소한 사건들을 다루는 데에서 벗어나 려면 피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 및 기각판결의 숫자를 높이는 법원 서기사법기관(Gerichtsschreiberjustiz)이 되는 것을 예방해야하고 이를 위 해 소송가액 제한을 더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소송가 액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 (연방대법원법 74조 2항 lit. a와 85조 2항 에 따라 (법)원칙과 관련 중요성을 띄는 문제는 소송가액 제한에 미치 지 못하더라도 연방대법원에 할 수 있다)도 변호사들에 의해 긍정적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에 이런 문제가 자 주 등장할 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비용부담의무의 도입은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 변호사들 로부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500 프랑켄이라는 액 수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더 높은 액수는 당연히 (권리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접근하는 것을 민감하게 제한할 것 으로 봤다. 응답자들은 비용부담의무 문제는 무료권리구제제도를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빈곤층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인터뷰에서 법원비용 500 프랑켄이, 특히 소 송가액이 높은 Harts IV-사건(역자주: 독일 사회보장의 한 종류로 주로 실직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부를 규정)에서의 경우, 연방대법 원 소송당사자들의 제소를 주저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 양적 설문조사의 결과는 인터뷰결과와 비교하여 다음의 그 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차이가 나타났다.

## D 14.12: 변호사가 본 소송가액경계 인상과 비용부담의무 도입이 권리 보호에 준 영향

다음의 조처들이 권리보호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출처: 변호사 온라인-설문조사.

약 응답자 $2 / 3$ 가 소송가액 제한의 상향조정과 사회보장법에 비용부 담의무의 도입으로 권리보호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한다.

소송가액 제한의 예외규정(연방대법원법 제74조 2항 a , 제 85 조 2항) 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D 14.13: 변호사의 소송가액 제한의 예외에 대한 평가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의 소송가액 제한 예외조항이 권리보호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출처: 변호사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142.

응답자의 $34.5 \%$ 가 그 예외조항이 권리보호를 강화한다고 바라봤고, $26.8 \%$ 는 예외조항으로 권리보호가 감소되었다고 믿었다. 인터뷰에서 의 긍정적인 평가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부정적인 평가를 어떻 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변호사의 다수는 즉흥적인[양적인] 평가에서 소송가액 제한 상향조정과 사회보장보험에 비용부담의무 도입을 권리의 축소로서 받 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이 [온라인-]설문조사는 아마 변화에 대한 (추측 컨대 피상적일 수도 있는) 평가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반 면 [질적인 평가] 인터뷰에서는 변경내용이 좀 더 심도 깊게 토론되었 다. 이러한 판단으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했다.

D 14.14: 소송가액 제한인상, 비용부담의무도입에 대한 결론

| 조 처 총 평 |  |
| :--- | :--- |
|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 | - 변화의 의미가 크지 않다. |
| 적 문제에 관한 사건에 | - 형식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에게 권리보호의 |
| 대해 예외조항을 둔 소송 <br> 가액 제확인송 | 받아들여짐. |
| 정조사라에 퍼 겅가됨. |  |


| 조 처 | 총 평 |
| :---: | :--- |
|  | - 중간정도의 의미가 있음. <br> 사회보장법에 비용부담의 <br> 무의 도입 |
|  | - 형식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가 권리보호가 약 <br> 화된 것으로 평가함. <br> - 그 권리보호의 부정적인 결과는 무료사법제도 <br> 의 활용기회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봄. |

### 14.2.4 사회보장법에서의 심리 제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변호사들이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 법에서의 심리 제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인터뷰 결과에서는 다수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심리제한으로 권 리보호가 감소했고 모든 주법원에서 2단계 소송절차를 도입함으로서 권리보호가 다소 다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외에도 특 히 연방주 전심법원들의 허술한 증거조사가 단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양적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인터뷰결과는 재확인되었다. 다음의 그림 은 사회보장법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답변만으로 구성되었다.

D 14.15: 변호사의 사회보장법상 심리제한에 대한 평가


출처: 변호사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61.

설문은 사회보장법 영역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답변만 고려되었다.
결과는 뚜렷했다: 설문에 응한 $85 \%$ 사회보장보험법 담당변호사는 심리의 제한이 권리보호를 약화한다고 했다. 응답에 나타난 이들 많 은 비판들은 이 문제가 해당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다. 제한된 심리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1) 충분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완전한 심리(voller Kognition)를 실 행하는 2 개의 상소심급이 필요하다
(2) 연방주 법원들의 심사의 수준이 불충분하다.
(3) 연방주 법원들이 심리 제한으로 발생한 자신의 추가적인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4) 현재 의뢰인들에게 제한된 심리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사회보장법 관련 사건을 제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경우가 늘어났 다. 이것들이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최소한 몇몇 소수의견들이 여기 소개된 비판을 상대화한다: 변호사 의 인식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심리제한이 다행스럽게도 상대적으로 온건하게[덜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변호사 입장에서 본 사회보장법상 의 심리제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D 14.16: 사회보장법에서 연방대법원의 심리제한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사회보장 법에서 연 <br> 방대법원의 제한된 <br> 심리 | - 제한된 심리는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모든 변경 중 가 <br> 장 중요한 핵심문제의 하아 따였다. <br> - 연방주 전심법원들의 굄리ㅂㅗㅣ루수눈이 층분치 못하다 |

### 14.2.5 제소의 기간과 온라인 송달

연방사법제도 조직법의 경우 상소기간이 다양한 반면, 연방대법원법 은 단일한 기간을 규정한다. ${ }^{102)}$

연방대법원법 제 100 조 1항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항소는 연방대법 원에서 판결문을 완전히 작성하고 공개(nach der Eröffnung der vollständigen Ausfertigung)한 후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다양한 예외는 연방대법원법 제 100 조 $2,3,4$ 항에 열거되었는데, 예를 들면 연방주 감 독청의 채무회수 및 파산 사건에서의 결정이나 국제 사법공조 영역 (상소기간 10 일)의 재판이다. 103 ) 연방대법원법 제42조 4항은 연방대법 원에 제출하는 소장(Rechtsschriften)의 온라인 송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송달 시 소송관련문서는 전자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통해 입법영향이 평가되었다:

- 변경된 (제소)기간과 온라인 송달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질적인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은 (제소)기간과 법원휴가(Gerichtsferien) 에서의 단일화가 실제 몇몇 업무경감을 야기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20]그러나 이런 기간과 법원휴가는 새로운 규정이 아직 체득되지 않아 실제 적용과정에서 매번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움이 있음을 강조되 었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연방대법원법 제 100 조의 제소기간이 판결문이 완전히 작성되고 공개된(vollständigen Dossiers) 후에 개시되 는 것이다. 예외적 제소기간 30 일은 응답자들에게 [기간을 놓칠] 위험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 채무회수와 파산에 관한 법률(SchKG: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그리고 국제 사법공조 영 역에서 10 일이라는 기간은 이를 준수하는 것이 촉박하고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온라인 송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인터뷰한 사람 중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의 사용을 찬성한다고 했으며 나이가 젊은 직원들의 경우 온라인 송달 체제로의 변화를 상당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두 사 람은 인증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할 것으로 보았고 만약 1 년에 겨우 몇 사건만 연방대법원으로 제출된다면 이런 노력들이 이득이 될 것인 지 의심한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을 위한 장점으로는 각 소송당사자가 판결문 내용을 바로 복사하여 인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문 서를 스캔해야하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양적 온라인-설문조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나 나왔고 이는 인터뷰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D 14.17: 새로운 기간 및 온라인 송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

[^21]

출처: 변호사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136.

이 변경에 대해 다수 응답자들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 나아가 주목할 만한 것은 질적인 인터뷰 응답에서는 실제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D 14.18: 제소기간, 온라인 송달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제소기간에 대한 새로 <br> 운 규정 | - 변화의 의미가 크지 않다. <br> - 긍정적(규정 단일화) 그리고 부정적 측면(비용, 불 <br> 확실성)이 지금까지 대칭을 이룬다. |
| 제소의 연방대법원 온 <br> 라인 송달 가능성 | - 변화의 의미가 크지 않다. <br> - 변경은 다수 중립적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 14.2.6 종국재판의 개념정의

연방대법원법에서는 - 연방사법제도 조직법(OG)과 달리 - 모든 상소 에 적용되는 새로운 하나의 통일된 종국재판에 대한 개념정의가 존재

한다.104) 그러나 예방적 조치는 만약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미친다면 연방대법원법 제93조의 한계 내에서 중간재판으로서 취소될 수 있다. 입법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 종국재판의 개념정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종국재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인터뷰에 답한 사람들에 의해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변경이 소제기인을 위한 개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 한 응답 자는 연방대법원에의 상소를 위한 이 해석은 너무 제한적으로 고안되 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한 인터뷰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손해 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광범한 법적 불확실성을 수반한다고 말했 다. 양적인 온라인-설문조사에서는 종국재판의 개념정의에 대해 조사 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D 14.19: 종국재판의 개념정의에 대한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종국재판의 개념정의 | - 변경의 의미가 미미하다. <br> -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 14.2.7 연기적 효과

연방대법원법 제 103 조 1 항에 따르면 제소에는 원칙적으로 연기적 효과가 없다. 따라서 연방주 전심법원의 재판은 연방대법원에서 재판
104) Walther, Fridolin (2006): 연방대법원법이 변호사들/소송대변 측에 준 영향(Auswirkungen des BGG auf die Anwaltschaft/Parteivertretung), in: Ehrenzeller, Bernhard; Schweizer, Rainer J. (발행인): 스위스연방사법제도의 재조직 - 개혁과 그 실질적 효과(Die Re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 Neuerungen und Auswirkungen in der Praxis), St. Gallen.. 364쪽.

되기 전에 미리 집행될 수 있다. 민사사건에서는 형성판결(Gestaltungsurteil)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자유형, 자유박탈적 조 치(freiheitsentziehende Massnahmen)에 관한 재판 또는 형사 분야의 국 제 사법공조 영역의 몇몇 절차에 대해서 그 예외가 있다(연방대법원 법 제 103 조 2항). 이 규정은 연방대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이 완전한 상 소(vollkommenen Rechtsmitteln)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상소기관 이 아니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105) 연방대법원법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과제는 오히려 전심법원에 부과되는 과제이다. 본 평가는 질적인 인터뷰에서 다음의 질문을 했다:

- 변호사가 연방대법원 제소의 연기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규정에 대해서 다수 응답자들은 규정 자체로는 긍정적이라고 평 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을 했다. 2 명은 연방대법원이 연기적 효과를 부과하는 데에 너무 적은 제한을 두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의하면 연기적 효과는 거의 모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다른 두 변호사는 연기 적 효과가 너무 미미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D 14.20: 연방대법원 제소의 연기적 효과 규정에 대한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연방대법원 제소의 연기적 | - 변경의 의미가 미미하다. |
| 효과 규정 | - 형식적으로 규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 |
|  | - 실제 적용에서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다. |

[^22]
### 14.2.8 내용변경적 재판

연방대법원법 제107조 2항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모든 제소에서 새롭게 원칙적으로 내용번경적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보충적 헌법소원에도 해당된다. 본 평가는 질적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을 통한 내용변경적 재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 는가?

변호사들 중 인터뷰 응답자는 이 규정을 다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예로 연방대법원이 구속적부심사사건을 주법원에 돌려보내 지 않고 더 자주 스스로 사실을 재평가하고 내용변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소제기인을 만족시킨다(그 절차가 짧아진다). 한 인터뷰 응답자는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많은 경우에 연방대법원이 내용 변경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판취소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 난점이 있다.

D 14.21: 연방대법원을 통한 내용변경적 재판 결론

| 조 처 | 총 평 |
| :--- | :---: |
| 연방대법원을 <br> 도입 통한 개정재판 가능성 | - 변경의 의미가 미미하다 <br> - 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 14.2.9 소송절차 간이화

다음 변호사들을 상대로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와 제 109 조에 따른 간이소송절차를 통한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그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D 14.22: 변호사들에 의한 절차 간이화 평가

당신은 연방대법원이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와 제 109 조에 따른 간이화된 절차 에서 더 많이 재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설문조사대상 자 중 약 $30 \%$ 가 간이화된 절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약간 적은 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약 3 분의 1 이 간이소송절차를 확장 한 것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 이 수치들 로부터는 이러한 분포에 대한 이유를 도출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 들은 새로운 절차를 크게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과반수가 간이소송절차 확장을 긍정적이거나 상관없다고 평가한다.

D 14.23: 간이소송절차에 대한 결과요약

| 조치들 | 평가 요약 |
| :---: | :---: |
| 연방대법원이 간이소송절차에서 재판 <br> 할 수 있는 가능성 | 개정은 양면적으로 평가된다. |

## 14.3 이중심급의 효과

이중심급의 변호사들에 대한 효과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아래는 두 개의 제1심 연방법원을 신설한 것과 연방주의 법원들이 업무를 인수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원칙적으로 다음의 질문들이 조사되었다:

- 변호사들에 의해서 심급경로에서의 개혁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 이러한 개혁이 권리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14.3.1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연방행정법원 신설은 질적 인터뷰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뷰를 받은 변호사들은 연방행정법원의 행정심판위원회(Rekurskommissionen)와 항고담당직(Beschwerdedienste)을 병합한 것을 행 정사법제도의 질과 전문성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2) 연방행정법원 신설은 변호사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3)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은 이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항고담당직 보다 높은데, 왜냐하면 법원과 행정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4)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법원 신설에 의해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들이 단지 이전의 망명심사위원회(Asylrekurskommission)를 여러 부서로 나눈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 망명법 (Asylrecht)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연방행정법원 신설이 큰 효과를 발 휘하지 못했다. 연방행정법원 신설에 대한 비판점은 절차가 길어진다 는 것이다: 연방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의 처분에 대한 항고절차 는 평균 1 년만큼 길어졌다. 그 이유는 이 금융시장감독위원회의 결정 에 대한 항고가 더 이상 직접 연방대법원에 제기될 수 없고 우선 연 방행정법원에 의해 심리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일정 부분 권리보호를 향상시켰지만, 금융시장감독위원회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는 소제기인에게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길어진 절차)를 주었다.

연방형사법원에 대해서는 질적 인터뷰를 위해 선별된 변호사들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정보를 줄 수 있었다. 한 인터뷰상대방에 따르면 Bellinzona에 있는 이 새 법원이, 입법자가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연방행정법원과 비교하면 대중으로 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 설문대상자는 현지의 열악한 인프라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양적 온라인-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음은 두 법원 신설이 권리보호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D 14.24: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 신설이 권리보호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
다으ᄆ의 조치드ᄅ이 궈ᄂ리보호에 벼ᄂ화르ᄅ 주어ᄊ스ᄇ니까?
```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설문대상자의 $60 \%$ 에 약간 못 미치는 견해에 따르면, 권리보호는 연 방행정법원의 신설 때문에 향상되었다. 연방형사법원의 경우에는 $40 \%$ 보다 약간 많은 수가 권리보호가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로부 터 나온 비판적인 반응들은 주로 절차가 길어졌다는 비판이었다. 아 마도 Bellinzona에 있는 인프라시설이 아직 초기라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이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의 원인일 수 있다.

연방행정법원 신설의 경우에는 연방행정사법제도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반복해서 지적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측면을 하나의 독립된 문제로 조사하였다.

D 14.25: 연방행정사법제도가 연방행정법원 신설을 통해 그 독립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연방행정법원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qquad$ 과 비교할 때에 변화했습니까?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명백히 연방사법제도 개혁은 이 점에서 그 목표치를 전반적으로 달 성하였다: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던 설문대상자의 대다수가 연방 행정법원의 독립성이 과거의 기구들에 비해 더 높다고 답했다. 이러 한 효과는 항고담당직과 비교할 때에 약간 더 크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작다. 설문대상자의 많은 수(약 $40 \%$ )가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이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온라인-설문조사문항에서 주관식 답변들은 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 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는 해당되는 비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개별사례들에서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을 여전히 느낄 수 있고 그 때문에 독립성이 약화된다.
(2) 필요한 전문능력이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3) 이전의 항고담당직에서 근무했던 개별 법관들은 행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전의 공무원으 로부터 갑작스레 법관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 적인" 판단이다.

우리는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다 음과 같이 요약했다.

D 14.26: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 신설에 대한 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 - 권리보호가 향상되었다. <br> 연방행정법원 신설(연방행 <br> 정사법제도에덤당직과 이중심급) 행정심판위원회에 비해 재판의 <br> 독립성이 명백히 높아졌다. <br> - 행정부의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br> 느껴진다. |
| 연방형사법원 신설(연방형 <br> 사사법제도에서 이중심급) | - 권리보호가 향상되었다. |

### 14.3.2 연방주들에 의한 업무 인수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연방주들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만든다. 이 변화들에 대해서는 Kapitel 3 에서 상세하게 서술 하였다. 특히 이중심급(doppelter Instanzenzug)의 보장, 심리과정, 절차 진행에서의 일정한 변화들이 그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제 다음의 문 제들을 다루겠다:

- 연방주들에서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의 결과로 생긴 변화들이 변호 사들에 의해 얼마나 수용되고, 이 변화들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직접면담에서는, 변호사들이 이제까지 사실상 연방주들 차원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것은 우리가 연방 주들에 대한 Kapitel 3 의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거기서 우리는 조사된 7 개의 연방주들에서 연방사법제도 개

혁의 결과로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었다.
인터뷰들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연방주들이 새로운 법원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에 권리보호가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권리보호 가 이중심급 이외에도 각 연방주들의 법원들의 질에 영향을 받으며 이 법원들의 질은 서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양적 온라인-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0 \%$ 이상의 변호사들이, 연방주 들 차원에서 법관에 의한 전심절차를 확장하면 권리보호가 향상된다 고 답했다.

D 14.27: 연방주들에서의 절차들을 조정함으로써 권리보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연방주들에서 법관에 의한 전심절차들을 확장한 것이 권리보호에 변화를 주 었습니까?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135.

연방주들 차원에서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는지 혹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서술했듯이, 입법평가를 통해 조사된 7 개의 연방주들에서는 변화가 매우 적었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결과들이 가정적인 결과

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연방주들 차원에서의 심급의 확장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이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권리보호의 향상으로 평가될 것 이라는 전망뿐이다. 아래에서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D 14.28: 연방주들 차원에서 이중심급 도입에 대한 요약

| 조 치 | 평가 요약 |
| :--- | :--- |
|  | 연방주들 차원에서 이중심급 <br> 도입 |
|  | - 변화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익 심답급이 확장된다면, 권리보호가 향상될 <br> 것이다. |

### 14.3.3 변호사 의뢰인들의 인식 변화

변호사들은 그들의 의뢰인들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의 결과로 인한 변화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질적 인터뷰를 받은 모든 변호사들은, 연방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한 변화들이 그들의 의뢰인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술적인 절차진행과 절차규정에 관심이 없고,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 대상그룹이 변화를 인식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기껏해야 의뢰인 들이 항고담당직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이 연방행정법원 으로부터 재판결과를 받을 때뿐이다. 온라인-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D 14.29: 의뢰인들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23]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응답자수=149.

변호사의 $20 \%$ 미만이, 의뢰인들이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사회보장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경우에 이 비율은 $32.8 \%$ 에 달했고, 이는 이 영역에서 변화들이 큰 의의를 갖는다는 점 을 보여준다. 설문을 받은 변호사들 중에서 $36.3 \%$ 가 사법제도 개혁이 의뢰인들을 위한 개선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반대로 더 나빠졌다는 평가는 $30.1 \%$ 였다. 다른 $33.6 \%$ 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온라인-설문조사에서 나온 주관식 답변들을 보면, 연방사법제도 개 혁으로 인한 어떤 변화들이 의뢰인들에게 다가왔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그것이다:
(1) 사회보장법에서 제한적인 권리보호와 비용부담의무 도입
(2) 의뢰인들은 사회보장영역에서 심리제한 때문에 그들의 사건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3) 재판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
(4) 판결이유들은 의뢰인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전체적인 주관식 답변들을 보면, 사회보장법에서의 변화들은 변호사 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소제기인들에게 있어서도 감지된다는 점이 한 번 더 드러난다.

이 절에서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D 14.30: 소제기인들이 연방사법제도 개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

## 소제기들의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인식

- 변호사들의 의뢰인들 중에 적은 수만이 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한 변화들을 효과적이라고 본다.
- 사회보장법에서의 변화들이 소제기인들에 의해 가장 강하게 인식되었다.


## 15. 수혜조직에 대한 연방사법개정조치의 효과

"관련 사회단체들(interessierten Organisationen)"이란 연방법원들에 제 소할 수 있는 환경보호단체, 보험자단체, 임차인단체, 피고용인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를 말한다.106) 특히 환경 및 자연보호단체는 단체소원 법(Verbandsbeschwerderecht: 역자주> 미국의 집단소송법처럼 공익보호 를 위한 제도로서 원래 당사자적격이 없는 시민단체 등에게 제소권을 부여한 것)에 근거하여 환경법 집행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 }^{107)}$ 그 래서 서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회단체들 중에는 그러한 사회단체들 이 큰 비중( 17 개중 10 개)을 차지한다. 이 밖에 4 개의 장애인단체와 각 1 개의 소비자, 외국인 및 망명신청자, 임차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들이 서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의 중점은 연방행정법원 신설과 대상그룹에 대한 그것의 영향이다. 또한 -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와 유사하게 - 스위스 연방사

[^24]법제도개혁의 그 밖의 조치들과 사회단체들에 대한 그 영향도 조사하 였다. 표본집단이 작기 때문에 결과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은 포기하 였다. 그러므로 조사결과들은 경향과 시사점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고 연방대법원에 제소권을 갖는 사회단체들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은 아니다. 우리는 결과들을 약간 요약된 형태로도 제시할 것이다.

## 15.1 주요변화에 대한 평가

우리는 우선 다음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조사했다:
(1)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으로 인한 변화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 단체들에 의해 인식되었는가?
(2) 선별된 변화들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다음의 서술은, 조사대상 사회단체들이 연방법원들 및 연방행정법원 의 이전 사회단체들에서 얼마나 자주 소를 제기하고 제기했었는지를 보여준다.

D 15.1: 조사대상 사회단체들에 의해 얼마나 자주 소가 제기되는가

사회단체들이 추측하건대 얼마나 자주 다음의 법원들에 소를 제기합니까?

$\square 1$ 년에 여러 번 $\square$ 1년에 약 1번 $\square$ $\square$ 없음

출처: 사회단체들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 응답자수=17

조사대상 사회단체들 중에서 13 개 사회단체들이 연방법원들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및 항고담당직에 소를 제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13 개 사회단체들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으로 인한 변화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들 13 개 사회단체들 중에서 7 개 사회단체 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으로 인한 변화들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 다. 이로부터 사법제도 개혁이 관련사회단체들에게 별로 큰 의의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사회단체들은 주관식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 한 변화인지 답변할 수 있었다. 여기서 연방행정법원 신설 및 이와 결부된 절차의 변화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들에게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에 해당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방행정법원 신설 이외에 다른 3 개의 변화들이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1) 통합소원 도입,
(2) 사회보장법에서 비용부담의무와 심리 제한,
(3) 소제기의 이유제시에 대한 더 엄격한 요건들이 그것이다.

이 목록에서 변호사들에 의해 언급된 변화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나 타난다: 특히 통합소원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변화들은 조사대상 사회단 체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었다.

아래에서는 연방행정법원 신설의 효과에 대해 더 상세하게 다루겠 다. 일련의 다른 측면들은 이어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 15.2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에 대해서 17 개의 피설문 조직 가운데 8 개만이 답변을 하였다. 그 밖의 조직의 경우 연방행정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

았거나(네 개 조직의 경우)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응답을 한 8 개의 조직 가운데 다섯 개에서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이 권리보호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존 행정심판위 원회 및 항고담당직을 연방행정법원으로 대체했음에도 피설문 조직 가운데 그 어느 조직에서도 일상 업무의 변화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아래의 도표는 연방행정법의 신설이 재판의 질과 관련해서, 소송 및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해서,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최대 8 개의 사례를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결과를 서술식으로 표현하였다.

D 15.2: 연방행정법원 신설의 영향에 대한 조직들의 평가

| 변화된 측면 | 보고된 영향 |
| :---: | :--- |
| 재판의 질 <br> (행정심판위원회와 <br> 비교해서) | - 두 조직이 보기에 질이 향상되었음. <br> - 세 조직이 보기에는 질적 변화가 없음. |
| 재판의 질 <br> (항고담당직과 비교해서) | - 단 세 개의 조직만이 이에 대해 정보를 줄 <br> 수 있음. <br> - 그 중 하나의 조직이 보기에 소송의 질이 향 <br> 상됨. <br> - 그 중 두 조직이 보기에 질은 그대로임. |
|  | - 네 조직에서 소송과 권리구제수단이 단순해 <br> 졌다고 답변함. <br> - 한 조직에서는 소송 및 권리구제수단이 현재 <br> 더 복갑해졌다고 여김. <br> - 두 조직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
| 소송 및 권리구제수단 |  |
| 행정심판위원회에 비해서 <br> 연방행정법원이 <br> 행정부로부터 얼마나 <br> 독립적인가 | - 여섯 개의 조직에서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 <br> 을 보다 높게 평가함. |


| 변화된 측면 | 보고된 영향 |
| :---: | :---: |
| 항고담당직에 비해서 <br> 연방행정법원이 <br> 행정부로부터 얼마나 <br> 독립적인가 | - 여섯 개의 조직에서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 |
| 을 보다 높게 평가함. |  |

출처: 조직에 대한 서면 설문; 최대 8 개 조직의 답변; 기술된 내용이 8 개 이하의 조직과 관련된 곳에서는 나머지 조직들은 "무응답"이라고 답 변했다.

전체적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D 15.3: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에 대한 요약

| 조 치 총 평 |  |
| :---: | :---: |
| 연방행정법원 신설 달 | - 행정부로부터 재판의 독립성이 강화 <br> 되었음. <br> - 소송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음. <br> - 재판의 질적 변화에 대한 답변은 일 <br> 치하지 않음 |

## 15.3 기타 양상

아래의 도표에는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된 기타 관점들 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권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에서 중 점 사항이다.

## D 15.4: 기타 조치들의 영향

| 조 치 | 영 향 |
| :--- | :--- |
| 통합소원의 도입 | - 이에 대해 응답을 할 수 있었던 다섯 조직들 모두 <br> 의 의견에 따르면 통합소원은 권리보호의 증대를 <br> 가져왔음. |
|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 | - 권리보호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 연방대법원이 간이화된 <br> 절차를 통해 재판할 가 <br> 능성이 확대됨 | - 이 조치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됨. |$|$| 사회보장법의 |
| :--- |
| 법정심리 제한 |$\quad$| - 설문에 참여한 3개의 장애인 조직 모두 이를 권리 |
| :--- |
| 보호의 감소로 봄. |

출처: 조직에 대한 서면 설문

설문에 응한 조직들은 변화에 대해 변호사들과 비슷한 평가를 내렸 다. 통합소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면에 사회보장법에서의 제한 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미 도입부에 언급한 바와 같 이 조직들의 응답은 몇 가지 일반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를 제기하는 조직들의 시각에서 본 보편타당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 니다.

## 16. 연방행정부처에서 본 개정에 대한 평가

행정행위(전형적으로 행정처분)를 하며 이에 대해서 세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연방행정부서가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에 관련 된다. ${ }^{108)}$ 대체로 연방행정부서의 제 1 심 처분들은 모두 곧바로 연방행 정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연방대법원에의 상소는 연방대법원법 제3 절에 규정되어 있다. 가령 직무상 협조절차와 관련한 결정들과 같은 개별 결정들은 연방형사법원에 상소될 수 있다.
우리는 도합 54 개의 연방부서들에 설문지를 보냈고 이중 33 개의 답 변을 받았다. 피설문 조직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답변에서도 일반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나, 행정부 전체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 할 수는 없다. 각각 절대적인 수치만을 기술할 뿐 이를 백분율로 나 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 16.1 주요변경에 대한 평가

우리는 우선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검토하였다.
(1)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변화가 연방행정부서의 입장에서 어떤 범 위로 감지되는가?
(2) 변화되었다고 선택된 항목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설문에 응한 행정부서들의 결정에 대해 서 세 연방법원에 상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108) 연방대법원법 제 31 조에 따르면 연방행정법원은 행정집행법 $(\mathrm{VwVG)}$ 제 5 조에 따 라 처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 D 16.1: 연방행정부서의 처분에 대한 항소의 빈도

귀하가 속한 행정부서/관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항소가 다음과 같은 연방 차원의 심급에 의해 판결되는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출처: 연방행정부서에 대한 서면 설문; 응답자수=33.

이 표를 통해 행정부결정에 대한 항소의 대부분이 연방행정법원에 제기됨을 알 수 있다. 설문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속한 행정부 서의 처분들에 대해서 연간 $1 \sim 25$ 회 정도 제 1 심 연방법원에 상소가 제 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다고 답변한다. 21 개의 피설문 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에의 상소가 마찬가지로 연간 $1 \sim 25$ 회 된다. 연방형 사법원에의 상소는 비교적 드물다. 연방형사법원과는 지금까지 단지 12 개의 피설문 행정부서들만이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연방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한 변화는 행정부서들에 얼마나 강하게 감지되었는가? 설문에 응한 33 개 부서 가운데 14 개는 자신들의 활동범 위 내에서 변화를 감지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9 개 부서들은 아직 까지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영향을 인식할 수 없었다. 변화가 있었던

14 개 부서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세한 답변을 한다.

D 16.2: 연방행정부서의 시각에서 본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주요 변화

|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주요 변화 | 응답 수 |
| :--- | :---: |
|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 5 |
| 소송기간의 변화 | 5 |
| (부분적으로는 겸직 전문법관들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담 <br> 당 법관이 교체됨 | 2 |
| 중간처분(Zwischenverfü gungen)의 증가 | 1 |
| 행정비용의 증가 | 1 |

출처: 연방행정부서에 대한 서면 설문

상소빈도를 근거로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이 주요 변화로 언급된다. 소송기간의 변화 또한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언 급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심급 운영에 따른 절차의 연장뿐만 아니라 연 방대법원의 재판속도 상승도 지적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에 대해 상 론한다. 이어서 연방형사법원 신설과 연관된 결과를 잠깐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소송절차상의 변화를 다룬다.

## 16.2 연방행정법원 신설의 연방행정부처에 대한 효과

피설문 행정부서들의 처분은 예전에는 대부분 행정심판위원회 내지 항고담당직에 의해 심사되었다. 답변을 한 총 33 개 행정부서들 가운 데 약 5 분의 1 ( 6 개 부서)이 연방행정법원의 신설로 인해 자신들의 일

상업무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변하였다. 그 밖의 설문대상자들은 변화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뷰에서도 이런 인상은 확인되었지만, 설문 대상자들은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이 절차진행 및 당사자에 대한 석명 에 있어서 전문화를 야기했다는 점을 보충했다.

행정부서들에 연방행정법원의 신설로 인한 권리보호의 변화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D 16.3: 연방행정법원 신설이 연방행정부서들을 통한 권리보호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 귀하가 보기에 연방행정법원의신설에 따라 소제기인의 입장에서 권리보호가 <br> 변화되었습니까? <br> 권리보호가 증가했음 | 5 명 응답 |
| :---: | :--- |
| 권리보호 정도가 비슷함 | 22 명 응답 |
| 권리보호가 감소했음 | 3 명 응답 |
| 잘 모르겠음 | 1 명 응답 |

출처: 연방행정부서에 대한 서면 설문 $\mathrm{n}=31$.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의견이 권리보호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답변에서 권리보호의 개선 내지 감소와 관련된 답변 은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연방행정법원 신설에 따른 재판의 질적 변화는 설문에 응한 연방행 정법원부서들의 시각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D 16.4: 연방행정법원 재판의 질적 변화에 대한 연방행정부서의 평가

귀하가 보기에 연방행정법원의 신설로 인해 재판의 질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출처: 연방행정부서들에 대한 서면 설문.

앞서 제기된 질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피설문 행정부 서들이 보기에 재판의 질은 변화되지 않았다.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 은 유일하게 2007년 이전에 그들이 내린 처분이 내각의 항고담당직에 의해서 판정이 내려졌던 행정부서들의 답변들이다. 여기에서는 일곱 곳의 답변으로 재판의 질적 상승이 보다 자주 확인된다.

변호사들 및 조직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방행정부서들의 시각에 서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 D 16.5: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의 변화에 대한 행정부서의 평가

| 귀하는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 :--- | :---: | :---: |

출처: 연방행정부서에 대한 서면 설문

특히 항고담당직과 비교할 때 설문대상자들은 행정부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라고 본다.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반대의 평가가 나왔다. 답변을 한 행정부서 가운데 대략 절반(9명)이 연방행 정법원 신설로 인해 독립성이 제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감소했다고 답변한다. 이러한 답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문지의 주관식 답변은 세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1) 몇몇 설문대상자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독립적인 법관들이 활동했으며, 게다가 이들이 연방행정법원에 의해 흡수되었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연방행정법원이 형식적으로는 행정부로부터 보다 더 독립되어 있음이 인정되지만, 그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위원 회보다 전심에 훨씬 더 종속적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겸직 전문법관의 폐지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3) 마지막으로 한 명의 설문대상자는 자신의 견해로는 행정부로부 터의 독립성이 제고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행정 법원은 대체로 "행정부 친화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고 답변한다.

전체적으로 설문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D 16.6: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에 대한 요약

| 조 치 | 총 평 |
| :---: | :--- |
|  | - 재판의 질과 권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작음. <br> -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은 항고담당쟁직과 법원의 신설 <br> 체해소 제고되었음. <br> -연방행정법원의 독립성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해 <br> 서는 제고되지 않았음. |

## 16.3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연방행정부서들을 대상으로 연방형사법원 신설과 관련한 그들의 평 가에 대해 설문했다. 연방형사법원의 신설로 가령 연방부서에 의해 내 려졌던 (예컨대 외국국적 소지자들의 추방과 같은) 강제처분들을 연방 형사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인터뷰 결과들 가운데 몇

가지가 서술된다. 서면 설문에서는 단지 한 곳의 행정부서만이 연방 형사법원 신설로 인해 업무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답변한다.

질적 인터뷰에서는 연방형사법원의 건립이 근본적으로 옹호되고 있 음이 나타난다. 벨린초나의 새 법원에 대한 경험은 근본적으로 긍정 적이다. 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따르면 연방사법제도 조직법(OG) 에 따른 규정(당시에는 모든 사건들이 곧장 연방대법원으로 갔다)에 비해서 한 가지 장점은 오늘날 제소 판정을 관할하는 분과가 단지 하 나라는 점이다. 이로써 법원에서 전문지식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거꾸로 단점도 언급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의 전심 으로서 연방형사법원이 중간에 삽입됨으로써 소송절차가 때때로 길어 지곤 한다는 점이다.

## TEILV : 전체평가의 결과

이번 장에서는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잠정적 총평을 내린다. 서 론에서 제시되었던 조치들의 묶음에 따른 세분이 배열기준으로서 훌 륭했음이 증명되었다면, 개혁의 목표들이 잠정적 총평의 척도가 되어 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목표들이 지금껏 어느 정도로 달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설문대상자들의 총평: 우선 설문조사에서 세 연방법원 및 연방 주 법원의 설문대상자들이 목표 달성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내 리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목표집단 - 변호사 - 에 대한 설문 결과가 서술된다.
(2) 개별 조치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 Teil 2에서 Teil 4까 지 서술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약된 평가를 내린다. 이때 매 조치마다 이것이 목표달성에 기여했는지, 했다면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검토된다. 조치들의 결과들이 합산되며 이로써 두 번 째 평가가 나오게 된다.
(3) 통계 활용이라는 관점에서의 평가: 연방대법원의 통계를 활용함 으로써 특히 개정이 목표-1에 미친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관점 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4) 잠정적 총평: 본 입법평가는 언급된 두 가지 평가를 토대로 하 여 첫 총평을 내린다.

## 17. 설문결과를 통한 목표달성에 대한 전체평가

이 장에서는 연방법원들, 주법원들 및 변호사 집단의 설문대상자들 이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3 가지 목표 달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를 제시한다. 이 3 가지 목표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명명하자면 다 음과 같다.

목표 1: 연방대법원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경감하여 직무능력을 유지함
목표 2: 특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의 개선
목표 3: 소송절차 및 권리구제수단의 단순화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결과 이외에도 목표집단들(변호사, 연방행정 부서, 사회단체)이 개혁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서술된다.

## 17.1 연방법원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법관들은 목표달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D 17.1: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귀하의 견해에 따르면 연방사법제도의 전면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 를 달성했습니까?


출처: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형사법원의 온라인 설문(법관들만 을 대상으로 한).

양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총평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즉 설문대상 자 다수의 견해에 따르면 세 가지 목표 모두가 달성되었다.

첫 번째 목표,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결 과를 보이며 설문대상자의 약 $70 \%$ 에 따르면 달성되었다. 첫 번째 목 표는 일차적으로 연방대법원에 해당되므로 우리는 31 명의 피설문 연 방대법관들의 답변을 별도로 평가했다. 답변을 한 31 명의 연방대법관 들 중 단지 열 명만이(즉 삼분의 일만이) 목표-1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한다. 이로써 직접적 해당자들은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업무부담 경감 효과를 명백히 더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 질적인 인터뷰는 이러한 상 이한 평가에 대한 그 밖의 해명을 제공하는데 즉 모든 설문대상자가 연방대법원의 직무능력이 높은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된 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최상급 법원의 본질적인 업무부담경감은 대체 로 부인된다. 즉 오늘날 업무부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크다 는 것이다. 설문대상자들은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그 자체로 과도 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

명한다. 즉 연방대법원이 너무 많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을 판결해 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대적으로 치솟는 소송건수가 개혁의 업 무부담 경감효과를 다시금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의 달성과 관련해서는 인터뷰에서 나온 질적인 발언들 이 설문조사의 질적인 발언들과 서로 잘 들어맞는다. 즉 인터뷰 대상 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신설과 함께 권리보호는 개선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독립적인 법원에 제소하 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런 지점에서, 게다가 연방대법원에 대한 접근 은 통합소원을 통해서 보다 쉬워졌다는 것이다. 목표-2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는 인터뷰에 따르면 그러나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 정심리의 제한을 통해서 다시금 다소 상대화된다. 연방형사법원 온라 인 설문의 주관식 답변에서는 또한 피고가 연방 차원의 소송절차에서 보다는 연방주 차원에서 법적수단의 보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이 제시된다. 즉 연방형사법원 내지 연방행정법원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고등법원이 결여되어 있 다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고찰된 세 번째 목표, 즉 소송절차 및 권리구제수단의 단순화는 세 법원의 인터뷰 대상자들 에 의해서도 단지 제한적으로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소송절 차는 통합소원이 도입되었어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세 가지 통합소원 내에서의 세분화 또한 비판된다.

## 17.2 주 법원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연방주 법원들의 피설문 법관들과 법원서기들은 목표-2와 목표-3의 목표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놓는다. (목표-1에 대해서는 질문은 했으나 대부분의 답변자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내릴 수 없다고 보고한다.)

## D 17.2: 목표 달성에 대한 연방주의 평가

귀하의 견해에 따르면 연방사법제도의 전면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 를 달성했습니까?


출처: 연방주 상급법원의 온라인 설문.

연방주의 평가는 연방 법원들의 평가보다 더 비판적이다. 즉 설문대 상자의 $37 \%$ 이상이 권리보호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한다. 소송절 차의 단순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답변의 수치가 46.4 퍼센트로 보다 높다. ("모르겠다"는 범주의 답변은 더 적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수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목표(권리보호의 개 선)의 달성에 대해서 인터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지배적이다. 형사 문제 내의 사법공조 영역에서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을 통한 권리보호 의 명백한 개선이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개혁 이전 소규모 연방주들의 상황과 비교해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새로 운 법적수단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주의가 환기된다. 행정법에서 현재의 규정은 (어떤 사건의 재판을 위한 제 1 심이 행정부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호평받는다.

세 번째 목표(소송절차 및 권리구제수단의 단순화)의 달성은 연방주 법관들과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대체로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다. 즉 연방주 수준에서는 법적 수단이 그대로라는 것이다. 또한 통합 소원이 소송절차와 연방대법원에 이르는 권리구제수단을 느낄 수 있 을 정도로 단순화시켰다는 점도 의심된다. 그러나 소송절차의 단순화 를 통합소원의 긍정적인 면으로 간주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나아가 연방주 차원에서는 행정법원과 주정부의 관할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으 로써 소송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단순화되었다는 의견이다.

## 17.3 목표대상그룹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소제기인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목표(권리보호의 개선과 소송절차 의 단순화)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공한다.

## D 17.3: 목표달성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귀하의 견해에 따르면 연방사법제도의 전면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 를 달성했습니까?

$\square$ 전적으로 예
전혀 아니오 $\square$ 모름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

권리보호(두 번째 목표)는 피설문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개선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이에 반해 권 리보호의 감소를 본다. 법률영역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구분하면 사 회보장법에서 소송하는 단지 $33.3 \%$ 의 사람들만이 권리보호의 제고를 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로부터 사회보장법에서의 조치들이 권리보 호에 미친 강한 영향력을 추론할 수 있다.

법관들에게서와 달리 세 번째 목표(소송절차와 권리구제수단의 단 순화)는 변호사들에 의해 명백히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모든 설문대상자의 약 $76 \%$ 가 소송절차가 단순해졌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조치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통합소원은, 그러 나 또한 기한의 변화는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소송절차가 단순화된 원 인이다.

목표집단들에게도 총평의 의미에서 개정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또한 질적으로 강점 혹은 약점에 대해 주의 를 환기할 수 있었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 은 결과에 이르렀다.

## D 17.4: 개혁에 대한 변호사들의 총평

귀하가 보기에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전체적으로 개선입니까 아니면 악화입니까?

$\square$ 크게 개선 $\square$ 대체로 개선 $\square$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출처: 변호사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응답자수 $=148$.

연방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70 퍼센트로 지배적이다. 설문대상자의 4 분의 1 은 이에 반해 개정을 비 판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보장법에서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응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단체들과 행정부서들을 대상으로 개혁의 목표에 대해 설문하지 는 않았지만 이 목표집단들에서도 총평의 관점에서 결과가 존재한다. 해당 사회단체들에서 이 결과는 다음과 같아 보인다.

## D 17.5: 개혁에 대한 조직들의 총평

귀하의 조직에서 보기에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전체적으로 개선입니까 아니 면 악화입니까?


출처: 조직들에 대한 서면 설문; 응답수=6.

전체적으로 열한 개의 사회단체 가운데 여섯 개의 사회단체만이 평 가를 내렸다. 그 이유는 사회단체들의 상당 부분이 연방법원들에 소를 제기한 적이 없거나 개혁에 근거한 변화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섯 개의 사회단체 가운데 네 개의 사회단체이 보기에 개혁은 그들 사회단체의 입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질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연방행정법원 및 통합소원의 신설에 근거한다. 자신들 입장에서

개혁으로 인한 악화를 확인한 두 사회단체는 일차적으로 사회보장법에 서 연방대법원의 제한된 법정심리를 그들의 답변 근거로 내세운다.

피설문 연방행정부서들은 전체적으로 개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D 17.6: 개혁에 대한 연방행정부서의 총평

귀하의 행정부서/관청에서 보기에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은 전체적으로 개선입 니까 아니면 악화입니까?


출처: 연방행정부서에 대한 서면 설문; 응답수=30.

설문대상자의 상당수가 연방사법제도의 개혁을 개선으로도, 악화로 도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행정부서들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열 번으 로 세 번의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지배적이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관 식 답변에서 특히 강화된 전문화와 행정사법제도에서의 제고된 신뢰 성을 그 근거로 한다. 부정적인 점으로는 다시 이중심급 운영을 통한 소송절차의 연장이 언급된다.

## 18. 개별조치들의 결과자료를 통한 독표달성에 대한 평가

우리는 Teil 2에서 Teil 4까지 개별적인 조치들과 이 조치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연구하였다. 이제 이 개별조치들에 대한 평가 들을 요약하면 목표달성에 대한 총평이 나온다.

## 18.1 목표 1 달성을 위한 조치들의 공헌도

조치들이 연방대법원의 지속적인 업무부담경감과 그 직무능력의 유 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단지 세 연방 법원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 모든 설문조사(인터뷰, 온라인 설문, 통계적 분석)로부터 결과를 요약하면 개별적인 조치의 영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온다.

D 18.1: 개정의 개별조치들이 목표-1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조 치 | 목표 달성 기여도 |
| :--- | :---: |
| 연방대법원의 법원조직 | 매우 긍정적 |
|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 매우 긍정적 |
|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 대체로 긍정적 |
| 간이화된 소송절차 하에서의 재판 | 대체로 긍정적 |
| 사회보장법 법정심리의 제한 | 대체로 긍정적 |
| 연방주 전심의 신설(연방주 차원에서의 이중심급 운영) | 중립적* |
| 연방사회보장법원의 부분적 통합 | 중립적 |
| 의회의 상급감독 | 중립적 |
| 법관선발 | 중립적 |
|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완전 법정심리(사실심리 포함) | 중립적 |
| 통합소원 | 중립적 |
| 보충적 헌법소원 | 중립적 |
| 근본적 의미를 갖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 | 중립적 |
| 소송가액 제한 상향조정 | 중립적 |
| 소송비용부담의무의 도입 | 중립적 |
|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감독 | 대체로 부정적 |

세 연방법원의 설문대상자 및 통계활용을 통한 평가

* 연방주의 설문대상자들은 이 관점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였고 어느 정도 의 업무부담경감효과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과는 매우 분명하다. 즉 연방대법원의 재조직 및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은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두 조치는 우리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할 때 목표달성에 대한 높은 기 여도가 인정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그 밖의 세 가지 조치(연방형사법 원의 신설, 연방대법원법 제 108 조 및 제 109 조에 따른 간이화된 소송 절차 하에서의 재판 가능성 확대 및 사회보장법에서 법정심리의 제 한)는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는 했으나 그 경감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밖에 조사된 열한 가지 변화들은 목표-1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연방대법원에 심지어 심한 업무부담을 야기했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명백히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될 수 있 다. 이미 법률제정 과정에서 짐작되었듯이 보충적 헌법소원의 도입은 지속적인 업무부담경감효과를 방해했다.

## 18.2 목표 2 달성을 위한 조치들의 공헌도

목표-2(권리보호의 제고)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는 평가에 대한 근거 를 보다 폭넓게 제시할 수 있다. 세 연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 이외에 목표집단(변호사, 사회단체, 연방행정부서)의 편에서 본 결과가 존재한다.

D 18.2: 개정의 개별조치들이 목표 2 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조 치 | 조치의 목표기여도에 대한 피설문 기관 및 관계자들의 평가 |  |  |  |
| :---: | :---: | :---: | :---: | :---: |
|  | 연방법원 | 변호사 | 사회단체 | 연방부서 |
| 연방행정법원의 <br> 신설 | 매우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 통합소원 | 매우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


| 조 치 | 조치의 목표기여도에 대한 피설문 기관 및 관계자들의 평가 |  |  |  |
| :---: | :---: | :---: | :---: | :---: |
|  | 연방법원 | 변호사 | 사회단체 | 연방부서 |
| 연방형사법원의 신설 | 대체로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평가 없음 | 대체로 긍정적 |
| 연방주 전심의 신설 | 중립적 |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긍정적 |  |
|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완전 법정심리 | 매우 긍정적 |  |  |  |
| 내용변경적 판결 |  | 매우 긍정적 |  |  |
| 종국판결의 정의 |  | 대체로 긍정적 |  |  |
| 발효 유예 |  | 대체로 긍정적 |  |  |
| 간이화된 소송절차 하에서의 판결 | 중립적 | 양가적 |  |  |
| 연방대법원의 감독 | 중립적 |  |  |  |
| 근본적 의미를 갖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 | 양가적 |  | 평가 없음 |  |
| 온라인 송달 |  | 평가 없음 |  |  |
| 제소기한의 새로운 규정 |  | 양가적 |  |  |
| 소송가액 제한 상향조정 | 중립적 | 대체로 <br> 부정적 | 중립적 |  |
| 소송비용부담의무 <br> 도입 | 중립적 | 대체로 부정적 | 중립적 |  |
| 사회보장법의 법정심리 제한 | 양가적 | 매우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응답자들 중 최소 한개 목표그룹(Zielgruppe) 평가에 따르면 6개의 조처가 권리보호(Rechtsschutz)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개의 조처에서 실제로 둘 또는 그 이상 응답자 그룹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 다(회색으로 표시한 부분).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연방행정법원(BVGer) 의 설치이다. 이와 관련 무엇보다 4 개 응답자 그룹에서 결과가 나왔 고 이것들은 모든 측면에서 일관되게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였다.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통합소원이 핵심 조처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순위의 다른 한쪽 끝엔 비용부담의무, 소 송가액 제한인상, 사회보장법상의 심리제한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처 음 두개의 경우 (예상 밖으로) 변호사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반 면 사회보장법상의 심리제한은 연방법원들과 제소권을 갖는 사회단체 의 응답자 일부에 의해 권리보호의 제한으로 분류되었다.

## 18.3 목표 3 달성을 위한 조치들의 공헌도

소송절차 간이화는 다음 다양한 조처들에 통해 영향을 받았다.
D 18.3: 목표-3 달성을 위한 각 개혁조처의 기여

| 조 처 | 기관과 행위자 조시를 통한 조치의 목표기여 평가 |  |  |  |
| :---: | :---: | :---: | :---: | :---: |
|  | 연방법원 | 변호사들 | 단 체 | 연방기관 |
| 연방행정법원의 설치 | 매우긍정 | 긍정적 | 부정적 | 중립 |
| 통합소원 | 매우긍정 | 매우긍정 |  |  |
| 내용변경적 재판 |  | 매우긍정 |  |  |
| 온라인 송달 |  | 긍정적 |  |  |
| 종국재판 정의 |  | 긍정적 |  |  |
| 연방주 전심법원 설치 | 중립 | 중립 |  |  |
| 재판절차 간이화 | 중립 | 평가 없음 |  |  |


| 조 처 | 기관과 행위자 조시를 통한 조치의 목표기여 평가 |  |  |  |
| :---: | :---: | :---: | :---: | :---: |
|  | 연방법원 | 변호사들 | 단 체 | 연방기관 |
| 사회보장보험법상의 심리제한 | 중립 | 중립 |  |  |
| 연방행정정법원의 완전심리 <br> (사실심리 포함) | 중립 |  |  |  |
| 보충적 헌법소원 | 중립 | 양비론적/ <br> 평가상충 |  |  |
| 근본적 의미를 지닌 법적 문제에 <br> 관한 사건 | 중립 |  |  |  |
| 소송가액 제한 상향조정 | 중립 | 중립 |  |  |
| 제소기간에 대한 새 규정 | 양비론적/ <br> 평가상충 |  |  |  |
| 연기적 효과 | 양비론적/ <br> 평가상충 |  |  |  |
| 비용부담의무의 도입 | 부정적 | 중립 |  |  |
| 연방형사법원의 설치 | 부정적 | 평가 없음 | 평가 <br> 없음 | 부정적 |

통합소원과 연방행정법원의 설치는 (응답결과의 점수를 합산) 긍정 적인 결과를 내면서 목표-3(절차의 간이화) 달성에 가장 강력한 기여 를 했다. 그렇지만 연방행정법원의 설치는 변호사들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먼저 연방행정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사건들의 경우 2007년 상황과 비교하여 소송기간이 늘어났 기 때문이다. 내용변경적 재판의 가능성은 변호사들에 의해 (재판이 더 이상 전심법원에서 새롭게 판결되어야 할 필요가 없어져 소송시간 이 단축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질적 으로 아직까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사회보장보험법의 비용부담의 무는 무엇보다 무료사법제도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로 통해 오히려

소송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연방형사법원의 설치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두 개의 연방기관에서 판결하도록 함으로써 (국제 사법공조와 국외추방 영역에서 소송기간이 이중심급으로 인해 길어지면서) 전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 19. 통계결과자료를 통한 목표달성의 평가

세 번째로 우리는 전체평가의 기초로서 통계자료를 활용했다(그 상 세한 결과는 제 13 장 참조). 통계자료는 합산평가 이외에 연방사법제도 개혁 목표-1을 위해 선택된 조처들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각 개별 조 처로부터 나온 결론을 토대로 보완하여 평가한다. 먼저 우리는 주요 결과부터 소개하고 이장의 마지막에 이를 개괄하는 표를 제시한다.

## 19.1 주 단계의 변경에 따른 효과

통계분석은 7개 연방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어 2002년과 2008 년 사이에 연방주 재판에 불복하여 연방주대법원의 상소한 사건의 숫 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연방주 판결에 불복 한 제소의 숫자는 연방주 마다 굴곡이 큰 것이 확인되었다. 연방사법 제도의 변경에 의한 [일정]체계를 보이는 변화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찰된 것 이외에 연방사법제도 개혁 과 관련된 몇몇 소수의 변경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첫 변화의 하나 는 공법 영역에서 연방대법원 제소와 관련된다. 여기 2006년부터 연 방주 판결에 불복한 제소의 숫자가 줄었다. 이 추세는 부분적으로 다 음과 같은 개혁의 시각에서 설명될 수도 있다:
(1) 이중심급 영역에서의 조정: 이 개혁으로 (데이터가 수집된 7개 연방주가 대상) 일정한 여과효과가 확대되었다. 이 조처의 효과 는 물론 (연방주법의 조정기간이 지난) 2009년 1 월 1 일이 돼서

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평가를 하기 위 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2) 여과효과가 사회보장보험법상의 심리제한에 의해 발생했다. 이것이 공법영역에서 연방대법원 제소의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3) 소송가액 제한의 상향조정을 통한 효과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민사 및 형사 건에서 연방주 판결에 불복하는 제소의 숫자는 공법 역역과 달리 2007년부터 늘어났다. 그러나 본 입법평가에서는 이 증 가는 대부분 (또는 전혀) 연방사법제도 개혁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봤 다. 오히려 근원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이 증가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1) 먼저 우리는 민사와 형사 사건의 증가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통 합소원제도 도입과 관련된 통계상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믿는다. 이 제도는 구 상소규칙에 의해 실시되어 왔던 여러 다양한 종류 의 제소를 대체하였다. 이렇게 대체된 제소들이 부분적으로 사 건통계에 남았고 이것이 새 통합소원의 통계에 포함되었다. 부 분적으로는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제소들은 더 이상 데이터 포 함되지 않았다. 제소와 관련된 통계조사의 이 두 가지 점들이 2007년 전후 제소건수의 비교를 매우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형사사건에서 헌법소원이 2007년 이전 통계에서는 공법 의, 2007년 이후 형사법영역의 제소가 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통합소원의 도입을 통해 부분적으로 2007년 전후의 사건들이 다 른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2) 연방대법원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 영역의 상소 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또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시

작한 새로운 형법 총칙(neues aT StGB)에 의해 더 어려워졌다. 이는 연방사법제도개혁이 도입된 것과 상관없이 형사법의 영역 에의 사건증가를 이끌었다. 오히려 이런 소송의 증가는 신법도입 으로 다수의 새로운 법 해석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 다수의 소송을 이끌어낸 신법도입의 일반적인 결과였다.
(3) 끝으로 연방대법원의 형사법 부서의 제소가 벌써 2006년에 (2002 년 이전까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 다. 이것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통계상으로 연방사법제도개혁이 연방주 차원에 미친 효과는 연방대 법원법에 준거하여 연방주법의 조정이 끝나는 빠르면 2009년부터 또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면 2012년부터 좀 더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이시기에 새로운 통계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19.2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의 신설효과

두 연방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먼저 연방형사법원의 사건들을 살펴보자. 2004년부터 연방형사법원의 판결 에 불복한 제소의 수가 절대치 뿐 만 아니라 비율에서도 늘었다.

이러한 전개는 개혁을 근거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연방형사법원은 형사소추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 따라 서 법원을 통한 업무기록에 따라 재판의 숫자와 판결에 불복하 여 연방대법원에 상소하는 제소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전개는 개혁의 의도(효율성모델, Effizienzvorlage)였고 데 이터에서 이 결과가 관찰될 수 있다.
(2) 2004년 전후 연방형사법에 제소건수를 비교하면 연방대법원의 업무에 다소 경감효과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인터뷰 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분석과 일관성이 있다: 연방형사법원 의 설치는 부분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업무경감효과를 유발했다. 그러나 일정 영역에서는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 연방행정법원 의 설치는 현저하게 업무경감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행정심판 위원회와 항고담당자들의 판결에 불복하는 제소의 숫자와 연방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제소의 숫자를 비교하면 통계데이 터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었다. 이 업무경감효과는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확실히 타당성이 있다고 분 류된다.

## 19.3 연방행정법원의 총부담의 발전

연방대법원 제소건수의 총계는 2002년 이후 감소하지 않았다. 굳이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2007년부터 제소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통합소원의 도입에 소급할 수 있다. 반대로 헌법소원(Verfassungsrügen)의 수치가 그에 포함되어 2007년 이전 상황과 비교해보면(당시 에는 헌법소원은 분리하여 제기되었다) 연방대법원 제소의 숫자는 전 체적으로 상승했다. 이 업무가중은 무엇보다 민법과 형법의 제소의 증가를 통해서 유발되었다.

공법 영역에서는 전체 추세와 비교할 때 다양한 전개를 관찰할 수 있다: 공법에서 제소의 숫자는 줄었다(무엇보다 연방행정법원의 설치 가 이유, 앞의 절(Abschnitt)참고). 사회보장법상의 제소의 숫자도 마찬 가지로 감소된 것으로 분류된다(I.과 II. 사회보장법 부서의 제소 숫 자). 우리는 이 감소가 이 영역의 심리제한으로 유발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소의 숫자가 하나의 평가 기준이라면 다른 하나의 기준은 제소의 처리기간이다. 관련 통계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도록 했다:
(1) 소송의 평균처리기간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고 2007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우선 무엇보다 통계산출방법의 효 과이다: 연방대법원에 연방사회보장법원(EVG)이 통합되면서 평 균기간이 이로 인해 상승하였다.
(2) 사회보장법의 제소건의 평균 소송기간만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 축소되었고 이는 이 영역의 심리제한으로 소급할 수 있 다. 이것은 또한 이 영역 사건의 복잡성(실증자료의 규모로 측정 하여)이 약간 감소했다는 사실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3) 소송기간의 단축은 민법과 형법 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이 것은 재편의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로 전심법원의 재판의 수준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심리불속행(nicht eingetreten)된 사건의 수는 그러나 줄지 않았고 오 히려 2007년 이후 상승하였다. 통합소원의 효과는 데이터에서 도출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 점에서 데이터의 의미가 많이 제한된다.
통계분석은 재판심의(Beratung von Entscheiden)에서 회의의 횟수가 상 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입법자에 의해 의 도된 연방대법원의 업무경감이 반복되는 사건(Routinefällen)에 의해 기 본원칙판결(Grundsatzurteile)의 증가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았다. 마무리 평가는 이와 관련 더 정확한 대답을 제공해야만 한다.
(판결이유(Begründungen)의 양에 따른) 사건의 복잡성은 대략 비슷하 게 유지되었다. 2007년 이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각 개 혁의 효과와 효과부재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통계는 연방대법원의 자료(인사현황)와 제소 숫자와의 비율을 산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 부터 연방대법원의 업무부담과 관련 하여 다음의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법관들의 업무부담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8 년 처음으로 약간 업무경감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혁이 따라 약 간의 업무경감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신뢰할 만 한 통계적 증거를 찾는 것은 장기 시계열 분석으로만 가능하다.
(2) 법원서기들의 업무부담은 대체로 전과 동일하였다.
(3)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부담경감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법관들 의 부담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업무경감은 단지 사 건처리기간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여기서도 확실한 통계 분석은 단지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19.4 부담감소효과와 개별 조치

통계분석에서 도출된 연방사법제도 개혁의 효과는 다음의 표로 요 약되었다. 이 표는 합산평가와 개별조처의 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의 개요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앞의 평가에 대한 분석이 다. 특히 과도기에 해당되는 해의 통계데이터는 적잖이 변형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개혁에 따른 상황을 서술하기 위해 2008년 한해의 데이터가 제공되었는데 이것은 장기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신뢰 할 만한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D 19.1: 개혁 목표1 달성을 위한 개별조처의 기여

| 조 처 | 목표달성에 기여 |
| :---: | :---: |
| 연방행정법원의 설치 | 매우 긍정적 |
| 연방형사법원의 설치 | 긍정적 |
| 사회보장법상의 심리제한 | 긍정적 |
| 연방주 전심법원의 설치 | 중립적* |
| 연방사회보장법원의 부분통합 | 중립적 |
| 통합소원 | 중립적 |
| 중립적 |  |
|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 | 중립적 |
| 소송가액 제한 상향조정 | -** |
| 연방대법원 법원조직 | -** |
| 재판 간이화 | -** |
| 의회에 의한 상급감독 | -** |
| 법관선발 | -** |
| 연방행정법원을 통한 완전한 심리(사실심리 포함) | -** |
| 보충적 헌법소원 | -** |
| 비용부담의무 도입 | -** |
| 연방대법원의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 감독 |  |

* 공법 영역에서 연방주 결정에 불복한 제소 숫자는 감소, 하지만 민법과 형법 영역에서 증가; ** 통계분석을 통한 설명 불가능.

위의 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도록 한다: 목표-1과 관련된 통계의 집적된 결과를 비교하여보면 대부분 다음과 평가와 일치한다: 주로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의 설치 및 사회보장법상의 심리제 한의 도입으로 인한 그 경감효과는 확실하다. 개별조처의 결과를 근

거로 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변경에 대한 경감효과 관찰할 수 없다: 연방주 차원의 변경, 연방사회보장법원의 부분통합, 통합소원의 도입, 근본적 의미를 지니는 법적 문제에 관한 사건과 소 송가액 제한의 도입.

## 20. 목표달성에 대한 전체평가의 경과: 종합

전체평가를 하기위해 우리는 이 단계에서 합산(summative)평가(연방 사법제도 개혁의 목표달성에 대한 응답자의 총평)와 개별조치의 결과 에 기초한 집적(aggrigierte) 평가를 비교한다. 다음의 표는 목표-1에 대 한 두 평가결과를 연방법원의 입장에서 요약한 것이다.

## D 20.1: 목표 1 달성 전체평가: 연방대법원 업무경감

|  | 연방법원의 관점에서 평가 |
| :--- | :--- |
| 합산평가 | - 다수 목표달성 <br> -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응답자들은 목표달성 명확하게 <br>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
|  | - 법원조직의 변경과 연방행정법원의 설치를 통해 크 <br> 게 기여 |
| 개별조처의 결과를 토 <br> 대로 한 평가 | 연방형사법원 설치, 간이소송절차에서 재판, 사회보 <br> 장법에서 심리의 제한을 통해 긍정적으로 기여 |
| - 연방대법원은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형사법원에 대한 |  |
| 감독기능으로 부담가중 |  |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업무경 감이 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원내의 재조직과 연방 행정법원의 설치가 이를 가능케 했다. 연방형사법원의 설치, 간이소송 절차에서의 재판 기회, 사회보장법에서 심리제한은 작은 경감효과를 가져왔다. 이 효과는 그러나 원래 예상했던 것같이 높지 않았다. 일부 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감효과는 보충적 헌법소원을 포기했더라면 다르 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잠재적으로 경감효과를 내포하지만 기 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다 수의 조치들(소송가액 제한 상향조정, 비용부담의무, 연방사회보장법원 의 부분통합, 전심법원의 설치)이 눈에 띄었다. 아마 전심법원 설치의 경감효과는 연방주 차원에 나타날 수도 있다. 연방주 설문조사결과가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는 경계해 야 한다. 이외에 연방대법원의 설문조사는 주관적인 업무경감효과는 단지 몇몇에 한정되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한다: 많은 법관들이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꼈다.

권리보호 향상과 관련된 전체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의 첫 부분에 합산평가의 결과가 나열되었다. 두 번째는 목표-2와 관련된 개 별조치의 효과에 대한 개요이다.

## D 20.2: 목표-2 달성 전체평가: 권리보호의 향상

|  | ...관점에서 본 평가 |  |  |
| :---: | :---: | :---: | :---: |
|  | 연방법원 | 변호사 | 단체/연방행정기관 |
| 합산평가 | - 특히 1 차 기관인 연방법원을 설치 하여 권리보호가 향상되었다. | - 권리보호 향상 <br> - 일부는 다시 효 과가 상쇄되었다. (사 회보장 법으 로 인하여) | - 권리보호 향상 <br> - 일부는 다시 효 과가 상쇄되었다. (사회보장 법으 로 인하여) |


|  | ...관점에서 본 평가 |  |  |
| :---: | :---: | :---: | :---: |
|  | 연방법원 | 변호사 | 단체/연방행정기관 |
| 개별조처의 결과에 기초한 평가 | 연방행정법원의 <br> 설치 <br> 매우 긍정적 | 연방행정법원의 <br> 설치 <br> 매우 긍정적 | 연방행정법원의 <br> 설치 <br> 매우 긍정적 |
|  | 연방형사법원의 <br> 설치 <br> 긍정적 | 연방형사법원의 <br> 설치 <br> 긍정적 | 연방형사법원의 <br> 설치 <br> 긍정적 |
|  | 통합소원 매우 긍정적 | 통합소원 매우 긍정적 | 통합소원 매우 긍정적 |
|  | 연방주 <br> 전심법원의 설치 긍정적 | 연방주 <br> 전심법원의 설치 긍정적 | 연방주 전심법원의 설치 긍정적 |
|  | - 11 개 조사된 조처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전혀 긍정적 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  |  |
|  | 비용부담의무 <br> 도입 <br> 중립적 | 비용부담의무 <br> 도입 <br> 중립적 | 비용부담의무 도입 중립적 |
|  | 사회보장법상의 <br> 심리제한 <br> 효과 확실치 않음 | 사회보장법상의 <br> 심리제한 매우 부정적 | 사회보장법상의 <br> 심리제한 매우 부정적 |

목표-2의 달성에서 두 개의 효과가 서로 경쟁을 했다. 먼저 설문조 사에서는 연방행정법원의 설치, 통합소원, (덜 두드러지지만) 연방형사 법원의 설치, 연방주차원에 이중심급의 설치가 권리보호를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일부 설문응답자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 의 심리제한, 비용부담의무가 권리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 점에서 목표-1과 목표-2의 분명한 목표경합을 관찰할 수 있 었다: 권리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조처들이 동시에 업무경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목표경합은 연방대법원의 업무경감을 권리 보호의 축소가 완전히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적어도 목표경합의 일부를 제1심 연방법원과 통합소원을 신 설함으로써 완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 밖의 일련의 조치들(예를 들어 연방대법원에 전자적으로[역자주: 인터넷을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재판의 개념을 정의 한 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목 표에의 기여 정도는 우리의 조사에 근거하면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인 9 개의 조치들은 권리보호에 약한 영향만을 주거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목표-3, 절차와 권리구제수단의 간이화에 대해 살펴보자. 간이평가 와 개별 조치들에 대한 결과에 기초한 평가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D 20.3: 목표3: 절차 간이화의 도달에 대한 총평

|  | 각 관점별 평가 |  |  |
| :---: | :---: | :---: | :---: |
|  | 연방법원들 | 연방주들 | 변호사들 |
| 간이평가 | 절차는 다소 간이 화되었지만 여전히 연방법원들에의 접 근은 복잡하다 | 실무상 연방주의 차 원에서는 절차들이 전혀 간이화되지 않 았으나, 연방 차원 에서는 통합소원을 통해 간이화되었다 | 절차들은 특히 통합소원 도입을 통해 간이화되었다 |
| 개별 조 <br> 치 들 의 <br> 결 과 에 | 연 방 행 정 법 원 의 신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 연방행정법원의 신 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 연방행정법원의 신설에 대 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거나 중립적 |
| 기 초 한 평가 | 통합소원에 대해 서는 매우 긍정적 | 통합소원에 대해서 는 매우 긍정적 |  |


|  | 각 관점별 평가 |  |  |  |  |
| :---: | :---: | :---: | :---: | :---: | :---: |
|  | 연방법원들 |  | 연방주들 |  | 변호사들 |
|  | 12 개의 조사된 조치들은 작은 효과만을 발휬했더나 아무런 효과도 <br> 사 회보장 법 에서 <br> 비 용 부 담 의 무 를 <br> 신설한 것에 대해 <br> 서는 다소 부정적 |  |  |  |  |
|  | 연방형사법원 신 <br> 설에 대해서는 다 <br> 소 부정적 | 연방형사법원 신설에 대 <br> 해서는 다소 부정적 |  |  |  |

사법제도 개혁은 그 효과가 목표1과 목표2에 대한 것에 비해 다소 덜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목표3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절차 간이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우선 연방행정법원과 통합 소원의 신설이라는 2 개의 조치가 요인이다. 조치들 중 11 개 이상이 절차 간이화와 관련하여 다소 약한 효과만을 가지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은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기까 지 한다: 여기서 목표2와의 목표경합이 나타난다: 연방형사법원의 신 설이 한편으로는 권리보호 수준을 향상시킨 반면에, 법원이 늘어남으 로써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법개혁을 통해 절차 간이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입법평가는 다음과 같이 임시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조사된 조치들은 지금까지 3 개 목표의 도달에 실질적인 기 여를 했다. 연방행정법원의 신설, 통합소원의 도입과 연방대법원의 재 조직은 목표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양면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특히 사회보장법에서의 조치들의 효과이다(비용부담의무, 심리의 제한): 여기서는 목표-1과 목표-2의 목표경합이 뚜렷하게 나타

난다. 동일한 내용이 연방형사법원의 신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한 편으로는 권리보호 수준을 향상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비용이 들 어가는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목표-2와 목표-3 사이의 목표 경합).

## 21. 별 첨

본 연구는 중간보고를 위한 것이다.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 대 한 포괄적인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더 긴 기간에 걸쳐 개혁안이 실현 되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방법은 시기별 비교에서 의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해준다.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 표에서는 "새 로운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효과에 대한 입법평가" 프로젝트에서 이 후의 시점에 실행될 조사단계들이 나열되어 있다.

## D 21.1: 이후의 연구단계들

| 남은 연구들 | 기 간 |
| :--- | :---: |
| 동반협력그룹과의 중간보고 I에 대한 논의를 <br> 위한 워크샵 | 2010년 2월 23일 |
|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 2011년 1사분기 및 2사분기 |
| 연방법원들에서의 인터뷰, Teil II | 2011년 1사분기 및 2사분기 |
| 연방법원들에서의 온라인 설문조사, Teil II | 2011년 3사분기 및 4사분기 |
| 연방주들의 상급심 법원에서의 온라인 설문 <br> 조사, Teil II | 2011년 3사분기 및 4사분기 |
| 중간보고 II와 동반협력그룹회의 2 | 2011년 4사분기 |
| 통계산출, Teil II | 2012년 1사분기 및 2사분기 |
| 최종보고와 동반협력그룹회의 3 | 2012년 4사분기 |

다수의 시점들에서의 조사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조사가 각각 다소 깊게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방법원들 에서의 2011년 온라인 설문조사는 우선적으로 양적조사가 될 것이고 이미 얻은 결과들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선별된 측면 에 집중될 것이다.
"새로운 스위스연방 사법제도의 효과에 대한 입법평가"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개혁을 처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서 개별 연구단계의 모든 결과들은 요약된다. 이에 기초해서 개정필 요와 관련하여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권고가 도출될 수 있다. 약 30 면 정도의 최종보고에서는 압축된 형태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권고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보고는 2012년 말에 제출될 것이다.

## 별첨 I: 인터뷰 대상

다음의 목록은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입법평가에서 질적 인터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여준다.

## DA 1: 인터뷰대상자들

| 이 름 | 직 책 |  |  |
| :---: | :---: | :---: | :---: |
| 연방법원들의 직원 |  |  |  |
| Aeschlimann, Arthur |  |  |  |
| Bandli, Christoph | 이전 연방대법원장 | BGer, Lausanne |  |
| Bürki, Susanna | 연방행정법원장 | BVGer, Bern |  |
| Graf, Stefan | 중앙사무처 직원 | BVGer, Bern |  |
| Gregori Al-Barafi, |  |  |  |
| Mascia | 법원서기 | BStGer, Bellinzona |  |
| Grünvogel, Roger | 법원사무처장 | BStGer, Bellinzona |  |
| Haag, Stephan | 법원서기 | BGer, Luzern |  |
| Keller, Andreas J. | 법원서기 | BGer, Lausanne |  |
| 법관, 부법원장 | BStGer, Bellinzona |  |  |


| 이 름 | 직 책 | 법원/장소 |
| :---: | :---: | :---: |
| Leu, Prisca | 법원사무처장 | BVGer, Bern |
| Meuli, Alberto | 법관 | BVGer, Bern |
| Meyer, Lorenz | 연방대법원장 | BGer, Lausanne |
| Meyer, Ulrich | 법관 | BGer, Luzern |
| Reichmuth, Caroline | 사무처 직원 | BStGer, Bellinzona |
| Scheyli, Martin | 법원서기 | BVGer, Zollikofen |
| Tschümperlin, Paul | 법원사무처장 | BGer, Lausanne |
| Wüthrich, Walter | 법관 | BStGer, Bellinzona |
| 변호사 |  |  |
| Bovay, Benoît | 변호사 | Lausanne |
| Fellmann, Walter | 변호사 | Luzern |
| Fingerhuth, Thomas | 변호사 | Zürich |
| Illes, Ruedi | Caritas Schweiz 변호사협회장 | Luzern |
| Nordmann, Philippe | 변호사 | Lausanne |
| Pfister, Heidi | 변호사 | Luzern |
| Sidler, Max | 변호사 | Zug |
| 연방행정관청 |  |  |
| Leber, Marino | 스위스 연방사법제도개혁 프로젝트의 이전 대표 | Bundesamt für Justiz, Bern |
| Offner, Astrid | 국제조약 분야 팀장대리 | Bundesamt für Justiz, Bern |
| Schneider, Ruedi | 위원장 | Eidgenössische <br> Spielbankenkommission, Bern |
| 연방주들의 법원들 |  |  |
| Dayer-Schmid, Eve-Marie | 법원장 | Kantonsgericht Wallis |
| Epard, Muriel | 법원장 | Kantonsgericht Waadt |
| Epiney-Colombo, Emanuela | 법원장 | Tribunale di appello, Tessin |
| Grünig, Christine | 법원장 | Sozialversicherungsgericht Zürich |
| Herzog, Ruth | 법원장 | Verwaltungsgericht Bern |
| Marti, Hans-Peter | 법원장 | Obergericht Solothurn |
| Werner, David | 법원장 | Obergericht Schaffhausen |

## 별첨 $\Pi$ : 방법

아래에서는 입법평가에서 사용된 양적 조사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 한 정보들을 볼 수 있다.

## 3 개의 연방법원들에서의 양적 온라인 설문조사

연방법원들에서의 온라인 설문조사들은 3 개의 법원들의 지원과 긴 밀한 협력 속에서 행해졌다. 이 법원들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직 원들에게 미리 서면으로 설문조사에 대해 알렸다.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독일어, 이탈리아어 또는 프랑스어로 설문에 답할 수 있었 다. 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문지를 인쇄본으로 받아볼 수 있었 고 질문에 수기로 답할 수 있었다. 질문지 수거를 돕기 위해서 주의 를 환기시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응답률은 약 3 분의 2 로 높게 평가 할 수 있다.

DA 2: 대상자전체와 임의추출표본에서의 선별된 특징들의 분포

| 특징들 | 대상자전체 비율 | 수거 비율 |
| :---: | :---: | :---: |
|  | 연방대법원 |  |
| 성별에 따른 분포 <br> (설문을 받은 남성들의 비율) | $56.6 \%(124)$ | $63.3 \%(88)$ |
| 법관 | $17.4 \%(38)$ | $21.8 \%(31)$ |
| 법원서기 | $62.1 \%(136)$ | $66.2 \%(94)$ |
| 다른 직원 | $20.5 \%(45)$ | $12.0 \%(17)$ |
|  | 연방행정법원 |  |
| 성별에 따른 분포 <br> (설문을 받은 남성들의 비율) | $49.2 \%(187)$ | $52.6 \%(111)$ |
| 법관 | $19.5 \%(74)$ | $22.3 \%(50)$ |
| 법 원서기 | $50.5 \%(192)$ | $55.4 \%(124)$ |
| 다른 직원 | $30 \%(114)$ | $22.3 \%(50)$ |


| 특징들 | 대상자전체 비율 | 수거 비율 |
| :---: | :---: | :---: |
|  | 연방형사법원 |  |
| 성별에 따른 분포 <br> (설문을 받은 남성들의 비율) | $52.6 \%(30)$ | $57 \%(21)$ |
| 법관 | $32 \%(18)$ | $32 \%(12)$ |
| 법원서기 | $33 \%(19)$ | $27 \%(10)$ |
| 다른 직원 | $35 \%(20)$ | $46 \%(17)$ |

괄호 안에는 절대값.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응답비율에서 대상자전체에서의 비 율보다 약간 더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최대 $8 \%$ 이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의미있는 차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우리 조사에서는 어떠한 성별에 따른 특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법관들과 법원서 기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오직 연 방형사법원에서만 다른 직원들의 설문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상자 전체와 비교하면 약간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반응의 차 이의 이유는 알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높은 응답률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응답률에서 나타난 차이는 작다. 그룹별로 대답이 달랐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응답률에 의해 왜 곡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연방주들의 법원에서의 양적 온라인-설문조사

연방주들의 법원에서의 온라인-설문조사를 위해서 우선 모든 상급 심 법원들의 주소목록을 만들어야 했다. 연방주들에서의 사법제도의 구조와 법원들의 수가 연방주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소정 리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연방사법청(Bundesamt für Justiz)에서 발송된 서면에서 모든 법원들에게 각 10 명의 법관과 법원서기의 이메 일 주소를 인터페이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규모 연방주들

또는 법원에서는 이 수가 더 작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339개의 이 메일 주소가 수집되었고 그 수만큼의 사람들과 연락이 되었다. Wallis 연방주는 여러 번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보내지 않았다. 설문응답은 $60 \%$ 를 넘어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연방주별로 분포되 었지만 2 개의 예외가 있다: Nidwalden 연방주와 Uri 연방주에서는 응 답률이 매우 나빴고, 반대로 Waadt 연방주와 Obwalden 연방주에서는 특별히 좋았다. 또한 연방주의 크기에 비추어보면 St. Gallen 연방주와 Schaffhaussen 연방주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락이 닿 았다. 이러한 차이들은 답변에 부여하는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3 가지 이유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 첫 째, 응답률이 높은 연방주들에서 나온 답변들이 전체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결과의 체계상 왜곡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연방 주들의 법원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경향 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답변에 비중을 달리하게 되 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 DA 3: 연방주별 설문 분포

| 요 소 | 전체대상자 비율 | 응답 비율 |
| :---: | :---: | :---: |
| 발송된 전체 설문지 | 340 | $216(63 \%)$ |
|  |  |  |
| AG | 연방주별 분포 |  |
| AI | 20 | 12 |
| AR | 1 | 0 |
| BL | 3 | 3 |
| BS | 7 | 4 |
| BE | 6 | 6 |
| FR | 25 | 20 |
| GE | 19 | 13 |
| GL | 27 | 8 |


| 요 소 | 전체대상자 비율 | 응답 비율 |
| :---: | :---: | :---: |
| GR | 17 | 8 |
| JU | 8 | 5 |
| LU | 21 | 13 |
| NE | 4 | 3 |
| NW | 5 | 0 |
| OW | 3 | 3 |
| SH | 38 | 23 |
| SO | 13 | 6 |
| TI | 10 | 6 |
| UR | 6 | 1 |
| VD | 9 | 5 |
| VS | 7 | 29 |
| ZH | 18 | 17 |
| ZG | 43 | 19 |

## 연방관청들에서의 양적 서면 설문조사

총 54 개의 연방행정관청들이 자신의 업무영역에서의 스위스 연방사 법제도개혁의 효과에 대해 서면 설문지에 답변하였다. 연방행정법원 또는 연방형사법원에서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관청들이 대상이었 다. 일부 행정관청들은 스스로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연방대법원 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연방관청들의 주소들은 연방사법청에 의 해 수집되어 입법평가를 위해 제공되었다. 설문지를 발송한 54 개 관 청들 중에서 33 개 관청이 답변을 해서 응답비율은 $61.1 \%$ 이다. 그 주 소들이 사람별로 직접 접촉하여 수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 면, 이러한 응답률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변호사들에 대한 양적 서면 설문조사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인명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조직에 관한 연방법률(OG) 와 새로운 연방대법원법(BGG) 하에서 최소 5 번 이상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들어있다. 스위스 변호사협회의 웹사이트 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었다. 전체 560 명의 변 호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 였다. 이들에게는 2 번 독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비율은 $26.8 \%$ 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심각한 업무부담 때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그룹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다. 표본집단을 560 명으로 크게 잡은 덕에 응답자 수가 150 명 이 되었고, 이는 양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수치이다.
연락을 한 전체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응답에서 나타난 왜곡을 검토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성별에 따른 분포와 언어 지역의 비율에 대해서만 전체대상자와 응답자수를 비교할 수 있다. 수치들에 따르면, 성별과 언어지역에 따른 분포와 관련해서는 표본집 단의 왜곡이 관측되지 않았다. Romandie의 높은 비율은 연방대법원의 데이터뱅크 때문이다. 분명히Romandie에 정기적으로(5번 이상) 연방대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인구분포 에 어긋나는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DA 4: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비율 분포

| 요 소 | 전체대상자 비율 | 응답 비율 |
| :---: | :---: | :---: |
| Westschweiz와 Tessin의 비율 | $48.4 \%(272)$ | $46.6 \%(68)$ |

## 제소권한이 있는 단체들에 대한 양적 설문 조사

마지막 양적 조사로서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총 34개 의 공익 단체들에게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설문하였다. 이 단체들은 보험소비자단체, 임차인단체, 피고용인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보호 단체이다. 단체들의 목록은 연구자들이 연방사법청과 협력하여 작성 하였다. 총 17 개의 단체들이 설문에 응했고, 이는 $50 \%$ 의 응답률에 해 당한다. 여기서도 직접 접촉하여 주소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화로 다시 한 번 연락한 것이 응답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0]:    1) 역자주: Ständerat("small chamber")은 연방상원 또는 소수의회 등으로 부를 수 있는 데 칸톤(스위스의 연방주)을 대표하는 두 명이 선출된다. 시민 수에 상관없이 각 칸 톤에서 두 명이 선출되고 반으로 나누어진 칸톤은 하나로 묶어 두 명이 선출된다. 따라서 모두 46 명이다. 연방하원 또는 다수의회인 Nationalrat("large chamber")와 함 께 Bundesversammlung(연방의회)를 이루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주의할 것은, 독일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Bundesrat이 내각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1]:    5) 독일에서는 Bundesrat이 연방상원을 가리키지만 스위스 연방에서는 Bundesrat이 연 방의 내각, 즉 행정부와 정부를 가리킨다. 스위스 연방에서 연방상원은 Ständerat이다.
[^2]:    8) 역자주: 여기서 열린 질문이란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주관식질문을 의미한다.
[^3]:    9) 스위스연방은 지역별로 주로 사용하는 공용어가 다르고 민족적 특성이나 문화가 다르다.
[^4]:    10) Bundesrat (2001): 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5]:    18) Bundesrat (2001): 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l 2001, S. 4250.
[^6]:    19) Weissenberger, Philippe (2006): Das BVGer, AJP/PJA 12/2006, S. 1505 f. 참조.
[^7]:    28) Aeschlimann, Arthur (2007): 2000년 사법 개혁 - 연방대법원 및 이에 관한 법률, 실 린 곳: „Justice - Justiz - Giustizia" 2007/8802; 좀 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Lienhard, Andreas (2009): 상급감독 및 사법운영, 실린 곳: „Justice - Justiz - Giustizia" 2009/1.
    29) Tschümperlin, Paul (2009): 연방대법원의 감독, 실린 곳: 스위스 법률가 신문, 105 호, 235쪽.
    30) Weissenberger, Philippe (2006): 연방행정법원, AJP/PJA 12/2006, S. 1500.
[^8]:    39) Tophinke, Esther (2006): 연방주입법 조정을 위한 권리구제수단보장의 의미(Bedeu-
[^9]:    53) 범죄인 인도에 있어 구속명령과 다른 중간명령들을 내리는 경우에 연방형사법원 이 이미 이전에 첫 번째 상소심이었다.
[^10]:    55) 그러나 효율성법안이 연방의 모든 영역에, 특히 법률심에도 상당한 비용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일정한 영역에서 형사소추를 연방차원으로 확대하고 집중 시키려는 목표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56) 로잔에서 마지막으로 처리된 연방형사소송은 소위 "다이아몬드축제(Diamantfeiern)" 와 관련한 기소였다. (판결일: 1999년 10월 29일)
[^11]:    린 곳: $\mathrm{ZBl} 3 / 2006$, 123쪽.
    62) 아우어, 크리스토프 (2006): 연방사법제도의 재구성이 연방주에 미치는 영향, 실 린 곳: $\mathrm{ZBl} 3 / 2006,123$ 쪽.
    63) 일곱 주에 대한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띤다. 이 주들의 사례가 스위스 전체를 대 표하는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12]:    64) 역자주> 아래에서 "완전한 (법정)심리"라는 것은 "volle Kognition"을 번역한 것으 로 사실심과 법률심을 모두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65) 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 일 연방사법제도의 전면 개정을 위한 공고, BBl 2001, 4238면
[^13]:    74) 스위스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부터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전면개혁을 위 한 임무(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l
    
    75) Sarbach, Martin (2006): 연방대법원법과 민사소송절차(BGG und Zivilverfahren), in: Jusletter 18. Dezember 2006.
    76) 스위스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부터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전면개혁을 위 한 임무(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l 2001, S. 4240쪽.
[^14]:    77) 스위스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부터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전면개혁을 위 한 임무(Botschaft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vom 28. Februar 2001), BB1 2001, S. 4240쪽.
[^15]:    와 관련하여 연방형사법원 신설이 당신의 연방주에서의 형사사법제도 의 업무부담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16]:    - 형사사건에서 국제 사법공조 영역에서 연방주 제1심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 기는 이제 연방형사법원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법원 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었습니까?

[^17]:    $\qquad$ 와 관련하여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그 질이 향상되었습니까?

[^18]:    않으며, 그것 자체로서 소송은 가능하지 않다. 형사와 관련된 소송 내에서 관련된 불만은 이 법률의 방법에 아래에 있는 란(欄)에 기록된다.

[^19]:    은 다른 소송의 법관의 수를 포함한다. 기소 및 파산소송도 마찬가지이다.

[^20]:    102) Walther, Fridolin (2006): 연방대법원법이 변호사들/소송대리인에 준 영향(Auswirkungen des BGG auf die Anwaltschaft/Parteivertretung), in: Ehrenzeller, Bernhard; Schweizer, Rainer J. (발행인): 스위스연방사법제도의 재조직 - 개혁과 그 실질적 효과 (Die Re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 Neuerungen und Auswirkungen in der Praxis), St. Gallen. 355쪽.
    103) 기간과 법원휴가 적용 등 변경영역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다음의 참고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ine detaillierte Beschreibung der Änderungen auf dem Gebiet der Fristen sowie der Anpassung von Gerichtsferien usw. findet sich bei) Walther, Fridolin (2006): 연방대법원법이 변호사들/소송대리인에 준 영향(Auswirkungen des BGG auf die Anwaltschaft/Parteivertretung), in: Ehrenzeller, Bernhard; Schweizer, Rainer J. (Hrsg.): 스위스연방사법제도의 재조직 - 개혁과 그 실질적 효과(Die Re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 Neuerungen und Auswirkungen in der Praxis), St. Gallen. 356쪽.
[^21]:    다음의 변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2]:    105) 스위스연방내각 (2001): 2001년 2월 28일 이후 스위스 연방사법제도전면개혁을 위한 연방내각의 과제(Botschaft des Bundesrates vom 28. Februar 2001 zur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BBl 2001, 4342쪽.
[^23]:    의뢰인들이 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한 변화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24]:    106) 연방대법원법 제89조 제1항 c목에 따르면 공법상 사건에서 제소권을 가진 자는, 당해 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또한 연방대법원법 제 89조 제2항 d목에 따르면 다른 연방법률이 제소권을 부여한 사회단체들도 제소권 을 갖는다.
    107) 이에 대해서는 BUWAL (2000) (Hrsg.): Wie wirkt das Beschwerderecht der Umweltschutzorganisationen, Kurzfassung der Evaluation von Alexandre Flückiger, Charles-Albert Morand, Thierry Tanquerel, Universität Genf, bearbeitet von Urs Steiger, Bern 참조.
